

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이태진

하은솔·류진아·김지원·신재동·강예은·이지혜·박나영·이원진·손창균·김현규·정유림
이봉주·강상경·박정민·정원오·김화선·임은정·김건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재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전문원	
	강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창균	동국대학교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교수	
	김현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정유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연구책임자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진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화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임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05

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64-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05>

이용자를 위하여

이 보고서는 2023년 한국복지패널 18차 조사 자료의 세부 문항별 기술통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복지패널’은 국가승인 통계(제331009호)로 조사는 3~7월에 수행했으며 학술대회는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는 조사 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의성 높은 패널 데이터를 제공하고 학술적·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 수치는 횡단면 표준 가중치(가구 데이터 변수명: h18_ws_n_all, 가구원 데이터 변수명: p18_wsc_n_all)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 등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야가 아닌 경우 모든 기술통계표에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의 구분 기준은 당해 연도 가구의 경상소득(공공부조 소득 제외)을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눈 소득의 중위 60%입니다. 중위 60% 미만인 경우는 저소득 가구로, 그 이상인 가구는 일반 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1~17차 조사 자료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별 기초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은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s://www.koweeps.re.kr:442>)에서 조사 차수별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원자료는 최종 수정된 자료이므로 이로부터 산출되는 기술통계는 연도별 기초분석 보고서의 통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조사 항목 중 문항의 정의나 세부 항목의 변경으로 연도별 차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의 통계 분석 시 변경 내용을 각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 수치 및 원자료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연구진(044-287-8138, 8123, 8294, 8162, 8215, 8400) 또는 한국복지패널 전용 수신자 부담 전화(080-380-3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간사

2006년 출범한 ‘한국복지패널’은 2023년 제18차 조사를 완료했다. 사회정책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 수급, 그리고 국민의 태도 등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변화에 대한 이해는 과거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미래 예측의 기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와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 등 방대한 정보를 포괄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성장은 자못 의의가 크다.

국민의 복지 실태 및 복지 욕구를 정태적,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의 대표적 패널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훌륭한 학제 간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동 자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기초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간해 왔으나 내용을 더욱 폭넓게 포괄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태진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이원진 부연구위원, 하은솔, 류진아 전문연구원, 김지원, 강예은, 이지혜 연구원, 신재동 선임전문원, 박나영, 김현규, 정유림 전문원이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이봉주 교수의 책임하에 강상경, 박정민, 정원오 교수, 김화선, 임은정, 김건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신규 표본 추출과 가중치 조정을 위해 동국대학교 손창균 교수가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조사 설계부터 조사 수행, 데이터 정리 및 분석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또한 조사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패널 조사를 수행하여 주신 조사원과 조사 지도원, 무엇보다도 매년 조사에 참여해 주고 계신 복지패널 가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를 검토하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본원 김문길 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22
제3절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24
제2장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31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규모	33
제2절 18차 조사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40
제3장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65
제1절 조사 내용	67
제2절 조사 방법	81
제4장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85
제1절 일반적 특성	87
제2절 경제활동 상태	95
제5장 가구 경제	107
제1절 소득	109
제2절 지출	112
제3절 재산 및 부채	114

제6장 주거 및 건강	119
제1절 주거	121
제2절 건강	128
제7장 가족	135
제1절 가족 관계	137
제2절 가족 문제	138
제8장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151
제1절 가구 구성원의 생활만족도	153
제2절 가구의 생활 여건	157
제3절 가구 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161
제9장 사회보장	163
제1절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165
제2절 공공부조	174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	183
제10장 장애인 부가조사	193
제1절 응답자 특성	195
제2절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197
제3절 일상생활	203



참고문헌	217
부록	219
[부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219
[부록 2] 가구 경제	235
[부록 3] 주거 및 건강	252
[부록 4] 가족	261
[부록 5]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271
[부록 6] 사회보장	273
[부록 7] 장애인 부가조사	291
[부록 8] 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304

표 목차

〈요약표 1〉 2023년 18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8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10
〈표 1-2-1〉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구성 및 조사대상	23
〈표 1-3-1〉 2023년 18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8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28
〈표 2-1-1〉 KOWEPS 표본의 개요	33
〈표 2-1-2〉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분류 기준	35
〈표 2-1-3〉 KOWEPS 1차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 분포 현황	36
〈표 2-1-4〉 KOWEPS 7차 조사 신규 패널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38
〈표 2-1-5〉 KOWEPS 17차 조사 신규 패널 가구의 소득 유형별 지역 배분 결과	39
〈표 2-2-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40
〈표 2-2-2〉 2012년 추가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42
〈표 2-2-3〉 2022년 추가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43
〈표 2-2-4〉 1차 조사 대비 18차 조사에서의 조사 완료 패널 가구 및 가구원 수	43
〈표 2-2-5〉 18차 조사의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44
〈표 2-2-6〉 18차 조사의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45
〈표 2-2-7〉 18차 조사의 202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46
〈표 2-2-8〉 원패널(2006)에 대한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50
〈표 2-2-9〉 1차 추가 패널(2012)에 대한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51
〈표 2-2-10〉 2차 추가 패널(2022)에 대한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52
〈표 2-2-11〉 원패널(2006)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53
〈표 2-2-12〉 1차 추가 패널(2012)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54
〈표 2-2-13〉 2차 추가 패널(2022)에 대한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55
〈표 2-2-14〉 원 패널(2006)에 대한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57
〈표 2-2-15〉 1차 추가 패널(2012)에 대한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58
〈표 2-2-16〉 2차 추가 패널(2022)에 대한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59
〈표 2-2-17〉 지역별 가구 통합 횡단 가중치 분포	61
〈표 2-2-18〉 지역별 개인 통합 종단 가중치 분포	62
〈표 2-2-19〉 지역별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분포	63
〈표 3-1-1〉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68
〈표 3-1-2〉 17차 연도 조사표 유형별 조사대상 및 조사 기준 시점	69
〈표 3-1-3〉 18차 연도 조사 영역	70
〈표 3-1-4〉 조사 주제별 구성	71



〈표 3-1-5〉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 주요 항목	72
〈표 3-1-6〉 가구원용(유형3, 유형4) 설문 주요 항목	77
〈표 3-1-7〉 부가조사표(장애인) 주요 항목	80
〈표 4-1-1〉 가구 형태	87
〈표 4-1-2〉 가구 규모	88
〈표 4-1-3〉 소득집단별 평균 가구원 수	88
〈표 4-1-4〉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9
〈표 4-1-5〉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3
〈표 4-2-1〉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95
〈표 4-2-2〉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96
〈표 4-2-3〉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96
〈표 4-2-4〉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97
〈표 4-2-5〉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99
〈표 4-2-6〉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99
〈표 4-2-7〉 노동 환경 유해 여부	100
〈표 4-2-8〉 가구주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101
〈표 4-2-9〉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101
〈표 4-2-10〉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102
〈표 4-2-11〉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	103
〈표 4-2-12〉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104
〈표 4-2-13〉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105
〈표 4-2-14〉 노동 환경 유해 여부	105
〈표 5-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평균	109
〈표 5-1-2〉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110
〈표 5-1-3〉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평균	111
〈표 5-2-1〉 월간 총가계지출	112
〈표 5-2-2〉 지출 항목별 구성 비율	113
〈표 5-3-1〉 총재산가액 평균	115
〈표 5-3-2〉 순재산가액 평균	115
〈표 5-3-3〉 소유 부동산 평균	116
〈표 5-3-4〉 금융재산 평균	116

〈표 5-3-5〉 총부채 평균	117
〈표 5-3-6〉 총이자액과 기타 이자액	117
〈표 5-3-7〉 부채의 용도	118
〈표 6-1-1〉 주택 유형	122
〈표 6-1-2〉 주거 점유 형태	123
〈표 6-1-3〉 임차 가구의 임대 유형	123
〈표 6-1-4〉 주택 면적	124
〈표 6-1-5〉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124
〈표 6-1-6〉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125
〈표 6-1-7〉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만 여부	125
〈표 6-1-8〉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125
〈표 6-1-9〉 주택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성 여부	126
〈표 6-1-10〉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	127
〈표 6-1-11〉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	127
〈표 6-1-12〉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	128
〈표 6-1-13〉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	128
〈표 6-2-1〉 전체 가구원의 건강 상태	129
〈표 6-2-2〉 가구주의 건강 상태	129
〈표 6-2-3〉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130
〈표 6-2-4〉 가구주의 만성질환	131
〈표 6-2-5〉 건강검진 횟수	131
〈표 6-2-6〉 외래진료 횟수	132
〈표 6-2-7〉 입원 횟수	132
〈표 6-2-8〉 입원 일수	132
〈표 6-2-9〉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133
〈표 6-2-10〉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가구 기준)	133
〈표 7-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137
〈표 7-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 정도	137
〈표 7-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 연락 정도	138
〈표 7-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139
〈표 7-2-2〉 가족 갈등 대처 방법	140



〈표 7-2-3〉 현재 흡연 여부	140
〈표 7-2-4〉 하루 이상 금연 시도 여부	141
〈표 7-2-5〉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	141
〈표 7-2-6〉 음주 횟수	142
〈표 7-2-7〉 과음 횟수	142
〈표 7-2-8〉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143
〈표 7-2-9〉 주변 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143
〈표 7-2-10〉 출산 경험	144
〈표 7-2-11〉 우울에 대한 인식	144
〈표 7-2-12〉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145
〈표 7-2-13〉 남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145
〈표 7-2-14〉 여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146
〈표 7-2-15〉 지금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신규 가구원)	147
〈표 7-2-16〉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여부(신규 가구원)	147
〈표 7-2-17〉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여부(신규 가구원)	147
〈표 7-2-18〉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살 생각(기존 가구원)	148
〈표 7-2-19〉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계획(기존 가구원)	148
〈표 7-2-20〉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시도(기존 가구원)	149
〈표 7-2-21〉 행복지수(컨트롤 사다리-주관적 행복감)	149
〈표 8-1-1〉 건강에 대한 만족도	153
〈표 8-1-2〉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154
〈표 8-1-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154
〈표 8-1-4〉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155
〈표 8-1-5〉 직업에 대한 만족도	155
〈표 8-1-6〉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	156
〈표 8-1-7〉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156
〈표 8-1-8〉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157
〈표 8-2-1〉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158
〈표 8-2-2〉 공과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	158
〈표 8-2-3〉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158
〈표 8-2-4〉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159

〈표 8-2-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159
〈표 8-2-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160
〈표 8-2-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160
〈표 8-2-8〉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160
〈표 8-3-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161
〈표 8-3-2〉 연간 기부 액수	161
〈표 8-3-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관측값 일반 242, 저소득 44)	162
〈표 9-1-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165
〈표 9-1-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 실태	166
〈표 9-1-3〉 공적연금 수급 실태	167
〈표 9-1-4〉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167
〈표 9-1-5〉 건강보험 가입 실태(가구 단위)	168
〈표 9-1-6〉 건강보험 가입 실태(개인 단위)	169
〈표 9-1-7〉 고용보험 가입 실태	170
〈표 9-1-8〉 고용보험 급여 수급 경험	170
〈표 9-1-9〉 산재보험 가입 실태	171
〈표 9-1-10〉 산재보험 급여 수급 경험	171
〈표 9-1-11〉 퇴직(연)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172
〈표 9-1-12〉 퇴직(연)금 가입 실태	172
〈표 9-1-13〉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 여부	173
〈표 9-1-14〉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173
〈표 9-1-15〉 개인연금 급여 수급 경험	174
〈표 9-2-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75
〈표 9-2-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75
〈표 9-2-3〉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76
〈표 9-2-4〉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76
〈표 9-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및 사유	177
〈표 9-2-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 여부 및 신청 탈락 사유	178
〈표 9-2-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후 생계 문제 해결 방법	179
〈표 9-2-8〉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지 여부	181
〈표 9-2-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경험 및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182



〈표 9-2-10〉 근로(자녀)장려금 사용 용도	182
〈표 9-3-1〉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183
〈표 9-3-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84
〈표 9-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85
〈표 9-3-4〉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186
〈표 9-3-5〉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87
〈표 9-3-6〉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88
〈표 9-3-7〉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 정도	188
〈표 9-3-8〉 추가된 아동의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189
〈표 9-3-9〉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189
〈표 9-3-10〉 사교육·보육 이용 기관 수	190
〈표 9-3-11〉 사교육·보육기관의 종류	191
〈표 9-3-12〉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92
〈표 9-3-13〉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	192
〈표 10-1-1〉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장애종류, 장애등급, 교육수준	195
〈표 10-2-1〉 전반적으로 느끼는 장애로 인한 차별	197
〈표 10-2-2〉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197
〈표 10-2-3〉 각종 상황별(8) 차별 경험 있음 비율	198
〈표 10-2-4〉 각종 상황별(8)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가능)	199
〈표 10-2-5〉 학대를 받은 경험 유무와 비율	201
〈표 10-2-6〉 외출정도	202
〈표 10-2-7〉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3
〈표 10-3-1〉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1순위/2순위/3순위)	204
〈표 10-3-2〉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충분성	205
〈표 10-3-3〉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여부	206
〈표 10-3-4〉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의향 여부	206
〈표 10-3-5〉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도움 여부	207
〈표 10-3-6〉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물질적 지원 정도	208
〈표 10-3-7〉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보살핌 정도	210
〈표 10-3-8〉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원)나 서비스 필요 정도	212
〈표 10-3-9〉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원)나 서비스 충분 정도	214

그림 목차

[요약 그림 1]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9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KOWEPS) 관리 및 운영 체계	20
[그림 1-3-1]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27
[그림 2-2-1] 1~18차 조사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 추이	41
[그림 2-2-2] 2012년 추가 표본의 1~12차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 추이	42
[그림 2-2-3] KOWEPS의 가중치 부여 체계	47
[그림 2-2-4] 원패널(2006)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50
[그림 2-2-5] 1차 추가 패널(2012)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51
[그림 2-2-6] 2차 추가패널(2022)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52
[그림 2-2-7] 원패널(2006)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54
[그림 2-2-8] 1차 추가 패널(2012)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55
[그림 2-2-9] 2차 추가 패널(2022)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56
[그림 2-2-10] 원패널(2006)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 그림	57
[그림 2-2-11] 1차 추가 패널(2012)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 그림	58
[그림 2-2-12] 2차 추가 패널(2022)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 그림	59
[그림 3-1-1] 조사 설문 구성	67
[그림 3-1-2]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의 조사 영역 흐름도	72
[그림 3-1-3] 가구용 조사표 Ⅲ. 경제활동 상태 영역 논리도	75
[그림 3-1-4] 가구용 조사표 Ⅳ.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76
[그림 3-1-5] 가구용 조사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76
[그림 3-1-6]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 논리도	79
[그림 3-1-7]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79

부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1-1〉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가구 구분	219
〈부표 1-1-2〉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형태	219
〈부표 1-1-3〉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가구 구분	219
〈부표 1-1-4〉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형태	220
〈부표 1-1-5〉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주거) 수급 가구 구분	220
〈부표 1-1-6〉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수급 가구 구분	220
〈부표 1-1-7〉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평균 수급자 수	220
〈부표 1-1-8〉 가구원의 최종 학력	220
〈부표 1-1-9〉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221
〈부표 1-1-10〉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221
〈부표 1-1-11〉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222
〈부표 1-1-12〉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222
〈부표 1-1-13〉 가구주의 최종 학력	223
〈부표 1-1-14〉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223
〈부표 1-1-15〉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223
〈부표 1-1-16〉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224
〈부표 1-1-17〉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224
〈부표 1-2-1〉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 계약의 형태	225
〈부표 1-2-2〉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225
〈부표 1-2-3〉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225
〈부표 1-2-4〉 취업 가구원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226
〈부표 1-2-5〉 가구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 기간	226
〈부표 1-2-6〉 가구원의 구직상 어려움	227
〈부표 1-2-7〉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227
〈부표 1-2-8〉 비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228
〈부표 1-2-9〉 가구원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228
〈부표 1-2-10〉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228
〈부표 1-2-11〉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229
〈부표 1-2-12〉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 계약의 형태	230
〈부표 1-2-13〉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230
〈부표 1-2-14〉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230

〈부표 1-2-15〉 취업 가구주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231
〈부표 1-2-16〉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231
〈부표 1-2-17〉 가구주의 구직상 어려움	232
〈부표 1-2-18〉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232
〈부표 1-2-19〉 비경제활동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233
〈부표 1-2-20〉 가구주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233
〈부표 1-2-21〉 가구주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233
〈부표 1-2-22〉 가구주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234
〈부표 2-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분포	235
〈부표 2-1-2〉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보유 여부	235
〈부표 2-1-3〉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분포	236
〈부표 2-1-4〉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보유 여부	237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	237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계속)	238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계속)	239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	240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계속)	241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계속)	242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	243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계속)	244
〈부표 2-2-1〉 월간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244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	245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계속)	246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계속)	247
〈부표 2-3-1〉 소유 부동산 유형별 평균	248
〈부표 2-3-2〉 점유 부동산 평균	248
〈부표 2-3-3〉 점유 부동산 유형별 평균	248
〈부표 2-3-4〉 금융재산 유형별 평균	249
〈부표 2-3-5〉 농기계 평균	249
〈부표 2-3-6〉 농기계 유형별 평균	249
〈부표 2-3-7〉 농축산물 평균	250



〈부표 2-3-8〉 농축산물 유형별 평균	250
〈부표 2-3-9〉 자동차 가액 평균	250
〈부표 2-3-10〉 기타 동산·부동산 재산 평균	250
〈부표 2-3-11〉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 유형별 평균	251
〈부표 2-4-1〉 부채 유형별 평균	251
〈부표 3-1-1〉 2022년 1년 동안의 이사 경험 여부	252
〈부표 3-1-2〉 주거 위치	252
〈부표 3-1-3〉 방의 수	252
〈부표 3-1-4〉 상하수도 사용 형태	253
〈부표 3-1-5〉 부엌 사용 형태	253
〈부표 3-1-6〉 화장실 사용 형태	253
〈부표 3-1-7〉 목욕시설 사용 형태	253
〈부표 3-1-8〉 난방시설 사용 형태	254
〈부표 3-1-9〉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가격 분포	254
〈부표 3-1-1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분포	254
〈부표 3-1-11〉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분포	255
〈부표 3-1-1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255
〈부표 3-1-13〉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지역별)	255
〈부표 3-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지역별)	256
〈부표 3-1-15〉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지역별)	256
〈부표 3-1-16〉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지역별)	256
〈부표 3-1-17〉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57
〈부표 3-1-18〉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1순위	257
〈부표 3-1-19〉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순위	257
〈부표 3-1-20〉 총원금 상환액 평균	257
〈부표 3-1-21〉 상환 후 남은 융자액 또는 부채 평균	258
〈부표 3-1-22〉 주거 관련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평균	258
〈부표 3-1-23〉 대출 상환액 연체 횟수	258
〈부표 3-1-24〉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 경험 여부	258
〈부표 3-1-25〉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	259
〈부표 3-1-26〉 전세자금(융자)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경험	259

〈부표 3-1-27〉 월세지원(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이용경험	259
〈부표 3-1-28〉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이용경험	259
〈부표 3-1-29〉 주거급여 외의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이용경험	259
〈부표 3-2-1〉 병원에 입원한 이유	260
〈부표 3-2-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	260
〈부표 3-2-3〉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가구 기준)	260
〈부표 4-2-1〉 생애 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261
〈부표 4-2-2〉 흡연 경험 시기	261
〈부표 4-2-3〉 총흡연 기간	262
〈부표 4-2-4〉 하루 평균 흡연량	262
〈부표 4-2-5〉 향후 금연 계획	262
〈부표 4-2-6〉 담배 연기에 노출된 시간	263
〈부표 4-2-7〉 음주량	263
〈부표 4-2-8〉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263
〈부표 4-2-9〉 과음한 다음 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264
〈부표 4-2-10〉 음주 후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264
〈부표 4-2-11〉 음주 후 필름이 끊겼던 경험	264
〈부표 4-2-12〉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265
〈부표 4-2-13〉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265
〈부표 4-2-14〉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265
〈부표 4-2-15〉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266
〈부표 4-2-16〉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266
〈부표 4-2-17〉 가족생활 만족도	266
〈부표 4-2-18〉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267
〈부표 4-2-1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267
〈부표 4-2-20〉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268
〈부표 4-2-21〉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한 시기	268
〈부표 4-2-22〉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한 시기	268
〈부표 4-2-23〉 처음으로 자살을 계획한 시기	269
〈부표 4-2-24〉 마지막으로 자살을 계획한 시기	269
〈부표 4-2-25〉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기	269



〈부표 4-2-26〉 마지막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기	270
〈부표 5-1-1〉 인터넷 사용 여부	271
〈부표 5-2-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271
〈부표 5-2-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271
〈부표 5-2-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272
〈부표 5-2-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빈도)	272
〈부표 5-2-5〉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272
〈부표 5-2-6〉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272
〈부표 6-1-1〉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273
〈부표 6-1-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273
〈부표 6-1-3〉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273
〈부표 6-1-4〉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273
〈부표 6-1-5〉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274
〈부표 6-1-6〉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 사유	274
〈부표 6-1-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기간	274
〈부표 6-1-8〉 공적연금 미가입 사유	274
〈부표 6-1-9〉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자 현황	275
〈부표 6-1-10〉 국민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275
〈부표 6-1-11〉 국민연금 연간 평균 연금-일시금 수급액	275
〈부표 6-1-12〉 특수지역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275
〈부표 6-1-13〉 특수지역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276
〈부표 6-1-14〉 특수지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276
〈부표 6-1-15〉 보훈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276
〈부표 6-1-16〉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276
〈부표 6-1-17〉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277
〈부표 6-1-18〉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277
〈부표 6-1-19〉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277
〈부표 6-1-2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277
〈부표 6-1-21〉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278
〈부표 6-1-22〉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278
〈부표 6-1-23〉 고용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278

〈부표 6-1-24〉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278
〈부표 6-1-25〉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279
〈부표 6-1-26〉 산재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279
〈부표 6-1-27〉 산재보험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279
〈부표 6-1-2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280
〈부표 6-1-29〉 개인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280
〈부표 6-1-30〉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액	280
〈부표 6-2-1〉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개월 수	280
〈부표 6-2-2〉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 수급 여부	281
〈부표 6-2-3〉 의료급여 수급 시 문제점	282
〈부표 6-2-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사유	282
〈부표 6-2-5〉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절성 평가	284
〈부표 6-2-6〉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예상 소요 기간	285
〈부표 6-2-7〉 탈수급의 주된 사유	286
〈부표 6-2-8〉 탈수급하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	287
〈부표 6-2-9〉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287
〈부표 6-2-1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이 근로 의욕 변화에 미친 영향	287
〈부표 6-2-1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287
〈부표 6-3-1〉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288
〈부표 6-3-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288
〈부표 6-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금액	288
〈부표 6-3-4〉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별 이용 경험 비율	289
〈부표 6-3-5〉 노인 가구의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289
〈부표 6-3-6〉 장애인 가구의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289
〈부표 6-3-7〉 아동 가구의 기타 아동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290
〈부표 6-3-8〉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290
〈부표 6-3-9〉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290
〈부표 6-3-10〉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	290
〈부표 7-1-1〉 장애발생 원인	291
〈부표 7-1-2〉 장애발생 시기	291
〈부표 7-1-3〉 장애발생 당시 가구 소득 수준	291



〈부표 7-1-4〉 장애의 현재 상태	291
〈부표 7-1-5〉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	292
〈부표 7-1-6〉 장애치료의 충분 여부	292
〈부표 7-1-7〉 장애 치료의 불충분 이유	292
〈부표 7-2-1〉 결혼 전 및 생활 중 차별 경험 있음 비율	293
〈부표 7-2-2〉 결혼 전 및 생활 중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가능)	293
〈부표 7-2-3〉 직장 생활 차별 경험 있음 비율	294
〈부표 7-2-4〉 직장 생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가능)	294
〈부표 7-3-1〉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295
〈부표 7-3-2〉 지각된 사회적 지지	295
〈부표 7-4-1〉 각종 서비스 필요 여부	296
〈부표 7-4-2〉 각종 서비스 이용 여부	297
〈부표 7-4-3〉 취업일자리	297
〈부표 7-4-4〉 취업 희망 일자리	298
〈부표 7-4-5〉 취업불원 이유	298
〈부표 7-4-6〉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여부	298
〈부표 7-4-7〉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희망 여부	299
〈부표 7-4-8〉 각종 서비스 필요 여부	299
〈부표 7-4-9〉 각종 서비스 이용 여부	300
〈부표 7-4-10〉 취업여부	300
〈부표 7-4-11〉 취업일자리	301
〈부표 7-4-12〉 구직활동 여부	301
〈부표 7-4-13〉 취업 희망 일자리의 보수 수준	301
〈부표 7-4-14〉 취업을 위해 바라는 정부지원	302
〈부표 7-4-15〉 용돈	302
〈부표 7-4-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이용여부	302
〈부표 7-4-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희망 여부	303
〈부표 7-4-18〉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희망여부	303



Abstract

The 2023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escriptive Report

Project Head: Lee, Taejin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cope flexibly with the changes in the people's economic status, consumption expenditures, value judgments, and the status of the economy-wide income distribution, poverty and inequality. However, existing cross-sectional survey data are insufficient for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dynamics because the age and cohort effects are not identifiable.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organized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n 2006.

In 2023, the 18th wave of KOWEPS was carried out. There were three types of questionnaires for the survey: the first was for the households, the second for the household members aged 15 and over, and the third for the particular topics(supplements). The content of KOWEPS is composed of socioeconomic information, welfare status, and attitude toward the welfare or something for individuals and households. The particular topic for this wave is 'The Disabled'. In this 18th wave, we completed about 7,654 household samples including both the original and the added new households.

This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 wide variety of content about the general features, the economic conditions, the employment status, social

Co-Researchers: Ha, Eunsol · Ryoo, Jina · Kim, Ji-Won · Shin, Jae-Dong · Kang, Yeeun · Lee, jihye · Park, Na-Young · Lee, Wonjin · Son, changkyun · Kim, Hyeongyu · Jung, Yoo-rim · Lee, Bongjoo · Kang, Sangkyoung · Park, Jung Min · Joung, Won Oh · Kim, Hwasun · Lim, Eunjeong · Kim, Gun

security, welfare needs and the special topics for the 18th-year surveys. The results could be reference data for the researchers who would use KOWEPS.

Keyword : KOWEPS, welfare needs, the Disabled



1.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에 대한 중요성 커짐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 실태를 보여주고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 연구에 활용되어 옴.
 - 그러나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 변화에 기인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의 변화 등을 추적하여 이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의 복지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가구 근로 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을 구축함. 한편 이와 별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문제 및 빈곤의 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차상위·빈곤 패널을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함.
 - 그러나 이러한 3개의 패널 조사는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 목적만

달리 설정하고 있어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예산의 제약으로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비효과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3개의 패널 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함.

□ 한국복지패널 구축 목적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연령, 소득집단,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구체적인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표본 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도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조사로 전국 지역별 가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함.

-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여 국내 패널 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빈곤 연구 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2.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 표본 추출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최초 원표본 가구의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 가구와 표본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최초의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 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것임.
 - 표본의 배분은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였음. 즉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음.
- 7차(2012년) 연도 신규 표본 1,800가구
 -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였음.
 -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잡아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였고, 지역별 표본 배분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 17차(2022년) 연도 신규 표본 2,012가구
 -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로 2021년에 통계청 조사구 리스트를 사용하여 7,000가구를 유치하였고, 2022년에 파악된 소득을 기반으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2,000가구의 2배수인 4,000가구를 추출하였음.
 -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50:50)로 설계하였고, 원표본과 지역별 탈락률에 따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존 패널과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 장애인 부가조사 표본

- 3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2차 연도 패널 표본 가구 중 지역별, 장애 유형별로 층화계층 추출 방식에 의해 총 1,000명을 표본 추출하였음. 3차 연도 장애 유형별 층화계층 표본추출 방식은 일단 지체 장애와 비등록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 유형을 모두 표본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지체 장애와 비등록 장애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음. 장애 유형별 분포상에서 지체 장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였음.
- 6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3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사람 중 패널에서 탈락된 자를 제외한 총 7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9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3차 연도 혹은 6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사람 중 8차 연도 복지패널 조사 대상이었던 자(총 658명)와 전년도(8차 연도) 복지패널 조사의 15세 미만 장애인 가구원 전원(총 14명)을 포함하여 총 6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12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3차 연도, 6차 연도, 9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조사 완료된 사람(총 502명)과 11차 연도 복지패널 조사 대상 중 이전에 장애인 부가조사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가구원 전원(총 866명)을 포함하여 총 1,3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15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12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사람 중 패널에서 탈락한 자를 제외한 총 1,18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18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17차 연도에 조사 완료된 사람 중 패널에서 탈락한 자를 제외한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 1,57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표 구성

- 조사표는 크게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함.
-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이 중심이고, 가구원용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함.

- 부가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 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23년 18차 조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섯 번째 부가조사를 수행함.

□ 조사 방법

-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22년이며, 조사 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22년 1~12월(1년)을, 저장(stock)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 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에 따른 조사 방식은 2010년 5차 조사부터 도입하였음.

3.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조사 기간
 - 본조사는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실시함.
- 조사대상 가구
 -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 가구 기준으로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는 7,865가구이며, 이 중 원표본 가구는 3,664가구, 2~17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발생한 분가 가구는 888가구, 2012년 추가 패널(7차) 조사대상 가구는 1,301가구(원표본: 1,188, 분가: 113), 2022년 추가 패널(17차) 조사대상 가구는 2,012가구임.
 - 18차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143가구임.
 - 그 결과 18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대상 가구는 8,008가구임.

○ 조사 완료 가구

- 17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원표본 3,664가구 중 3,529가구에 대해 18차 패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6.32%로 높은 수준임.

□ 또한 최초의 원표본 7,072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49.90%이며, 전년도(51.81%)와 비교한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폭은 1.91%p임.

- 18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3,529가구에 더해 기존의 분가 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분가 가구를 포함한 927가구, 2012년 추가 패널 가구인 1,301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1,281가구, 2022년 추가 패널 가구인 2,012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1,917가구까지 총 7,654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조사대상이었던 8,008가구 중 7,654가구가 조사 완료(95.58%)된 가구임.

○ 장애인 부가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 완료 가구원

- 18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17차 연도에 조사 완료된 가구원 기준으로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 1,57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함.
- 18차 연도에 장애인 부가조사가 완료된 가구원은 총 1,373명(87.12%)임.

○ 조사 미완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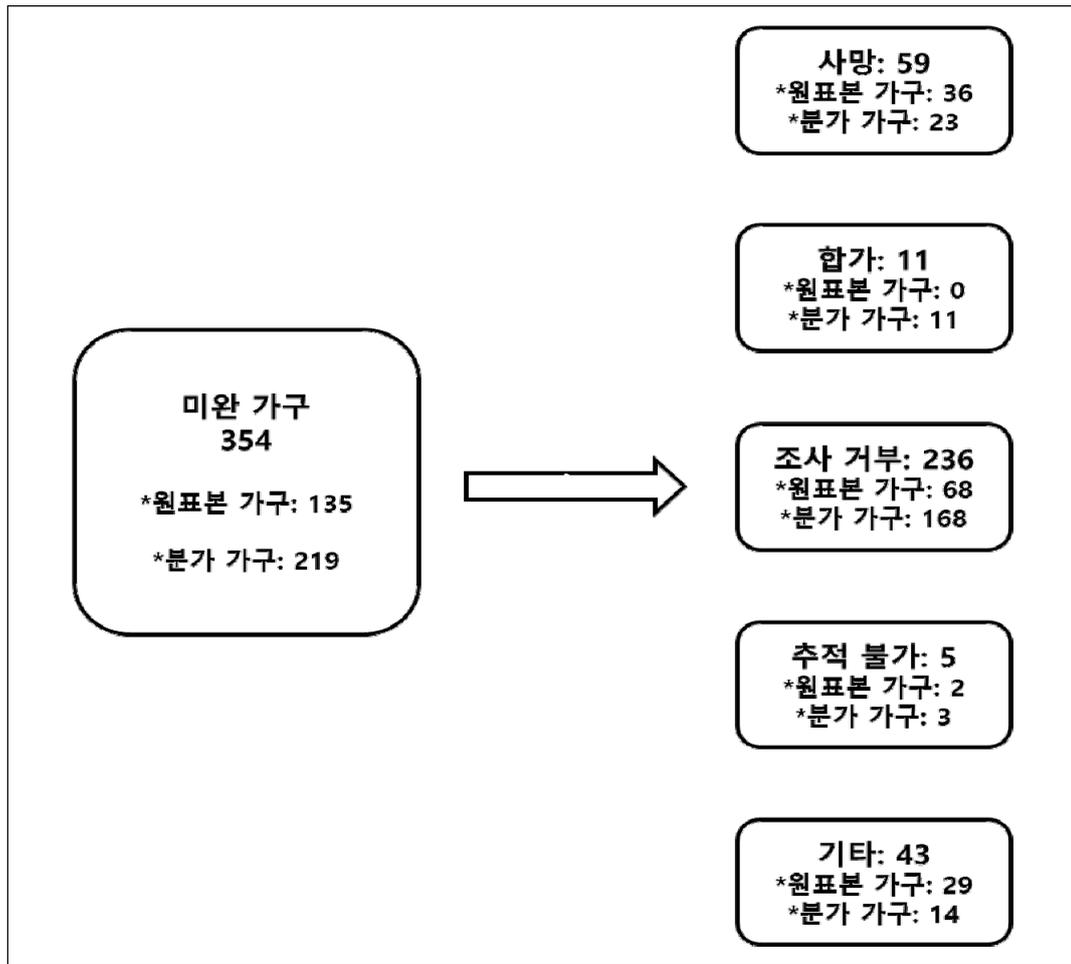
- 18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54가구(+ 합가로 인한 탈락 11가구)로, 이 가운데 원표본 가구가 135가구, 분가 가구가 219가구로 구성됨.

□ 여기에서 원표본은 기존 패널의 원표본을 의미하며, 분가 가구는 원표본의 신규(2~18차 생성) 가구와 2012년 추가패널, 2022년 추가패널을 포함함.

-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완료 가구(304가구) 중 조사 거부가 236가구(원표본 68, 분가 168)로 가장 높은 비중(66.67%)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연적인 탈락으로 볼 수 있는 사망 가구는 59가구(원표본 36, 분가 23)로 16.67%를 차지함. 또한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기타(요양소 입소, 이민 등)가 43가구(원표본 29, 분가 14)로

12.15% 인 것으로 분석되고, 합가 가구는 11가구(원표본 0, 분가 11)로 3.11%임. 그 밖에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인한 추적 불가 가구가 5가구(원표본 2, 분가 3)로 나타남.

[요약 그림 1]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주: 합가의 경우 A가구에 B가구가 합가하여 B가구가 탈락됨(단, A가구에 B가구의 가구원이 포함되어 조사됨).

〈요약표 1〉 2023년 18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8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를 변화 추이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조사 완료
	원표본 가구 수	7,072	6,511	6,128	5,935	5,675	5,335	5,271	5,104	4,896	4,760	4,560	4,398	4,266	4,124	3,865	3,816	3,664
원표본 유지율	100.00%	92.07%	86.65%	83.92%	80.25%	75.44%	74.53%	72.17%	69.23%	67.31%	64.48%	62.19%	60.32%	58.31%	54.65%	53.96%	51.81%	49.90%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 가구	-	561	383	193	260	340	64	167	208	136	200	162	132	142	259	49	152	135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p	5.42%p	2.73%p	3.67%p	4.81%p	0.91%p	2.36%p	2.94%p	1.92%p	2.83%p	2.29%p	1.87%p	2.01%p	3.66%p	0.69%p	2.15%p	1.91%p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	5.88%	3.15%	4.38%	5.99%	1.21%	3.17%	4.08%	2.78%	4.20%	3.55%	3.00%	3.33%	6.28%	1.27%	3.98%	3.68%
기준 분가 가구 (2차~전년도)	-	-	60	167	249	328	383	433	481	517	556	596	662	703	713	761	785	848
추가 분가 가구 (당해 연도)	-	69	126	105	110	72	78	82	61	66	73	87	69	65	76	77	103	79
전체 분가 가구	-	69	186	272	359	400	461	515	542	583	629	683	731	768	789	838	888	927
전체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5,438	5,343	5,189	5,081	4,997	4,892	4,654	4,654	4,552	4,456
원표본 가구 수	-	-	-	-	-	-	1,800	1,690	1,594	1,534	1,478	1,426	1,392	1,343	1,281	1,239	1,188	1,159
기준 분가 가구	-	-	-	-	-	-	-	-	3	16	34	55	70	78	85	84	84	109
추가 분가 가구	-	-	-	-	-	-	-	3	13	21	22	19	15	18	9	19	9	13
전체 분가 가구	-	-	-	-	-	-	-	3	16	37	56	74	85	96	94	103	113	122
전체	-	-	-	-	-	-	1,800	1,693	1,610	1,571	1,534	1,500	1,477	1,439	1,375	1,342	1,301	1,281

(단위: 가구, %, %p)

기준 패널

18차 조사 대상 총 8,008가구
 18차 분가 포함 총 조사대상 8,008가구
 17차 조사 완료 기준 조사대상 7,865가구 (기준 4,552가구)
 (7차 신규⁶⁾ 1,301가구
 (17차 신규⁷⁾ 2,012가구
 + 18차 분가 가구 조사대상 143가구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조사 완료	
	2020년 추가 패널	-	-	-	-	-	-	-	-	-	-	-	-	-	-	-	-	2,012	1,908
원표본 가구 수	-	-	-	-	-	-	-	-	-	-	-	-	-	-	-	-	-	-	-
기준 분가	-	-	-	-	-	-	-	-	-	-	-	-	-	-	-	-	-	-	-
추가 분가	-	-	-	-	-	-	-	-	-	-	-	-	-	-	-	-	-	-	9
전체 분가	-	-	-	-	-	-	-	-	-	-	-	-	-	-	-	-	-	-	9
전 체	-	-	-	-	-	-	-	-	-	-	-	-	-	-	-	-	2,012	1,917	
조사 완료 총 표본 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7,312	7,048	6,914	6,723	6,581	6,474	6,331	6,029	5,996	7,865	7,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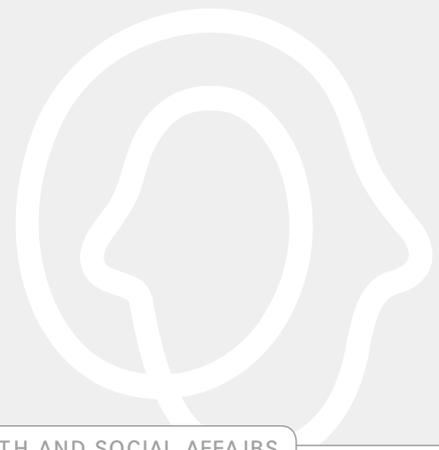
주: 1) 8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2) 9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3) 10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4) 11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5) 15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사 거부 가구를 복원함.
6) 2012년 추가패널을 의미함. 7) 2022년 추가패널을 의미함.

주요 용어: 한국복지패널(KOWEPS), 복지 욕구, 장애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제2절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제3절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제 1 장 서론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¹⁾

1.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 이에 따른 복지재정의 증가와 복지 인력의 확충 등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증대되는 경향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 실태를 보여주고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국민이 어떠한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어떠한 복지 욕구가 있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즉 횡단면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 변화에 기인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의 변화 등을 적절히 추적하여 보여주지 못하고, 따라서 이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횡단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종단적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일본의 KHPS/JHPS,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유럽의 ECHP, 캐나다의 SLID, 호주의 HILDA 등과 같이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패널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1)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을 포함한 서론은 김태완 외(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포함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노동시장 등의 복지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대우경제연구소의 대우패널,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을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형식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가구 근로 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형식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1차 조사 표본 3,855가구)을 구축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문제와 빈곤의 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1차 조사 표본 1,142가구)이 2005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복지정책 영역에서 수행된 3개의 패널 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즉 분석의 목적이나 초점이 다소 다를 뿐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각각의 패널 조사가 예산의 제약으로 충분한 유효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해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3개의 패널 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확대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활패널과 복지패널 구축을 위한 예산을 재정 당국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해당 예산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대사업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기존의 복지패널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한국복지패널(KOWEPS)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구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국복지패널 구축 목적 및 기대 효과

한국복지패널(KOWEP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20여년간 소득 보장제도의 지속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 등의 소득 수준, 취업 상태의 질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다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연령, 소득집단,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는 여타 패널 자료보다 한국복지패널이 가지는 우수한 장점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로 조사의 생명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통계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진국일수록 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후진국일수록 통계가 빈약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은 여러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가능한데, 무엇보다도 적절한 표본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복지패널(KOWEPS)은 국내 가구 단위의 패널 중 가장 큰 표본 수를 확보하였다. 1차 조사 당시 대규모의 원표본(7,072가구 및 동 가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을 추출하여 구축하였고,²⁾ 1차 조사 후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표본 가구 유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조사 수행 과정 및 패널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 그 결과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2차 조사의 92.07%를 시작으로, 3차 조사 86.65%, 4차 조사 83.92%, 5차 조사 80.25%, 6차 조사 75.44%, 7차 조사 73.53%, 8차 조사 72.17%, 9차 조사 69.23%, 10차 조사 67.31%, 11차 조사 64.48%, 12차 조사 62.19%, 13차 조사 60.32%, 14차 조사 58.31%, 15차 조사 54.65%, 16차 조사 53.96%, 17차 조사에서 51.81%, 18차 조사에서 49.90%를 유지하였다. 최초 원표본 7,072가구 기준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전년도(51.81%)에 비교하여 1.91%p 감소폭을 보였다.

원표본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표본을 100% 지켜 내는 일은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패널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원표본 탈락이 누적되고 표본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2012년 7차 조사에서

2)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 단위의 패널 조사 중 한국의료패널 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 조사다.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패널 조사로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다.

3) 한국복지패널은 정부 승인 지정 통계 조사(승인번호 제331009호)로, 표본 관리를 위하여 패널 가구원 수에 따른 조사 답례품, 연하장, 명절 선물 2회(설·추석), 이사 선물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표본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1,800가구, 2022년 17차 조사에서 2,012가구를 신규 표본으로 추가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확충하였다. 그 결과 18차 조사 완료 가구는 7,654가구(기존 패널 3,529가구, 분가 가구 927가구, 7차 신규 패널 1,281가구, 17차 신규 패널 1,917가구)에 이를 정도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조사에서 표본 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 오차가 작아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 단위까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일정 기간 신규 표본으로 추가된 가구에 대해 종단적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한국복지패널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해당 표본의 활용상 장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표본의 규모뿐만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조사이다. 최초의 원표본 가구 추출 시 전국의 3만 가구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소득)를 바탕으로 층화 이중 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을 함으로써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지역별 가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지역적으로는 ‘제주도’까지, 가구 유형으로는 ‘농어가’까지를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또한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여 국내 패널 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 표본 가구를 확보하고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높다고 해서 훌륭한 패널 데이터로서 충분조건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의 질적인 측면이 담보되어야만 충분조건이 달성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패널 연구진, 패널 조사팀, 조사원, 표본 가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고, 조사 수행 과정에서 모든 참여 주체의 책임감과 체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표본 가구 유지율 관리, 조사 효율성 및 조사 결과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사전 조사표 검토 및 의견 공유, 철저한 조사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연구진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은 조사표를 개발한 연구진과 연계하여 즉각적으로 해소 및 처리하였다. 조사 수행 과정에서 조사팀은 48명이 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팀은 전국조사팀 5개 팀(지도원 5인, 조사원 10인), 지역조사팀 9개 팀(지도원 9인, 조사원 18인), 1인체계 6인으로 운영하였다(지역조사는 대전·충청 2개 팀,

부산·경남 1개 팀, 울산·경남 1개 팀, 대구·경북 2개 팀, 광주·전남 2개 팀, 전북 1개 팀으로 구성). 조사 지도원의 사전 계획과 지도에 따라 조사원이 조사한 결과를 조사 지도원이 현장에서 에디팅하여 의문점이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 조사 및 재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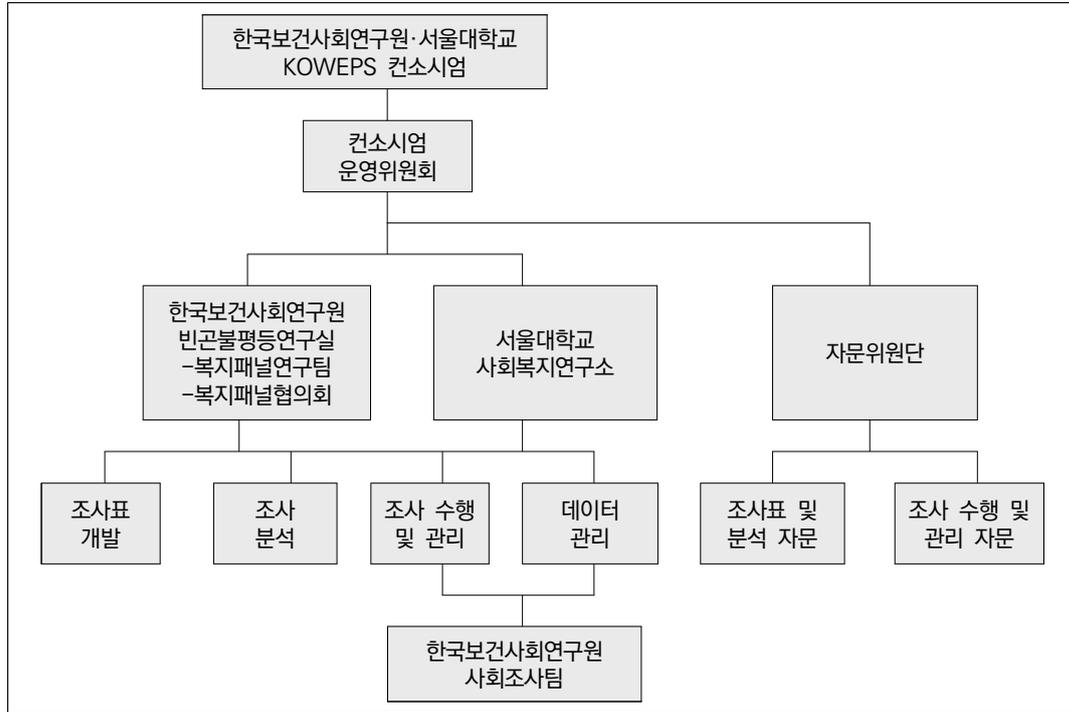
특히 2010년 5차 조사부터는 면접 조사 수행 및 자료의 처리 과정에서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을 새로 도입하였고, 올해 18차 조사까지도 지속적으로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API 방식은 조사원이 조사 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하던 기존의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조사원이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을 현장에서 컴퓨터에 입력하여 조사 지도원에게 전송하면 조사 지도원이 조사 자료에 대한 에디팅을 엄격하게 실시한 뒤 결과를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 방식의 변화가 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원을 대상으로 매해 컴퓨터와 CAPI 시스템 활용 설명회를 열고 있다. CAPI 방식은 패널 조사 결과의 에디팅 및 취합, 그리고 자료 내검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조사 수행 시점을 앞당겼다. 2011년 6차 조사까지는 조사 수행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5월) 무렵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의 생활실태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에서는 2월부터 조사를 착수하여 상반기에 추적 조사까지 완료하였고, 2014년 9차 한국복지패널부터는 3월에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기간을 변경하면서 자료 제공 시점도 조정하였다. 기초분석 보고서에서 발견된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해 다음 해 초에 지난해 조사된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의 시의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2023년 18차 조사에서 생산된 2022년 기준 자료는 2024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복지패널(KOWEPS)에서는 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여타 기관에서 생산 및 구축한 패널과 달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연구 및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분야별 전문성 및 연구 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KOWEPS) 관리 및 운영 체계



두 번째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사회과학 영역의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조사 내용을 포함한 조사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복지정책은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 다양한 복지 지표, 복지정책 등에 대한 이론 및 현실을 검토하여 조사표를 개발·보완하고 있으며, 패널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문항을 조사하여 수요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조사 결과는 매년 개최하는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에 활용되는 등 한국복지패널을 기초로 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패널 자료를 구축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국가 간 복지정책의 수렴 현상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국가 간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 연구는 그 나라의 복지 수준과 국민의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패널 자료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복지패널 연구진은 외국의 복지 관련 패널 조사 문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목적에 따라 한국복지패널(KOWEPS)은 올해 18차 조사까지 지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패널 데이터가 구축됨으로써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실태, 사회보장, 경제활동 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의 경제·사회적 행태 변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규모와 실태 변화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상당수의 사회복지 관련 통계 조사는 관련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통계 인프라 정비, 사회복지 관련 기초자료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및 기초분석 보고서, 설문지 등 패널 조사와 관련한 기초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s://www.koweps.re.kr:442>)를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통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 분야별 연구 활성화 및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연구의 특성상 상당 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 및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학술대회에서 공유함으로써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1. 표본 추출

한국복지패널(KOWEPS)은 제주도, 농어가 및 읍·면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구체적인 표본 추출은 2장에서 설명하므로 여기에서는 최초 원표본 가구 추출 및 신규 표본 추출, 그리고 부가조사인 '장애인 부가조사'의 표본 추출과 관련된 개요를 서술한다.

최초의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의 규모는 7,072가구⁴⁾이며 조사대상은 표본 가구, 표본 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최초의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구총조사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였다. 표본 배분은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였다. 즉 중위소득 60%(OECD 상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⁵⁾

2012년 신규 패널 표본으로는 사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였다. 2022년 신규 패널 표본으로는 사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 2,000가구⁶⁾의 2배수인 4,000가구를 추출하였다. 2012년 및 2022년 신규 패널 표본은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연도와 동일하게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였다. 2012년 신규 패널 표본의 지역별 표본 배분은 1차 연도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 가구를 배분하였고, 2022년 신규 패널 표본은 원표본과 탈락률에 따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여 1~16차 패널이 보완되도록 추출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각종 통계 분석 결과표는 신규 표본을 포함한 분석 결과다. 단 종단분석의 경우에는

4) 목표 원표본 가구 수는 7,000가구였으나 1차 조사 결과 7,07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5)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조사 결과 저소득 가구 비율이 약 45%, 일반 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목표 가구 수는 2,000가구였으나 조사 결과 2,01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분석 목적에 따라 신규 표본 가구의 포함 여부가 다르다.

부가조사인 ‘장애인 부가조사’의 경우, 17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 중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포함) 1,576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1,373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2. 조사표 구성

한국복지패널(KOWEPS)의 조사표는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개인)용 조사표, 부가 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 여건 및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이 중심이고, 가구원용 조사표의 경우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 1-2-1〉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 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 조사 기준 시점: 전년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 조사 기준 시점: 전년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17차 조사 완료된 가구원 중 장애(비등록 장애인 포함)가 있는 가구원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 조사 기준 시점: 조사일 현재

3. 조사원 및 조사 방법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기준 시점은 2022년이며, 조사 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는 2022년 1~12월(1년)을 기준으로, 저장(stock)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원 48명이 수행하였다. 48명의 조사원은 조사 지도원 1인, 조사원 2인으로 팀을 조직하였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울산·경남 지역은 지도원 9인, 조사원 18인으로 9개 팀을 구성하였고, 전국 조사 5개 팀, 지역 조사 9개 팀, 1인체계 6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조사 지도원은 조사대상 패널 가구가 거주하는 읍·면·

동사무소를 사전에 방문하여 조사에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은 조사대상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조사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심야 귀가나 장기 출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 기간에 조사원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 거주, 여행이나 출장, 병원 입소, 군대 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 조사나 대리 응답 조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 1~4차 조사와 달리 2010년 5차 조사 이후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종이 조사표를 이용한 기존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 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의 전환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CAPI 시스템 등 컴퓨터 활용 교육이 조사표 내용에 대한 교육 이전에 이루어졌다. 조사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된 사항은 조사한 내용을 1차적으로 현장에서 조사 지도원이 에디팅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각 보완 조사를 할 수 있고, 재검토를 통해 완성된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조사 내용을 별도로 입력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CAPI 시스템에 탑재된 기본적 로직을 통해 조사 및 입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제3절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1.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개선 사항

최초 원표본 7,072가구로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은 1~2차 패널 조사 수행 중 561가구(전년 대비 7.93%)의 원표본 가구가 탈락된 이래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6차 패널 조사 시 표본 유지율은 75.44%였다. 이로 인해 표본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논의되어 2012년에 1,800가구를 신규 표본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패널의 특성상 패널 노후화, 응답자 피로 증가 등으로 표본 탈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2019년도 이후 추가 표본의 필요성이 다시 검토되었다. 2020년도에 탈락된 표본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추가 표본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였다.

2022년도 한국복지패널 추가 표본은 1~16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마모되는 패널 표본의 통계 분석 유의성을 확보하고, 복지패널로부터 산출되는 통계의 신뢰성 보장 및 복지정책 대상자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적절히 분석하고자 17차 조사에서 신규 패널 2,012가구를 추가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가 18년간 지속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표본 탈락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표본 가구 유지와 관리를 위해 기존에 지속해 오던 조사 답례품, 명절 선물, 이사 선물 등의 감사 답례품 전달 및 조사 활용 결과에 대한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⁷⁾

2.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반기 중 18차 패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말부터 조사 사전 준비에 착수하여 2023년 2월 27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6월 20일까지 총 114일 동안 모든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18차 한국복지패널의 조사대상 표본 가구는 17개 시·도, 244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이와 같이 2023년에 완료된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2022년 17차 조사 완료 가구 기준으로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 규모는 7,865가구이다. 이 중 원표본은 3,664가구, 2~17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발생한 신규 가구는 888가구, 7차부터 추가 표본으로 들어간 가구는 1,301가구(2012년 추가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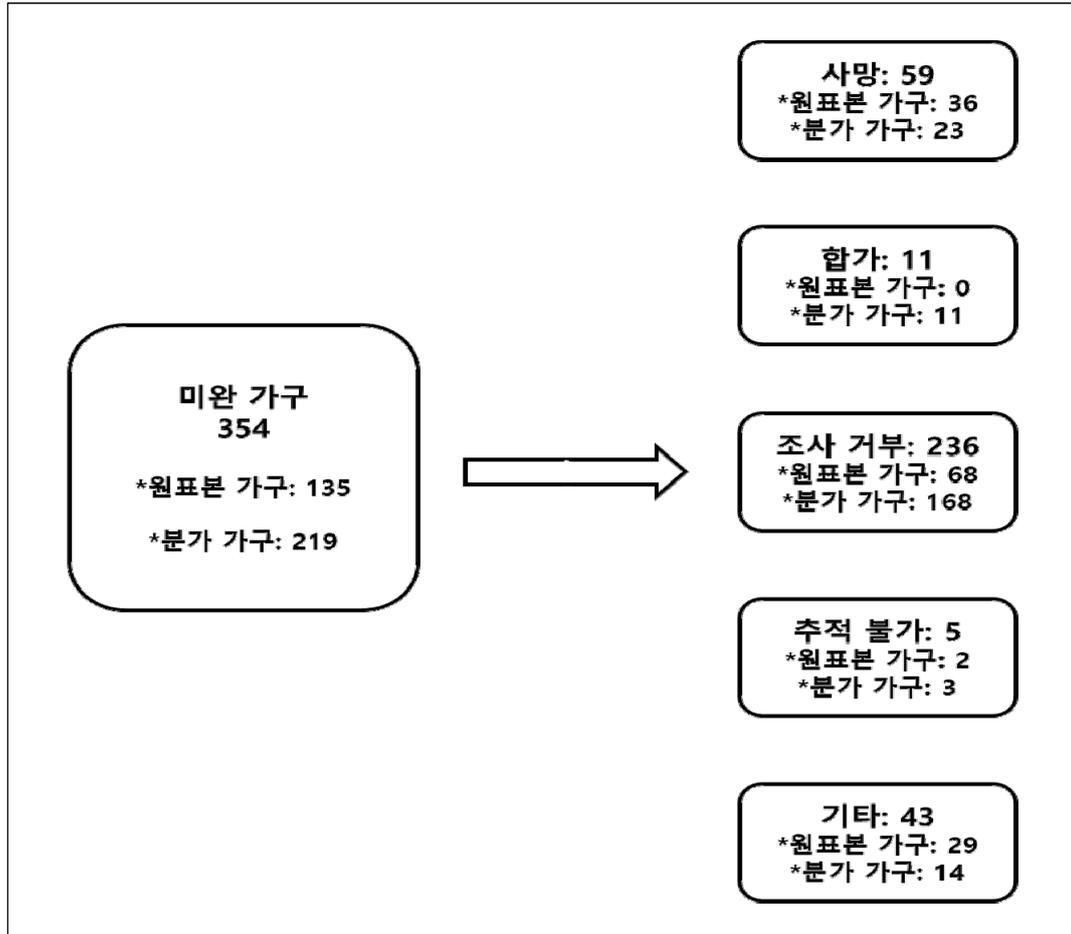
7) 실제로 수행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명절 패널 가구에 조사 협조 및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패널조사 10주년 기념 의미로 설 선물 및 추석 선물 단가를 일시 상향 조정하여 선물을 보냈다. 2) 패널 가구의 주소지 변동을 연구원에 알려주면 소정의 이사 선물을 수시로 보내며, 표본 유지와 관리 차원으로 분가 생성된 가구에도 선물을 발송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발간된 기초분석 연구보고서를 특별판으로 제작하여 패널 가구에 지급하고(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조사 일정이 지연되어 매년 방문하는 시기에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선 방역 세트를 구매하여 지급하였다(2015년). 최근에는 복지패널 자료가 활용된 연구를 인용한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리플릿을 패널 가구에 배포함으로써 가구의 응답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어떠한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지 알고하고자 하였다(2016년). 또 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 답례품의 단가 인상과 조사원 수당 인상을 검토하였고, 외부 자문 회의로 조사원 수당 인상의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당을 인상하였다(2016년). 조사 사례비 비용을 2배 인상하여 난이도 있는 조사 응답에 대한 사례비를 현실화하였으며(2022), 태풍(헌남노)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패널 가구에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여 복지패널 가구 유지에 힘썼다(2022).

원표본: 1,188가구, 8~17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발생한 신규 가구: 113가구, 17차 부터 추가 표본으로 들어간 가구는 2,012가구(2022년 추가 패널)이다. 18차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143가구이다. 이를 포함한 18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대상 가구는 8,008가구이다.

다음으로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 가구를 살펴보면, 17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대상 원표본 3,664가구 중 탈락된 원표본 135가구를 제외한 3,529가구에 대해 18차 패널 조사가 완료됐는데,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이 96.3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최초 원표본 7,072가구 기준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49.90%이며 전년도 (51.81%)와 비교한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폭은 1.91%p이다. 마지막으로 18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54가구로, 이 가운데 원표본 가구가 135가구, 분가 가구가 219가구이다.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조사 거부가 236가구(원표본 68, 분가 168)로 가장 큰 비중(66.67%)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연적인 탈락으로 볼 수 있는 사망 가구가 16.67%(59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기타는 12.15%(43가구)로 분석되었고, 합가 가구도 11가구(원표본 0, 분가 11)인 3.11%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인한 추적 불가 가구가 5가구(원표본 2, 분가 3)였다([그림 1-3-1] 참조).

[그림 1-3-1]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주: 합가의 경우 A가구에 B가구가 합가하여 B가구가 탈락됨(단 A가구에 B가구의 가구원이 포함되어 조사됨).

이상에서 살펴본 2023년 18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8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추이는 <표 1-3-1>과 같다.

〈표 1-3-1〉 2023년 18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8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조사 완료
기준 패널	원표본 가구 수	7,072	6,511	6,128	5,935	5,675	5,335	5,271	5,104	4,896	4,760	4,560 (13) ^가	4,398 (11) ^가	4,266 (10) ^가	4,124 (15) ^가	3,865	3,816 (5) ^가	3,664 (5) ^가	3,529
	원표본 유지율	100.00%	92.07%	86.65%	83.92%	80.25%	75.44%	74.53%	72.17%	69.23%	67.31%	64.48%	62.19%	60.32%	58.31%	54.65%	53.96%	51.81%	49.90%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 가구	-	561	383	193	260	340	64	167	208	136	200	162	132	142	259	49	152	135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	5.42%	2.73%	3.67%	4.81%	0.91%	2.36%	2.94%	1.92%	2.83%	2.29%	1.87%	2.01%	3.66%	0.69%	2.15%	1.91%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	5.88%	3.15%	4.38%	5.99%	1.21%	3.17%	4.08%	2.78%	4.20%	3.55%	3.00%	3.33%	6.28%	1.27%	3.98%	3.68%
	기준 분가 가구 (2차~전년도)	-	-	60	167	249	328	383	433	481	517	556	596	662	703 (1) ^가	713 (1) ^가	761 (9) ^가	785 (2) ^가	848
	추가 분가 가구 (당해 연도)	-	69	126	105	110	72	78	82	61	66	73	87	69	65	76	77	103	79
	전체 분가 가구	-	69	186	272	359	400	461	515	542	583	629	683	731	768	789	838	888	927
	전체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5,438	5,343	5,189	5,081	4,997	4,892	4,654	4,654	4,552	4,456
	원표본 가구 수	-	-	-	-	-	-	1,800	1,690	1,594	1,534	1,478	1,426 (1) ^가	1,392 (2) ^가	1,343 (3) ^가	1,281	1,239 (6) ^가	1,188 (4) ^가	1,159
	기준 분가 가구	-	-	-	-	-	-	-	-	-	3	13	34	55	70	78	85	84(2) ^가	109
	추가 분가 가구	-	-	-	-	-	-	-	-	3	16	21	22	19	15	18	9	19	13
	전체 분가 가구	-	-	-	-	-	-	-	-	3	16	37	56	74	85	96	103	113	122
	전체	-	-	-	-	-	-	1,800	1,693	1,610	1,571	1,534	1,500	1,477	1,439	1,375	1,342	1,301	1,281

(단위: 가구, %, %p)

18차 조사대상 총 조사대상 8,008가구
 18차 분가 가구 포함 총 조사대상 8,008가구
 17차 조사 완료 기준 조사대상 7,865가구 (기준 4,552가구)
 (7차 신규^가 1,301가구)
 (17차 신규^가 2,012가구)
 18차 분가 가구 조사대상 143가구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조사 완료	
	2022년 추가 패널	-	-	-	-	-	-	-	-	-	-	-	-	-	-	-	-	2,012	1,908
원표본 가구 수	-	-	-	-	-	-	-	-	-	-	-	-	-	-	-	-	-	-	-
기존 분가 가구	-	-	-	-	-	-	-	-	-	-	-	-	-	-	-	-	-	-	-
추가 분가 가구	-	-	-	-	-	-	-	-	-	-	-	-	-	-	-	-	-	-	9
전체 분가 가구	-	-	-	-	-	-	-	-	-	-	-	-	-	-	-	-	-	-	9
전체	-	-	-	-	-	-	-	-	-	-	-	-	-	-	-	-	2,012	1,917	
조사 완료 총 표본 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7,312	7,048	6,914	6,723	6,581	6,474	6,331	6,029	5,996	7,865	7,654	

주: 1) 8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2) 9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3) 10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4) 11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5) 15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사 거부 가구를 복원함.
 6) 추가는 2012년 추가 패널을 의미함. 7) 추가는 2022년 추가 패널을 의미함.



제2장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규모

제2절 18차 조사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제2장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규모⁸⁾

1. 조사 개요

한국복지패널(KOWEPS) 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 등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이들의 규모와 상태 변화를 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소득집단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표 2-1-1〉 KOWEPS 표본의 개요

조사명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90%)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2021년 표본조사
조사구	23만여 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 수	1,400만여 가구	3만 가구	7,000가구
추출 방법	-	2단계 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소득층의 복지 수요 및 욕구를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2006년도에 조사 대상 가구로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패널 표본 가구를 구축하였다.

2006년도의 패널 구축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소득집단에 따라 패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본 대상 가구의 소득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

8) 복지패널 조사의 표본 특성과 가중치 조정에 대한 내용은 정은희 외(2022).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18차 가중치 조정 결과를 포함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

조사 90% 자료'에서 확률 비례 추출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최종 조사 완료 가구인 2만 4,711가구의 소득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두 층에서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최종 패널 가구로 구축된 표본 가구는 7,072가구였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구는 향후 패널 탈락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과대 표집하였다.

2011년 6차 조사 이후에는 원표본 탈락에 따른 표본 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7차 패널 조사에서 신규 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때 신규 표본 가구 추가 시 필요한 구체적인 표본 추출 및 조사 수행 방안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고 신규 표본 가구 1,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2020년 15차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원표본 탈락에 따른 표본 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에 신규 표본 가구 추가 시 필요한 구체적인 표본 추출 및 조사 수행 방안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고, 2021년 하반기에 7,000가구 표본을 구축했으며, 2022년 17차 패널조사에서 신규 표본 가구 2,01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2. 표본 규모

가. 패널 원표본 가구 구축 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 필요한 표본 가구 약 3만 가구를 조사하기 위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인 23만여 개의 조사구 중 517개를 지역별 조사구의 규모에 따라 층화 확률 비례 추출하였다.

전체 517개 표본 조사구 중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487개 조사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섬을 제외한 전국의 각 시·도이며, 제주도를 포함한다.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2만 4,711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7,000가구를 2단계 표본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7,072가구를 패널로 구축하였다.

1단계 표집 자료인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가구의 대표

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인 일반 가구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였다.

〈표 2-1-2〉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분류 기준

(단위: 가구, %)

중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가구 수	백분율	가구 수	백분율	가구 수	백분율
< 40%	2,481	10.00	2,489	10.09	3,477	13.96
< 50%	4,016	16.12	3,880	15.62	4,757	19.04
< 60%	5,227	22.56	5,473	22.25	6,128	24.76

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2개의 층에서 지역별, 조사구별로 확률 비례 계통 추출에 따라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 가구와 동일한 수준인 3,500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였다.

KOWEPS의 1차 조사에서 구축된 패널 가구를 소득 기준별로 살펴보면 〈표 2-1-3〉과 같다.

패널로 구축된 표본 가구를 당초 층별로 3,500가구씩 배분하였으나 조사 거절, 패널 참여 거부 등의 사유로 저소득층에서는 표본 설계 당시의 3,500가구를 약간 밑도는 규모인 3,283가구가 패널로 구축되었다.

일반 가구는 평균적으로 100% 이상의 완료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약 94%의 완료율을 보여 저소득층 가구의 조사 거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 가구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목표 오차는 약 2.7~11.1%로 지역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가구의 탈락률을 최소화하는 것은 종단면 조사인 패널 조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패널 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패널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 대상 가구의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차 조사 당시 패널 가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거부율과 비협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표본 가구를 선정하였다.

이때 조사구별 표본 가구는 계통 추출을 하여 선정하였으며, 만일 조사 대상 표본 가구가 조사를 거절할 경우 순서상 다음 가구를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하였다.

〈표 2-1-3〉 KOWEPS 1차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 분포 현황

(단위: 가구)

지역	조사구 수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합계	
	표본 조사구 수	완료 조사구	표본 배분 가구 수	완료 가구 수	표본 배분 가구 수	완료 가구 수	표본 배분 가구 수	완료 가구 수
서울	93	93	811	886	506	449	1,317	1,335
부산	33	33	254	277	272	251	526	528
대구	25	25	187	204	227	218	414	422
인천	28	28	228	247	193	190	421	437
광주	15	15	114	123	130	121	244	244
대전	14	14	118	132	89	76	207	208
울산	14	14	120	124	82	79	202	203
경기	76	76	644	706	471	426	1,115	1,130
강원	14	14	102	118	131	118	233	236
충북	14	14	108	113	113	107	221	221
충남	20	20	153	161	168	160	321	321
전북	20	20	138	140	209	207	347	347
전남	19	19	104	109	273	268	377	377
경북	26	26	152	164	339	329	491	494
경남	30	30	229	240	254	248	483	488
제주	5	5	38	45	43	36	81	81
합계	446	446	3,500	3,789	3,500	3,283	7,000	7,072

나. 2012년 추가 패널 가구 구축 과정

한국복지패널의 6차 연도 조사 이후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표본 가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저소득층 가구 및 가구원의 분포가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역별 표본의 규모에는 잦은 이주와 탈락 등의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 따라서 7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패널 표본 규모를 유지하고자 약 1,800가구를 추가하여 신규 패널을 구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표본을 직접 추출하지 않고,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에서 이중 추출(double sampling) 방식으로 7,072

가구를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신규 표본 추가를 위한 표본 추출 방법도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을 고려하였다.

1차 조사 당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패널로 구축하여 6차 까지 조사를 수행하였고, 1차 조사의 1단계 표본은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로 2만 4,000여 가구의 대규모 표본에서 2단계로 추출한 표본이기 때문에 패널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저소득 및 일반 가구 표본을 기존 패널의 특성별 응답률(또는 탈락률), 패널의 유지 기간 동안의 예상 응답률, 전통적인 표본 규모 산출방법을 고려하여 1단계 표본규모를 7,000가구로 결정하였다. 표본배분은 1단계로 시도별 동부와 읍면부별로 유지율 또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표본가구를 배분하였고, 2단계에서는 모집단의 거처 유형별(일반, 아파트)로 비례 배분하였으며, 원표본과 신규 패널 전체의 탈락률을 표본비율로 고려한 표본배분을 모집단의 거처 유형별에 따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 경우 활용 가능한 표본은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1만 5,000여 가구 자료)’를 통한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 및 일반 가구를 1단계 표본으로 파악하였기에 동일한 속성의 패널 자료 구축이 용이하며, 현재 패널 가구의 가중치 조정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도 1차 조사와 동일하게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였다. 지역별 표본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 가구를 배분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1-4〉는 7차 조사 당시 신규 패널의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를 나타낸다.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에서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여 지역별 가구 분포에 따라 1,800가구를 비례 배분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표본 가구가 가장 많이 배분된 지역이며,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표 2-1-4〉 KOWEPS 7차 조사 신규 패널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단위: 가구)

지역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표본			표본 배분		
	일반	저소득	계	일반	저소득	계
전국	10,745	4,298	15,043	900	900	1,800
서울	1,494	343	1,837	125	72	197
부산	821	330	1,151	69	69	138
대구	616	313	929	52	66	118
인천	706	243	949	59	51	110
광주	504	200	704	42	42	84
대전	535	172	707	45	36	81
울산	457	142	599	38	30	68
경기	1,510	342	1,852	126	72	198
강원	443	286	729	37	60	97
충북	490	235	725	41	49	90
충남	482	344	826	40	72	112
전북	524	278	802	44	58	102
전남	501	300	801	42	63	105
경북	600	351	951	50	73	123
경남	751	303	1,054	63	63	126
제주	311	116	427	27	24	51

다. 2022년 추가 패널 가구 구축 과정

2022년도 한국복지패널 추가 표본은 1~16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마모되는 패널 표본의 통계분석 유의성을 확보하고, 복지패널로부터 산출되는 통계의 신뢰성 보장 및 복지정책 대상자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적절히 분석하고자 17차 조사에서 기존 패널에 대한 신규 패널 가구를 추가하였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패널 가구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일반소득층으로 구분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있어서 사전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중 추출 방법으로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조사가 필요하다. 즉, 1단계에서는 2020년 통계청 조사구 리스트를 사용하여 2021년도에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가구로부터 소득을 파악한 후 2022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소득을 기반으로 패널 가구를 선정하여 최종 패널 가구를 구축하는 과정을 따랐다.

한국복지패널의 2022년 신규 패널 추가를 위한 표본규모 산정은 기본적으로 기존 패널의 특성별 응답률(또는 탈락률), 패널의 유지 기간 동안의 예상 응답률, 전통적인 표본 규모 산출방법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2022년 신규 패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2022년 신규 패널의 특성과 패널 유지율을 고려하여 표본 규모를 결정하였다.

〈표 2-1-5〉는 17차 조사 당시 신규 패널의 소득유형별 지역 표본 배분 결과를 나타낸다. 17개 시도 및 동부와 읍면부 별로 표본 규모에 따라 2,000가구를 1단계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배분하고 2단계에서는 지역별로 비례 배분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표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된 지역이며,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표 2-1-5〉 KOWEPS 17차 조사 신규 패널 가구의 소득 유형별 지역 배분 결과

(단위: 가구)

구분	저소득					일반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200	355	345	100	1,000	200	355	345	100	1,000
서울	21	28	-	-	49	41	38	-	-	79
부산	24	33	4	9	70	15	23	5	10	53
대구	19	40	5	12	76	9	18	4	9	40
인천	13	26	17	2	58	18	23	22	4	67
광주	3	26	-	-	29	9	17	-	-	26
대전	18	17	-	-	35	7	23	-	-	30
울산	4	13	10	5	32	9	19	9	9	46
세종	-	11	11	16	38	-	15	13	2	30
경기	16	31	27	12	86	21	45	42	10	118
강원	17	20	28	5	70	5	15	25	5	50
충북	10	14	22	5	51	7	18	27	8	60
충남	3	10	27	13	53	7	18	46	10	81
전북	11	28	33	5	77	8	17	35	3	63
전남	12	15	53	2	82	5	17	28	6	56
경북	10	12	51	6	79	13	22	30	9	74
경남	10	27	43	8	88	10	20	24	10	64
제주	9	4	14	0	27	16	7	35	5	63

제2절 18차 조사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1. 18차 조사 표본 특성

KOWEPS 18차 조사(2023년)에서는 먼저 17차 조사(2022년) 때 조사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17차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을 파악하면 <표 2-2-1>과 같다. 18차 조사에서 1차 조사 표본인 원표본의 유지율은 가구의 경우 49.9%, 가구원은 50.25%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1.91%p 떨어졌으며, 가구원은 1.97%p 떨어져 원표본 패널의 18차 조사 탈락률이 17차 조사에 비해 높지 않았다([그림 2-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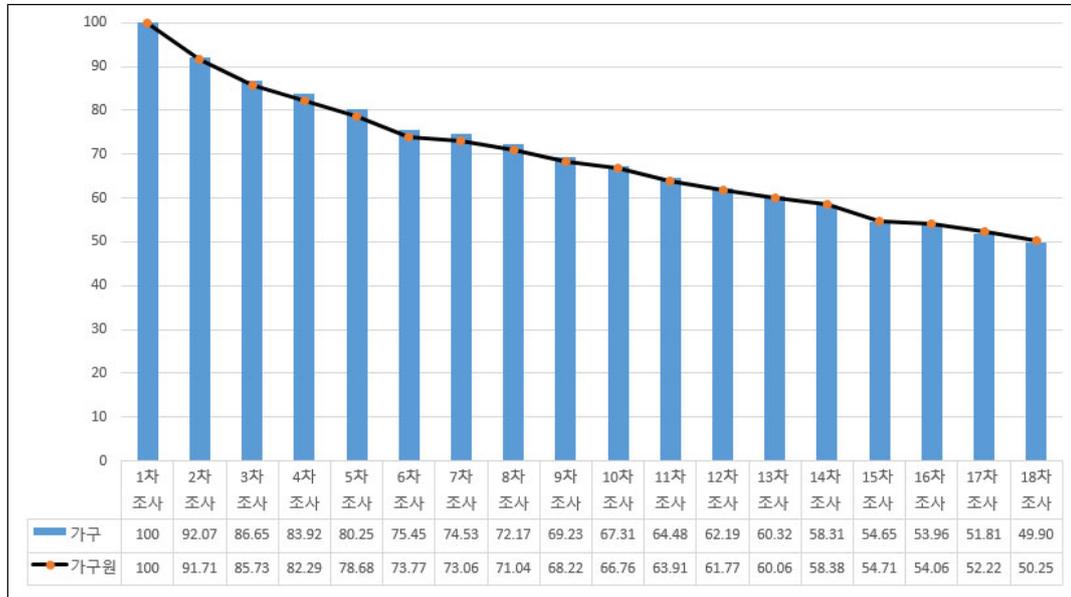
<표 2-2-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	가구		가구원	
	표본 수	유지율	표본 수	유지율
1차 조사(2006)	7,072	100.00	14,463	100.00
2차 조사(2007)	6,511	92.07	13,264	91.71
3차 조사(2008)	6,128	86.65	12,399	85.73
4차 조사(2009)	5,935	83.92	11,902	82.29
5차 조사(2010)	5,675	80.25	11,379	78.68
6차 조사(2011)	5,336	75.45	10,670	73.77
7차 조사(2012)	5,271	74.53	10,566	73.06
8차 조사(2013)	5,104	72.17	10,274	71.04
9차 조사(2014)	4,896	69.23	9,867	68.22
10차 조사(2015)	4,760	67.31	9,656	66.76
11차 조사(2016)	4,560	64.48	9,244	63.91
12차 조사(2017)	4,398	62.19	8,934	61.77
13차 조사(2018)	4,266	60.32	8,686	60.06
14차 조사(2019)	4,124	58.31	8,444	58.38
15차 조사(2020)	3,865	54.65	7,913	54.71
16차 조사(2021)	3,816	53.96	7,819	54.06
17차 조사(2022)	3,664	51.81	7,552	52.22
18차 조사(2023)	3,529	49.90	7,268	50.25

[그림 2-2-1] 1~18차 조사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 추이

(단위: %)



KOWEPS 18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가구 외에 2012년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표본 1,800가구와 2022년 신규 추가표본 2,011가구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였는데,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과 202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을 살펴보면 <표 2-2-2>와 같다. 신규 표본 가구 유지율은 64.39%이고 가구원 유지율은 60.06%로 11차 조사의 원표본 유지율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2-2〉 2012년 추가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	가구		가구원	
	표본 수	유지율	표본 수	유지율
1차 조사(2012)	1,800	100.00	3,375	100.00
2차 조사(2013)	1,690	93.89	3,146	93.21
3차 조사(2014)	1,594	88.56	2,932	86.87
4차 조사(2015)	1,534	85.22	2,791	82.70
5차 조사(2016)	1,478	82.11	2,681	79.44
6차 조사(2017)	1,426	79.22	2,566	76.03
7차 조사(2018)	1,392	77.33	2,482	73.54
8차 조사(2019)	1,343	74.61	2,390	70.81
9차 조사(2020)	1,281	71.17	2,265	67.11
10차 조사(2021)	1,239	68.83	2,162	64.06
11차 조사(2022)	1,188	66.00	2,080	61.63
12차 조사(2023)	1,159	64.39	2,027	60.06

〔그림 2-2-2〕 2012년 추가 표본의 1~12차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 추이

(단위: %)



다음으로 202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을 살펴보면 <표 2-2-3>과 같다. 2022년 신규 표본 가구 유지율은 94.88%이고 가구원 유지율은 94.04%로 나타났다.

<표 2-2-3> 2022년 추가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	가구		가구원	
	표본 수	유지율	표본 수	유지율
1차 조사(2022)	2,011	100.00	3,525	100.00
2차 조사(2023)	1,908	94.88	3,315	94.04

한편 1차 조사 대비 18차 조사에서의 조사 완료 패널 가구 및 가구원 수를 원표본, 신규 표본(7차 및 17차), 신규(18차 조사에 새롭게 진입한 가구 또는 가구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4> 1차 조사 대비 18차 조사에서의 조사 완료 패널 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

구분	가구		가구원	
	표본 수	분율	표본 수	분율
원표본	3,529	49.90	7,268	50.25
2012년 추가표본	1,159	16.39	2,027	0.01
신규표본	112	1.58	146	1.01
2022년 추가표본	1,908	26.98	3,315	22.92
신규표본	9	0.13	16	0.11
계	6,717	94.97	10,747	74.24

<표 2-2-5>의 1차 조사 대비 18차 조사의 원표본 패널 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50.1%의 탈락률을, 가구원의 경우 49.75%의 탈락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2-2-5〉 18차 조사의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구			가구원		
	1차 조사	18차 조사	탈락률	1차 조사	18차 조사	탈락률
전국	7,072	3,529	50.10	14,463	7,268	49.75
서울	1,335	491	63.22	2,847	1,109	61.05
부산	528	242	54.17	1,090	500	54.13
대구	422	210	50.24	873	429	50.86
인천	437	216	50.57	914	441	51.75
광주	244	133	45.49	519	290	44.12
대전	208	94	54.81	435	203	53.33
울산	203	91	55.17	424	191	54.95
경기	1,130	561	50.35	2,324	1,323	43.07
강원	236	127	46.19	465	244	47.53
충북	221	135	38.91	457	277	39.39
충남	321	211	34.27	662	413	37.61
전북	347	191	44.96	655	344	47.48
전남	377	229	39.26	709	433	38.93
경북	494	276	44.13	942	454	51.80
경남	488	276	43.44	975	522	46.46
제주	81	46	43.21	172	95	44.77

주: 충남지역은 충남과 세종을 합산한 결과임.

지역별 가구 탈락률은 서울 지역이 6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울산이 55.17%로 두 번째로 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 지역의 탈락률이 34.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원 탈락률은 서울이 61.05%로 가장 높고, 울산이 54.9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원 탈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37.61%이다.

〈표 2-2-6〉 18차 조사의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구			가구원		
	1차 조사 (2012)	12차 조사 (2023)	탈락률	1차 조사 (2012)	12차 조사 (2023)	탈락률
전국	1,800	1,159	35.61	3,375	2,027	39.94
서울	194	97	50.00	397	187	52.90
부산	133	89	33.08	239	162	32.22
대구	126	79	37.30	223	132	40.81
인천	109	68	37.61	199	121	39.20
광주	87	60	31.03	159	116	27.04
대전	89	55	38.20	166	93	43.98
울산	77	46	40.26	164	87	46.95
경기	180	117	35.00	370	231	37.57
강원	95	67	29.47	174	109	37.36
충북	90	57	36.67	176	97	44.89
충남	106	82	22.64	196	137	30.10
전북	104	70	32.69	190	120	36.84
전남	102	66	35.29	178	104	41.57
경북	130	85	34.62	229	127	44.54
경남	127	82	35.43	218	127	41.74
제주	51	39	23.53	97	77	20.62

주: 충남지역은 충남과 세종을 합하여 산출한 결과임.

〈표 2-2-6〉에서 1차 조사 대비 12차 조사의 2012년 추가 표본 패널 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35.61%의 탈락률을, 가구원의 경우 39.94%의 탈락률을 보였다. 지역별 가구 탈락률은 서울 지역이 50%로 가장 높으며, 울산이 40.2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 지역의 탈락률은 2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원 탈락률은 서울이 52.9%로 가장 높고, 울산 지역이 46.9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22년 추가 표본 패널의 2023년 조사에서의 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5.17%의 탈락률을, 가구원의 경우 5.96%의 탈락률을 보였다. 지역별 가구 및 가구원 탈락률을 살펴보면, 탈락률이 100% 이상인 경우는 기존의 가구 및 가구원 수보다 2차 조사에서 증가됨으로써 패널 규모가 증가한 경우이며, 가구의 경우 대전이 기존의 패널 가구에 비해 2가구가 증가되어 102.94%로

나타났고, 가구원의 경우 충남이 171.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구는 대구가 0.85%로 탈락률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울산이 2.56%로 나타난 반면, 가구 탈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0.24%였고, 그다음은 경기 8.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은 서울이 48.36%로 가장 많이 탈락하였고, 다음으로 광주가 45.28%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제주는 161.86%로 가구원이 증가하였다.

〈표 2-2-7〉 18차 조사의 202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구			가구원		
	1차 조사 (2022)	2차 조사 (2023)	탈락률	1차 조사 (2022)	2차 조사 (2023)	탈락률
전국	2,011	1,908	5.17	3,525	3,315	5.96
서울	127	115	10.24	397	205	48.36
부산	123	119	3.25	239	196	17.99
대구	117	116	0.85	223	189	15.25
인천	123	117	4.88	199	199	0.00
광주	57	54	5.26	159	87	45.28
대전	68	70	102.94	166	134	19.28
울산	78	76	2.56	164	137	16.46
경기	205	188	8.29	370	335	9.46
강원	119	112	5.88	174	204	117.24
충북	112	106	5.36	176	194	110.23
충남	202	188	6.93	196	337	171.94
전북	142	137	3.52	190	217	114.21
전남	139	135	2.88	178	229	128.65
경북	152	142	6.58	229	262	114.41
경남	157	146	7.01	218	233	106.88
제주	90	87	3.33	97	157	161.86

주: 충남지역은 충남과 세종을 합하여 산출한 결과임.

2. 가중치 조정 과정

KOWEPS의 18차 조사 가중치 산정은 2006년 원패널, 2012년 추가, 2022년 추가 패널에 대해 개인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구 가중치와 개인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전체적인 KOWEPS 가중치 부여 체계는 [그림 2-2-3]과 같다. 가구 가중치는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의 변동으로 가구의 개념이 1차 조사 때의 정의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2차 조사 이후의 가중치는 개인 가중치를 중심으로 산정한다. 또한 가구는 개인과 달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단면과 횡단면의 구분이 모호해져 이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구 가중치는 개인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림 2-2-3] KOWEPS의 가중치 부여 체계



한국복지패널 2012년 신규 패널의 경우 기존의 1~6차 조사에서 구축된 패널 표본과 7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신규 표본 패널을 병합하여 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 먼저 7차 조사에서의 가중치 조정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이후 18차 조사까지 구축된 기존의 패널 표본은 17차 조사의 응답률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응답 확률을 추정하고, 17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에 기초하여 18차 조사에서 조사된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2012년 7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패널은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의 최종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하였으며, 1,800가구에 대한 추출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설계 가중치를 조정하였으며, 이후 18차 조사까지 응답한 개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종단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신규로 구축한 패널에 대해 2023년 종단가중치는 2022년 횡단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하여 2023년 응답에 대해 로지스틱 모형으로 응답확률을 추정한 후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가. 개인 종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18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17차 조사의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무응답 보정과 개인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한 뒤 사후 조정으로 계산된다.

18차 조사의 종단면 기본 가중치는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한다. 18차 조사의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 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조정 과정은 먼저 18차 조사의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와 17차 조사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응답 확률을 추정하였다. 로지스틱 모형의 설명 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변수를 사용하였고, 18차 조사까지의 계속 응답 여부 변수는 17차 조사부터 18차 조사까지 응답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더미화하여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18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된 응답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하며, 17차 조사의 기본 가중치를 $w_{\text{기본}17\text{차}}$,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예측된 예측 응답 확률을 $\hat{p}_{18\text{차}}$ 라고 하면 무응답 보정으로 얻어지는 가중치는

$$w_{18\text{차}} = w_{17\text{차종단}} \times \hat{p}_{18\text{차}}^{-1}$$

로 표현된다.

그리고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18차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 뒤,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에 따라 2022년 인구 추계값을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하였다.

한편 응답자 인에 대해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게 되며, 복지패널의 응답자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의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에 대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6년 1차 조사 패널 가구원 중 군 입대 및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원은 가구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받고, 결혼 등의 사유로 원패널 가구에 진입한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또한 2023년 18차 조사에서 원패널 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원의 경우 원래의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받지만, 분가한 후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로 진입한 신규 가구의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2022년 17차 조사에서 탈락했던 가구원이 2023년 18차 조사에 재진입한 경우에는 지역별 평균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가중치분석을 통해 지나치게 큰 가중치 값들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을 줄이고자 18차 조사에서는 사후 조정 후 극단 가중치 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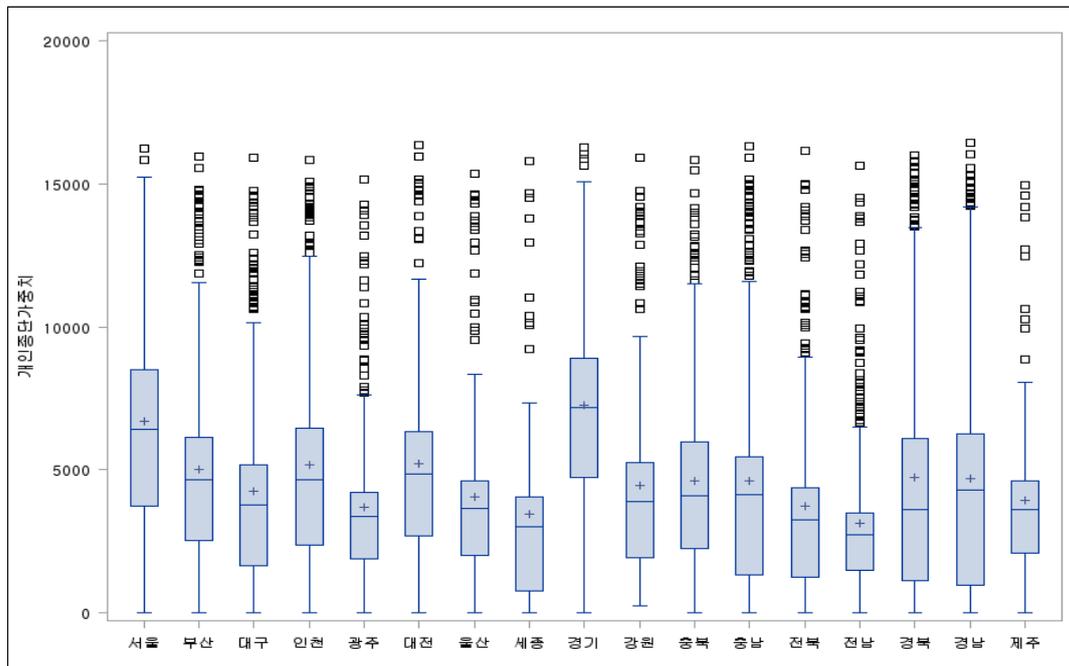
레이킹 조정방법을 통한 사후 조정 후 극단가중치(상위 5%)를 절단하고, 이를 가중치 평균으로 대체한 후 재조정하여 최종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표 2-2-8〉 원패널(2006)에 대한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9,775	5,281.6	38.6	4,571.1	2,358.3	7,286.3	0.7
서울	1,404	6,703.5	102.3	6,436.6	3,745.5	8,493.7	1.5
부산	657	5,021.8	129.7	4,653.0	2,550.2	6,155.5	2.6
대구	555	4,258.5	139.8	3,773.2	1,666.4	5,178.0	3.3
인천	574	5,158.0	155.6	4,665.6	2,381.3	6,446.5	3.0
광주	398	3,677.0	132.4	3,376.0	1,896.8	4,217.6	3.6
대전	282	5,218.5	210.7	4,843.8	2,680.0	6,329.6	4.0
울산	275	4,046.6	181.1	3,654.2	2,006.7	4,603.2	4.5
세종	111	3,448.1	321.2	3,004.1	757.2	4,062.7	9.3
경기	1,882	7,269.6	86.7	7,194.9	4,747.9	8,920.4	1.2
강원	343	4,448.4	181.2	3,909.3	1,912.5	5,240.2	4.1
충북	353	4,627.8	176.7	4,089.5	2,258.4	5,976.1	3.8
충남	471	4,628.5	176.9	4,146.6	1,317.8	5,476.2	3.8
전북	479	3,716.5	145.8	3,262.4	1,246.0	4,372.5	3.9
전남	566	3,124.4	103.7	2,727.3	1,472.0	3,504.7	3.3
경북	553	4,752.2	185.7	3,604.0	1,141.0	6,090.4	3.9
경남	701	4,692.1	151.0	4,295.6	972.7	6,262.5	3.2
제주	171	3,951.6	223.3	3,624.2	2,073.3	4,619.0	5.7

〈그림 2-2-4〉 원패널(2006)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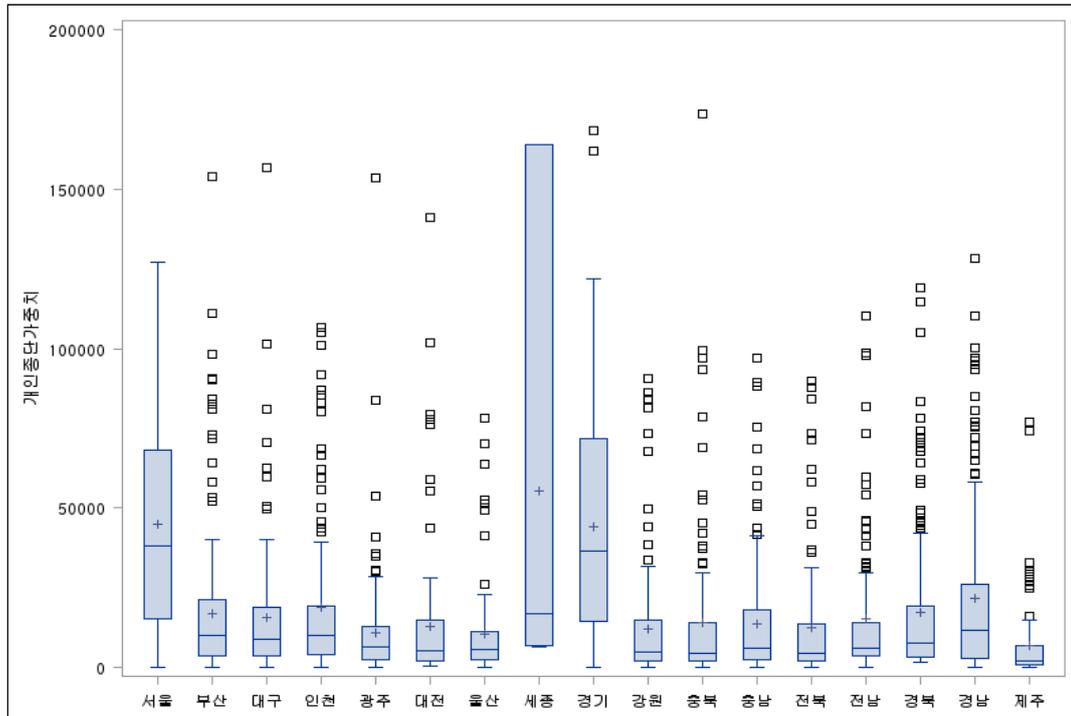


〈표 2-2-9〉 1차 추가 패널(2012)에 대한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2,456	21,021.2	556.5	9,898.1	3,204.8	25,559	2.4
서울	209	44,927.3	2,241.4	38,146.3	15,200.0	68,236.7	5.0
부산	195	17,014.3	1,650.2	9,861.8	3,485.7	21,437.7	9.7
대구	149	15,876.5	1,705.1	8,939.5	3,647.5	18,820.8	10.7
인천	158	18,710.1	1,895.3	10,036.1	4,132.9	19,398.6	10.1
광주	136	10,746.5	1,428.2	6,633.5	2,539.9	13,012.3	13.3
대전	117	12,680.2	1,918.3	5,414.9	2,158.6	14,956.5	15.1
울산	108	10,264.6	1,367.5	5,550.3	2,463.5	11,355.0	13.3
세종	7	55,321.3	28,198.2	16,743.2	6,678.3	164,218.4	51.0
경기	310	44,188.1	1,983.6	36,531.2	14,490.1	71,893.9	4.5
강원	125	12,170.7	1,634.2	4,710.3	2,155.5	14,740.8	13.4
충북	116	14,086.9	2,294.7	4,524.9	2,159.2	13,980.7	16.3
충남	161	13,504.2	1,448.0	6,200.9	2,524.5	18,114.4	10.7
전북	144	12,324.7	1,530.4	4,551.0	1,872.5	13,727.1	12.4
전남	117	15,132.8	1,971.4	5,915.2	3,676.3	14,137.8	13.0
경북	152	17,308.5	1,890.9	7,597.7	3,315.3	19,161.3	10.9
경남	152	21,567.2	2,190.5	11,799.3	3,012.7	26,064.9	10.2
제주	100	6,755.0	1,263.3	1,911.3	947.9	6,908.8	18.7

[그림 2-2-5] 1차 추가 패널(2012)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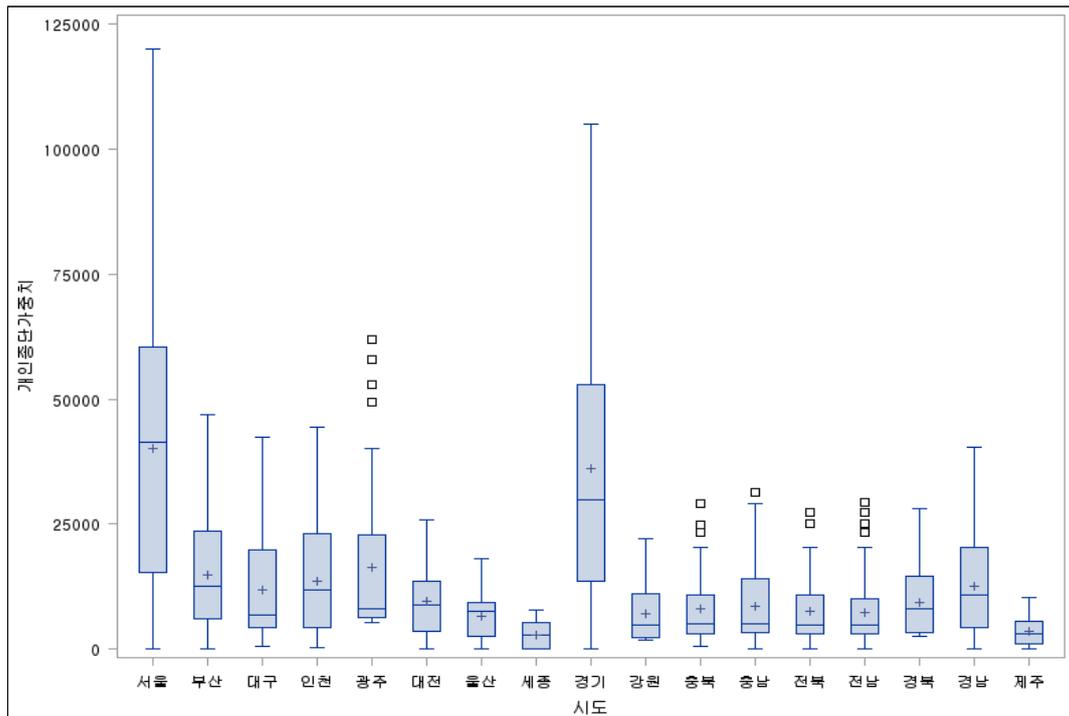


〈표 2-2-10〉 2차 추가 패널(2022)에 대한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3,700	13,953.5	274.2	7,804.0	3,781.4	17,108.8	1.5
서울	236	40,062.6	1,763.1	41,473.2	15,424.8	60,521.2	4.4
부산	221	14,863.9	728.7	12,460.1	6,008.6	23,575.7	4.9
대구	201	11,742.4	694.8	6,794.9	4,229.3	19,865.6	5.9
인천	220	13,508.8	736.5	11,818.1	4,215.9	23,007.9	5.5
광주	89	16,294.2	1,541.7	7,954.2	6,170.8	22,926.1	9.5
대전	153	9,620.4	535.7	8,894.7	3,546.2	13,526.6	5.6
울산	171	6,555.4	340.7	7,483.3	2,468.9	9,417.4	5.2
세종	135	2,848.4	219.3	2,829.4	72.5	5,204.4	7.7
경기	380	36,154.8	1,245.7	29,956.4	13,475.9	52,874.4	3.4
강원	216	6,972.8	372.7	4,825.2	2,353.6	11,079.9	5.3
충북	204	7,940.3	411.6	4,998.4	3,111.2	10,782.7	5.2
충남	251	8,662.4	454.4	5,007.8	3,341.3	13,994.1	5.2
전북	235	7,502.0	367.3	4,701.3	2,926.3	10,871.9	4.9
전남	244	7,182.0	393.2	4,690.6	2,919.5	10,118.6	5.5
경북	285	9,181.5	378.9	7,982.1	3,201.1	14,496.6	4.1
경남	263	12,453.6	576.5	10,717.8	4,298.2	20,279.1	4.6
제주	196	3,480.6	188.9	2,961.7	1,033.6	5,447.7	5.4

〔그림 2-2-6〕 2차 추가패널(2022)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나. 개인 횡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2023년 18차 조사의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18차 조사의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무응답 보정과 개인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된 뒤 17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고 2022년 인구 추계값을 적용하여 사후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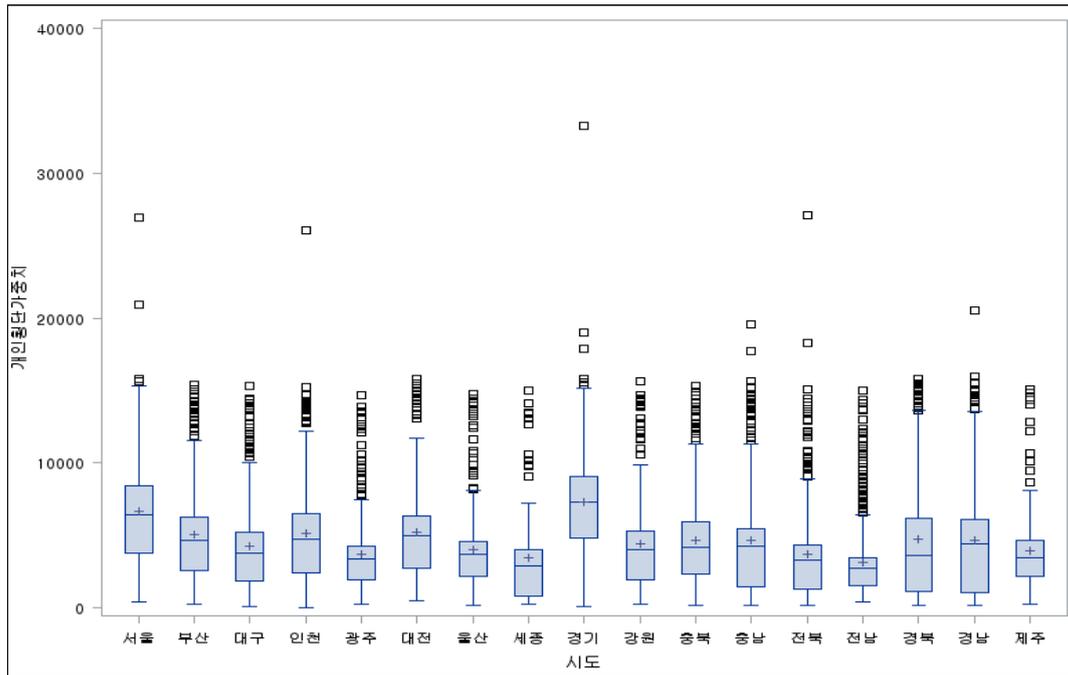
〈표 2-2-11〉에서 18차 조사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의 가중치 표준오차가 가장 작고 상대적으로 표본규모가 작은 세종 지역의 표준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대표준오차는 0.6이고, 세종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표준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2-2-11〉 원패널(2006)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9,775	5,281.6	35.8	4,939.4	2,532	7,305	0.6
서울	1,404	6,703.7	95.1	6,570.3	4,130.7	8,735.5	1.4
부산	657	5,021.6	127.4	4,791.4	2,523.2	6,352.9	2.5
대구	555	4,258.8	133.7	4,058.9	1,766.2	5,436.8	3.1
인천	574	5,157.7	138.7	5,317.1	2,631.7	6,753.1	2.7
광주	398	3,677.2	133.4	3,361.7	1,785.4	4,422.7	3.6
대전	282	5,218.5	186.2	5,532.0	2,885.1	6,620.1	3.6
울산	275	4,047.0	169.5	3,890.7	2,111.5	4,751.0	4.2
세종	111	3,448.6	313.2	3,096.0	752.0	4,123.5	9.1
경기	1,882	7,269.6	77.5	7,506.0	5,099.5	9,333.4	1.1
강원	343	4,448.1	162.0	4,564.3	2,095.1	5,639.5	3.6
충북	353	4,627.7	170.2	4,348.3	2,252.8	6,014.5	3.7
충남	471	4,628.4	160.4	4,865.6	1,511.3	5,892.7	3.5
전북	479	3,716.3	139.9	3,475.1	1,301.9	4,499.9	3.8
전남	566	3,124.4	100.5	2,854.4	1,428.8	3,690.4	3.2
경북	553	4,751.3	159.0	4,797.0	1,367.4	6,587.1	3.3
경남	701	4,692.3	136.9	5,035.2	1,104.4	6,386.9	2.9
제주	171	3,952.0	193.8	4,053.4	2,135.6	4,952.2	4.9

[그림 2-2-7] 원패널(2006)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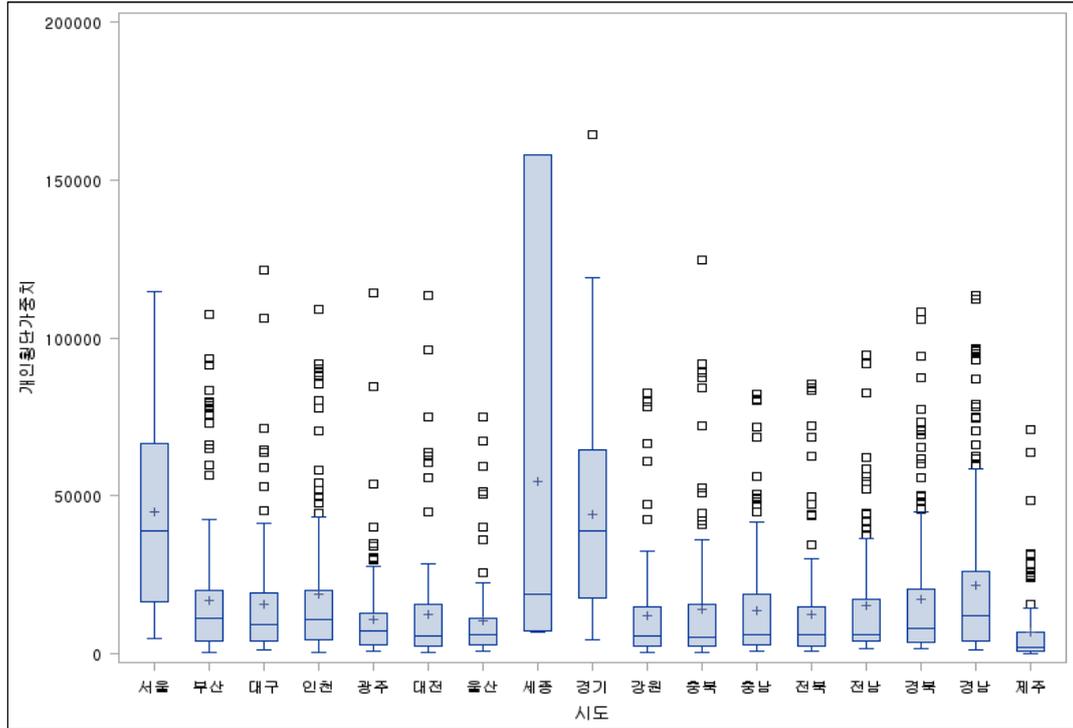


<표 2-2-12> 1차 추가 패널(2012)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2,456	21,021.2	537.2	11,686.1	3,301.5	24,492.3	2.3
서울	209	44,950.4	2,479.2	30,863.2	16,914.5	68,131.3	5.5
부산	195	16,969.4	1,536.8	10,504.5	3,316.1	22,114.8	9.1
대구	149	15,885.7	1,444.1	8,735.3	3,170.3	22,896.4	9.1
인천	158	18,758.4	1,665.5	12,795.3	4,815.1	21,904.4	8.9
광주	136	10,754.0	982.4	7,595.7	2,400.2	14,924.9	9.1
대전	117	12,711.2	1,877.3	5,547.6	2,181.4	15,525.5	14.8
울산	108	10,292.5	1,324.1	5,812.1	2,459.2	11,839.9	12.9
세종	7	54,461.5	10,512.2	57,598.6	25,824.7	85,202.0	19.3
경기	310	44,155.1	1,924.1	34,646.9	16,582.0	67,861.7	4.4
강원	125	12,206.2	1,685.3	5,125.0	2,038.0	13,532.8	13.8
충북	116	14,039.6	1,695.6	5,791.8	2,457.2	18,197.4	12.1
충남	161	13,495.4	1,470.3	5,554.0	2,211.5	17,947.4	10.9
전북	144	12,340.5	1,383.8	5,534.5	2,022.0	17,069.9	11.2
전남	117	15,172.2	2,031.2	4,973.0	3,137.3	18,557.8	13.4
경북	152	17,284.3	1,844.3	7,412.3	3,198.1	20,756.6	10.7
경남	152	21,584.9	2,029.1	13,757.1	3,916.8	26,553.4	9.4
제주	100	6,755.8	1,397.2	1,797.4	739.3	6,786.5	20.7

[그림 2-2-8] 1차 추가 패널(2012)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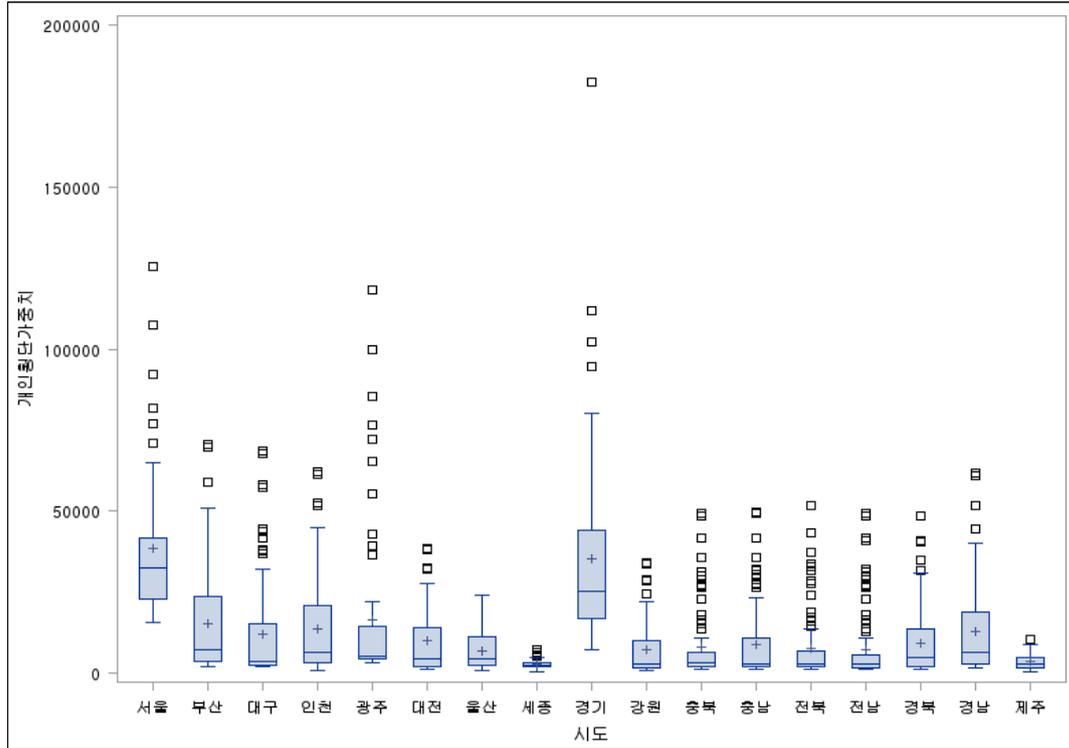


<표 2-2-13> 2차 추가 패널(2022)에 대한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3,700	13,953.5	302.1	5,044.7	2,503.8	20,147.0	1.8
서울	236	38,607.8	1,454.0	32,414.7	22,775.4	41,737.6	3.8
부산	221	15,296.2	1,131.1	7,222.5	3,841.5	23,500.3	7.4
대구	201	12,118.3	1,107.9	3,808.5	2,563.8	15,144.6	9.1
인천	220	13,781.4	1,015.2	6,361.4	3,440.0	20,698.7	7.4
광주	89	16,574.5	2,424.5	5,445.3	4,411.5	14,345.0	14.6
대전	153	9,964.5	871.3	4,261.8	2,090.2	13,989.0	8.7
울산	171	6,682.3	437.2	4,493.9	2,463.3	11,262.4	6.5
세종	135	2,844.8	119.1	2,503.8	1,906.4	3,201.5	4.2
경기	380	35,169.8	1,366.3	25,292.5	16,740.9	44,101.9	3.9
강원	216	7,259.9	622.5	2,867.4	1,506.7	10,063.3	8.6
충북	204	8,080.5	726.6	3,228.5	2,173.3	6,474.7	9.0
충남	251	8,929.4	740.4	2,755.1	2,195.4	10,799.5	8.3
전북	235	7,656.0	623.7	2,868.1	1,930.7	6,808.6	8.1
전남	244	7,353.5	692.2	2,724.2	1,833.8	5,713.2	9.4
경북	285	9,350.7	645.7	4,981.5	2,146.5	13,693.0	6.9
경남	263	12,839.9	920.5	6,335.3	2,729.9	19,051.5	7.2
제주	196	3,492.7	173.0	2,984.6	1,676.5	4,973.4	5.0

[그림 2-2-9] 2차 추가 패널(2022)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다. 가구 가중치 산출 과정

18차 조사의 가구 가중치는 가구의 패널 진입 차수에 따라 18차 조사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가구 내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18차 조사에서 새롭게 진입한 신규 가구는 신규 가구 내에 원표본(또는 신규 표본) 가구원들의 가중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원표본(또는 신규 표본) 가구원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이들의 평균으로 가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계산된 가구 가중치를 2022년 추계 가구 수에 따라 지역별로 가구규모와 가구원수를 적용하여 사후 조정하고, 극단값을 조정한 후,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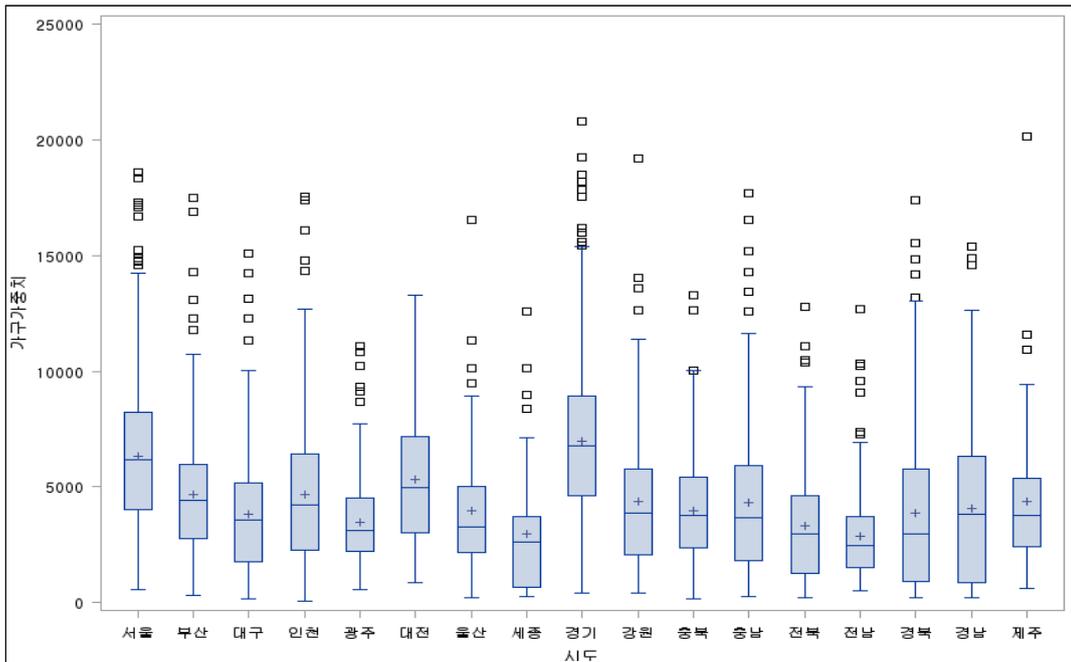
극단값 조정은 레이킹을 통한 사후 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하위 5%)을 중앙값으로 대체한 후 재조정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가구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2-2-14>와 같다.

<표 2-2-14> 원 패널(2006)에 대한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4,456	4,842.8	49.2	4,315.0	2,260.2	6,767.3	0.9
서울	640	6,323.3	128.0	6,163.6	4,020.0	8,242.7	2.0
부산	307	4,669.7	155.1	4,404.3	2,765.2	5,995.3	3.3
대구	264	3,790.8	158.7	3,560.8	1,747.4	5,163.8	4.2
인천	257	4,655.6	202.3	4,207.5	2,257.2	6,437.7	4.3
광주	178	3,477.8	146.2	3,126.1	2,206.8	4,531.9	4.2
대전	121	5,335.5	270.5	4,973.1	3,019.9	7,166.2	5.1
울산	114	3,967.9	243.1	3,265.6	2,165.4	5,001.9	6.1
세종	51	2,985.4	380.2	2,605.2	643.0	3,723.8	12.7
경기	769	6,949.5	120.4	6,794.4	4,633.9	8,932.0	1.7
강원	156	4,382.9	249.5	3,867.0	2,058.4	5,794.5	5.7
충북	177	3,974.1	191.4	3,771.1	2,355.3	5,431.9	4.8
충남	215	4,310.8	230.8	3,655.8	1,807.3	5,936.4	5.4
전북	233	3,323.2	162.2	2,939.8	1,249.1	4,602.9	4.9
전남	270	2,884.5	111.9	2,474.4	1,532.4	3,710.9	3.9
경북	301	3,863.2	197.0	2,966.6	923.1	5,791.0	5.1
경남	340	4,071.4	178.2	3,800.5	871.8	6,301.2	4.4
제주	63	4,349.6	394.5	3,788.6	2,389.2	5,367.1	9.1

[그림 2-2-10] 원패널(2006)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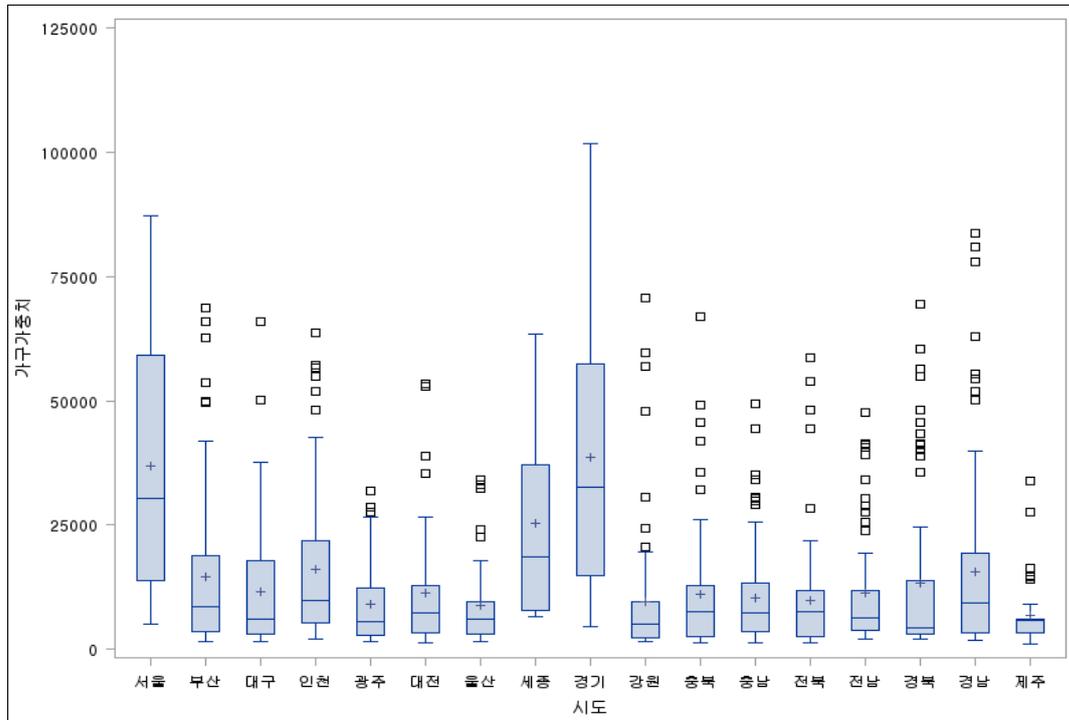


<표 2-2-15> 1차 추가 패널(2012)에 대한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1,281	16,845.8	544.5	8,934	3,682.1	20,838.6	2.7
서울	110	36,787.3	2,294.6	30,328.4	13,888.4	59,168.8	6.2
부산	99	14,479.8	1,590.1	8,493.3	3,603.0	18,916.0	11.0
대구	87	11,498.2	1,285.9	6,037.0	2,927.3	17,724.4	11.2
인천	74	16,179.6	1,792.7	9,736.1	5,188.5	21,899.1	11.1
광주	68	9,103.3	997.6	5,563.2	2,656.6	12,301.9	11.0
대전	57	11,338.7	1,571.7	7,369.0	3,381.2	12,860.5	13.9
울산	52	8,709.0	1,157.8	6,112.2	3,047.1	9,447.6	13.3
세종	6	25,313.0	8,909.8	18,456.6	7,816.4	37,042.0	35.2
경기	138	38,752.9	2,260.4	32,621.9	14,873.7	57,553.4	5.8
강원	72	9,492.4	1,595.0	4,939.5	2,392.8	9,653.2	16.8
충북	63	11,148.4	1,647.0	7,597.8	2,437.1	12,777.9	14.8
충남	90	10,287.8	1,079.4	7,227.6	3,544.3	13,206.6	10.5
전북	79	9,797.7	1,282.0	7,659.2	2,500.7	11,814.7	13.1
전남	69	11,274.9	1,395.8	6,174.2	3,900.8	11,833.0	12.4
경북	88	13,211.0	1,821.9	4,241.5	3,060.9	13,926.8	13.8
경남	89	15,541.0	1,971.5	9,399.2	3,361.9	19,352.7	12.7
제주	40	6,857.4	1,056.8	5,722.6	3,284.8	6,032.1	15.4

[그림 2-2-11] 1차 추가 패널(2012)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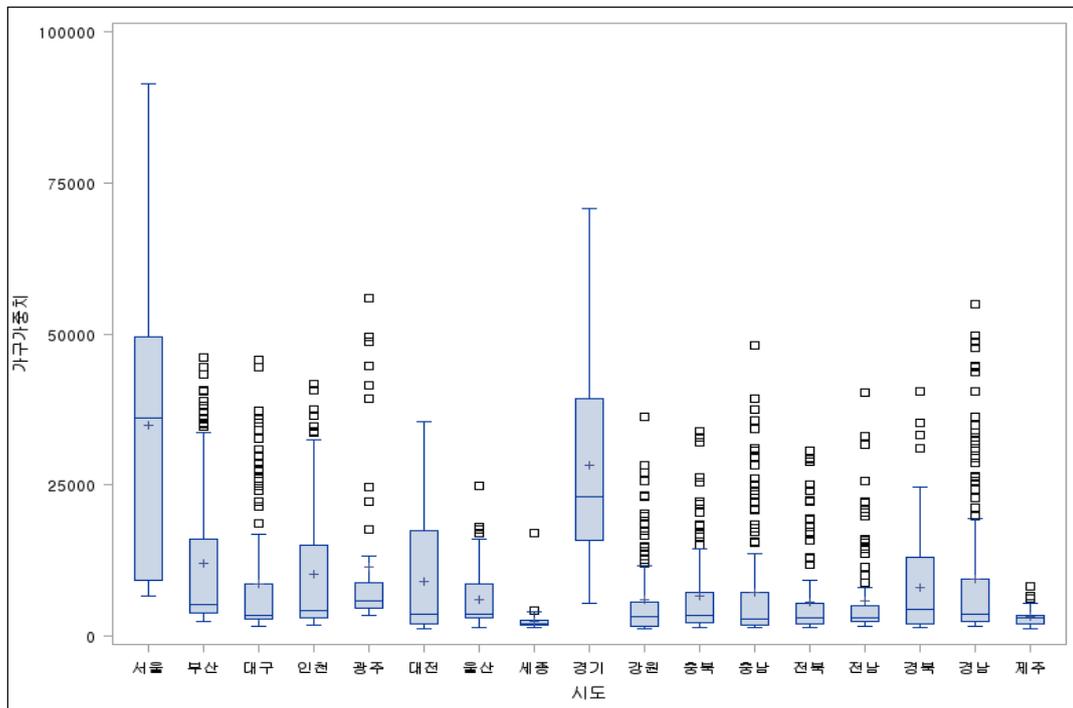


<표 2-2-16> 2차 추가 패널(2022)에 대한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1,917	11,256.9	325.6	4,300.6	2,481.9	15,607.0	2.3
서울	116	34,814.3	1,950.1	36,023.9	9,242.4	49,521.1	5.6
부산	119	12,051.4	1,141.6	5,319.8	3,744.9	16,047.0	9.5
대구	117	8,558.7	985.6	3,396.5	2,822.3	8,709.2	11.5
인천	117	10,238.0	1,033.9	4,276.3	3,116.0	15,035.5	10.1
광주	54	11,467.3	1,821.4	5,903.5	4,617.1	8,769.5	15.9
대전	71	9,128.9	1,116.3	3,705.8	1,940.3	17,420.0	12.2
울산	76	5,964.7	545.2	3,562.1	3,052.1	8,594.9	9.1
세종	62	2,454.7	254.8	2,060.5	1,784.4	2,707.4	10.4
경기	189	28,252.4	1,254.9	23,025.5	15,834.7	39,413.3	4.4
강원	113	6,055.2	643.2	3,199.5	1,670.3	5,712.9	10.6
충북	107	6,581.6	713.3	3,393.6	2,206.0	7,139.8	10.8
충남	127	7,308.7	868.7	2,828.6	1,906.9	7,253.1	11.9
전북	137	5,649.4	583.8	2,927.8	2,003.8	5,427.7	10.3
전남	135	5,774.3	589.4	3,063.5	2,481.9	4,960.9	10.2
경북	143	8,130.5	721.3	4,386.0	2,088.1	12,964.0	8.9
경남	147	9,442.4	1,015.0	3,573.5	2,487.1	9,413.9	10.7
제주	87	3,151.2	145.0	3,033.0	2,040.6	3,510.8	4.6

[그림 2-2-12] 2차 추가 패널(2022)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 그림



3. 2022년 추가 표본을 포함한 통합 가중치 조정 과정

가. 가구 통합 가중치 산출 과정

18차 조사의 가구 통합 가중치는 2006년, 2012년 추가 패널, 2022년 추가 패널의 가구 가중치를 결합한 새로운 통합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중치 계산식을 통해 구한다.

$$w_{hik}^{CBH} = \begin{cases} \lambda_{1h} w_{ahik}, & hik \in s_a \\ (1 - \lambda_{1h})w_{bhik}, & hik \in s_b \\ (1 - \lambda_{1h} - \lambda_{2h})w_{chik}, & hik \in s_c \end{cases}$$

여기서 w_{ahik} 는 2006 패널의 가구 가중치를, w_{bhik} 는 2012년 추가 패널의 가구 가중치, w_{chik} 는 2022년 추가패널의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λ_{jh} ($0 < \lambda_{jh} < 1$)는 가구 통합 가중치를 정의하게 되며, 이는 기존 패널과 2012년 및 2022년 추가 표본의 추정량을 선형형태로 결합하게 된다.

최적의 혼합계수 λ_{jh} 는 혼합 추정량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비율 추정을 기준으로 σ_{ah}^2 와 σ_{bh}^2 , σ_{ch}^2 이 각각 2006년, 2012년, 2022년 표본에서의 비율추정량의 분산이라면, 혼합계수 λ_h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ambda_{1h} = \frac{\sigma_{ah}^2}{\sigma_{ah}^2 + \sigma_{bh}^2 + \sigma_{ch}^2} \approx \frac{n_{ah}}{n_{ah} + n_{bh} + n_{ch}}$$

최종적으로 가구 통합 가중치는 3종의 가중치를 선형 결합한 형태의 가중치 w_{hik}^{CBH} 에 대해 2022년 추계 가구 수에 따라 지역별, 가구원 수별 레이킹 비 조정을 통해 구한다.

기존 패널(원표본 + 2012년 신규 표본)과 2022년 신규 표본에 대한 가구 통합 가중치 조정 작업을 통한 결과는 <표 2-2-17>과 같다.

〈표 2-2-17〉 지역별 가구 통합 횡단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	표준오차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체	7,654	21,579,415	2,819	33.7	1,006	3,524	1.1
서울	866	4,046,658	4,673	127.4	2,566	5,546	2.7
부산	525	1,433,304	2,730	116.3	1,260	3,058	4.3
대구	468	1,000,646	2,138	105.3	887	2,148	4.9
인천	448	1,196,547	2,671	125.8	1,193	2,908	4.7
광주	300	619,124	2,064	121.1	924	2,210	5.9
대전	249	645,663	2,593	172.6	887	3,060	6.7
울산	242	452,484	1,870	118.0	871	2,184	6.3
세종	119	152,213	1,279	110.8	455	1,654	8.7
경기	1,096	5,345,849	4,878	110.7	2,530	5,733	2.3
강원	341	683,681	2,005	113.3	749	2,488	5.7
충북	347	703,029	2,026	124.9	758	2,129	6.2
충남	432	926,638	2,145	113.8	855	2,266	5.3
전북	449	774,197	1,724	84.7	667	1,824	4.9
전남	474	778,639	1,643	101.8	609	1,560	6.2
경북	532	1,162,258	2,185	94.1	883	2,440	4.3
경남	576	1,384,272	2,403	90.8	1,055	2,753	3.8
제주	190	274,213	1,443	86.5	716	1,670	6.0

나. 개인 통합 종단 가중치 산출 과정

18차 조사의 개인 통합 종단 가중치는 2006 패널의 종단가중치, 2012년 추가 패널의 종단가중치, 2022년 추가 패널의 종단가중치를 통합한 2022년 기준 가중치인데, 이 통합 종단 가중치의 산출과정은 가구 통합 패널 가중치 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w_{hik}^{CBPL} = \begin{cases} \lambda_{1h} w_{ahik}, & hik \in s_a \\ (1 - \lambda_{1h})w_{bhik}, & hik \in s_b \\ (1 - \lambda_{1h} - \lambda_{2h})w_{chik}, & hik \in s_c \end{cases}$$

최종 개인 통합 종단 가중치는 w_{hik}^{CBPL} 의 값을 2022년 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레이킹 비 조정을 통해 구한다. <표 2-2-18>은 개인 통합 종단 가중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2-2-18> 지역별 개인 통합 종단 가중치 분포

(단위: 명, %)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	표준오차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체	15,931	51,628,117	3,241	43.3	835	3,236	1.3
서울	1,849	9,411,423	5,090	175.1	1,435	4,147	3.4
부산	1,073	3,299,380	3,075	153.6	1,015	3,136	5.0
대구	905	2,363,413	2,612	139.4	790	2,605	5.3
인천	952	2,960,686	3,110	141.6	1,000	3,584	4.6
광주	623	1,463,413	2,349	179.0	552	2,354	7.6
대전	552	1,471,555	2,666	203.2	810	2,899	7.6
울산	554	1,112,807	2,009	138.5	583	2,418	6.9
세종	253	382,769	1,513	400.7	72	1,586	26.5
경기	2,572	13,680,883	5,319	139.8	1,724	4,733	2.6
강원	684	1,525,921	2,231	133.9	635	2,417	6.0
충북	673	1,633,699	2,428	207.3	828	2,806	8.5
충남	883	2,180,092	2,469	120.4	896	2,704	4.9
전북	858	1,780,245	2,075	133.7	522	2,110	6.4
전남	927	1,768,630	1,908	124.3	581	1,773	6.5
경북	990	2,628,225	2,655	136.5	786	3,320	5.1
경남	1,116	3,289,270	2,947	141.2	747	3,534	4.8
제주	467	675,706	1,447	133.9	264	1,612	9.3

나.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산출 과정

18차 조사의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는 가구 통합 횡단 가중치 산출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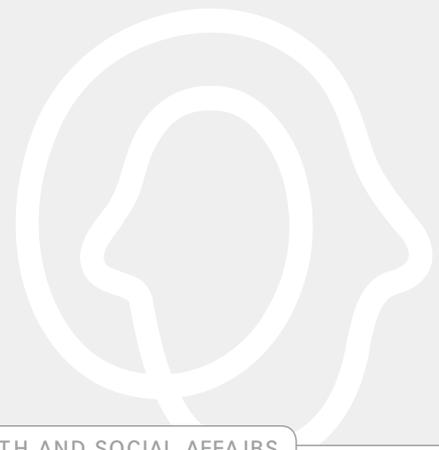
$$w_{hik}^{CBH} = \begin{cases} \lambda_{1h} w_{ahik}, & hik \in s_a \\ (1 - \lambda_{1h})w_{bhik}, & hik \in s_b \\ (1 - \lambda_{1h} - \lambda_{2h})w_{chik}, & hik \in s_c \end{cases}$$

최종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는 w_{hik}^{CBP} 의 값을 2022년 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레이킹 비 조정을 통해 구한다. <표 2-2-19>은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2-2-19> 지역별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합계	평균	표준오차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체	13,937	44,120,343	3,166	29.9	850	4,013	0.9
서울	1,656	8,400,272	5,073	107.4	2,000	6,999	2.1
부산	944	2,725,272	2,887	107.7	878	3,352	3.7
대구	819	2,081,029	2,541	104.5	766	2,924	4.1
인천	824	2,513,990	3,051	111.7	1,027	3,643	3.7
광주	547	1,238,653	2,264	114.5	818	2,475	5.1
대전	467	1,203,862	2,578	115.6	921	3,204	4.5
울산	464	922,703	1,989	101.9	661	2,156	5.1
세종	210	329,584	1,569	125.9	461	2,080	8.0
경기	2,159	11,607,299	5,376	86.2	2,832	6,716	1.6
강원	609	1,314,659	2,159	125.0	495	2,164	5.8
충북	609	1,452,523	2,385	118.9	610	2,493	5.0
충남	773	1,811,951	2,344	110.7	520	2,504	4.7
전북	774	1,573,078	2,032	96.2	536	2,203	4.7
전남	839	1,537,496	1,833	92.7	522	2,055	5.1
경북	901	2,237,572	2,483	93.6	638	2,907	3.8
경남	970	2,636,736	2,718	97.7	996	3,164	3.6
제주	372	533,665	1,435	94.6	709	1,483	6.6



제3장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제1절 조사 내용

제2절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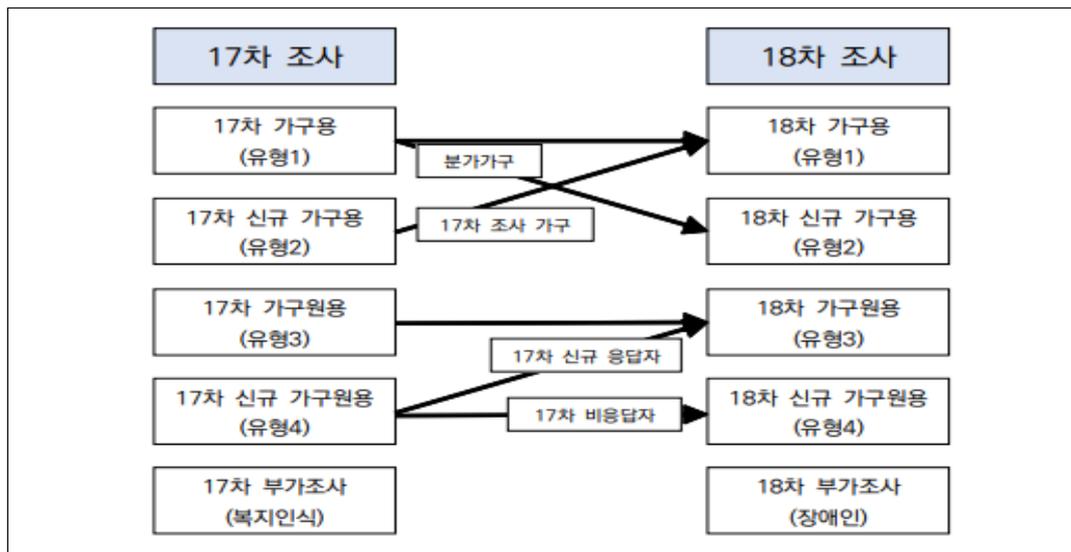
제3장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제1절 조사 내용⁹⁾

1. 조사 설문지의 구성

한국복지패널의 조사표는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차 이후에는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및 가구원은 각각 원가구, 신규 가구로 구분되기 때문에 원가구용(유형1), 신규 가구용(유형2), 원가구원용(유형3), 신규 가구원용(유형4), 부가조사 5종의 조사표로 구성하였다¹⁰⁾.

[그림 3-1-1] 조사 설문지의 구성



9)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내용과 방법은 정은희 외(2022).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17차 조사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었음.

10) 2022년(18차) 추가 표본 가구의 설문은 기존과 모두 동일하게 조사하였음. 2022년(17차)에는 추가 표본 가구가 패널로 최초 진입한 해이기 때문에 조사 부담이 높아 응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 문항 중 변하지 않는 특성을 묻는 문항이거나 응답 부담이 높은 문항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이에 교육 및 개인의 일부 항목은 17차에서 조사하지 않고, 패널 2년차인 18차에서 조사를 수행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17차 User Guide를 참조 바람(2023년 4월 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용 설문에는 원가구용 설문과 더불어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및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주 중심)에서 분리된 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18차 신규 가구용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가구원용 설문도 마찬가지로 17차 연도에 가구원용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을 조사하기 위한 18차 신규 가구원용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구분		내용
가구	원가구 (유형1)	- 17차 연도에 조사 완료된 패널 가구
	18차 신규 가구 (유형2)	-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직장, 학업, 위탁,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원가구(유형1: 1~17차 연도 조사 완료 가구)에서 분리된 가구 ※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분리된 가구원은 원가구에 속하는 가구원(9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한 가구원)이므로 17차 신규 가구(유형2)로 조사하지 않고 원가구(유형1)로 조사
가구원	원가구원 (유형3)	- 17차 연도 조사에서 가구원 질문에 응답한 가구원 - 만 15세 이상(2008년 출생자 및 그 이전 출생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사람 ※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하여 18차 신규 가구용(유형2) 설문으로 조사하더라도 2022년(17차 연도) 가구원 질문에 응답한 가구원이면 원가구원용(유형3)으로 조사 - 2022년 17차 신규 표본 가구의 가구원
	18차 신규 가구원 (유형4)	- 17차 연도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 1) 2022년도에 만 15세가 된 가구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사람 2) 2022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가구원 3) 17차 연도에 출생, 결혼, 합가 등으로 원가구 혹은 신규 가구에 새로 진입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진입한 가구원은 2022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이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차 신규 가구원용 설문 대상이 아님.

부가조사 설문은 각 연도마다 별도의 주제(special issue)를 개발하여 일회성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부가조사는 아동, 복지 인식, 장애인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23년 18차 조사에서는 장애인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4차·7차·10차·13차·16차 연도에는 아동 부가조사, 2차·5차·8차·11차·14·17차 연도에는 복지 인식 부가조사, 3차·6차·9차·12차·15차·18차 연도에는 장애인 부가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18차 연도 패널 조사의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을 살펴보면(<표 3-1-2> 참조), 먼저 가구용 설문은 표본 대상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에게 응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면접 조사이며 조사 기준 연도는 2022년, 조사 기준 시점은 12월 31일이다. 가구원용 설문은 경제활동 인구인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만 15세 이상 여부의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하되 신규 진입자와 2022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원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용 설문의 조사 기준 연도와 시점은 가구용 설문과 동일하다.

18차 연도 부가조사로 실시한 장애인 부가조사는 17차 조사 완료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였다. 조사 기준 시점은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과 달리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표 3-1-2〉 17차 연도 조사표 유형별 조사대상 및 조사 기준 시점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 조사 기준 연도: 2022. 1. 1.~12. 31. • 조사 기준 시점: 202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 2022. 2.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원 • 조사 기준 연도: 2022. 1. 1.~12. 31. • 조사 기준 시점: 202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차 조사 완료된 가구원 기준 장애가 있는 모든 가구원 •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 조사 • 기준 시점: 조사일 현재

2. 조사 문항

가구용(유형1, 유형2), 가구원용(유형3, 유형4), 부가조사용(장애인) 각 설문의 조사 영역은 〈표 3-1-3〉과 같다. 가구용 설문은 가장 많은 영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구 일반사항, 가계 수지 및 생활실태, 경제활동 상태, 건강 및 의료 실태, 사회보장 제도 및 복지 서비스 등과 관련된 총 1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 설문은 가구의 대표 응답자가 답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로, 해당하는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단 ‘교육’과 ‘개인사’의 경우 유형4 신규 가구원용에만 포함됨). 부가조사 설문(장애인)은 장애 원인·상황과 일상생활에 대한 공통 설문과 연령집단별 개별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3〉 18차 연도 조사 영역

조사표 유형	조사 영역	
가구용 (원·신규)	I. 가구 일반 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 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X. 재산 XI. 생활 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제 XIII.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IV.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II. 가족
가구원용 (원·신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F. 교육(신규 가구원용에만 포함됨) G. 개인사(신규 가구원용에만 포함됨)
장애인 부가조사	(공통 I) 장애 원인 및 상황 (공통 II) 일상생활 (개별 I) 미취학아동(만0세~초등학교 입학 전) 설문	(개별 II) 학생(초등~고등학생) 설문 (개별 III) 성인(18~65세 미만) 설문 (개별 IV) 어르신(만65세 이상)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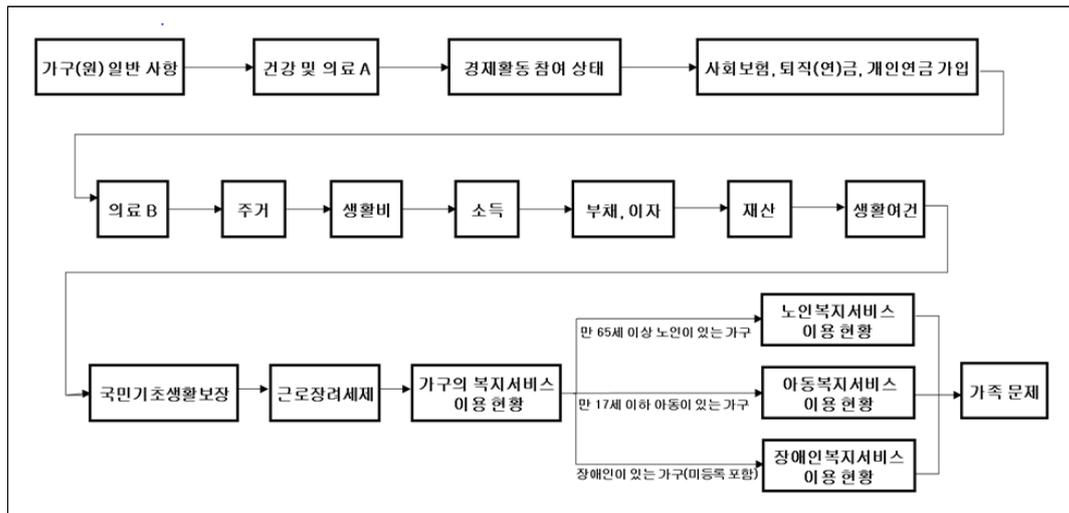
이상 큰 틀에서 살펴본 3개 조사표의 조사 영역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표 3-1-4〉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사와 관련한 문항은 그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에 나누어 놓았다. 근로 관련 문항은 주로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및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주요 문항은 가구원용 설문에 배치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근로 능력 정도 및 경제활동 상태와 관련한 문항들은 가구용 설문에 삽입되어 있다. 가구의 경제 상황은 가구 단위의 소득과 지출 및 재산과 관련된 문항으로 가구용 설문에 들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 외의 가구 여건 관련 문항은 주로 가구용 조사 설문의 해당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다만 가족 관계 및 가족생활 등에 대한 인식 문항은 가구원용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별 가입 및 수급 현황은 응답 대상자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으로 구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각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그 밖에 개인의 의식 및 인식과 관련된 문항이나 생활 습관 및 정신건강 관련 문항들은 가구원용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4〉 조사 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 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 일반 사항	가구용 I. 가구 일반 사항 가구원용 F. 교육
	2) 부모 세대	가구원용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G. 개인사
2. 근로활동	1) 직업 이력	가구원용 G. 개인사
	2) 경제활동 상태	가구용 III. 경제활동 상태 가구원용 B. 근로
	3) 고용지원 프로그램	가구원용 B. 근로
3. 경제 상황	1) 소득	가구용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VII. 생활비, X. 재산
	3) 재산 및 부채	가구용 IX. 부채 및 이자, X. 재산
	4) 기초생활	가구용 XI. 생활 여건
4. 가구 여건 (복지 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XV.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II. 건강 및 의료 A, V. 의료 B
	3) 주거	가구용 VI. 주거
	4) 가족 관계	가구용 XVII. 가족 가구원용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5) 기타 가구 여건	부가조사. 아동 부가조사(1·4·7·10·13·16차)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차)
5.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현황	1) 사회보험	가구용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 일반 사항(기초보장수급 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1~6월) XII-1. 국민기초생활보장(7~12월) XII-2. 근로(자녀)장려세제
	3) 사회복지 서비스	가구용 XIII.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IV.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차)
6. 기타	1) 기타 생활 여건 및 사회적 관계망	가구원용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2) 생활 습관 및 정신건강	가구원용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3) 복지·사회·정치 문제 인식	부가조사. 복지 인식 부가조사(2·5·8·11·14·17차) 가구원용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성역할)

앞에서는 크게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 영역을 살펴보았고, 아래에서는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에서는 가구원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 의료 이용 현황,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의료, 주거, 지출, 소득, 재산, 생활 여건 등 욕구 영역별 가구 여건을 파악하고 더불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 가구의 사회보장 가입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가구용 설문의 전체적인 조사 영역 흐름은 [그림 3-1-2]와 같으며, 영역별 세부 조사 내용은 <표 3-1-5>와 같다.

[그림 3-1-2]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의 조사 영역 흐름도



<표 3-1-5>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 주요 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가구일반 사항	1) 가구원 수(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의 수)	2022년 1년간
	2) 가구원 일반 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장애 종류 및 등급, 혼인 상태, 종교, 동거 여부	전체 가구원 대상
	3) 가구 일반 사항 - 가구 형태: 단독 가구, 모자·부자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기타 - 기초보장 수급 형태: 일반 수급, 조건부 수급, 특례 가구 등 - 의료급여 수급 형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 ※ 기초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 형태 세분화: 가구원 전부 수급, 가구원 중 일부 수급	2022. 12. 31. 기준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I. 건강 및 의료 A	1) 건강 상태	2022. 12. 31. 기준 전체 가구원 대상
	2)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 병명 -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및 입원 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 건강검진 횟수, 만성질환, 주요 병명,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	2022년 1년간 전체 가구원 대상 2022. 12. 31. 기준
III. 경제활동상태	1) 근로 능력 정도 - 근로 능력 정도, 근로 무능력 사유	2022. 12. 31. 기준 만 15세 이상 가구원
	2) 경제활동 참여 상태 - 2022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2022. 12. 31. 기준 경제활동 참여 상태	
	3) 취업자 일자리 특성 - 고용 관계, 근로시간 형태, 근로 계약 기간 설정 여부, 근로 지속 가능성 및 불가능 사유,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4) 미취업자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1) 공적연금 가입 - 가입 형태, 가입한 연금제도, 가입 종별, 국민연금 납부 여부, 미납 유형, 납부 예외 사유 및 기간, 미납 이유 및 기간, 미가입 이유	전체 가구원 대상 (다만 만 15세 미만 가구원 등 해당 제도의 적용 제외 대상은 '비해당'으로 기입)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3) 퇴직(연금) 가입 - 퇴직금 적용 여부, 퇴직연금 가입 여부	
	4) 개인연금 가입 여부	
	5)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가입 여부	
V. 의료 B	1) 건강보험 - 공적 건강보험 가입 여부, 직장·지역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 사유, 미납 기간, 건강보험 이용 시 문제점	2022. 12. 31. 기준 2022년 1년간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종류, 의료급여 이용 시 문제점	
	3) 민간의료보험 12월 보험료	
VI. 주거	1) 이사 경험 여부	2022년 1년간
	2)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거 점유 형태	2022.12.31. 기준
	3) 주택 구입 - 주택 가격(보증금), 주택 비용 마련 방법, 지난 1년간 주택 관련 총 부채 원금 상환액, 12월 31일 기준 주거 관련 부채액, 연체 횟수	2022. 12. 31. 기준 2022년 1년간
	4)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 주택 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등 - 방 개수, 주거면적, 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의 종류 및 사용 형태	2022.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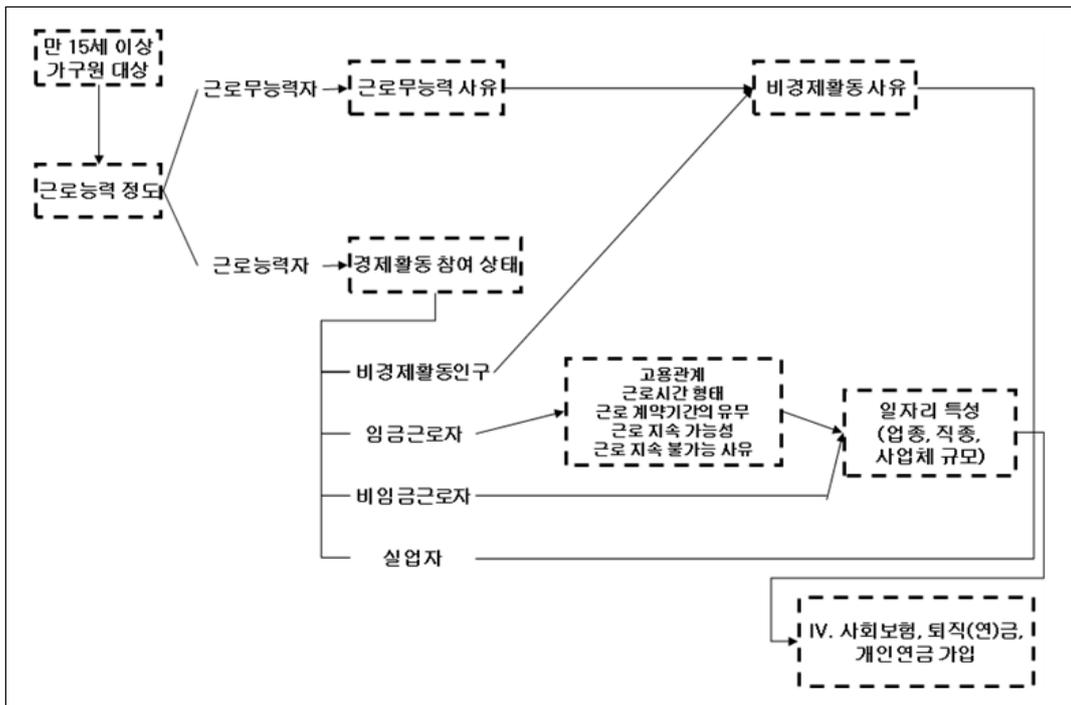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5)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용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기타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이용 경험	2022년 1년간
VII. 생활비	1) 비목별 생활비 -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2022년 1년간 월평균액
	2) 사적이전지출 -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현금과 현물(현금 환산액) - 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 등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현금 환산)	
	3)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4) 총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VIII. 소득	1)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2022년 1년간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총급여액, 고용주·자영자 순소득 및 전입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 규모,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이전소비액, 잡수입, 총비용, 순소득, 어업 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이전소비액, 잡수입, 총비용, 순소득, 기타근로소득	2022년 1년간 총액
	2) 원천별 가구 소득(근로소득 제외) -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기타정부보조금, 기타소득, 환급금, 사적이전소득(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에게 받은 현금과 현물,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현금과 현물 소득, 그 밖에 민간부문에서 받은 현금과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월 수 및 급여액	
IX. 부채, 이자	1) 부채 - 부채 형태(금융기관 대출, 일반 사채, 카드 빚, 전세 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깃돈 등)별 금액	2022. 12. 31. 기준
	2) 이자 -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이자 제외한 기타 이자)	2022년 1년간 총액
	3) 부채 용도 - 항목별 부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생활비, 주택 관련 자금, 교육비, 의료비, 빚 갚음, 기타)	2022. 12. 31. 기준
X. 재산	1) 부동산 - 소유 부동산(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별 금액 - 점유 부동산(전세 보증금 준 것, 그 밖의 권리금 등)별 금액	2022. 12. 31. 기준
	2) 동산 -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3) 금융재산 - 금융재산별(예금, 적금, 주식·채권·펀드, 타기 전 부은 깃돈, 기타) 금액	
	4) 기타 재산 - 비영업용 자동차 보유 대수 및 가격 - 기타 재산(회원권, 영업용 자동차 등 운송·생계 수단, 귀금속 등)별 총액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XI. 생활 여건	1) 박탈 지표 - 집세 미납, 공과금 미납, 세금 미납, 공교육비 미납, 난방 못함, 의료서비스 이용 못함, 신용불량 경험 여부,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급여 자격 정지 여부	2022년 1년간
	2) 식생활 보장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료품 미구입 및 균형 잡힌 식사 불가 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식 및 결식 경험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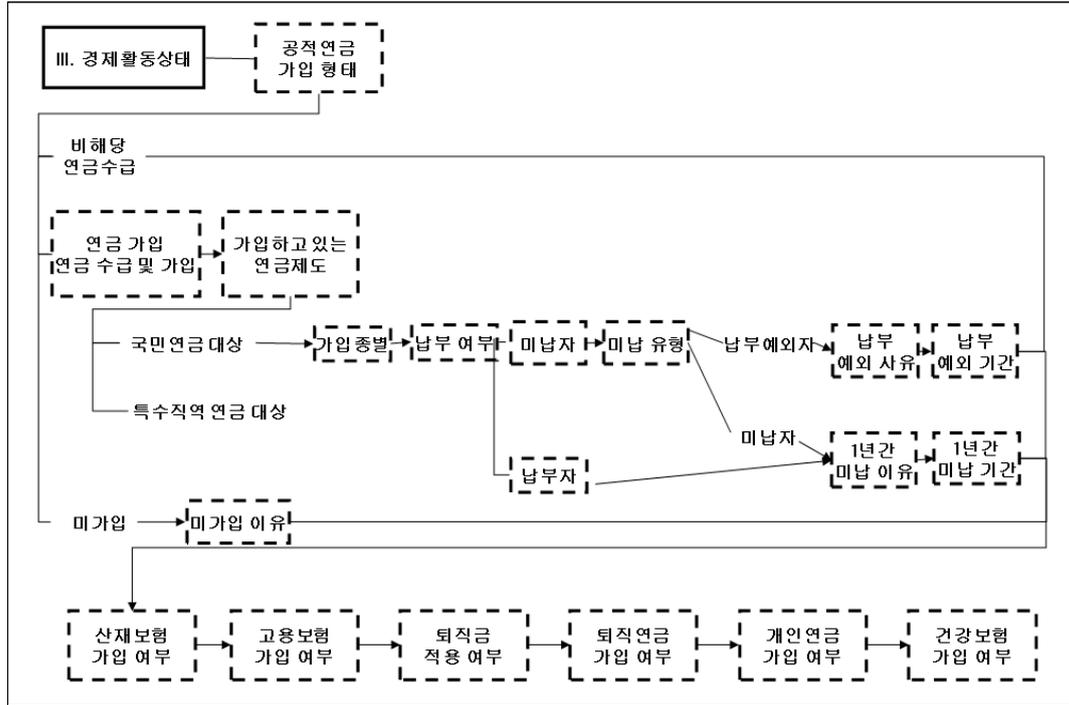
주: 구체적인 조사 문항의 수정, 신규 문항의 추가, 삭제, 3년 주기 문항 등에 관해서는 매년 4월 초 공개되는 User Guide를 참고(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

가구용 설문 영역 중 일련의 논리를 가지고 구성한 경제활동 상태 영역,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구체적인 논리도는 각각 [그림 3-1-3], [그림 3-1-4], [그림 3-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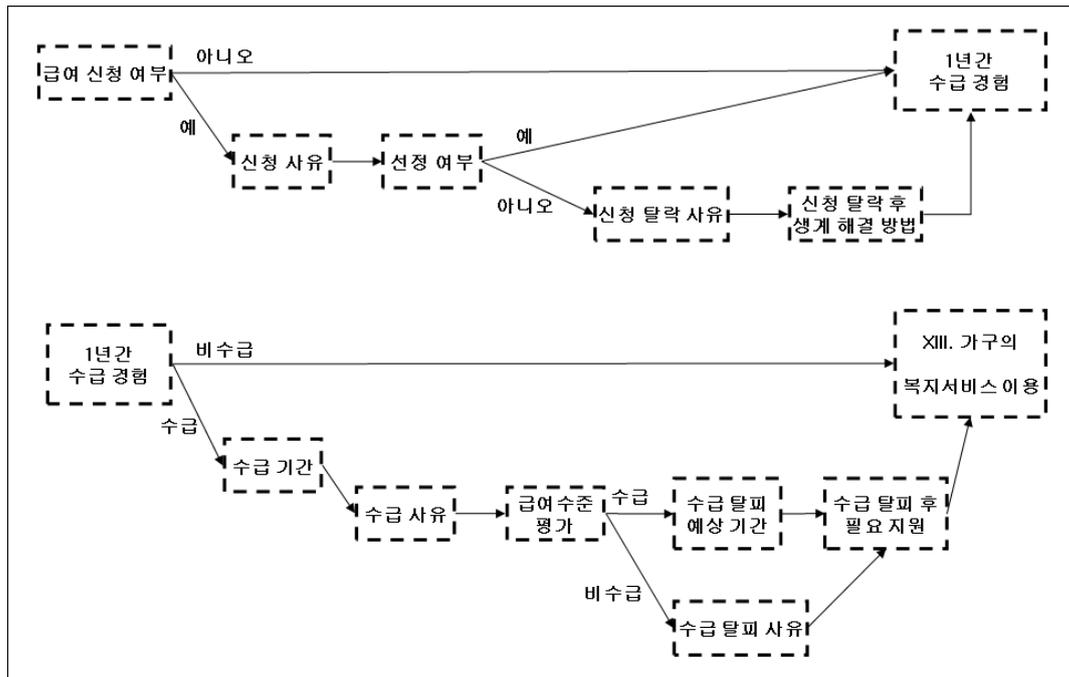
[그림 3-1-3] 가구용 조사표 III. 경제활동 상태 영역 논리도



[그림 3-1-4] 가구용 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그림 3-1-5] 가구용 조사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다음은 가구원용(유형3, 유형4) 조사표에 해당하는 설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원용 설문은 중·고등학생이 아닌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퇴직금·개인연금 수급, 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 습관과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교육, 개인사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구원용(원·신규) 설문의 영역별 세부 문항 구성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가구원용(유형3, 유형4) 설문 주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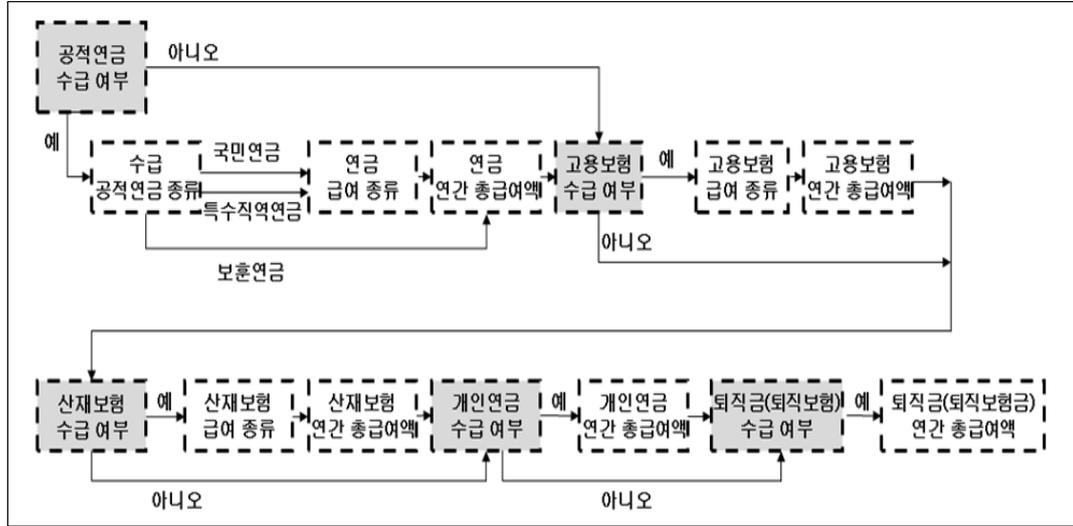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1) 공적연금 - 공적연금 수급 여부·종류, 국민연금 급여 종류, 일시금, 연금 수급 기간 및 금액,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 일시금, 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보훈연금, 기타연금 일시금, 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2022년 1년간
	2)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 여부, 급여 종류, 수급 개월 수 및 총현금급여액	
	3)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급 여부, 급여 종류, 일시금 총액, 연금 수급 개월 수 및 총현금급여액	
	4) 개인연금 - 개인연금 수급 여부, 일시금 총액, 연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5) 퇴직금 및 퇴직보험 - 퇴직금 수급 여부, 일시금 총액, 보험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B. 근로	1) 근로 유형	2022. 12. 31. 기준
	2) 취업자 - 실직 경험 여부, 실직 사유, 현 직장 근속 연수,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노조 가입 여부,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2022. 12. 31. 기준 2022년 1년간
	3) 미취업자 -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총 구직 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희망 임금,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지난주 알맞은 일자리 유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4) 직업기술 -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의 종류 및 해당 직종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1) 생활실태 - 인터넷 사용 여부, 유해 환경 근로 경험 여부	2022년 1년간
	2) 생활 만족 - 건강 상태,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생활 만족도 등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1)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 활동 - 신뢰, 지역사회 이웃에 대한 도움 의사, 비선호 시설 수용 정도(3년 주기) - 기부 혹은 자원봉사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2022년 1년간
	2) 부모님과의 접촉 정도 - 비동거 부모님의 유무, 왕래 횟수, 전화 통화 횟수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 여성전일제와 가족 일상생활 양립,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노동과 가족 관계, 전업주부 역할과 소득 활동 역할 간의 중요성,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 소득 기여,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 가족 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2022년 조사일 현재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정신건강	1) 생활 습관 및 출산 경험 여부 - 흡연, 음주, 음주로 인한 문제, 출산 경험 여부	2022년 조사일 현재 2022년 1년간
	2) 정신건강 - 우울감, 자아 존증감	2022년 조사일 현재
	3) 가족 관계 - 부부 폭력 경험, 부부 폭력 가해 경험, 가족생활,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22년 1년간, 2022년 조사일 현재
	4) 자살 관련 -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2022년 조사일 현재
	5) 행복 지수	2022년 조사일 현재
F. 교육(신규 가구원용)	1) 최종 학력	
	2)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 및 소재지 - 일반계(일반) 등 열일곱 가지 유형, 소재지(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3) 출신 대학의 전공계열 및 소재지 - 인문계열 등 열두 가지 유형, 소재지(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G. 개인사 (신규가구원용)	1) 아동기 - 성장 지역, 경제생활 상태, 조실부모·부모 이혼·학업 중단·친척집 성장 경험 여부 및 연령	
	2) 부모님 - 교육 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 경험 및 경제적 도움 정도	
	3) 직업 이력 - 만 15세 이후 첫 직장, 이후 가장 최근까지 6개 주요 직장의 근무 기간 및 고용 형태	
	4) 직업기술 - 보유 직업기술(1~3순위), 보유 직업기술 직종	
	5) 다문화 가정 여부 -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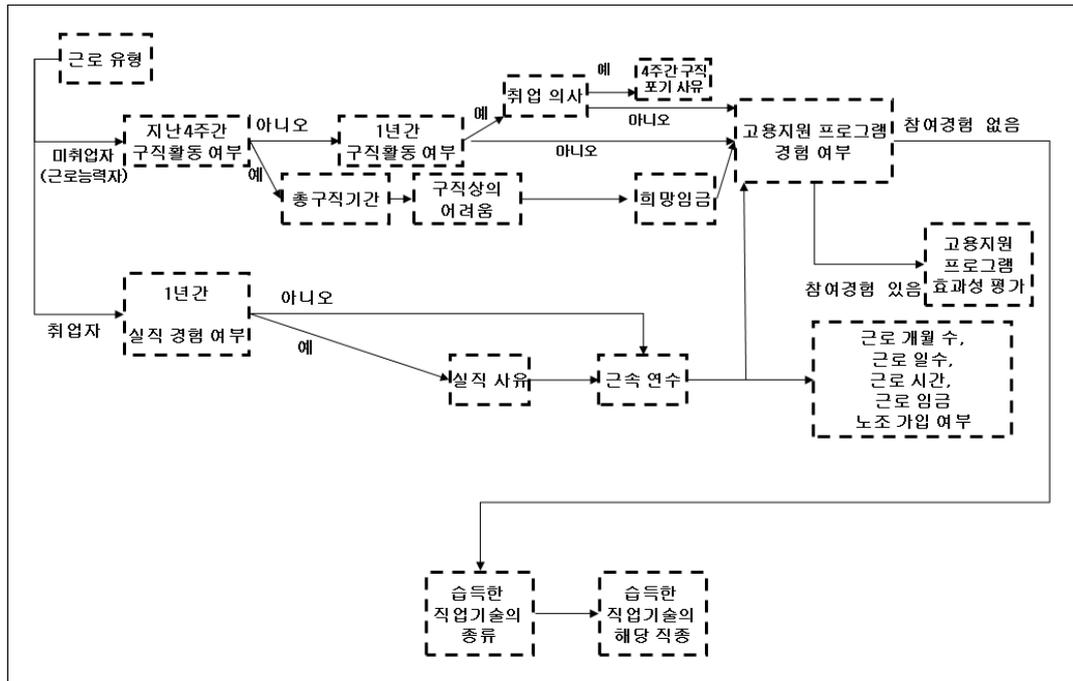
주: 구체적인 조사 문항의 수정, 신규 문항의 추가, 삭제, 3년 주기 문항 등에 관해서는 매년 4월 초 공개되는 User Guide를 참고(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

가구원용 설문에서도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과 근로 영역의 경우 각각의 논리에 따라 [그림 3-1-6], [그림 3-1-7]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3-1-6]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 논리도



[그림 3-1-7]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마지막으로, 장애인 부가조사는 장애의 원인, 발생 시점, 현재의 장애 상태 등 장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 대상은 장애인 가구원 중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부가조사표의 조사 영역 및 세부 항목은 <표 3-1-7>에 정리되어 있다.

<표 3-1-7> 부가조사표(장애인) 주요 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공통I) 장애 원인 및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원인, 장애 시작 시점, 현재의 장애 상태 - 장애의 현재 상태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장애와 관련된 치료 현황 -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 학대를 받은 경험 - 외출 정도 및 외출하지 않는 이유 	조사 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공통II)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일상생활 하는 데 도움 여부 및 도움 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 및 비용 부담 여부 - 일상생활 수행능력(기본적·수단적) - 사회적 지지에 대해 느끼는 정도 -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 -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원)나 서비스 필요 및 충분 정도 	조사 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개별I) 미취학 아동 설문 (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아동의 심리 상태 -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 및 의향 -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질문 	조사 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개별II) 학생 설문 (초등학생~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심리 상태 -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 및 의향 -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 및 의향 - 학교생활에 관련된 질문 	조사 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개별III) 성인 설문 (만 18~65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 여부, 이용 여부 - 심리 상태 - 소득활동 여부 -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 및 의향 	조사 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개별IV) 어르신 설문 (만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서비스 필요 여부, 이용 여부 - 심리 상태 - 소득활동 여부 - 월평균 용돈(생활비 제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 및 의향 	조사 시점 기준 1달 또는 1주일 이내

제2절 조사 방법

1. 현지 조사 방법

가. 조사 준비

1) CAPI 시스템 개선

2010년의 5차 조사부터는 최신 조사 시스템, 즉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방식을 탈피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을 위한 CAPI 시스템은 4차 조사에서 추적 조사 시 개발된 블레즈(Blaise) 기반의 CAPI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진일보한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와 개발 계약을 체결해 만든 C언어를 이용한 시스템이다.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CAPI 매니저(Manager), CAPI 인터뷰어(Interviewer), CAPI 리뷰어(Reviewer), 데이터베이스(DB) 및 전송 프로토콜 등을 개발하였으며, 그 후 약 15일간 개발된 시스템을 테스트 하였다.

매년 지난 차수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매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시스템 오류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테스트하고 있다.

2) 조사 안내문 발송

한국복지패널 18차 조사에서는 현지 실사에 앞서 2022년도의 17차 조사가 완료된 가구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조사 안내문은 두 번, 즉 연초에 설 선물과 함께 18차 조사 협조가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사가 종료된 시점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조사 응답에 대한 감사 인사와 내년도 조사 협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과 추석 선물을 발송하였다.

패널 조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가구에 협조를 구하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표본 가구들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를 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는 이사 가구 파악을 위하여 이사진 사실을 연구원에 통지하는 경우 이사 선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가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원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대상 가구의 이사 여부를 재확인한다.

3) 조사원 모집 및 교육·훈련

2023년도 18차 본조사에는 패널 조사 및 대규모의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평가 성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선발, 투입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조사 지도원 14명과 조사원 28명, 1인 체계 6명으로 총 48명이다.

2023년 18차 조사에서도 17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조사를 하였다. 조사원들의 교육은 총 4일 실시했다. CAPI 시스템과 조사표 내용에 대한 적응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컴퓨터 활용 교육과 조사표 내용 교육, 업무계약 관련 내용, CAPI 시스템 개발 업체인 한국리서치의 자료수집 및 전송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조사표 및 조사 답례품 수령 등을 합쳐 3일, 신규조사원을 대상으로한 전반적 교육이 1일 진행되었다. 20년 이상의 조사 경력을 가진 전문 지도원이 신규조사원에게 조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 조사 방법, 조사표 내 필수 에디팅 등에 대한 실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였다. 오송에 위치한 오송H호텔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진이 각각 자신들의 조사표 개발 파트에 따라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① 조사 취지와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② 조사표 종류별 작성 지침서 설명, ③ 조사에 따른 기타 주의 사항, 즉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연령 조건표, 사회복지제도 참고 자료, 시세 및 소득 참고 자료, 조사 안내문 및 팸플릿 배포, 가구 방문 시 인사말 등이다.

나. 현지 조사의 운영

1) 조사 기간 및 현지 조사 운영

본조사는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초기 단계에는 CAPI 시스템에 대한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당 가구 수를 일부 조정하여 할당하였다.

지도원들은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 패널 가구에 대한 조사 협조를 부탁하면서 진행하였다. 조사팀은 3인 1조로 조사 지도원 1인이 2인의 조사원을 통솔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 지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 지도원은 조사원의 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에디팅하고 미흡한 경우 재조사를 한다. 또 조사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상의 문제점이나 조사표 작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구원과 소통함으로써 통일된 추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답한 내용을 CAPI 시스템으로 구현된 노트북의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나 장기 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 기간에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 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 입원, 군대 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가구원이 집에 없으면 유치·전화 조사나 대리 응답 조사를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에디팅 단계에서 전화 면접 및 추가 검증으로 응답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설문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조사 자료 처리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CAPI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저장된다. 저장된 자료에 대한

현지 오류 검증 과정을 1차적으로 수행한 후 지도원 및 조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류 수정(에디팅) 과정을 거쳐 조사표 수정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오류 수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작성상의 오류(미기입 또는 오기입)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지도원이 최종 점검 작업에서 오류를 수정하였다.

1차부터 4차 조사까지는 종이 조사표(PAPI)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사 완료 후 별도의 코딩 및 입력 절차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5차 조사 이후부터 CAPI 시스템을 도입하여 별도의 입력 절차는 필요 없었으며,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 에디팅(soft editing) 과정에서 오류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최종 에디팅이 완료된 자료는 SAS, SPSS, STATA 데이터 포맷으로 한국복지패널 조사 DB에 저장되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 분장에 따라 SAS, SPSS, STATA 등의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분석 보고서에 필요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제1절 일반적 특성

제2절 경제활동 상태

제 4 장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제1절 일반적 특성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 대상 가구뿐만 아니라 소득집단별 2개의 계층(균등화된 소득¹¹⁾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 60% 이상인 일반 가구와 그 미만인 저소득 가구)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기타 가구(65.82%)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단독 가구(33.25%)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자 가구는 0.47%, 부자 가구는 0.21%였고, 소년·소녀가장 가구(조손 가구 포함)는 0.25%로 나타났다.

〈표 4-1-1〉 가구 형태

구분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가구	33.25	63.69	20.73
모자 가구	0.47	0.51	0.45
부자 가구	0.21	0.14	0.24
소년·소녀가장 가구	0.25	0.61	0.10
기타 가구	65.82	35.05	78.48
계	100.00	100.00	100.00

소득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 가구에서는 기타 가구가 78.48%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에서 기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35.05%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단독 가구의 비중은 저소득 가구(63.69%)에서 일반 가구(20.73%)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0.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구에서는 0.1%에 불과하였다.

11) 균등화된 소득이란 '균등화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균등화된 소득} = (\text{경상 소득} - \text{공공 부조소득}) / \sqrt{\text{가구원 수}}$$

다음의 <표 4-1-2>는 가구 규모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규모는 1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25%, 그다음은 2인(28.63%), 3인(19.53%), 4인(14.53%)의 순이었다. 그리고 5인 이상 가구는 4.07%를 차지하였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각 63.69%, 29.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일반 가구에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각 20.73%, 28.25%로 저소득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2> 가구 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인	33.25	63.69	20.73
2인	28.63	29.55	28.25
3인	19.53	4.76	25.60
4인	14.53	1.63	19.83
5인	3.39	0.24	4.68
6인	0.53	0.10	0.70
7인 이상	0.15	0.03	0.20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의 <표 4-1-3>은 평균 가구원 수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것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전체 가구가 2.3명이며, 일반 가구 2.6명, 저소득 가구 1.5명으로,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평균 1명 정도 가구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소득집단별 평균 가구원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가구원 수	표준오차
전체	2.3	0.01
저소득	1.5	0.01
일반	2.6	0.02

1.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의 <표 4-1-4>는 복지패널 조사대상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가운데 가구주가 41.25%, 가구주의 배우자가 23.61%, 가구주 및 배우자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0.92%, 가구주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주 등 직계비속이 32.68%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직계존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0.78%로 일반 가구의 0.94% 보다 약간 낮았으며, 직계비속 비율은 15.06%로 일반 가구의 35.8%보다 낮았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남성(49.97%)과 여성(50.03%)의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42.71:57.29로 여성 가구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 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51.25:48.75로 남성 가구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서는 50대가 16.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20세 미만(15.91%), 40대(15.66%), 60대(13.96%), 30대(1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 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근로활동이 미약한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64.89%로 일반 가구의 18.5%에 비해 약 3.5배나 높았다.

<표 4-1-4>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1.25	63.60	37.28
	가구주의 배우자	23.61	17.66	24.67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0.92	0.78	0.94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2.68	15.06	35.80
	기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	1.52	2.81	1.29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0.01	0.09	-
성별	남성	49.97	42.71	51.25
	여성	50.03	57.29	48.75
연령	20세 미만	15.91	5.87	17.69
	20~30세 미만	13.02	4.39	14.56
	30~40세 미만	13.28	4.54	14.83
	40~50세 미만	15.66	6.50	17.29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0~60세 미만	16.63	13.80	17.14
	60~70세 미만	13.96	21.55	12.61
	70~80세 미만	6.96	21.80	4.33
	80세 이상	4.57	21.54	1.56
학력	초등학교 졸 이하	19.69	40.77	15.95
	중학교 졸 이하	9.52	16.73	8.24
	고등학교 졸 이하	27.98	27.50	28.07
	전문대 졸 이하	12.80	4.34	14.30
	대학교 졸 이하	26.76	9.70	29.79
	대학원 졸 이상	3.25	0.97	3.65
장애	비장애인	93.38	80.10	95.73
	장애인	6.62	19.90	4.27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3	9.59	1.87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42	10.17	2.22
	비등록 장애인	0.17	0.14	0.18
만성질환	비해당	57.09	24.83	62.82
	있음	42.90	75.16	37.19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4.63	3.25	4.88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22	1.04	1.26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37.05	70.87	31.05
혼인 상태	비해당	13.75	4.50	15.39
	유배우	48.53	35.66	50.81
	사별	6.41	24.04	3.28
	이혼	5.45	13.97	3.94
	별거	0.49	1.19	0.36
	미혼	25.31	20.37	26.18
	기타(사망 등)	0.07	0.28	0.03
종교	있음	39.51	45.98	38.37
	없음	60.49	54.02	61.63
동거 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6.44	99.15	95.96
	비동거	3.56	0.86	4.04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10	-	1.30
	해외 근무 중	0.09	0.02	0.10
	학업(해외 유학 포함)	2.01	0.44	2.29
	입원, 요양	0.02	0.07	0.01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0	-	0.00
	가출	0.02	-	0.02
	분가	0.15	0.04	0.16
	사망	0.07	0.28	0.04
	기타(군 복무 등)	0.10	0.01	0.12
	계	100.00	100.00	100.00

주: 학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다 포함한 값임.

전체 가구원의 학력 분포는 고졸(27.9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졸(26.76%), 초졸(19.69%), 전문대 졸(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경우 대졸(29.79%), 고졸(28.07%), 전문대 졸(14.3%)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저소득 가구는 초졸 이하가 40.7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27.5%), 중졸(16.73%), 대졸(9.7%)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연령은 높고 학력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원에서 장애를 가진 가구원은 6.62%였으며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3.03%,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록 장애인의 비율도 0.17% 정도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장애 가구원 비율이 19.9%로 나타나 일반 가구의 4.27%에 비해 약 4.7배 높았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원 비율은 9.59%로 일반 가구의 1.87%에 비해 약 5.1배나 높았다. 저소득 가구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원의 비율도 10.17%로 일반 가구의 2.22%에 비해 약 4.6배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 중 42.9%는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원이 75.16%로 일반 가구(37.19%)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이들 만성질환 가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7.05%가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70.87%를 차지하였다.

가구원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중 48.53%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은 저소득 가구에서는 사별 24.04%, 이혼 13.97%로서 일반 가구(3.28%, 3.9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30~50대 연령층이 많은 일반 가구에서는 50.81%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종교가 있는 사람은 39.51%, 종교가 없는 사람은 60.49%였다. 일반 가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가구원의 비율(61.63%)이 종교가 있는 가구원의 비율(38.37%)보다 높았다. 저소득 가구에서도 종교가 없는 가구원의 비율(54.02%)이 종교가 있는 가구원 비율(45.98%)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원 가운데 다른 가구원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3.56% 정도였다. 가구원의 2.01%는 학업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다른 지방 근무, 분가, 해외 근무, 입원 혹은 요양 등으로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원도 있었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학업으로 인한 비동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으로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1-5>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남성 가구주(74.2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남성 가구주가 47.51%, 여성 가구주가 52.49%, 일반 가구는 남성 가구주가 82.35%, 여성 가구주가 17.65%로 저소득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0대 가구주가 23.28%, 40대 가구주가 18.69%이며,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도 41.3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경우 50대 가구주가 26.31%, 40대 가구주가 22.87%, 30대 가구주가 14.17%로 나타나 근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가구의 비율(63.35%)이 높은 반면, 저소득 가구는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비율(78.4%)이 높았다.

가구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졸 이하가 30.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대졸 26.6%, 초졸 16.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초졸의 비율이 4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 25.2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 가구는 고졸 비율이 32.61%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 32.54%, 전문대 졸 이하 14.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가구는 9.28%였다.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3.1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5.84%로 나타났고, 비등록 장애인의 비율도 0.33% 정도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장애 가구주 비율이 20.37%로 일반 가구의 5.92%에 비해 약 3.4배 높았다.

〈표 4-1-5〉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74.25	47.51	82.35
	여성	25.75	52.49	17.65
연령	20세 미만	0.03	-	0.04
	20~30세 미만	5.27	1.09	6.54
	30~40세 미만	11.43	2.37	14.17
	40~50세 미만	18.69	4.89	22.87
	50~60세 미만	23.28	13.26	26.31
	60~70세 미만	21.55	24.96	20.52
	70~80세 미만	11.42	24.99	7.31
	80세 이상	8.34	28.45	2.2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19	46.18	7.12
	중학교 졸업 이하	9.91	17.20	7.71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90	25.26	32.61
	전문대 졸업 이하	11.75	3.21	14.34
	대학교 졸업 이하	26.60	6.99	32.54
	대학원 졸업 이상	4.64	1.16	5.69
장애	비장애인	90.72	79.63	94.07
	장애인	9.28	20.37	5.9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11	7.93	1.66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84	12.23	3.90
	비등록 장애인	0.33	0.21	0.36
만성질환	비해당	41.23	16.06	48.85
	있음	58.76	83.93	51.15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4.33	2.30	4.95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30	1.17	1.34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53.13	80.46	44.86
혼인 상태	유배우	58.78	28.19	68.04
	사별	13.90	36.92	6.93
	이혼	10.94	19.44	8.37
	별거	1.10	1.75	0.90
	미혼	15.28	13.70	15.75
종교	있음	39.80	46.79	37.69
	없음	60.20	53.21	62.31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동거 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7.80	99.99	97.14
	비동거	2.19	0.01	2.86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95	-	2.53
	해외 근무 중	0.11	-	0.15
	학업	0.06	-	0.08
	입원, 요양	0.00	0.01	-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1	-	0.01
	가출	0.03	-	0.05
	분가	0.03	-	0.04
계		100.00	100.00	100.00

주: 학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다 포함한 값임.

전체 가구 중 58.76%에서 가구주가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가 83.93%로 일반 가구(51.15%)보다 약 1.6배 많았다. 이들 만성질환 가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3.13%가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80.46%를 차지하였다.

전체 가구주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58.78%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60대 이상 가구주가 많은 저소득 가구는 사별(36.92%)과 이혼(19.44%) 비율이 일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30~50대 가구주가 많은 일반 가구에서는 68.04%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주 가운데 종교가 있는 가구주는 39.8%, 종교가 없는 가구주는 60.2%였다. 일반 가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가구주 비율(62.31%)이 종교가 있는 가구주 비율(37.69%)보다 높았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도 종교가 없는 가구주 비율(53.21%)이 종교가 있는 가구주 비율(46.79%)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주 가운데 다른 가구원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19% 정도였다. 가구주의 2.19%는 타지방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근무, 입원 혹은 요양, 학업 등으로 가구원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주도 있었다. 특히 일반 가구에서 가구주가 다른 지방에 근무하는 경우가 2.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제2절 경제활동 상태

1.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 전체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근로 가능 가구원은 89.92%, 단순근로 가능자는 4.94%, 단순근로 미약자는 4.56%,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은 0.57%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 가구는 95.44%, 저소득 가구는 61.92%에서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무능력 사유는 중증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질병 및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50.20%가 중증 장애로 근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 또는 부상은 41.17%였다. 반면 저소득 가구는 중증 장애가 48.31%, 질병 또는 부상이 40.74%로 분석되었다.

〈표 4-2-1〉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 능력 정도	근로 가능	89.92	61.92	95.44
	단순근로 가능	4.94	18.89	2.19
	단순근로 미약자	4.56	17.85	1.95
	근로 능력 없음	0.57	1.34	0.42
계		100.00	100.00	100.00
근로 무능력 사유	중증 장애	46.58	40.74	50.20
	질병 또는 부상	43.90	48.31	41.17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9.52	10.96	8.63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는 근로 능력 정도에서 근로 가능, 단순근로 가능, 단순근로 미약자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4.83%로 가장 많았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28.27%), 임시직 임금근로자(16.39%), 자영업자(8.59%)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3명 중 2명이 비경제활동인구였으나, 일반 가구는 3명 중 1명 이하만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28.27	2.59	33.33
임시직 임금근로자	16.39	6.14	18.41
일용직 임금근로자	4.38	3.71	4.51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2.08	8.30	0.86
고용주	1.74	0.20	2.05
자영업자	8.59	6.83	8.94
무급가족 종사자	2.26	2.43	2.23
실업자	1.45	1.38	1.46
비경제활동인구	34.83	68.43	28.21
계	100.00	100.00	100.00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비경제활동 사유를 조사한 결과,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가 44.6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학업 19.82%, 가사 15.79%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75.61%)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반 가구는 근로 의사 없음(29.83%)과 학업(27.49%)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2-3〉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 무능력	1.63	1.96	1.48
군 복무	0.91	0.06	1.32
학업	19.82	3.76	27.49
진학 준비	1.48	0.51	1.95
취업 준비	5.49	2.95	6.71
가사	15.79	8.81	19.13
양육	4.05	0.01	5.98
간병	0.56	0.74	0.47
구직활동 포기	5.32	5.29	5.33
근로 의사 없음	44.63	75.61	29.83
기타	0.31	0.30	0.32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원의 업종은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17.3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12.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32%, 건설업 7.40%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21.8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가구는 제조업 비율이 18.24%로 가장 높았다.

직종을 살펴보면 가구원 전체적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40%, 단순노무 종사자 17.29%, 사무 종사자 16.60%로 확인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43.1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가 21.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일반 가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41%, 사무 종사자 17.71%, 단순노무 종사자가 15.1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2-4〉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6.69	21.82	5.41	
	광업	0.20	0.00	0.22	
	제조업	17.30	6.21	18.24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0.66	0.06	0.7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0.66	0.10	0.71	
	건설업	7.40	3.17	7.75	
	도매 및 소매업	12.18	12.52	12.15	
	운수업	5.13	3.12	5.30	
	숙박 및 음식점업	6.53	5.66	6.60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3.86	1.05	4.10	
	금융 및 보험업	2.76	0.07	2.98	
	부동산 및 임대업	1.10	0.78	1.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9	0.35	2.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97	2.28	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92	14.96	5.16	
	교육 서비스업	5.68	2.59	5.9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32	11.56	10.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2	1.09	1.5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9	10.69	4.3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기소비 생산 활동	0.74	1.91	0.64	
	국제 및 외국기관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종	관리자	4.57	1.15	4.8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40	5.48	18.41
	사무 종사자	16.60	3.57	17.71
	서비스 종사자	10.75	8.84	10.91
	판매 종사자	9.38	8.64	9.4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6.61	21.67	5.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75	3.42	9.2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39	4.14	8.75
	단순노무 종사자	17.29	43.10	15.11
	군인	0.25	0.00	0.27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32.61%로 가장 많았다. 10~29명 사업장이 14.59%, 5~9명 사업장이 11.66%로 전체 가구원의 약 59%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구원은 12.41%에 그쳤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46.66%로 월등히 높았으나,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2.75%로 낮았다. 반면, 일반 가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31.42%,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3.22%로 소득집단별 차이가 극명했다.

〈표 4-2-5〉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2.61	46.66	31.42
5~9명	11.66	10.57	11.75
10~29명	14.59	13.29	14.70
30~49명	7.02	5.69	7.13
50~69명	4.21	2.72	4.34
70~99명	3.91	5.74	3.76
100~299명	8.41	5.46	8.66
300~499명	2.97	3.76	2.91
500~999명	1.78	2.01	1.76
1,000명 이상	12.41	2.75	13.22
잘 모름	0.43	1.35	0.36
계	100.00	100.00	100.00

전체 가구원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는 11.35개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20.07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57시간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23시간, 일반 가구의 가구원은 약 4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일반 가구의 가구원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6〉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월, 일, 시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35	10.71	11.40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0.07	16.26	20.39
주당 평균 근로시간	39.57	23.07	40.67

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함.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와 관련하여 안전 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원의 6.81%가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년간 경제활동을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면 가구원 중 9.16%의 작업장 환경이 유해하였으며, 일반 가구 가구원의 유해환경 근로 비율이 9.21%로 저소득 가구(8.7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7〉 노동 환경 유해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25.66		59.56		18.96	
해당	74.33	100.00	40.44	100.00	81.04	100.00
그렇다	6.81	9.16	3.53	8.73	7.46	9.21
아니다	67.52	90.84	36.91	91.27	73.58	90.79
계	100.00		100.00		100.00	

주: 비해당은 2022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구원임.

2.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이번에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주의 경우 전체적으로 87.25%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58.72%만이 근로가 가능했지만,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약 95.89%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 무능력 사유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질병 또는 부상이 53.29%로 가장 높았으나, 일반 가구는 중증 장애가 5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8〉 가구주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 능력 정도	근로 가능	87.25	58.72	95.89
	단순근로 가능	6.51	20.48	2.28
	단순근로 미약자	5.97	20.25	1.65
	근로 능력 없음	0.26	0.55	0.18
계		100.00	100.00	100.00
근로 무능력 사유	중증 장애	40.28	24.82	54.76
	질병 또는 부상	47.32	53.29	41.74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12.39	21.89	3.50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34.79%, 자영업자 14.41%, 임시직 임금근로자 13.87%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24.74%로 확인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가 67.06%로 가장 많았으며, 자활 및 공공근로(10.90%), 자영업자(9.66%) 순이었다. 일반 가구는 44.57%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직 임금근로자(16.58%), 자영업자(15.84%) 순으로 많았다.

〈표 4-2-9〉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34.79	2.50	44.57
임시직 임금근로자	13.87	4.95	16.58
일용직 임금근로자	4.66	3.54	4.99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3.46	10.90	1.21
고용주	2.57	0.06	3.33
자영업자	14.41	9.66	15.84
무급가족 종사자	0.36	0.25	0.40
실업자	1.13	1.08	1.15
비경제활동인구	24.74	67.06	11.93
계	100.00	100.00	100.00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비경제활동 사유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 이상(85.34%)이 근로 의사가 없고, 6.87%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0〉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 무능력	1.06	0.82	1.48
군 복무	0.14	0.00	0.38
학업	0.11	0.08	0.15
진학 준비	0.09	0.04	0.16
취업 준비	3.05	2.11	4.65
가사	1.87	1.21	3.00
양육	0.27	0.00	0.73
간병	0.77	0.79	0.74
구직활동 포기	6.87	4.21	11.38
근로 의사 없음	85.34	90.30	76.90
기타	0.44	0.45	0.42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주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21.0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건설업(10.18%), 도매 및 소매업(10.04%), 농업, 임업 및 어업(7.60%), 운수업(7.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33%)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21.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8.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1.62%였다. 일반 가구는 제조업이 22.66%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10.95%, 도매 및 소매업 10.11%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16.5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37%), 사무 종사자(13.2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2.38%)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반 가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표 4-2-11〉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7.60	21.48	6.06
	광업	0.24	0.00	0.26
	제조업	21.08	6.88	22.6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96	0.00	1.0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0.79	0.14	0.86
	건설업	10.18	3.23	10.95
	도매 및 소매업	10.04	9.50	10.11
	운수업	7.48	4.00	7.87
	숙박 및 음식점업	4.14	4.33	4.12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4.09	1.52	4.37
	금융 및 보험업	2.07	0.07	2.29
	부동산 및 임대업	1.15	0.31	1.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1	0.09	3.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51	2.08	4.7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33	18.16	6.13
	교육 서비스업	3.25	2.15	3.3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01	11.56	5.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7	1.27	1.2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0	11.62	3.8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0.50	1.59	0.38
국제 및 외국기관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직종	관리자	6.23	1.58	6.7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37	5.02	15.41
	사무 종사자	13.28	2.75	14.45
	서비스 종사자	8.06	8.77	7.98
	판매 종사자	8.13	7.22	8.2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7.54	21.42	6.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04	4.33	14.0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38	5.40	13.15
	단순노무 종사자	16.51	43.51	13.52
	군인	0.46	0.00	0.51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33.56%로 가장 많았으며, 1,000명 이상 사업장 13.86%, 10~29명 사업장 13.20%, 5~9명 사업장이 9.69%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43.62%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 가구는 5인 미만 사업장 32.44%,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 15.16%로 소득집단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2-12〉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3.56	43.62	32.44
5~9명	9.69	11.14	9.53
10~29명	13.20	12.94	13.23
30~49명	6.45	4.99	6.62
50~69명	3.88	2.62	4.02
70~99명	4.39	7.25	4.07
100~299명	8.84	6.16	9.14
300~499명	3.45	4.99	3.28
500~999명	2.15	2.14	2.15
1,000명 이상	13.86	2.21	15.16
잘 모름	0.53	1.94	0.37
계	100.00	100.00	100.00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주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는 11.53개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20.18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33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23시간인 반면,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약 4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보다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13〉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월, 일, 시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53	10.75	11.62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0.18	15.87	20.65
주당 평균 근로시간	41.33	22.81	42.98

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함.

2022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주를 제외하고 일을 한 가구주 중에서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주의 9.60%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일을 한 가구주로 대상을 한정하여 보면 12.10%가 유해한 환경 근로에 해당하였다. 소득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노동 환경 유해 비율이 각각 8.15%, 0.13%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 가구주의 노동 환경이 일반 가구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14〉 노동 환경 유해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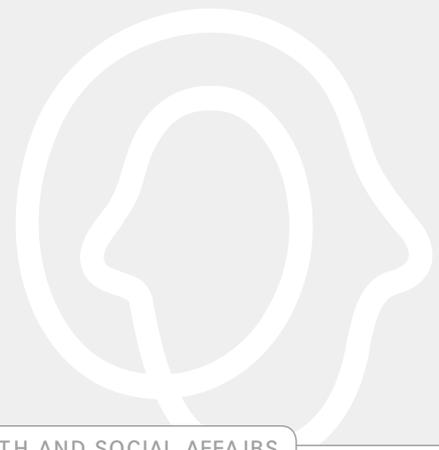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20.66		58.68		9.19	
해당	79.34		41.33		90.81	
		100.00		100.00		1.00
	그렇다	9.60	12.10	3.37	8.15	11.48
아니다	69.74	87.90	37.96	91.85	79.33	0.87
계	100.00		100.00		100.00	

주: 비해당은 2022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구주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가구 경제

제1절 소득

제2절 지출

제3절 재산 및 부채

제 5 장 가구 경제

제1절 소득

1. 경상소득

〈표 5-1-1〉을 보면 전체 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5,765만 원이며, 중위 경상소득은 4,555만 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1,555만 원, 일반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7,497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5-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4,555	5,765	56.45
저소득	1,443	1,555	12.06
일반	6,475	7,497	71.74

2. 근로소득

〈표 5-1-2〉는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에 대한 기초통계이다.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과 임시·일용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그 외에 사업소득, 농림축산어업소득, 부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5-1-2〉를 보면 상시 근로소득 평균은 2,490만 원, 임시·일용 근로소득 평균은 1,095만 원, 사업소득 평균은 653만 원, 농림축산어업소득 평균은 111만 원, 부업소득 평균은 8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평균 상시 근로소득은 각각 39만 원, 3,498만 원, 임시·일용 근로소득은 각각 224만 원, 1,454만 원, 사업소득은 각각 25만 원, 911만 원, 농림축산어업소득은 각각 29만 원, 144만 원, 부업

소득은 각각 5만 원, 9만 원으로 모든 근로소득 항목에서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평균 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2〉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상시 근로소득	전체	0	2,490	48.15
	저소득	0	39	5.28
	일반	2,469	3,498	68.00
임시·일용 근로소득	전체	0	1,095	22.22
	저소득	0	224	8.43
	일반	250	1,454	32.13
사업소득	전체	0	653	27.88
	저소득	0	25	4.22
	일반	0	911	41.83
농림축산어업소득	전체	0	111	7.91
	저소득	0	29	3.07
	일반	0	144	11.92
부업소득	전체	0	8	0.94
	저소득	0	5	0.53
	일반	0	9	1.41

주: 해당 소득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재산소득 및 공적·사적 이전 소득

〈표 5-1-3〉은 가구의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재산소득, 사회보험 소득, 민간보험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항목에서는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같은 정부보조금 형태의 소득은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 가구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항목 별로 보면 기타소득이 평균 424만 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정부보조금이 평균 396만 원,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이 평균 354만 원, 사회보험이 평균 325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의 평균은

각각 249만 원, 59만 원이며, 민간보험은 평균 27만 원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종위값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전체	0	249	10.46
	저소득	0	58	3.27
	일반	0	327	15.70
사회보험	전체	0	325	8.58
	저소득	0	168	5.43
	일반	0	389	12.65
민간보험	전체	0	27	2.15
	저소득	0	11	1.52
	일반	0	33	3.18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전체	172	354	6.77
	저소득	255	362	6.45
	일반	150	351	9.76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전체	0	59	2.31
	저소득	0	171	5.72
	일반	0	12	1.45
기타정부보조금	전체	369	396	5.51
	저소득	431	463	5.34
	일반	140	368	7.89
기타소득	전체	11	424	41.73
	저소득	6	224	53.80
	일반	11	506	57.17

주: 1) 2006년 1차 기초 보고서에서는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007년 2차 조사 이후부터 기초 보고서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2) 2022년 17차 이전 조사에서는 사회보험(공적연금)에 보훈급여(보훈연금)가 포함되었으나, 2023년 18차 조사부터 보훈급여는 기타정부보조금(국가유공자 보조금)에 포함하여 조사함.

제2절 지출

1. 총가계지출

지출 부문은 식료품비(가정 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주택 구입비를 제외한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보육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송금보조(사적 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생활비 항목과 농림축산업 혹은 어업 종사 가구인 경우 자가소비액, 가구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까지도 지출 항목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든 항목을 포괄하여 총가계지출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지출액은 농림축산여가의 자가소비액과 이자 지출을 제외하고 모두 월평균 지출로 조사하였으며, 연간 지출로 조사된 자가소비액과 이자 지출은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통일하여 분석하였다.

월평균 총가계지출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5-2-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가구의 총가계지출 중위값은 328만 원, 평균은 401만 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중위값이 122만 원이고 평균이 148만 원인 반면, 일반 가구는 중위값 442만 원, 평균 506만 원으로 평균으로만 비교하였을 때 일반 가구의 총가계지출이 저소득 가구보다 약 3.4배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총가계지출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1> 월간 총가계지출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328	401	3.56
저소득	122	148	1.87
일반	442	506	4.53

2. 항목별 총가계지출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지출 비율은 <표 5-2-2>와 같다. 전체 가구의 총가계지출 평균 401만 원에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로 전체의 22.94%이며 지출 규모는 92만 원 정도이다.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타소비지출로 전체 지출의 17.71%이고 지출 규모는 71만 원 정도이다. 또한 교통·통신비는 11.72%, 사회보장부담금은 6.48%, 보건의료비는 5.99%, 세금은 5.99%, 송금보조는 4.99%, 교육비는 4.24%, 주거비는 3.74%, 광열수도비는 3.49%, 교양 오락비는 3.49%, 가구·가사용품비는 3.24%, 이자 지출은 2.99%, 의류·신발비는 2.74%, 자가소비액(농축산)은 0.25%의 비율을 보였다. 어업 종사 가구의 자가소비액은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지출 항목별 구성 비율

(단위: 만 원, %)

지출 항목	전체		저소득		일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92	22.94	50	33.78	110	21.74
주거비	15	3.74	10	6.76	16	3.16
광열수도비	14	3.49	11	7.43	15	2.96
가구·가사용품비	13	3.24	4	2.70	17	3.36
의류·신발비	11	2.74	3	2.03	14	2.77
보건의료비	24	5.99	18	12.16	27	5.34
교육비	17	4.24	1	0.68	23	4.55
교양오락비	14	3.49	3	2.03	19	3.75
교통·통신비	47	11.72	13	8.78	61	12.06
기타소비지출	71	17.71	21	14.19	91	17.98
송금보조	20	4.99	6	4.05	26	5.14
세금	24	5.99	3	2.03	33	6.52
사회보장부담금	26	6.48	2	1.35	36	7.11
자가소비액(농축산)	1	0.25	1	0.68	1	0.20
자가소비액(어업)	0	0.00	0	0.00	0	0.00
이자 지출	12	2.99	2	1.35	17	3.36
총가계지출	401	100.00	148	100.00	506	100.00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¹²⁾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비는 33.78%에 달하였고,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소비지출은 14.19%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는 21.74%, 기타 소비지출은 17.9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지출 구성비 차이를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보건의료비가 12.16%로 일반 가구(5.34%)에 비해 2.3배, 주거비, 광열수도비가 일반 가구보다 각각 2.5배, 2.1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가구는 사회보장부담금, 세금,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저소득 가구보다 각각 5.3배, 3.2배, 6.7배 높게 나타났다. 자가소비액은 소득집단별 지출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제3절 재산 및 부채

1. 재산

가구의 총재산은 모든 가구원 명의의 전체 재산(가구원 명의의 사업장도 포함)을 합한 값이며, 여기에는 소유 부동산, 점유 부동산, 금융재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가격, 기타(동산 및 부동산) 재산 외에 주택 가격을 포함하였다.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며, 구성 항목은 조사 기준 시점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명의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가. 총재산 및 순재산

총재산에는 현재 가구가 소유한 소유 부동산, 점유 부동산, 금융재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가격, 기타(동산 및 부동산) 재산 외에 가구원 명의의 주택 가격이 포함된다. 주택 가격은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자가인 경우 주택 가격을, 전세의 경우

12) 기타소비지출에는 이·미용용품 및 서비스,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 비용, 친목 비용, 종교 관련(십일조 등) 비용, 보장성 보험(저축성 보험 제외), 관혼상제 비용, 용돈, 비영리단체 이전 비용(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등이 포함된다.

전세금을,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포함했다. 전체 가구의 총재산 평균값은 4억 9,286만 원이며, 중위값은 2억 5,147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평균값은 1억 7,793만 원이고 일반 가구의 평균은 6억 2,244만 원으로 약 3.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3-1〉 총재산가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147	49,286	943.00
저소득	5,530	17,793	719.00
일반	35,900	62,244	1343.00

다음으로 순재산은 현재 가구가 소유한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다. 총부채에는 금융기관 대출, 일반 사채, 카드 빚, 전세 보증금(받은 돈), 외상, 미리 탄 젓돈 등이 포함된다. 순재산은 전체 가구 평균이 4억 2,944만 원이고, 중위값은 2억 990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평균은 1억 6,630만 원이며, 일반 가구의 평균은 5억 3,771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5-3-2〉 순재산가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990	42,944	868.00
저소득	5,200	16,630	689.00
일반	30,000	53,771	1239.00

나. 소유 부동산

소유 부동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이 포함된다. 전체 가구의 소유 부동산 평균 가격은 1억 5,307만 원이며, 저소득 가구는 평균 4,957만 원, 일반 가구는 1억 9,565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5-3-3〉 소유 부동산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15,307	645.00
저소득	0	4,957	584.00
일반	0	19,565	928.00

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채권·펀드, 불입한 갯돈 등이 포함되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합산하였다. 먼저 전체 가구의 금융재산 평균은 8,231만 원이고, 중위값은 3,000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평균 2,531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는 반면, 일반 가구는 평균 1억 551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3-4〉 금융재산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3,000	8,213	309.00
저소득	500	2,531	115.00
일반	5,080	10,551	462.00

2. 부채

이번에는 가구의 부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구의 부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 일반 사채, 카드 빚, 전세(임대) 보증금(받은 돈), 외상 등이 포함된다. 전체 가구의 총부채 평균은 6,342만 원이며, 중위값은 100만 원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1,163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일반 가구는 평균적으로 8,473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총부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	6,342	188.00
저소득	0	1,163	133.00
일반	1,700	8,473	271.00

총이자액은 주거 관련 부채에 대한 이자와 주거 관련 이자를 제외한 기타 이자로 나뉜다. 총이자액과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를 제외한 기타 이자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전체 가구의 총이자액 평균은 149만 원이고, 이 중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를 제외한 기타 이자액의 전체 가구 평균은 68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총이자액이 평균 21만 원이며, 일반 가구는 평균 201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이자액은 저소득 가구는 평균 12만 원, 일반 가구는 평균 91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5-3-6〉 총이자액과 기타 이자액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총이자액	전체	0	149	5.00
	저소득	0	21	2.00
	일반	0	201	7.00
기타 이자액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제외)	전체	0	68	4.00
	저소득	0	12	1.00
	일반	0	91	5.00

마지막으로 부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의 항목별 부채 금액이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 부채 중 주택과 관련한 부채가 50.9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가 29.32%, 생활비(생계비) 마련이 16.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택 관련 자금의 비중이 33.24%로, 일반 가구에

13)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는 제6장 주거 부분에서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생활비는 34.48%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부채의 용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생활비(생계비)	16.13	34.48	13.18
주택 관련 자금 (전세 보증금 포함)	50.99	33.24	53.84
교육(학자금 마련 포함)	1.66	1.40	1.71
의료비	0.76	2.27	0.52
빚 갚음	1.14	0.28	1.28
기타	29.32	28.33	29.48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주거 및 건강

제1절 주거

제2절 건강

제 6 장 주거 및 건강

제1절 주거

1. 주거 실태 및 주거 환경

18차 조사부터는 주택 유형 문항의 명료화를 위해 17차까지 조사하였던 보기를 재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아파트로 통합하고, 고시원을 새로 추가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항목은 임대주택 유형의 부가 질문으로 배정하여 기존 정보와 연결성을 갖도록 하였다.

18차 한국복지패널 가구의 주택 유형을 파악한 결과는 <표 6-1-1>과 같다. 아파트가 49.3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으로 많았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는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택 유형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비율은 저소득 38.86%, 일반 53.66%였다. 17차에서는 저소득층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26.74%였는데 18차에서는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 항목을 아파트로 통합 하면서 약 12%가량 저소득층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일반 단독주택의 비율이 26.02%로 전체 저소득 가구의 1/4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한편 일반가구는 아파트 외에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1-1〉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 단독주택	16.77	26.02	12.96
다가구 단독주택	15.26	18.94	13.75
다세대주택	11.21	10.02	11.70
연립주택	2.93	2.99	2.91
아파트	49.35	38.86	53.66
고시원	0.07	0.04	0.08
영업겸용 단독주택	2.26	1.82	2.4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0.61	0.62	0.60
오피스텔	1.36	0.49	1.72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임시가건물, 재개발 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0.18	0.19	0.17
기타	0.01	0.01	0.01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주거 점유 형태를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비가구원 명의 주택,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가구 중 자가 비율이 56.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증부)월세(20.99%), 전세(11.38%) 순이었다. 저소득 가구(43.54%)와 일반 가구(62.50%) 모두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보증부)월세 비율이 29.76%로 일반 가구의 17.4%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에서 월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가구는 저소득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한 전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비가구원 명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33%로 전체 주거 점유 형태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1-2〉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가	56.94	43.54	62.50
전세	11.38	7.06	13.20
보증부 월세	20.99	29.76	17.40
월세	1.45	2.13	1.17
비가구원 명의 주택	7.6	15.33	4.41
기타	1.64	2.17	1.43
계	100.00	100.00	100.00

주거 점유 형태를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로 응답한 임차 가구의 주택 임대 유형을 살펴보았다. 전체 임차 가구의 69.94%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반 임차 가구의 대부분(79.14%)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민간 임대주택(51.76%)과 공공임대주택(48.24%)의 거주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1-3〉 임차 가구의 임대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민간임대주택	69.94	51.76	79.14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장기전세 등)	29.29	48.24	19.70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0.32	0.00	0.49
기타 임대주택 (사원주택, 뉴스테이 등)	0.45	0.00	0.67
계	100.00	100.00	100.00

주택 면적을 살펴본 결과는 〈표 6-1-4〉와 같다. 66~99㎡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의 37.2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33~66㎡ 미만(27.29%), 99~132㎡ 미만(25.50%)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는 주택유형, 주택 점유 형태뿐만 아니라 거주 주택 면적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33~66㎡ 미만이 44.38%로 가장 많았고 66~99㎡ 미만(35.01%), 99~132㎡ 미만(12.23%)인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66~99㎡ 미만(38.20%)이 가장 많고, 33~66㎡

미만은 저소득 가구의 절반 수준인 20.26%로 나타났다.

〈표 6-1-4〉 주택 면적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3㎡ 미만	5.16	6.98	4.41
33~66㎡ 미만	27.29	44.38	20.26
66~99㎡ 미만	37.27	35.01	38.20
99~132㎡ 미만	25.50	12.23	30.96
132~165㎡ 미만	3.62	1.04	4.68
165㎡ 이상	1.16	0.37	1.49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열, 내화, 방열 등에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88.31%는 견고하고 재질이 양호한 주택에 살고 있었으나, 11.69%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양호한 주택에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3%로 일반 가구(8.5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6-1-5〉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8.31	80.77	91.40
아니요	11.69	19.23	8.59
계	100.00	100.00	100.00

전체 가구의 9.94%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저소득 가구에서는 14.9%가, 일반 가구에서는 7.91%가 이와 같은 설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90.06	85.10	92.10
아니요	9.94	14.9	7.91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이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8.38%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소득 수준 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9.74%, 일반 가구의 7.83%가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만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주택의 구조 및 환경에 대한 다섯 항목 중 소득 구분 별 차이가 적은 편에 해당한다.

〈표 6-1-7〉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만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38	9.74	7.83
아니요	91.62	90.26	92.20
계	100.00	100.00	100.00

복지패널 대상 가구의 96.25%가 해일이나 홍수,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택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저소득 가구(5.31%)에서 일반 가구(3.1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1-8〉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96.25	94.69	96.9
아니요	3.75	5.31	3.10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성 관련한 마지막 문항으로,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및 안전한 전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전체 패널 가구 중 16.42%가 안전한 설비가 없다고 응답하여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관련 문항 전체 중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22.99%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상당수가 전기와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9〉 주택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성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3.58	77.01	86.3
아니요	16.42	22.99	13.7
계	100.00	100.00	100.00

2. 주택 가격

주거 실태의 일환으로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주택 가격, 보증금, 월세 부담을 살펴 보았다. 각 통계치는 중위 및 평균 금액, 그리고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¹⁴⁾ 자가 거주 가구의 경우,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 7,162만 원, 중위값은 2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저소득 가구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910만 원인 반면 일반 가구는 평균 4억 1,823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위 가격 역시 일반 가구의 중위 가격이 3억 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1억 3,000만 원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14)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월세 부담에 대한 구간별 분포는 '부록 3. 주거 및 건강' 참조.

〈표 6-1-10〉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000	37,162	624.46
저소득	13,000	20,910	577.05
일반	30,000	41,823	816.35

주택의 보증금은 전세와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 발생한다. 먼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살펴본 결과, 평균은 1억 8,196만 원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일반 가구의 전세금 평균은 2억 632만 원, 저소득 가구는 7.168만 원 수준으로, 일반 가구의 전세금이 저소득 가구의 거의 세 배에 달하였다. 전세금의 중위값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 일반 가구의 경우 1억 6,800만 원, 저소득가구의 경우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6-1-11〉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4,000	18,196	645.09
저소득	5,000	7,168	535.44
일반	16,800	20,632	764.45

보증부 월세 가구의 보증금은 전체 평균 2,548만 원, 중위값은 1,000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전세 보증금에 비하여 액수는 작지만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보증금 평균 1,339만 원은 일반 가구의 평균 보증금 3,401만 원의 39.4% 수준에 불과하였다. 중위값의 경우에는 저소득 500만 원, 일반 가구 1,500만 원으로 약 세 배 차이를 보였다.

〈표 6-1-12〉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	2,548	121.79
저소득	500	1,339	85.72
일반	1,500	3,401	204.88

마지막으로 월세 부담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주 주택의 월세액 평균을 제시하였다. 복지패널 대상 가구의 월세액 평균은 25만 원, 중위값은 20만 원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월세액 평균은 16만 원(중위값 12만 원)이었고 일반 가구의 평균은 31만 원(중위값 27만 원)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월세액 차이는 약 두 배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13〉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	25	0.52
저소득	12	16	0.44
일반	27	31	0.81

제2절 건강

1. 건강 상태

복지패널 조사대상자들에게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건강 상태를 질문하여 분석하였다. 〈표 6-2-1〉은 전체 가구원을, 〈표 6-2-2〉는 가구주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아주 건강하다(11.16%)’와 ‘건강한 편이다(60.24%)’로 응답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인 대상자는 약 7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와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9.92%, 1.01%로 나타나 응답자의 1/10 정도는 건강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 상태는 가구의 소득 구분별로 격차가

상당한데, 일반 가구의 77.77%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아주 건강, 건강한 편)으로 평가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52%만 양호한 건강상태라고 인식하였다. 한편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하여 '보통이다(29.63%)'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30.83%)'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6-2-1〉 전체 가구원의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11.16	3.30	12.56
건강한 편이다	60.24	32.22	65.21
보통이다	17.67	29.63	15.55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9.92	30.83	6.21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01	4.01	0.48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가구주의 건강상태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건강하다(아주 건강+건강한 편)고 응답한 비율은 61.11%,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고 응답한 비율은 15.97%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한 경우가 40.38%로 일반 가구의 8.58%에 비하여 약 다섯 배 많았다. 반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가구 71.21%, 저소득 가구 27.73%로 일반 가구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저소득 가구에 비하여 훨씬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2-2〉 가구주의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8.83	2.67	10.69
건강한 편이다	52.28	25.06	60.52
보통이다	22.92	31.88	20.2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4.46	35.73	8.02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51	4.65	0.56
계	100.00	100.00	100.00

전체 가구원 중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0%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 별로는 일반 가구의 37.19%, 저소득 가구의 75.16%가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환 기간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전체 저소득 가구의 70.87%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2-3〉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57.09	24.83	62.82
있음	42.90	75.16	37.19
3개월 미만 투병·투약	4.63	3.25	4.88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22	1.04	1.26
6개월 이상 투병·투약	37.05	70.87	31.05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주의 58.76%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소득집단을 구분하여 보면,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의 비율이 저소득 가구의 경우 83.93%, 일반 가구의 경우 51.15%로 나타나, 약 30% 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앞서 가구원의 만성질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과 일반 가구 모두 이환 기간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중 80.46%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파악되어 이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4〉 가구주의 만성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41.23	16.06	48.85
있음	58.76	83.93	51.15
3개월 미만 투병·투약	4.33	2.30	4.95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30	1.17	1.34
6개월 이상 투병·투약	53.13	80.46	44.86
계	100.00	100.00	100.00

2. 의료 이용 현황

의료 이용 현황은 건강검진 횟수,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등을 통해 제시하였다. 2022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건강검진 횟수는 평균 0.49회였다. 이를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본 결과 일반 가구가 1년에 평균 0.51회의 건강검진을 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평균 0.39회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 저소득 가구의 건강검진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강검진 횟수의 중위값은 저소득과 일반 가구 모두 0회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패널 가구 50% 정도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6-2-5〉 건강검진 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0.49	0.00
저소득	0	0.39	0.01
일반	0	0.51	0.01

한편 외래진료 횟수는 건강검진 횟수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 외래진료 횟수는 11.88회였는데, 건강검진과는 다르게 저소득 가구의 외래진료 횟수 평균이 22.62회로 일반가구 9.97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저소득 가구 가구원 및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만성질환 비율 역시 높다는 점과 연관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2-6〉 외래진료 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6.00	11.88	0.16
저소득	14.00	22.62	0.50
일반	6.00	9.97	0.15

2022년 1년 동안의 전체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 횟수는 0.12회로 나타났다. 외래진료 횟수와 유사하게 저소득 가구의 입원횟수(0.18회)가 일반 가구(0.11회)보다 많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표 6-2-7〉 입원 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0.12	0.00
저소득	0.00	0.18	0.01
일반	0.00	0.11	0.00

다음으로 2022년 1년 동안 입원 경험이 있는 1,849명을 대상으로 입원 일수를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1인당 평균 14.91일이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가 1인당 13.61일, 저소득 가구가 1인당 평균 19.72일로 나타났다. 중위값의 경우 일반 가구는 7일, 저소득 가구는 10일로 파악되어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입원 일수가 긴 것을 확인하였다.

〈표 6-2-8〉 입원 일수

(단위: 일)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7.00	14.91	0.57
저소득	10.00	19.72	1.17
일반	7.00	13.61	0.67

주: 입원 경험이 있는 1,8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다음으로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건수가 1건 이상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구 기준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조사하였다. 2022년 1년간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5.08%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90.17%로 대부분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반면,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은 38.39%로 일반 가구 가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표 6-2-9〉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75.08	38.39	90.17
미가입	24.92	61.61	9.83
계	100.00	100.00	100.00

주: 가구원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가 1건 이상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처리함.

더불어 민간의료보험의 평균 가입 건수를 살펴보았다. 2022년 1년간 복지패널 대상 가구는 평균 4.79건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소득집단 구분에 따라 보면 저소득 가구의 평균 가입 건수는 2.40건으로, 일반 가구가 평균 5.21건에 가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앞서 건강 관련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들이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만성질환 비율이 높으며 외래 및 입원 횟수가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저소득 가구의 취약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6-2-10〉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가구 기준)

(단위: 건)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4.00	4.79	0.05
저소득	2.00	2.40	0.06
일반	5.00	5.21	0.06

주: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민간의료보험 중 연금 성격이 아닌 순수 질병 보장 성격의 민간의료보험 전용 상품[암 보험, CI(Critical Illness) 보험, 어린이 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 보험, 일반 질병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 건수를 조사함. 한편 주계약자가 남편, 종계약자로 아내, 자녀들까지 보장받는 가족 의료보험은 가구원 각각의 가입 건수로 기재하도록 함. 또 납입 기한이 끝났으나 보장받는 보험은 가입 건수에 포함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가족

제1절 가족 관계

제2절 가족 문제

제 7 장 가족

제1절 가족 관계

1. 가족 관계

가족 관계를 파악해볼 수 있는 조사 항목으로 부모와의 접촉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가구의 43.66%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일반 가구가 48.91%로 저소득 가구의 17.09%에 비하여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3.66	17.09	48.91
없다	56.34	82.91	51.09
계	100.00	100.00	100.00

따로 사는 부모와 2022년 1년간 얼마나 왕래하였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1년에 평균 42회 왕래하고 있었고, 중위값은 12회였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저소득 가구의 따로 사는 부모와 왕래 횟수가 45회로 일반 가구(41회) 보다 많았다.

〈표 7-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 정도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2	42	1.17
저소득	12	45	4.70
일반	12	41	1.21

따로 사는 부모와 전화통화하는 횟수도 살펴보았다. 전화 연락은 왕래보다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평균이 113회로 왕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왕래에서는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접촉 빈도가 높았던 반면, 전화 연락에서는 저소득 가구는 1년에 평균 102회, 일반 가구는 113회로 반대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왕래와 전화 연락 모두 소득집단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저소득 가구의 표준오차가 크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 간 부모와 접촉 빈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 연락 정도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52	113	1.72
저소득	52	102	6.22
일반	52	113	1.79

제2절 가족 문제

1. 가족 문제 및 가족 갈등 대처 방법

〈표 7-2-1〉은 2022년 1년 동안 가족 내에서 발생한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2순위까지 조사한 것이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51.93%)를 제외하고 가족 문제 1순위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의 건강'이 56.14%로 가장 큰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꼽혔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18.86%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원의 건강' 문제는 특히 저소득 가구의 63.70%가 가족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아 일반 가구(51.86%)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갈등의 원인이라는 응답 역시 저소득 가구에서는 25.99%를 차지하는데 비해 일반 가구에서는 14.82%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이 가구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는 8.57%였다. 이는 저소득 가구(4.37%)와 일반 가구(10.95%) 모두에서 '가구원의 건강', '경제적 어려움' 다음 순위로 가족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어 가족 내 어려움(1순위)에 응답한 가구 중 두 번째로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66.86%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는 2순위 원인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33.39%는 '경제적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어 29.17%가 '가구원의 건강'을 꼽았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6.72%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 갈등의 두 번째 원인으로 보았다. 일반 가구에서는 '가구원의 건강(28.88%)', '경제적 어려움(23.75%)', '자녀 교육 혹은 행동(13.79%)',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10.90%)' 순으로 저소득 가구에 비해 가족 갈등(2순위)의 원인을 비교적 고르게 지목했다.

〈표 7-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18.86	25.99	14.82	33.39	46.72	23.75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8.57	4.37	10.95	8.74	5.75	10.90
자녀 교육 혹은 행동	4.81	1.05	6.93	8.89	2.11	13.79
가구원의 건강	56.14	63.70	51.86	29.17	29.56	28.88
가구원의 알코올	0.63	0.66	0.62	0.86	0.65	1.01
가족 내 폭력	0.04	0.09	0.01	0.09	0.00	0.16
가구원 간 관계	2.35	1.71	2.71	6.14	6.06	6.19
가구원의 가출	0.09	0.14	0.06	0.09	0.08	0.10
주거 관련 문제	3.30	0.47	4.91	6.70	4.62	8.20
기타	2.37	1.31	2.98	1.54	1.01	1.92
자녀의 결혼 문제	2.84	0.51	4.16	4.39	3.43	5.1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순위 응답 비율은 전체 가구 중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가족 내 갈등 요인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1순위에만 답하고 2순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따라서 2순위 응답 비율은 1순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뿐 아니라 2순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다음으로 〈표 7-2-2〉는 2022년 1년 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다. 가정 내 의견 충돌의 빈도, 가족 갈등 대처 방법과 관련된 하위 5개 문항에 각각 1~5점을 부여한 후 평균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가족 갈등에 대한 대처 방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의 가족 갈등 대처 방법의 중위값은 4.8점이었고,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중위값은 각각 4.6점, 4.8점이었다.

〈표 7-2-2〉 가족 갈등 대처 방법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4.8	4.6	0.00
저소득	4.6	4.5	0.01
일반	4.8	4.6	0.01

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까지만 포함하여 질문함. 독신 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으면 제외함.

2. 가족의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가. 흡연에 관한 생활 습관

7차 조사부터는 기존 가구원과 신규 가구원에게 각기 다르게 질문하였다.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흡연 경험, 금연 계획, 간접 흡연 등에 관해 질문하였고, 신규 가구원에게만 생애 동안의 흡연 경험(총량, 시기, 기간)을 질문하였다. 〈표 7-2-3〉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지를 질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 중 19.69%가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6.69%가,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20.28%가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현재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피움	19.69	16.69	20.28
피우지 않음	80.31	83.31	79.72
계	100.00	100.00	100.00

〈표 7-2-4〉는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 이상 금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20.00%가 하루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9.24%,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20.13%가 하루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4〉 하루 이상 금연 시도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음	20.00	19.24	20.13
없음	80.00	80.76	79.87
계	100.00	100.00	100.00

주: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표 7-2-5〉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인지를 물어 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 중 85.57%는 '0시간(없음)', 8.70%는 '1시간 미만', 0.89%는 '1시간 이상'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이 89.80%, 일반 가구원이 84.76%로 나타났다.

〈표 7-2-5〉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시간(없음)	85.57	89.80	84.76
1시간 미만	8.70	5.25	9.38
1시간 이상	0.89	0.37	0.99
모름/무응답	4.84	4.67	4.88
계	100.00	100.00	100.00

나. 음주에 관한 생활 습관

〈표 7-2-6〉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평소에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물어 그 대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 중 11.79%는 '월 1회 이하', 22.55%는 '월 2~4회',

13.34%는 ‘주 2~3회’, 6.08%는 ‘주 4회 이상’, 46.24%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3.65%,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40.82%로 나타났다.

〈표 7-2-6〉 음주 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월 1회 이하	11.79	5.12	13.11
월 2~4회	22.55	10.13	25.00
주 2~3회	13.34	5.91	14.81
주 4회 이상	6.08	5.20	6.26
전혀 마시지 않는다	46.24	73.65	40.8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표 7-2-7〉은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번에 여섯 잔 이상 마시는 과음 횟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36.67%는 과음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19.95%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21.74%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6.81%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4.84%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전혀 과음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1.92%,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36.21%로 나타났다. 또 ‘거의 매일 과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에서는 10.53%, 일반 가구원에서는 4.34%로 조사되었다.

〈표 7-2-7〉 과음 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36.67	41.92	36.21
몇 달에 한 번 정도	19.95	12.65	20.59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1.74	19.71	21.92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16.81	15.19	16.95
거의 매일	4.84	10.53	4.34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표 7-2-8〉은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79.67%가 ‘전혀 없다’고 하였고, 10.61%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3.43%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08%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50%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4.15%,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80.15%로 나타났다.

〈표 7-2-8〉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79.67	74.15	80.15
몇 달에 한 번 정도	10.61	11.34	10.55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3.43	4.74	3.31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1.08	3.00	0.91
거의 매일	0.50	2.05	0.36
모름/무응답	4.72	4.72	4.72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표 7-2-9〉는 술을 마신다고 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85.33%가 ‘전혀 없다’고 하였고, 4.00%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5.96%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9〉 주변 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5.33	80.22	85.78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다	4.00	3.53	4.04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	5.96	11.52	5.46
모름/무응답	4.72	4.72	4.72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다. 정신건강 등 기타

〈표 7-2-10〉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2년 1년 동안의 출산 경험 여부를 물어 그 대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0.98%가 ‘출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0.35%,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10%가 ‘출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10〉 출산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98	0.35	1.10
없다	49.65	58.47	47.91
비해당(남성)	49.37	41.18	50.99
계	100.00	100.00	100.00

〈표 7-2-11〉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일 직전 일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11개 문항(CESD-11)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우울 정도는 평균 5.43점, 저소득 가구원은 10.03점, 일반 가구원은 4.51점으로 나타났다.

〈표 7-2-11〉 우울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82	5.43	0.07
저소득	7.27	10.03	0.17
일반	1.82	4.51	0.07

주: 기존의 ‘1. 극히 드물다’, ‘2. 가끔 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 대부분 그랬다’로 되어 있던 각 하위 문항의 응답을 0, 1, 2, 3으로 재점수화하고, 하위 문항 ①, ④는 역점수 처리하여 우울 총점을 계산함. 이 우울 총점에 11분의 20을 곱함(만점은 60점임). 이렇게 계산한 변수의 중위값,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표 7-2-12〉는 모든 가구원에게 조사일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10개의 문항(Rosenberg Self-Esteem Scales)으로 나누어 질문하여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자아 존중감은 평균 3.15점, 저소득 가구원은 2.89점, 일반 가구원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표 7-2-12〉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3.20	3.15	0.00
저소득	2.90	2.89	0.01
일반	3.30	3.21	0.00

주: 각 하위 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하고 평균을 계산한 변수의 중위값,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 하위 문항 ㉔, ㉕, ㉖, ㉗, ㉘는 역점수 처리를 하였음.

〈표 7-2-13〉은 남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2년 1년 동안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남성 응답자의 56.01%가 '전혀 없다'고 답하였고, 0.36%가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 남성 가구원에서 43.19%, 일반 남성 가구원에서 58.05%로 나타났다.

〈표 7-2-13〉 남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6.01	43.19	58.05
1~2번	0.36	0.67	0.31
3~5번	0.03	0.00	0.03
6번 이상	0.06	0.00	0.07
비해당(배우자 없음)	36.88	49.36	34.89
모름/무응답	6.67	6.78	6.65
계	100.00	100.00	100.00

〈표 7-2-14〉는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2년 1년 동안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여성 응답자의

55.18%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0.36%가 ‘1~2번’, 0.09%가 ‘3~5번’이라고 답하였다. 저소득 여성 가구원 중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1.80%였고, 일반 여성 가구원 중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73%로 나타났다.

〈표 7-2-14〉 여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5.18	31.80	60.73
1~2번	0.36	0.45	0.34
3~5번	0.09	0.02	0.10
6번 이상	0.04	0.00	0.05
비해당(배우자 없음)	41.28	64.54	35.76
모름/무응답	3.06	3.19	3.03
계	100.00	100.00	100.00

라. 자살

7차 조사부터 신규 가구원과 기존 가구원에 대한 질문 방식이 달라졌다. 신규 가구원 에게만 생애 동안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대해 질문하였고, 기존 가구원 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신규 가구원 대상 자살 관련 문항의 결과를 제시한 〈표 7-2-15〉, 〈표 7-2-16〉, 〈표 7-2-17〉의 응답 사례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18차 조사에서 신규 가구원용 자살 관련 문항의 응답자수는 저소득 가구원 20명, 일반 가구원 199명으로, 총 219명에 불과하다.

〈표 7-2-15〉는 신규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신규 가구원 중 1.9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의 0.58%, 일반 가구원의 2.08%가 ‘있다’고 밝혔다.

〈표 7-2-15〉 지금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신규 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97	0.58	2.08
없다	85.45	97.70	84.53
모름/무응답	12.58	1.72	13.39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7-2-16〉은 신규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신규 가구원 중 1.43%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저소득 가구원의 0.00%, 일반 가구원의 1.54%가 '있다'고 밝혔다.

〈표 7-2-16〉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여부(신규 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3	0.00	1.54
없다	85.99	98.28	85.07
모름/무응답	12.58	1.72	13.39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7-2-17〉은 신규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신규 가구원 중 0.2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의 0.00%, 일반 가구원의 0.29%가 '있다'고 밝혔다.

〈표 7-2-17〉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여부(신규 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7	0.00	0.29
없다	87.15	98.28	86.32
모름/무응답	12.58	1.72	13.39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7-2-18〉은 기존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기존 가구원 중에서 2.02%가 ‘있다’고 하였고, 저소득 가구원은 4.36%가, 일반 가구원은 1.5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18〉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살 생각(기존 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02	4.36	1.55
없다	93.33	90.94	93.81
모름/무응답	4.65	4.70	4.64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존 가구원만 응답함.

〈표 7-2-19〉는 기존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기존 가구원 중에서 0.43%가 ‘있다’고 하였고, 저소득 가구원은 0.64%가, 일반 가구원은 0.3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19〉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계획(기존 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43	0.64	0.39
없다	94.91	94.66	94.97
모름/무응답	4.65	4.70	4.64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존 가구원만 응답함.

〈표 7-2-20〉는 기존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기존 가구원 중에서 0.19%가 ‘있다’고 하였고, 저소득 가구원은 0.16%가, 일반 가구원은 0.2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20〉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시도(기준 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9	0.16	0.20
없다	95.16	95.14	95.16
모름/무응답	4.65	4.70	4.64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준 가구원만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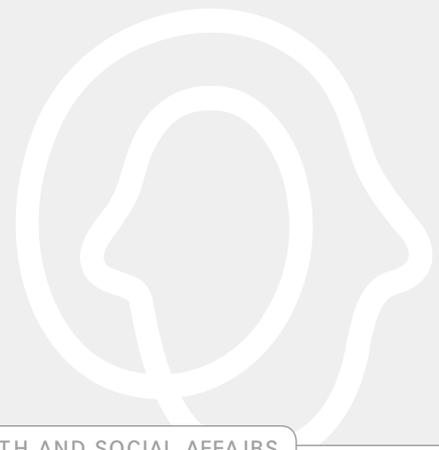
〈표 7-2-21〉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일 현재의 행복지수를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문항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행복 정도는 평균 6.84점으로 나타났고, 저소득 가구원은 5.79점, 일반 가구원은 7.05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7-2-21〉 행복지수(캔트릴 사다리-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7.00	6.84	0.01
저소득	6.00	5.79	0.02
일반	7.00	7.05	0.01

주: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게 함. 맨 꼭대기(10)는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는지를 확인함.



제8장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제1절 가구 구성원의 생활만족도

제2절 가구의 생활 여건

제3절 가구 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제 8 장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제1절 가구 구성원의 생활만족도

지난 2022년 1년 동안 가구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여가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건강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7.11%로, 절반 이상이 건강 상태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집단 구분에 따른 건강 만족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비율이 29.75%로 일반 가구의 만족 비율 62.54%에 비하여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반면에 저소득 가구 구성원의 37.91%가 자신의 건강에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만족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1-1〉 건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2.04	7.14	1.03
대체로 불만족	13.24	30.77	9.77
그저 그렇다	27.60	32.34	26.67
대체로 만족	52.93	28.09	57.86
매우 만족	4.18	1.66	4.68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36.94%), 대체로 불만족(18.41%)의 순이었다. 만족도를 더 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불만족하는 편(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과 만족하는 편(매우 만족+대체로 만족)으로 구분하여

보면, 저소득 가구는 만족(16.79%)보다 불만족(41.58%) 비율이 높은 반면 일반 가구는 만족(47.8%)가 불만족(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8-1-2〉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1.98	6.17	1.15
대체로 불만족	18.41	35.41	15.05
그저 그렇다	36.94	41.63	36.01
대체로 만족	40.32	16.32	45.08
매우 만족	2.35	0.47	2.72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 중 주거 환경에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1.26%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저소득 가구의 비율은 59.27%로 일반 가구의 73.64%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다. 건강이나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소득집단 별 차이보다는 크지 않지만,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 만족도가 일반 가구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1-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65	1.34	0.51
대체로 불만족	6.93	10.74	6.17
그저 그렇다	21.16	28.64	19.68
대체로 만족	64.90	56.34	66.60
매우 만족	6.36	2.93	7.04
계	100.00	100.00	100.00

조사대상자의 대부분(83.78%)이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는 응답은 2.88%에 그쳤다. 가족 관계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가족 관계 만족하는 비율은 69.19%로 일반 가구의 86.6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8-1-4〉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31	1.07	0.16
대체로 불만족	2.57	7.31	1.63
그저 그렇다	13.35	22.43	11.55
대체로 만족	69.26	63.01	70.49
매우 만족	14.52	6.18	16.17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직업(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직업(일)에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41%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그저 그렇다’가 43.75%로 가장 많았으나, 일반 가구는 ‘대체로 만족’이 61.61%로 가장 많았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38.51%로 일반 가구 65.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8-1-5〉 직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77	1.14	0.70
대체로 불만족	8.30	16.60	6.66
그저 그렇다	29.51	43.75	26.69
대체로 만족	57.57	37.21	61.61
매우 만족	3.84	1.30	4.34
계	100.00	100.00	100.00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하여 74.32%가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는 응답은 3.17%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원이 78.14%로 저소득 가구의 55.07%보다 23.07%p 가량 높았으나,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 역시 절반 이상은 사회적 친분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다.

〈표 8-1-6〉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25	0.84	0.13
대체로 불만족	2.92	7.99	1.92
그저 그렇다	22.51	36.10	19.82
대체로 만족	68.78	52.77	71.95
매우 만족	5.54	2.30	6.19
계	100.00	100.00	100.00

여가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는 응답이 전체의 56.27%,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는 응답은 11.2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5.12%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37.44%)의 비율이 불만족한다(17.44%)보다 높았다.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61.01%로 저소득 가구의 1.6배였다.

〈표 8-1-7〉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90	1.92	0.7
대체로 불만족	10.35	15.52	9.32
그저 그렇다	32.47	45.12	29.97
대체로 만족	52.53	35.33	55.94
매우 만족	3.74	2.11	4.07
계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여가생활 등의 사항 모두를 고려할 때 전반적 생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생활에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가구원의 비율은 67.78%로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 집단을 구분하여 보면, 저소득 가구는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49.55%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40.71%,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9.7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는 73.15%가 생활에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는 응답은 2.77%로 저소득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1-8〉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28	0.99	0.14
대체로 불만족	3.64	8.74	2.63
그저 그렇다	28.29	49.55	24.08
대체로 만족	65.35	40.26	70.33
매우 만족	2.43	0.45	2.82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가구의 생활 여건

복지패널의 조사대상 가구에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생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박탈되어 있는지 생활 여건을 파악하였다. 먼저 2022년 1년 동안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자가 및 무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 비해당되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 중 0.83%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가능하듯 일반 가구(0.06%)보다 저소득 가구(2.40%)에서 경제적 이유로 이사한 경험이 더 많았다.

〈표 8-2-1〉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34.9	100.00	39.93	100.00	32.84
있다	0.29	0.83	0.96	2.40	0.02	0.06
없다	34.61	99.17	38.97	97.60	32.82	99.94
비해당	65.09		60.07		67.16	
계	100.00		100.00		100.00	

주: 2022년 1년 내내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는 비해당에 속함.

경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공과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 중 1.01%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공과금을 미납한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2.03%로 일반 가구 0.59%에 비하여 약 4배 정도 많았지만,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표 8-2-2〉 공과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01	2.03	0.59
없다	98.99	97.97	99.41
계	100.00	100.00	100.00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은 전체 가구 중에서 0.34% 정도였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0.77%, 일반 가구에서는 0.16%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2-3〉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4	0.77	0.16
없다	99.66	99.23	99.84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을 질문하여 자녀 교육과 관련된 박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녀가 없거나 미취학, 대학원생인 경우는 비해당으로 처리하고 해당하는 가구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0.30%가 공교육비 관련 박탈 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가구는 0.30%, 저소득 가구는 0.73%로 저소득이 자녀의 공교육비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지만 경험 비율 자체가 매우 낮아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8-2-4〉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20.12	100.00	4.10	100.00	26.72	100.00
	있다	0.06	0.30	0.03	0.73	0.08	0.30
	없다	20.06	99.70	4.07	99.27	26.64	99.70
비해당 ¹⁾	79.88		95.9		73.29		
계	100.00		100.00		100.00		

주: 1)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사·박사)’인 경우임.

다음은 주거 관련 박탈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 한 경험’을 질문하였다. 전체 가구 중 0.42%가 금전적 이유로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저소득에서 1.36%로, 일반 가구 0.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2-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42	1.36	0.03
없다	99.58	98.64	99.97
계	100.00	100.00	100.00

의료 관련 박탈 경험으로는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0.54% 정도가 의료 박탈 경험이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1.37%, 일반 가구의 0.20%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4	1.37	0.20
없다	99.46	98.63	99.8
계	100.00	100.00	100.00

2022년 1년 동안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비율은 전체 가구의 1.9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2.82%가 신용불량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일반 가구(1.54%)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표 8-2-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91	2.82	1.54
없다	98.09	97.18	98.46
계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2022년 1년 내내 의료급여 또는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만을 받은 가구는 비해당으로 보고, 건강보험 가입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해당 가구 중 0.20%가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 급여 자격 정지를 경험하였다. 저소득 가구 중 0.32%, 일반 가구 중에서는 0.16%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8-2-8〉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93.69	100.00	80.14	100.00	99.26	100.00
	있다	0.19	0.20	0.26	0.32	0.16	0.16
	없다	93.50	99.80	79.88	99.68	99.10	99.84
비해당 ¹⁾	6.31		19.86		0.73		
계	100.00		100.00		100.00		

주: 1) 비해당은 2022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만 받은 가구를 의미함.

제3절 가구 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가구 구성원들의 생활실태 중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았다. 복지패널 조사 대상 전체 가구 구성원의 9.85%가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비율이 11.11%로 저소득 가구 3.48%에 비하여 약 세 배 높았다.

〈표 8-3-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9.85	3.48	11.11
아니다	90.15	96.52	88.89
계	100.00	100.00	100.00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간 기부 액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원을 기준으로 평균 46.96만 원을 기부하고 있었다. 일반 가구의 연간 기부 액수 평균은 48.24만 원, 저소득 가구의 평균은 23.1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기부 액수의 중위값은 일반 가구는 24만 원, 저소득 가구는 2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는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의 규모가 매우 적어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표 8-3-1〉 참조).

〈표 8-3-2〉 연간 기부 액수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4.00	46.96	2.99
저소득	20.00	23.10	2.43
일반	24.00	48.24	3.19

주: 연간 기부 액수가 있는 경우만 분석함.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17.52회, 중위값 8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평균 16.65회, 일반 가구는 17.60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 역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 가구 242가구, 저소득 가구 44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표 8-3-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관측값 일반 242, 저소득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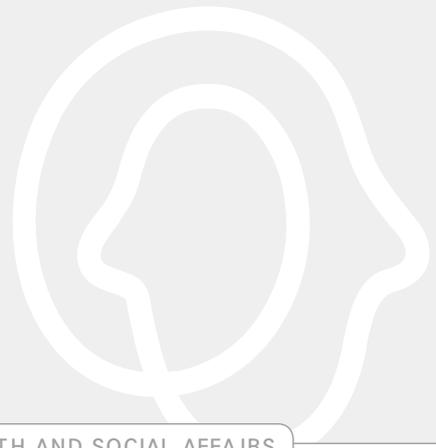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8.00	17.52	1.74
저소득	7.00	16.65	3.18
일반	8.00	17.60	1.94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9장

사회보장

제1절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제2절 공공부조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

제 9 장 사회보장

제1절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표 9-1-1〉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9-1-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39.61	59.09	36.16
수급	12.29	23.31	10.33
가입	46.52	16.98	51.76
수급하면서 가입	0.23	0.00	0.28
미가입	1.35	0.63	1.47
계	100.0	100.01	100.00

전체 가구 중 비해당¹⁵⁾이 39.61%, 가입이 46.52%, 수급이 12.29%, 수급하면서 가입이 0.23%, 미가입¹⁶⁾이 1.35%로 나타났다. 여기서 ‘비해당’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 등) 중 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면서 가입한 경우, 또는 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집단별로

15)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 혹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아닌 만 18세 미만 혹은 만 60세 이상인 자,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16) 공적연금 제도 가입 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 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10차 조사부터는 가입자였던 자가 만 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하고, ‘문항 8) 미가입 이유’에 ‘⑥ 만 60세 경과’로 기재하게 하였다.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연령(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지났지만 급여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즉 2021년 12월 31일 기준 1961년생인 경우 만 60세임에도 수급도 가입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다.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비해당 비율은 59.09%로 일반 가구(36.16%)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16.98%)은 일반 가구(51.76%)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수급률은 저소득 가구 23.31%, 일반 가구 10.33%로 저소득 가구의 수급률이 더 높았다.

앞의 <표 9-1-1>에서 공적연금 가입자(가입자 혹은 수급하면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해 있는 연금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9-1-2>와 같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93.76%)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 외에 공무원연금(5.14%), 사학연금(0.76%), 군인연금(0.24%) 등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일반 가구가 93.53%로 전체 가구보다 약간 낮지만 전체 가구와 거의 유사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국민연금(97.70%), 공무원연금(2.30%)을 제외한 특수지역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9-1-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93.76	97.70	93.53
공무원연금	5.14	2.30	5.31
사학연금	0.76	0.00	0.80
군인연금	0.24	0.00	0.26
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	0.10	0.00	0.10
계	100.0	100.00	100.00

2022년 1년간의 공적연금 수급 실태를 살펴보면(<표 9-1-3> 참조) 전체 수급자는 14.79%로 나타났다.¹⁷⁾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수급 비율(25.14%)이 전체 가구(14.79%)나 일반 가구(12.74%)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 공적연금 수급 경험이 있는

17) <표 9-1-3>의 공적연금 수급률 14.79%는 <표 9-1-1>의 12.52%(수급 12.29%, 수급하면서 가입 0.23%)와 차이가 난다. 이는 <표 9-1-1>의 수치는 가구용 설문용, <표 9-1-3> 수치는 가구원용 설문용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조사표의 차이는 가구용 설문은 모든 가구원이 응답하는 반면, 가구원용 설문은 중·고등학생이 아닌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만 응답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용 조사표의 해당 문항은 보훈 연금을 제외하고 있지만, 가구원용 조사표에서는 보훈연금을 포함하여 수급 현황을 조사했다. 그 외에도 가구용 조사표는 대표 가구원(주로 가구주)이 주로 응답한 반면, 가구원용 조사표는 당사자가 직접 응답하므로 수치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구원용 조사표의 경우 일련의 사유로 미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수치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9-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86.1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공무원연금 8.02%, 보훈연금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 82.51%, 공무원연금 10.52%, 보훈연금 2.23%, 군인연금 1.16%, 사립학교 교원연금 0.9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저소득 가구는 국민연금이 95.5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무원연금과 보훈연금이 각각 1.61%, 1.32%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 수급률은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반면, 특수지역연금 수급률은 일반 가구가 훨씬 높았다.

<표 9-1-3> 공적연금 수급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수급	14.79	25.14	12.74
비수급	85.21	74.86	87.26
계	100.00	100.00	100.00

<표 9-1-4>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86.16	95.53	82.51
공무원연금	8.02	1.61	10.52
사립학교 교원연금	0.71	0.04	0.97
군인연금	0.85	0.06	1.16
별정직 우체국연금	0.15	0.00	0.20
보훈연금	1.97	1.32	2.23
기타	0.00	0.00	0.0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0.75	0.06	1.02
국민연금, 군인연금	0.14	0.00	0.19
국민연금, 보훈연금	1.21	1.37	1.15
공무원연금, 보훈연금	0.04	0.00	0.05
계	100.00	99.99	100.00

2. 건강보험 가입 실태

다음으로 건강보험 가입 실태를 가구와 개인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93.02%, 미가입자가 6.98%로 밝혀졌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률(78.17%)이 일반 가구(99.13%)보다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 종류별로 보면 전체 가구의 71.44%는 직장 가입자, 28.56%는 지역 가입자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각각 65.27%, 34.73%, 일반 가구는 각각 73.45%, 26.55%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지역 가입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의 대부분은 의료급여 1종(83.96%)과 의료급여 2종(14.26%)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의료급여 1종(85.92%)이 2종(12.78%)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보였고, 일반 가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료급여 1종(63.83%)이 2종(29.49%)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9-1-5〉 건강보험 가입 실태(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93.02	78.17	99.13
	직장	71.44	65.27	73.45
	지역	28.56	34.73	26.55
	소계	100.00	100.00	100.00
미가입		6.98	21.83	0.87
	의료급여 1종	83.96	85.92	63.83
	의료급여 2종	14.26	12.78	29.49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1.78	1.31	6.68
	미가입	0.00	0.00	0.00
	소계	100.00	100.01	100.00
계		100.00	100.00	100.00

〈표 9-1-6〉은 개인 단위인 가구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¹⁸⁾ 결과를 보면 앞서 가구 단위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개인 단위의 가입 실태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¹⁹⁾ 및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까지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체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35.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집단별로도 저소득 가구는 40.68%, 일반 가구는 35.08%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저소득 가구는 의료급여 1종이 20.52%, 지역 가입자가 19.00%,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이 9.20%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반 가구는 직장 가입자가 40.39%로 저소득 가구의 직장 가입자 비율보다 약 10배 높았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하면 지역 가입자가 12.55%,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이 10.97% 순으로 높았다.

〈표 9-1-6〉 건강보험 가입 실태(개인 단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장 가입자	35.02	4.75	40.39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35.93	40.68	35.08
지역 가입자	13.52	19.00	12.55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10.70	9.20	10.97
의료급여 1종	3.59	20.52	0.59
의료급여 2종	1.15	5.70	0.35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09	0.14	0.08
미가입	0.00	0.00	0.00
계	100.00	100.0	100.0

3.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실태

다음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은 30.54%, 미가입률은 8.16%로 나타났다.²⁰⁾ 소득집단별로

- 18) 가구 단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 실태조사 문항에서는 예컨대 한 가구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분류했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가입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19)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20) 15세 이상 응답자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종사하거나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용주·자영자(단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가입 가능), 비경제활동인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은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5.13%)이 일반 가구의 가입률(35.05%)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9-1-7〉 고용보험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1.3	89.62	56.27
가입	30.54	5.13	35.05
미가입	8.16	5.25	8.68
계	100.00	100.00	100.0

2022년 1년간의 고용보험 급여 수급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표 9-1-8〉과 같다. 고용보험 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3.07%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이 1.44%, 일반이 3.39%로 수급 경험 또한 저소득층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급한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와 급여액은 부록 〈부표 6-1-22〉, 〈부표 6-1-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1-8〉 고용보험 급여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07	1.44	3.39
없다	96.93	98.56	96.61
계	100.00	100.00	100.00

4.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 실태

다음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산재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²¹⁾ 가입(32.49%)이 미가입(8.76%)을 3배 이상 상회하며, 소득집단별로 볼 때 일반 가구원은

21) 15세 이상 응답자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자 및 농어민, 비경제활동인구,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등은 산재보험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전체보다 약 5%p 높은 비율(37.30%)로 조사된 반면, 저소득 가구원은 가입률이 5.41%로 매우 낮다. 이 결과는 고용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1-9〉 산재보험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8.75	88.25	53.51
가입	32.49	5.41	37.30
미가입	8.76	6.34	9.19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의 〈표 9-1-10〉은 2022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수급한 경험을 설문한 결과이다. ‘수급 경험이 없다’가 99.7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수급 경험이 매우 적다는 특징은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구분 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9-1-10〉 산재보험 급여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0	0.23	0.31
없다	99.70	99.77	99.69
계	100.00	100.00	100.00

5. 퇴직(연)금 적용 및 수급 실태

퇴직(연)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의 적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경우 24.21%의 가구원이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5.97%는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과 3.18%만이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 가구에서는 27.95%가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퇴직(연)금 적용에서도 소득집단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8.81%, 일반

가구의 17.25%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은 되지만 미적용자이며, 동시에 저소득 가구의 대다수(88.01%)는 퇴직(연)금제도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1〉 퇴직(연)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9.79	88.01	54.79
적용	24.21	3.18	27.95
미적용	15.97	8.81	17.25
모름	0.02	0.00	0.02
계	99.99	100.00	100.01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실태를 보면 전체 가구 기준 11.81%만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가입률(0.69%)이 일반 가구원의 가입률(13.79%)에 비해 훨씬 낮았다.

〈표 9-1-12〉 퇴직(연)금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9.41	87.42	54.44
가입	11.81	0.69	13.79
미가입	28.78	11.89	31.77
모름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022년 1년간 퇴직(연)금(퇴직보험금) 수급 여부에 대해서는 96.69%가 수급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퇴직(연)금을 받은 비율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원의 1.02%에 비해 일반 가구원은 3.76%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1-13〉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31	1.02	3.76
없다	96.69	98.98	96.24
계	100.00	100.00	100.00

6. 개인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표 9-1-14〉는 개인연금 가입 실태(2022년 12월 31일 기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시중 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종신보험은 개인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신보험 가입 여부도 본 문항에서 같이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8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미가입률이 96.54%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일반 가구의 가구원은 79.50%로 소득집단에 따라 비율의 차이를 보인다. 즉 일반 가구는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경우가 약 17.04%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3.25%에도 미치지 못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1-14〉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연금만 가입	5.16	0.75	5.95
종신보험만 가입	9.80	2.50	11.09
개인연금, 종신보험 둘 다 가입	2.97	0.22	3.46
미가입	82.07	96.54	79.50
모름	0.00	0.00	0.00
계	99.99	100.0	100.0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급여 수급 경험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97.90%) 응답자가 수급 경험이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득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 9-1-15〉 개인연금 급여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10	1.40	2.24
없다	97.90	98.60	97.76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중위 소득(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결과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생계급여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8.63%가 수급 가구였는데, 수급 가구 중 94.73%는 일반 수급 가구, 4.99%는 조건부 수급 가구, 0.28%는 특례 가구로 조사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을 받는 가구 중에서 82.39%는 가구원이 전부 수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7.61%는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2-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	비수급 가구	91.37	
	수급 가구	8.63	100.00
	일반 수급 가구	8.18	94.73
	조건부 수급 가구	0.43	4.99
	특례 가구	0.02	0.28
계		100.00	
수급 형태 2	비수급 가구	91.37	
	수급 가구	8.63	100.00
	가구원 전부 수급	7.11	82.39
	가구원 중 일부 수급	1.52	17.61
계		100.00	

의료급여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8.57%가 수급 가구로 나타났다. 수급 가구 중 83.18%는 의료급여 1종, 14.39%는 의료급여 2종이고, 국가유공자 무료진료에 해당하는 가구는 2.43%로 조사되었다. 생계급여와 유사하게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80.85%는 가구원이 전부 수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9.15%는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9-2-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	비수급 가구	91.43	
	수급 가구	8.57	100.00
	의료급여 1종	7.12	83.18
	의료급여 2종	1.23	14.39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21	2.43
계		100.00	
수급 형태 2	비수급 가구	91.43	
	수급 가구	8.57	100.00
	가구원 전부 의료급여	6.93	80.85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1.64	19.15
계		100.00	

주거급여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10.89%가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 가구 중 임차급여(특례 포함)에 해당하는 가구는 90.11%, 수선유지급여(특례 포함)에 해당하는 가구는 9.89%였다. 교육급여는 전체 가구 중 0.49%만 수급하고 있는데, 1명 수급인 가구는 59.69%, 2명 수급은 38.46%, 3명 이상 수급하는 가구는 18.5%로 조사되었다.

〈표 9-2-3〉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	비수급 가구	89.11	
	수급 가구	10.89	100.00
	임차급여(특례 포함)	9.82	90.11
	수선유지급여(특례 포함)	1.08	9.89
	계	100.00	

〈표 9-2-4〉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가구 및 수급자 수	비수급 가구	99.51	
	수급 가구	0.49	100.00
	1명 수급	0.29	59.69
	2명 수급	0.19	38.46
	3명 수급	0.01	1.85
	계	100.00	

202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 패널 가구 전체의 1.34%가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신청 사유는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67.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가 15.48%,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가 15.11%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대다수의 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신청 여부	있다	1.34
	없다	98.66
	계	100.00
신청 사유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7.86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15.48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15.11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1.55
	계	100.00

202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약 0.60%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았다. 86.15%는 4개 급여 중 일부만 받았으며, 13.25%는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별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먼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탈락했다’고 답한 경우가 37.45%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기준보다 많다’고 응답한 가구가 29.96%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탈락 사유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60.82%로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가 18.32%로 그 뒤를 이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35.12%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23.4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교육급여는 ‘기타’가 9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모르겠다’가 5.78%로 나머지 비중을 차지했다 (〈표 9-2-6〉 참조).

〈표 9-2-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 여부 및 신청 탈락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수급자 선정 여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0.60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86.15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13.25
	계	100.00
(생계)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29.96
	자동차가 있어서	0.00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9.45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4.09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37.45
	기타	1.13
	모르겠다	17.92
계	100.00	
(의료)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11.38
	자동차가 있어서	0.00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5.75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2.69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60.82
	기타	1.04
	모르겠다	18.32
계	100.00	
(주거)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23.47
	자동차가 있어서	0.00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21.47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9.20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35.12
	기타	2.77
	모르겠다	7.98
계	100.00	
(교육)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0.00
	자동차가 있어서	0.00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0.00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0.00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0.00
	기타	94.22
	모르겠다	5.78
계	100.00	

202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후 생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문항을 살펴본 결과 급여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생계급여는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35.76%, ‘부양의무자나 친지 및 이웃의 도움’이 25.05%이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나 친지 및 이웃의 도움’이 41.58%,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33.05%였다. 주거급여는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57.77%, ‘부양의무자나 친지 및 이웃의 도움’이 28.54%로 조사되었다. 교육급여는 ‘기타’ 해결 방법이 94.22%, ‘빛을 내어 생활’이 5.78%를 차지하였다(〈표 9-2-7〉 참조).

〈표 9-2-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후 생계 문제 해결 방법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25.05
	빛을 내어서 생활	4.90
	민간단체의 도움	4.85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35.76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6.37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8.60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14.46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기타	0.00
	계	100.00
의료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41.58
	빛을 내어서 생활	2.08
	민간단체의 도움	2.59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33.05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9.37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1.87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9.51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기타	0.00
	계	100.00
주거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28.54
	빛을 내어서 생활	1.73

급여	구분	비율
	민간단체의 도움	4.99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57.77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0.00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6.97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0.00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기타	0.00
	계	100.00
교육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0.00
	빚을 내어서 생활	5.78
	민간단체의 도움	0.00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0.00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0.00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0.00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0.00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기타	94.22	
계	100.00	

2. 근로(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부양 자녀 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본 제도는 2008년 도입되어 2009년 최초로 신청을 받고 급여를 제공하였다.

자녀장려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인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세제는 2015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11차 조사부터 항목이 추가되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각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신청 및 수급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지 여부와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한 가구의 36.72%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30.50%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하였다. 19.13%는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13.65%만이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자녀장려세제의 인지 여부도 근로장려세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응답한 가구의 33.4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29.88%는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0.45%는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하였다. 16.22%는 ‘들어본 적도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 중 약 20% 미만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을 뿐,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여전히 두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표 9-2-8〉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근로 장려 세제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13.65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30.50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6.72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19.13
	계	100.00
자녀 장려 세제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20.45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33.45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88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16.22
	계	100.0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경험과 수급 여부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는 1.96%,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는 12.06%, 자녀장려

금만 신청한 가구는 0.46%로 나타났다. 이 중 8.74%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았고, 75.43%는 근로장려금만, 3.30%는 자녀장려금만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받지 못한 가구는 12.53%로 조사되었다(〈표 9-2-9〉 참조).

〈표 9-2-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경험 및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경험	둘 다 신청했다	1.96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12.06
	자녀장려금만 신청했다	0.46
	둘 다 신청한 적 없다	85.52
	계	100.00
신청 가구 중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둘 다 받았다	8.74
	근로장려금만 받았다	75.43
	자녀장려금만 받았다	3.30
	둘 다 받지 못했다	12.53
	계	100.00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89.73%가 일상 생활비로,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6.91%)나 저축(1.71%)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9-2-10〉 참조).

〈표 9-2-10〉 근로(자녀)장려금 사용 용도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자녀 교육비	0.71	문화·오락비	0.66
일상 생활비	89.73	저축	1.71
의료비	6.91	기타	0.27
계	100.00	계	100.00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

1.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2022년 1년간 가구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생계비 등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택 관련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 6-3-1>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9-3-1>을 보면, 전체 가구 중 55.19%가 생계비 혹은 생계 보조 수당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86.56%, 일반 가구 중에서는 42.28%가 생계비 혹은 생계 보조 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55.45%(저소득 가구 중 84.42%, 일반 가구 중 43.53%)가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의료비 지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의료, 가구 등 물품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중 11.91%(저소득 가구 중 29.41%, 일반 가구 중 4.71%)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7.82%(저소득 가구의 18.03%, 일반 가구의 3.62%)가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1.47%(저소득 가구의 4.50%, 일반 가구의 0.22%)가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업 훈련, 취업 상담,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중 12.50%(저소득 가구 중 19.53%, 일반 가구 중 9.6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9-3-1>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생계비	55.19	86.56	42.28
의료비	55.45	84.42	43.53
물품 지원(식료품, 의료, 가구 등)	11.91	29.41	4.71
가사 지원 서비스	7.82	18.03	3.62
식사 배달 서비스	1.47	4.50	0.22
취업 지원 서비스	12.50	19.53	9.61

〈표 9-3-2〉는 2022년 1년간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2022년 1년간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전체 가구의 20.9%)만을 대상으로 이용한 바우처 서비스 유형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 중 이용 경험 비중이 높은 서비스는 통합문화이용권, 에너지 바우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순이었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48.37%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저소득 가구의 84.35%와 일반 가구의 15.70%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경험이 있었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43.54%(저소득 가구의 76.29%, 일반 가구의 13.81%)가 에너지 바우처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30.27%(저소득 가구의 1.26%, 일반 가구의 56.60%)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표 9-3-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27	1.10	5.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0.96	0.37	1.50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사업	0.81	1.62	0.08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48.37	84.35	15.70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4.84	0.36	8.91
아이돌봄지원	0.30	0.00	0.57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30.27	1.26	56.60
장애아동가족지원	1.63	0.10	3.03
발달장애인지원	0.15	0.15	0.15
에너지 바우처	43.54	76.29	13.81
기타 바우처 서비스	15.92	7.06	23.95

주: 1년간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다음으로 2022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9-3-3〉에 정리하였다. 전체 가구의 4.86%가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10.54%, 일반 가구 중에서는 2.52%가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금액과 급여 유형별 경험률은 〈부표 6-3-3〉과 〈부표 6-3-4〉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표 9-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86	10.54	2.52
없다	95.14	89.46	97.48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표 9-3-4〉는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47.79%)만을 대상으로 2022년 1년간의 주요 노인복지 서비스 경험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노인 무료 급식, 물품 지원, 가사 지원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식사 배달 서비스 등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 6-3-5〉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체 노인 가구에서 가장 이용 경험 비중이 높은 서비스는 의료비,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순이었다. 전체 노인 가구의 91.95%가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94.24%, 일반 가구 중에서는 89.75%가 의료비 지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경우, 전체 노인 가구의 79.52%가 해당 서비스를 받았고, 저소득 가구의 93.75%, 일반 가구의 65.85%가 기초연금을 받았다. 전체 노인 가구의 16.49%(저소득 가구의 21.54%, 일반 가구의 11.65%)는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동편의 서비스와 사회참여 서비스의 경험 비율은 전반적으로 미미하였다. 전체 노인 가구의 1.89%가 이동편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저소득 가구는 3.15%, 일반 가구는 0.68%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노인 가구의 2.30%는 한글 교실, 생활 요가, 노래 교실 등 사회참여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저소득 가구는 2.79%가, 일반 가구는 1.83%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표 9-3-4〉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초연금	79.52	93.75	65.85
의료비 지원	91.95	94.24	89.75
이동편의 서비스	1.89	3.15	0.68
노인일자리사업	16.49	21.54	11.65
사회참여 서비스	2.30	2.79	1.83

주: 1)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이동편의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 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에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교통 수단,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3) 2020년부터 기존의 '사회교육 서비스'를 '사회참여 서비스'로 대체함. '사회참여 서비스'는 기존의 '사회교육 서비스'에 이용자의 자발성이 확대된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임.

다음으로 〈표 9-3-5〉는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16.52%)만을 대상으로 2022년 1년간의 주요 장애인복지 서비스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장애 아동수당, 가사지원 서비스, 방문 간호, 주택 관련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및 장애인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자동차 관련 지원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 6-3-6〉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13.21%가 장애인연금(중증 장애인 대상)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 가구의 15.30%, 일반 가구의 11.42%가 장애인 연금 지원을 받았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21.64%가 장애수당(경증 장애인 대상)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고, 저소득 가구는 40.07%, 일반 가구는 5.88%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재활 서비스는 전체 장애인 가구의 12.54%가 이용했는데, 일반 가구의 이용율(15.92%)이 저소득 가구의 이용율(8.58%)의 두 배 정도 높았다. 이동편의 서비스의 경험 여부의 경우, 일반 가구의 이용율(7.39%)과 저소득 가구(7.89%)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사회 적응 및 취업 관련 서비스의 경험 여부는 저소득 가구의 경험율(4.72%)은 일반 가구의 경험율(2.29%) 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표 9-3-5〉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13.21	15.30	11.42
장애수당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21.64	40.07	5.88
의료재활 서비스	12.54	8.58	15.92
이동편의 서비스	7.62	7.89	7.39
사회 적응 및 취업 관련 서비스	3.41	4.72	2.29

주: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다음으로 〈표 9-3-6〉은 17세 이하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18.99%)만을 대상으로 2022년 1년간의 주요 아동복지 서비스(아동수당, 공공 어린이집, 무료 급식, 양육비 보조 등)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무료 급식, 학비 지원, 문화활동, 예체능 교실 등 기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 6-3-7〉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중 가장 경험률이 높은 서비스는 무료 급식(91.14%)이었고, 아동수당과 양육, 보육료,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51.15%, 44.40%로 그 뒤를 이었다.

무료 급식(저소득 가구의 82.64%, 일반 가구의 91.57%가 경험함)과 아동 수당(저소득 가구의 41.56%, 일반 가구의 51.63%가 경험함), 양육, 보육료, 유치원비 보조(저소득 가구의 42.28%, 일반 가구의 44.51%가 경험함)는 소득집단별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공공 어린이집 이용 경험(저소득 가구의 0.55%, 일반 가구의 9.47%가 경험함)은 일반 가구의 경험이 저소득 가구의 경험 비중보다 높았다. 반면에 방과후 돌봄 서비스(저소득 가구의 15.72%, 일반 가구의 0.62%가 경험함)는 저소득 가구의 경험 비중이 일반 가구보다 높았다.

〈표 9-3-6〉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동수당	51.15	41.56	51.63
공공 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9.05	0.55	9.47
양육, 보육료,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44.40	42.28	44.51
무료 급식(급식 지원 포함)	91.14	82.64	91.57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1.10	1.09	1.10
방과후돌봄 서비스	1.34	15.72	0.62

주: 17세 이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아동의 건강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새로 추가된 아동에 대하여 출생 시 체중과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유무를 조사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원 규정 기준은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미하는 '추가된 아동'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추가되어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아동이다. 즉 신생아를 비롯하여 입양 아동, 친척 아동 등 같이 살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아동 가구 중 5.48%의 가구에 아동이 추가되었는데, 저소득 아동 가구는 8.18%, 일반 아동 가구에는 5.34%의 가구에 아동이 추가되었다.

〈표 9-3-7〉은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전체 추가된 아동 중에서 1.91%가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이었으며, 그 비율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0.00%, 일반 가구의 2.08%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하지만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9-3-7〉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2.5kg 이상	98.09	100.00	97.92
2.5kg 미만	1.91	0.00	2.08
계	100.00	100.00	100.00

주: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다음으로 <표 9-3-8>은 추가된 아동에게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추가된 아동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는 12.78%로 드러났다. 소득집단별로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0.00%, 일반 가구의 13.91%에서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9-3-8> 추가된 아동의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2.78	0.00	13.91
없다	87.22	100.00	86.09
계	100.00	100.00	100.00

주: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아동 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가.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실태

<표 9-3-9>는 아동 가구²²⁾를 대상으로 2022년 1년간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 아동 가구 중에서 아동 중 한 명이라도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 비율은 91.55% 였다. 저소득 가구의 59.55%, 일반 가구의 93.16%에 속한 아동이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했다.

<표 9-3-9>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함	91.55	59.55	93.16
이용하지 않음	8.45	40.45	6.84
계	100.00	100.00	100.00

22) 아동 가구는 17세 이하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기관의 종류를 아동별로 최대 3개까지 조사하였다(〈표 9-3-10〉 참조). 평균 사교육 및 보육 이용 기관의 수는 2.4개이며, 저소득 가구는 평균 1.8개, 일반 가구는 평균 2.4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10〉 사교육·보육 이용 기관 수

(단위: 개)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	2.4	0.04
저소득	2.0	1.8	0.18
일반	2.0	2.4	0.04

다음으로 〈표 9-3-11〉은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 기관의 종류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 아동 가구의 67.08%는 학원(47.22%), 과외(3.41%), 학습지(16.45%) 등 민간 학원 및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 아동 가구의 10.74%는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9.30%), 방과후교실(1.44%) 등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민간 시설인 학원 이용 비중은 전체 가구의 47.22%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는데, 저소득 아동 가구의 43.28%, 일반 아동 가구의 47.32%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아동 가구의 16.45%, 3.41%가 각각 학습지(저소득 가구의 9.92%, 일반 가구의 16.61%가 이용함), 개인 그룹 과외(저소득 가구의 0.82%, 일반 가구의 3.48%가 이용함)를 학원 다음 순위로 이용하고 있었다.

〈표 9-3-11〉 사교육·보육기관의 종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2.84	0.00	2.9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79	0.00	0.81
	민간 어린이집	7.45	2.80	7.56
	가정 어린이집	0.60	0.83	0.59
	직장 어린이집	0.49	0.00	0.50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 주는 유치원	2.67	3.70	2.65
	정규시간만 담당하는 유치원	4.48	8.46	4.38
민간 학원 및 사교육	학원	47.22	43.28	47.32
	개인·그룹 과외	3.41	0.82	3.48
	학습지	16.45	9.92	16.61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9.30	15.84	9.14
	방과후교실	1.44	7.60	1.28
기타	친·인척	0.96	0.00	0.99
	이웃	0.00	0.00	0.00
	공적지원 아이돌보미	0.32	5.62	0.18
	민간 아이돌보미	0.11	0.00	0.12
	기타	0.23	0.00	0.23
	그 외 보육시설	1.24	1.14	1.24
계		100.00	100.00	100.00

나. 가구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을 질문하였는데, 사교육비와 보육비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포함된다. 가구 전체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가구의 아동 수로 나누어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하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부표 6-3-9〉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500원, 저소득 가구는 23만 2,900원, 일반 가구는 36만 3,600원으로 나타났다(〈표 9-3-12〉 참조).

〈표 9-3-12〉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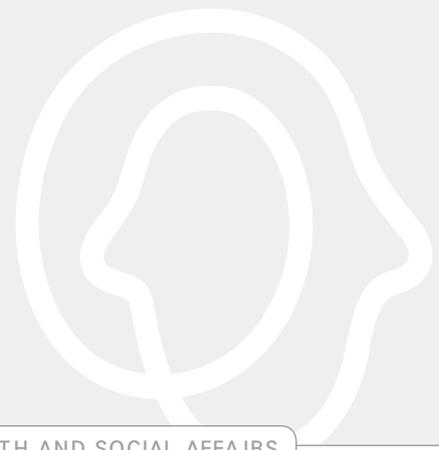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7.0	35.95	1.13
저소득	18.0	23.29	4.81
일반	28.0	36.36	1.15

가구 전체의 월평균 보육비를 가구의 아동 수로 나누어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를 계산하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는 〈부표 6-3-10〉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는 3만 8,5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소득 가구는 2,300원, 일반 가구는 3만 9,600원으로 나타났다(〈표 9-3-13〉 참조).

〈표 9-3-13〉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	3.85	0.34
저소득	0.0	0.23	0.21
일반	0.0	3.96	0.35



제 10 장

장애인 부가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제2절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제3절 일상생활

제 10 장 장애인 부가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18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17차 조사 완료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부가조사 대상은 총 1,576명이며 이 중 조사완료된 장애인 가구원은 1,373명이다. 일반가구 내 장애인은 577명, 저소득 가구 내 장애인은 796명이다.

응답자 중 남성은 54.83%, 여성은 45.17%이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남성이 49.90%, 여성이 50.10%이고,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남성이 59.25%, 여성이 40.75%이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4.55%, 20~30세 미만은 3.72%, 30~40세 미만은 4.95%, 40~50세 미만은 10.50%, 50~60세 미만은 19.03%, 60~65세 미만은 10.26%, 65세 이상이 46.99%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65세 이상이 5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 가구원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3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종류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2.27%, 지적장애가 13.44%, 시각장애가 9.71%, 뇌병변장애가 8.83%, 청각장애가 8.67%, 신장장애가 6.78%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이 52.46%,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율은 47.5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학력이 3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학력이 25.91%, 중학교 학력이 18.75%로 뒤를 이었다.

〈표 10-1-1〉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장애종류, 장애등급, 교육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54.83	49.90	59.25
	여성	45.17	50.10	40.75
계		100.00	100.00	100.00
연령대	20세 미만	4.55	2.74	6.17
	20~30세 미만	3.72	1.67	5.56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0~40세 미만	4.95	2.98	6.73
	40~50세 미만	10.50	7.94	12.81
	50~60세 미만	19.03	15.63	22.08
	60~65세 미만	10.26	10.97	9.62
	65세 이상	46.99	58.07	37.03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종류	지체장애	42.27	42.94	41.64
	뇌병변장애	8.83	7.84	9.72
	시각장애	9.71	11.74	7.89
	청각장애	8.67	8.91	8.46
	언어장애	0.28	0.39	0.18
	지적장애	13.44	11.27	15.39
	자폐성장애	1.54	1.27	1.78
	정신장애	5.67	8.86	2.81
	신장장애	6.78	3.63	9.62
	심장장애	0.15	0.26	0.06
	호흡기장애	0.81	1.05	0.60
	간장애	0.33	0.22	0.44
	안면장애	0.31	0.00	0.58
	장루·요루장애	0.44	0.74	0.16
	간질장애	0.77	0.88	0.67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7.54	49.02	46.2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2.46	50.98	53.79
계		100.00	100.00	100.00
교육수준	미취학	0.19	0.00	0.36
	무학	6.46	11.15	2.24
	초등학교	25.91	33.87	18.76
	중학교	18.75	19.94	17.68
	고등학교	33.72	29.60	37.44
	전문대학	5.73	3.80	7.46
	대학교	6.89	1.34	11.88
	대학원(석사)	1.90	0.30	3.33
	대학원(박사)	0.45	0.00	0.85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15차에서 추가된 설문 문항으로, 전반적으로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을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느끼는 장애로 인한 차별은 40.69%로 ‘별로 느끼지 않는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31.62%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비율이 높았다. ‘가끔 느낀다’의 비율은 2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에 대한 응답은 45.73%로 ‘약간 많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별로 없다’의 비율이 32.24%로 높았다.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처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10가지 상황별에 대한 차별 경험 중 사례 수가 적은 입학·전학 시의 차별과 학교생활(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에서의 차별은 장애인부가조사에서 수집된 아동과 청소년의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기초분석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 취업 시의 차별이 7.25%로 가장 높았고, 보험제도 상의 차별 경험 비율이 7.05%,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이 5.43%, 그리고 지역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등) 이용 시 차별이 3.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2-1〉 전반적으로 느끼는 장애로 인한 차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항상 느낀다	4.85	5.54	4.24
가끔 느낀다	22.84	22.90	22.79
별로 느끼지 않는다	40.69	44.24	37.50
전혀 느끼지 않는다	31.62	27.32	35.47
계	100.00	100.00	100.00

〈표 10-2-2〉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7.57	7.31	7.80
별로 없다	32.24	32.02	32.44
약간 많다	45.73	46.72	44.84
매우 많다	14.46	13.95	14.92
계	100.00	100.00	100.00

〈표 10-2-3〉 각종 상황별(8) 차별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결혼 전 및 결혼 생활 중의 차별	1.72	1.48	1.84
취업 시의 차별	7.25	7.22	7.26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5.43	7.79	4.72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차별	0.95	0.00	1.19
보험제도상 차별	7.05	2.33	8.70
의료기관 이용 시 차별	3.15	3.37	2.95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 포함) 차별	0.66	0.00	1.24
지역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등) 이용 시 차별	3.89	4.10	3.71

주 1) 지난 1년간 해당 영역에서 활동을 한 경우, 응답 대상이 됨.

2) 일부 항목(결혼 전 및 결혼 생활 중의 차별, 취업 시의 차별,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차별, 보험제도상 차별,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 포함)의 차별)은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8가지 차별 상황별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업 시의 차별,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보험제도 상 차별, 의료기관 이용 시 차별, 지역생활 이용 시 차별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참는 수준을 넘어서 항의하는 수준까지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이용 시 차별의 경우에는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고발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에서만 1.99%로 항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가구 장애인은 취업 시 차별에서 7.39%, 보험제도 상 차별에서 3.75%, 의료기관 이용 시 차별에서 4.43%, 지역생활 차별에서 8.42% 항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지역생활 이용 시 차별에 있어 고발하는 경우가 6.11%,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4.05%로 나타났다.

〈표 10-2-4〉 각종 상황별(8)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가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결혼 전 및 결혼 생활 중의 차별	무시한다	50.07	51.78	49.47
	참는다	49.93	48.22	50.53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취업 시의 차별	무시한다	47.92	50.00	46.30
	참는다	47.92	50.00	46.31
	항의한다	4.16	0.00	7.39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무시한다	49.28	48.30	50.00
	참는다	49.28	48.30	50.00
	항의한다	0.84	1.99	0.00
	고발한다	0.30	0.70	0.00
	기타	0.30	0.70	0.00
계		100.00	100.00	100.00
운전면허 제도상 (취득시)차별	무시한다	0.00	0.00	0.00
	참는다	0.00	0.00	0.00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0.00	0.00	0.00
보험제도상 차별	무시한다	37.67	50.00	36.10
	참는다	56.03	50.00	56.80
	항의한다	3.33	0.00	3.75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2.97	0.00	3.34
계		100.00	100.00	100.00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 차별	무시한다	47.04	46.27	47.79
	참는다	50.27	52.80	47.79
	항의한다	2.70	0.93	4.43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정보통신 이용 시 (방송포함) 차별	무시한다	0.00	0.00	0.00
	참는다	100.00	0.00	100.00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0.00	100.00
지역생활(음식점, 극장, 공원장, 체육시설 등) 이용 시 차별	무시한다	42.97	50.99	37.37
	참는다	46.09	49.01	44.05
	항의한다	4.96	0.00	8.42
	고발한다	3.60	0.00	6.11
	기타	2.38	0.00	4.05
계		100.00	100.00	100.00

- 주 1)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했다'라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2) 일부 항목[결혼 전 및 결혼 생활 중의 차별, 취업 시의 차별,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차별, 보험제도상 차별,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 포함)의 차별]은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차별은 대처방법에 대한 사례 수가 없었음.

〈표 10-2-5〉의 학대를 받은 경험 유무와 비율은 이번 18차에 추가된 문항으로 장애인의 학대, 폭력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평생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84.48%로 가장 높았고, 지난 1년 간 없다는 응답이 14.77%, 지난 해 1~2번 경험했다는 응답이 0.58%, 6번 이상이 0.09%, 3~5번 경험응답이 0.0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15%가 자신의 생애 중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경험을 평생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81.53%, 일반 가구 장애인이 87.14%로,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일반 가구 장애인에 비해 경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경우, 평생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65%로 가장 높았고, 지난 1년 간 없다는 응답이 2.23%, 지난 해 1~2번

경험했다는 응답이 0.12%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에 관한 학대의 경우, 평생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97.60%로 가장 높았고, 지난 1년 간 없다는 응답이 2.25%, 지난 해 1~2번이 0.12%, 6번 이상이 0.03%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에 대한 경우, 평생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96.92%, 지난 1년 간 없음이 2.74%, 지난 해 1~2번 경험이 0.24%, 3~5번이 0.09%, 6번 이상이 0.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2-5〉 학대를 받은 경험 유무와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	평생 경험한 적 없음	84.48	81.53	87.14
	지난 1년 간 없음	14.77	17.76	12.08
	1~2번	0.58	0.35	0.78
	3~5번	0.08	0.18	0.00
	6번 이상	0.09	0.18	0.00
	계	100.00	100.00	100.00
성적 행위를 강요받은 경험	평생 경험한 적 없음	97.65	98.12	97.22
	지난 1년 간 없음	2.23	1.88	2.55
	1~2번	0.12	0.00	0.23
	3~5번	0.00	0.00	0.00
	6번 이상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휠체어, 지팡이 등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받은 경험	평생 경험한 적 없음	97.60	97.23	97.93
	지난 1년 간 없음	2.25	2.77	1.78
	1~2번	0.12	0.00	0.23
	3~5번	0.00	0.00	0.00
	6번 이상	0.03	0.00	0.06
	계	100.00	100.00	100.00
약먹기, 화장실 가기 등 중요한 개인적 욕구에 대해 도와주기를 거부당한 경험	평생 경험한 적 없음	96.92	97.57	96.35
	지난 1년 간 없음	2.74	1.99	3.40
	1~2번	0.24	0.25	0.23
	3~5번	0.09	0.18	0.02
	6번 이상	0.01	0.01	0.00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한 달 동안 외출(목발,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외출 포함)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거의 매일 했다’는 응답이 64.82%로 가장 많았다. 주 3~4회 외출했다는 응답은 16.75%, 주 1~2회 외출했다는 응답은 9.13%로 나타났다.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거의 매일 외출한다가 72.79%이었으나,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55.95%로 나타났다. 월 3회 이내로 외출하거나 거의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12.13%)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6.7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6〉 외출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거의 매일	64.82	55.95	72.79
주 3~4회	16.75	20.19	13.65
주 1~2회	9.13	11.73	6.79
월 3회 이내	4.68	5.41	4.03
거의 외출하지 않음	4.62	6.72	2.74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한 달 동안 월 3회 이내로 외출하거나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54.28%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일반 가구에서 70.62%로 상당히 높았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27.30%로 뒤를 이었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은 ‘교통이 불편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져서, 도움제공자가 시간이 없어서, 기타’라는 응답비율이 일반 가구 장애인보다 높았다.

〈표 10-2-7〉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교통이 불편해서	1.52	2.31	0.25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4.17	5.73	1.64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54.28	44.14	70.62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0.00	0.00	0.00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27.30	34.76	15.28
주위의 시선 때문에	4.94	1.35	10.73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0.75	1.22	0.00
도움제공자가 시간이 없어서	4.42	6.25	1.48
기타	2.62	4.24	0.00
계	100.00	100.00	100.00

제3절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에게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움 시간이 많은 순으로 3명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원 번호도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만을 분석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1순위는 부모가 가장 많아 40.0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25.50%, 자녀 9.70% 순이었다. 일반 가구의 장애인은 1순위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부모, 조부모, 기타가족, 유료 활동지원사(유료활동보조인)과 무료활동지원사(무료 활동보조인)의 비중이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부모의 경우, 일반 가구의 장애인은 51.00%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경우(28.72%)보다 약 2배 가까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은 1순위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유료 간병인, 요양보호사, 무료가정봉사원의 비중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2순위는 부모가 가장 많아 22.3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녀(18.16%), 요양보호사(13.78%)의 순이었다. 일반 가구의 장애인은 2순위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부모, 손자녀, 기타가족, 이웃, 유료 활동지원사(유료 활동보조인), 무료활동지원사, 장애아동 돌보미의 비중이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유료 활동지원사(유료 활동보조인)은 15.29%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 장애인 6.7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2순위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친척, 친구, 무료 가정봉사원, 요양보호사 비중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23.80%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6.86%)보다 4배 가까이 크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3순위로는 형제자매가 가장 많아 25.35%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 17.65%, 부모 17.50%, 조부모 12.34% 순이었다. 일반 가구의 장애인 3순위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유료 활동지원사, 무료 활동지원사, 기타의 비중이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3순위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자녀,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요양보호사의 비중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3-1〉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1순위/2순위/3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배우자	25.50	27.73	23.34	2.56	4.13	1.48	0.43	0.00	0.58
부모	40.04	28.72	51.00	22.30	11.79	29.56	17.50	0.00	23.70
자녀 (며느리, 사위 포함)	9.70	14.88	4.68	18.16	22.63	15.07	17.65	19.30	17.06
형제자매	5.36	6.81	3.95	12.25	15.32	10.14	25.35	16.79	28.40
조부모	0.93	0.00	1.83	3.94	6.83	1.94	12.34	31.69	5.48
손자녀	0.00	0.00	0.00	0.09	0.08	0.10	1.04	1.04	1.04
기타가족	0.03	0.00	0.07	2.05	0.00	3.46	0.00	0.00	0.00
친척	0.54	0.00	1.07	1.63	2.72	0.88	0.92	3.52	0.00
친구	0.00	0.00	0.00	0.15	0.36	0.00	1.71	6.52	0.00
이웃	0.15	0.31	0.00	3.38	2.03	4.31	2.61	4.65	1.89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유료 가정봉사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유료 간병인	1.12	1.77	0.49	0.00	0.00	0.00	0.00	0.00	0.00
유료 활동지원사 (유료 활동보조인)	2.85	0.00	5.61	11.80	6.75	15.29	8.32	0.00	11.27
무료 가정봉사원	0.05	0.10	0.00	0.17	0.34	0.06	0.00	0.00	0.00
무료 간병인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무료 활동지원사 (무료 활동보조인)	3.65	1.95	5.29	6.55	2.91	9.07	5.91	3.81	6.66
요양보호사	9.89	17.35	2.67	13.78	23.80	6.86	3.68	12.68	0.48
장애아동 돌보미	0.00	0.00	0.00	1.06	0.00	1.78	0.00	0.00	0.00
기타	0.19	0.38	0.00	0.13	0.31	0.00	2.54	0.00	3.44
없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로 응답한 장애인들에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도움이 충분한지를 물었다. ‘매우 충분하다’, 혹은 ‘충분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72.81%이며, ‘부족한 편이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장애인 27.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29.32%로 일반 가구의 장애인 25.1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3-2〉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충분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충분하다	10.16	3.47	16.64
충분한 편이다	62.65	67.21	58.24
부족한 편이다	24.57	26.38	22.81
매우 부족하다	2.62	2.94	2.31
계	100.00	100.00	100.00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로 응답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지, 장래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와 이용한다면 본인부담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22.45%를 차지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에서 6.97%로 나타나 일반 가구 37.44%보다 30.47%p 낮게 나타났다.

〈표 10-3-3〉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한다	22.45	6.97	37.44
이용하지 않는다	77.55	93.03	62.56
계	100.00	100.00	100.00

앞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현재 이용 중이라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08%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래 이용 의향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48.15%로 나타나 일반 가구 장애인 71.62%보다 23.47%p 낮게 나타났다.

〈표 10-3-4〉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의향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겠다	60.08	48.15	71.62
이용하지 않겠다	39.92	51.85	28.38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개월 동안 주변에서 경제적 또는 일상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물질적 지원 혹은 보살핌을

받았는지를 질문하였다. 물질적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보살핌은 현금, 현물 지원을 제외한 전화통화, 가사지원, 자녀양육, 보일러 점검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45.17%로 주변의 도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및 동료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10.09%,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9.68% 순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은 일반가구 장애인에 비해서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 친척,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요양보호사의 도움 비율이 일반 가구의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에 비해서 친구 및 동료,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의 도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3-5〉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도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	45.17	54.03	37.21
친척(3촌 이상)	4.78	5.17	4.42
친구 및 동료	10.09	9.03	11.05
이웃	5.19	6.23	4.26
종교단체	6.02	9.28	3.08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0.85	1.79	0.01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8.65	13.90	3.93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9.68	16.90	3.20
학교(담임교사, 상담실 교사 등)	0.45	0.12	0.75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7.29	3.69	10.53
요양보호사	7.71	11.85	4.00
장애아동 돌보미	0.00	0.00	0.00
기타	0.30	0.26	0.34

주: 주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지난 1개월 간 주변으로부터 받은 물질적 도움 중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의 도움 횟수가 가장 많았는데, 평균 3.73회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형제자매가 평균 2.44회, 종교단체가 평균 2.19회, 기타가 평균 1.82회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은 일반가구의 장애인 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주변으로부터 받는 도움 횟수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이웃,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학교(담임교사, 상담실 교사 등),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의 경우는 일반 가구에서 도움을 받는 횟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도움, 학교(담임교사, 상담실 교사 등)의 도움, 기타의 도움은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0-3-6〉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물질적 지원 정도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형제자매	전체	1.00	2.44	0.15
	저소득	2.00	3.04	0.23
	일반	1.00	1.65	0.14
친척(3촌 이상)	전체	0.00	0.60	0.11
	저소득	0.00	0.83	0.16
	일반	0.00	0.36	0.14
친구 및 동료	전체	0.00	0.51	0.12
	저소득	0.00	0.84	0.22
	일반	0.00	0.27	0.10
이웃	전체	0.00	0.94	0.17
	저소득	0.00	0.56	0.11
	일반	1.00	1.44	0.43
종교단체	전체	0.00	2.19	0.53
	저소득	1.00	2.66	0.65
	일반	0.00	0.90	0.91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전체	1.00	1.78	0.84
	저소득	1.00	1.79	0.87
	일반	0.00	0.00	-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전체	4.00	3.73	0.50
	저소득	4.00	4.30	0.59
	일반	0.00	1.94	0.86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전체	1.00	0.83	0.04
	저소득	1.00	0.81	0.04
	일반	1.00	0.91	0.07
학교(담임교사, 상담실 교사 등)	전체	0.00	0.14	0.36
	저소득	0.00	0.00	-
	일반	0.00	0.16	0.43
활동지원사 (활동보조인)	전체	0.00	0.92	0.59
	저소득	0.00	0.01	0.02
	일반	0.00	1.20	0.83
요양보호사	전체	0.00	0.38	0.15
	저소득	0.00	0.51	0.20
	일반	0.00	0.06	0.07
장애아동돌보미	전체	-	-	-
	저소득	-	-	-
	일반	-	-	-
기타	전체	0.00	1.82	2.03
	저소득	0.00	4.46	4.81
	일반	0.00	0.00	-

주: 일부 항목[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도움, 학교(담임교사 등)의 도움, 기타]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지난 1개월 간 주변으로부터 받은 보살핌 중 요양보호사의 보살핌 횟수가 가장 많았는데, 평균 20.44회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은 일반가구의 장애인 보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 이웃, 종교단체,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요양보호사에게서 도움을 받는 횟수가 더 많았다. 일반가구의 장애인은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에 비해 친척, 친구 및 동료,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학교, 활동지원사에게서 도움을 받는 횟수가 저소득 가구 장애인보다 더 많았다. 다만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도움, 학교(담임교사, 상담실 교사 등)의 도움, 기타의 도움은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0-3-7〉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보살핌 정도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형제자매	전체	4.00	6.79	0.30
	저소득	3.00	7.19	0.41
	일반	4.00	6.27	0.43
친척(3촌 이상)	전체	2.00	4.09	0.59
	저소득	2.00	2.70	0.51
	일반	3.00	5.55	1.17
친구 및 동료	전체	4.00	5.94	0.51
	저소득	3.00	5.23	0.73
	일반	4.00	6.46	0.72
이웃	전체	3.00	4.50	0.47
	저소득	3.00	5.28	0.62
	일반	2.00	3.47	0.69
종교단체	전체	4.00	4.09	0.41
	저소득	4.00	4.39	0.56
	일반	4.00	3.28	0.34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전체	0.00	1.55	0.89
	저소득	0.00	1.44	0.86
	일반	15.00	15.00	-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전체	0.00	5.21	0.77
	저소득	0.00	2.37	0.53
	일반	20.00	14.22	1.97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전체	0.00	0.34	0.09
	저소득	0.00	0.36	0.10
	일반	0.00	0.23	0.10
학교(담임교사, 상담실 교사 등)	전체	20.00	17.41	2.70
	저소득	3.00	3.00	-
	일반	20.00	19.53	1.30
활동지원사 (활동보조인)	전체	20.00	19.91	0.72
	저소득	20.00	16.03	1.39
	일반	20.00	21.13	0.77
요양보호사	전체	20.00	20.44	0.38
	저소득	20.00	20.55	0.41
	일반	20.00	20.14	0.92
장애아동돌보미	전체	-	-	-
	저소득	-	-	-
	일반	-	-	-
기타	전체	10.00	14.34	3.63
	저소득	20.00	16.75	6.76
	일반	8.00	12.67	4.39

주: 일부 항목(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도움, 학교(담임교사 등)의 도움, 기타)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이번 18차 부가조사에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및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제도 및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고 기존 사회에서 얼마나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3-8> 및 <표 10-3-9>와 같다. 우선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물었을 때, 매우 필요 또는 필요로 응답한 경우를 합산한 결과, 의료보장(신체건강)이 86.57%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득보장(83.16%),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보장(60.47%), 사회적 차별 금지(58.04%), 이동권 보장(57.74%), 의료보장(정신건강)(57.50%), 주거보장(57.26%)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경우, 일반 가구 장애인에 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신체건강, 정신건강),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부문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가 얼마나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매우 충분 또는 충분으로 응답한 경우를 합산한 결과, 소득보장(29.47%)이 가장 낮았고, 고용보장(32.69%), 사회적 차별 금지(39.23%),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40.56%), 이동권 보장(45.62%) 학대 방지(46.09%), 사회참여 보장(46.89%)이 뒤를 이어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위 7가지의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 의료보장(정신건강),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 보장, 사회참여 보장,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자기의사결정권 행사 지원 부문에서 일반 가구 장애인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10-3-8〉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원)나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소득보장	전혀 불필요	2.30	1.45	3.06
	불필요	14.54	12.02	16.81
	필요	48.77	49.57	48.05
	매우 필요	34.39	36.96	32.08
계		100.00	100.00	100.00
의료보장① (신체 건강)	전혀 불필요	2.56	1.69	3.34
	불필요	10.87	9.81	11.81
	필요	59.42	59.76	59.12
	매우 필요	27.15	28.74	25.73
계		100.00	100.00	100.00
의료보장② (정신 건강)	전혀 불필요	6.33	5.16	7.37
	불필요	36.17	33.11	38.92
	필요	42.44	47.88	37.57
	매우 필요	15.06	13.85	16.14
계		100.00	100.00	100.00
고용보장	전혀 불필요	13.45	14.76	12.28
	불필요	39.05	43.76	34.80
	필요	34.75	31.99	37.24
	매우 필요	12.75	9.49	15.68
계		100.00	100.00	100.00
주거보장	전혀 불필요	10.05	10.70	9.46
	불필요	32.69	26.56	38.19
	필요	36.51	38.89	34.38
	매우 필요	20.75	23.85	17.97
계		100.00	100.00	100.00
이동권 보장	전혀 불필요	7.29	4.61	9.70
	불필요	34.97	32.75	36.96
	필요	42.73	48.75	37.32
	매우 필요	15.01	13.89	16.02
계		100.00	100.00	100.00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 보장	전혀 불필요	10.42	9.74	11.04
	불필요	46.18	47.75	44.76
	필요	36.46	39.31	33.90
	매우 필요	6.94	3.20	10.30
계		100.00	100.00	100.00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육·교육 보장	전혀 불필요	27.47	29.10	26.02
	불필요	47.44	52.47	42.91
	필요	17.70	14.33	20.72
	매우 필요	7.39	4.10	10.35
계		100.00	100.00	100.00
사회 참여 보장	전혀 불필요	7.16	7.89	6.50
	불필요	47.85	50.68	45.32
	필요	37.29	34.94	39.40
	매우 필요	7.70	6.49	8.78
계		100.00	100.00	100.00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전혀 불필요	5.70	5.12	6.22
	불필요	33.83	33.44	34.18
	필요	51.92	54.83	49.30
	매우 필요	8.55	6.61	10.30
계		100.00	100.00	100.00
자기의사결정권 행사지원(치료, 약물, 입원 등)	전혀 불필요	12.88	10.10	15.37
	불필요	47.48	50.31	44.95
	필요	33.66	34.63	32.79
	매우 필요	5.98	4.96	6.89
계		100.00	100.00	100.00
학대 방지	전혀 불필요	16.99	14.83	18.93
	불필요	39.11	44.10	34.62
	필요	31.58	30.02	32.99
	매우 필요	12.32	11.05	13.46
계		100.00	100.00	100.00
사회적 차별 금지	전혀 불필요	8.61	8.53	8.68
	불필요	33.35	34.46	32.35
	필요	44.55	45.93	43.32
	매우 필요	13.49	11.08	15.65
계		100.00	100.00	100.00

〈표 10-3-9〉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원)나 서비스 충분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소득보장	매우 불충분	5.17	4.57	5.71
	불충분	65.35	70.49	60.76
	충분	27.64	24.25	30.67
	매우 충분	1.84	0.69	2.86
계		100.00	100.00	100.00
의료보장① (신체 건강)	매우 불충분	2.09	1.00	3.08
	불충분	34.55	34.01	35.04
	충분	58.27	60.22	56.50
	매우 충분	5.09	4.77	5.38
계		100.00	100.00	100.00
의료보장② (정신 건강)	매우 불충분	2.21	2.21	2.20
	불충분	46.65	49.26	44.31
	충분	47.77	47.31	48.19
	매우 충분	3.37	1.22	5.30
계		100.00	100.00	100.00
고용보장	매우 불충분	9.42	12.42	6.72
	불충분	57.89	60.26	55.78
	충분	30.30	26.67	33.56
	매우 충분	2.39	0.65	3.94
계		100.00	100.00	100.00
주거보장	매우 불충분	3.08	3.83	2.40
	불충분	37.67	36.42	38.79
	충분	53.34	56.79	50.24
	매우 충분	5.91	2.96	8.57
계		100.00	100.00	100.00
이동권 보장	매우 불충분	3.69	4.10	3.32
	불충분	50.69	52.58	48.99
	충분	41.87	42.20	41.57
	매우 충분	3.75	1.12	6.12
계		100.00	100.00	100.00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 보장	매우 불충분	1.61	1.24	1.93
	불충분	48.18	51.06	45.59
	충분	46.56	46.58	46.55
	매우 충분	3.65	1.12	5.93
계		100.00	100.00	100.00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육·교육 보장	매우 불충분	1.05	0.53	1.51
	불충분	26.08	25.53	26.56
	충분	66.17	68.33	64.24
	매우 충분	6.70	5.61	7.69
계		100.00	100.00	100.00
사회 참여 보장	매우 불충분	1.72	1.95	1.51
	불충분	51.39	53.24	49.73
	충분	44.25	43.92	44.54
	매우 충분	2.64	0.89	4.22
계		100.00	100.00	100.00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매우 불충분	2.91	1.80	3.92
	불충분	56.53	60.22	53.21
	충분	37.51	37.14	37.84
	매우 충분	3.05	0.84	5.03
계		100.00	100.00	100.00
자기의사결정권 행사지원(치료, 약물, 입원 등)	매우 불충분	1.47	0.81	2.06
	불충분	45.10	49.85	40.84
	충분	49.60	47.98	51.06
	매우 충분	3.83	1.36	6.04
계		100.00	100.00	100.00
학대 방지	매우 불충분	3.58	2.42	4.62
	불충분	50.33	51.40	49.36
	충분	41.83	44.16	39.74
	매우 충분	4.26	2.02	6.28
계		100.00	100.00	100.00
사회적 차별 금지	매우 불충분	3.28	1.79	4.61
	불충분	57.49	58.41	56.68
	충분	35.65	38.48	33.11
	매우 충분	3.58	1.32	5.60
계		100.00	100.00	100.00



- 정은희, 신재동, 우선희, 하은솔, 김지원, 박나영, ...김건. (2022).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희, 신재동, 한겨레, 우선희, 하은솔, 김지원, ...임은정. (2021).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신재동, 이병재, 우선희, 한겨레, 정다운, ...임은정. (2020). 202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 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오미애, 이주미, 이병재, 최준영, 김근혜, ...김정욱.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오미애,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이병재, ...김정욱.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오미애, 박형준,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신유미. (2017).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오미애, 박형준, 신재동, 정희선, ...함선유. (2016).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1. 일반적 특성

〈부표 1-1-1〉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가구 구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1.37	73.94	98.54
수급 가구	8.63	26.06	1.46
일반 수급 가구	8.18	24.93	1.28
조건부 수급 가구	0.43	1.07	0.17
특례 가구	0.02	0.06	0.0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2〉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1.37	73.94	98.54
수급 가구	8.63	26.05	1.46
가구원 전부 수급	7.11	22.94	0.60
가구원 중 일부 수급	1.52	3.11	0.8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3〉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가구 구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1.43	75.32	98.07
수급 가구	8.56	24.69	1.93
의료급여 1종	7.12	21.47	1.22
의료급여 2종	1.23	2.91	0.54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21	0.31	0.1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4〉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1.43	75.32	98.07
수급 가구	8.57	24.68	1.94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6.93	21.72	0.84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1.64	2.96	1.1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5〉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주거) 수급 가구 구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89.11	67.87	97.85
수급 가구	10.90	32.13	2.16
임차급여(특례 포함)	9.82	28.94	1.95
수선유지급여(특례 포함)	1.08	3.19	0.2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6〉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수급 가구 구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9.51	98.69	99.84
수급 가구	0.49	1.31	0.1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7〉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평균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수급자 수	표준오차
전체	1.4	0.08
저소득	1.4	0.10
일반	1.3	0.17

〈부표 1-1-8〉 가구원의 최종 학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 졸업 이하	4.32	9.31	3.95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90	37.28	26.13
전문대 졸업 이하	13.43	31.24	12.10
대학교 졸업 이하	54.90	22.16	57.34
대학원 졸업 이상	0.45	-	0.48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9〉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79.81	57.73	81.36
일반계(특목:과학고)	2.22	-	2.37
기타(자립형사립고, 국제고)	3.43	-	3.67
실업계(농업)	0.45	4.47	0.17
실업계(공업)	2.23	0.79	2.33
실업계(상업)	2.84	0.64	2.99
실업계(수산 및 해양)	0.43	-	0.46
실업계(종합)	0.21	-	0.22
특성화고	3.07	-	3.29
대안학교	0.68	-	0.73
검정고시	2.66	36.38	0.29
자율고(자율형고, 기숙형고)	1.98	-	2.12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1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0〉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9.80	5.54	10.10
부산광역시	13.24	4.00	13.89
대구광역시	6.33	7.75	6.23
인천광역시	4.81	-	5.15
광주광역시	3.50	-	3.74
대전광역시	4.43	-	4.74
울산광역시	3.17	-	3.39
경기도	19.31	-	20.66
강원도	4.34	-	4.65
충청북도	2.62	3.30	2.58
충청남도	7.26	3.40	7.53
전라북도	5.19	16.72	4.39
전라남도	4.17	17.79	3.21
경상북도	3.27	0.66	3.45
경상남도	3.77	-	4.04
제주도	1.40	4.47	1.18
검정고시	2.66	36.38	0.29
외국	0.31	-	0.33
세종특별자치시	0.42	-	0.45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1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1〉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10.63	28.39	9.62
사회계열(경상계열)	5.31	1.34	5.53
사회계열(법학계열)	2.87	3.50	2.83
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2.62	3.22	2.58
교육계열	3.08	-	3.25
공학계열	38.85	32.25	39.23
자연계열	7.44	-	7.86
의약계열(의학)	5.97	30.22	4.59
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10.64	-	11.24
예체능계열	11.70	1.08	12.30
기타	0.91	-	0.96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1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2〉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17.65	1.47	18.87
부산광역시	11.89	34.79	10.17
대구광역시	2.99	-	3.22
인천광역시	2.89	-	3.11
광주광역시	1.46	-	1.57
대전광역시	6.19	10.24	5.89
울산광역시	2.45	20.24	1.12
경기도	21.76	-	23.40
강원도	1.77	3.40	1.64
충청북도	4.53	13.59	3.85
충청남도	4.62	-	4.97
전라북도	3.42	10.71	2.88
전라남도	2.31	-	2.49
경상북도	10.49	5.56	10.86
경상남도	3.76	-	4.04
제주도	1.19	-	1.28
외국	1.19	-	1.28
세종특별자치시	0.63	-	0.68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1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3〉 가구주의 최종 학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 졸업 이하	6.80	-	6.90
고등학교 졸업 이하	7.07	18.69	6.91
전문대 졸업 이하	22.71	-	23.04
대학교 졸업 이하	60.54	81.31	60.24
대학원 졸업 이상	2.88	-	2.92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 중 가구주 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4〉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93.31	77.44	93.56
실업계(농업)	1.06	-	1.07
실업계(공업)	2.64	22.56	2.33
실업계(상업)	2.99	-	3.04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5〉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24.56	22.56	24.59
부산광역시	24.54	-	24.92
대구광역시	4.14	58.75	3.29
인천광역시	1.26	-	1.28
대전광역시	1.49	-	1.51
울산광역시	6.41	-	6.51
경기도	13.84	-	14.05
강원도	1.27	-	1.29
충청남도	7.58	-	7.70
전라북도	7.31	-	7.43
전라남도	0.98	-	1.00
경상북도	3.37	18.69	3.13
경상남도	3.26	-	3.31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6〉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3.28	-	3.33
사회계열(경상계열)	2.22	27.75	1.87
사회계열(법학계열)	14.78	72.25	14.00
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1.61	-	1.63
공학계열	47.29	-	47.94
의약계열(의학)	15.72	-	15.94
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15.09	-	15.30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7〉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3.46	27.75	3.13
부산광역시	14.17	-	14.37
대구광역시	20.78	72.25	20.08
대전광역시	1.61	-	1.63
울산광역시	4.34	-	4.40
경기도	31.97	-	32.41
강원도	9.21	-	9.33
충청남도	4.07	-	4.13
전라북도	4.60	-	4.67
경상북도	3.19	-	3.24
경상남도	2.60	-	2.63
계	100.00	100.00	100.00

주: 18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9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경제활동 상태

〈부표 1-2-1〉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 계약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 형태	직접고용	91.13	88.42	91.32
	간접고용	5.29	8.64	5.05
	특수고용	3.58	2.95	3.63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15.94	67.14	12.28
	전일제	84.06	32.86	87.72
근로 계약 기간 설정 여부	계약 기간 정해짐	34.19	67.13	31.84
	계약 기간 정해지지 않음	65.81	32.87	68.16
근로 지속 가능성	계속 근로 가능	60.47	19.13	63.43
	계속 근로 불가능	39.53	80.87	36.5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2〉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해진 고용 계약 기간의 만료	46.54	56.43	44.98
목시적·관행적인 계약 종료	8.80	6.51	9.16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2.04	34.51	43.23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의 종료	2.47	2.24	2.51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전에 일하던 사람 복귀	0.07	0.32	0.03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0.09	0.00	0.1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3〉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동조합 없음	73.96	67.90	74.39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 대상이 안 됨	8.96	28.44	7.57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 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7.75	0.59	8.2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9.33	3.07	9.7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4〉 취업 가구원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직, 폐업 경험 여부	있다	10.93	28.70	9.44
	없다	89.07	71.30	90.56
사직, 폐업 사유	파산, 폐업, 휴업 등 정리 해고	4.27	2.64	4.68
	권고사직/명예퇴직	0.85	0.00	1.07
	정년퇴직	0.11	0.00	0.14
	정년퇴직	0.75	0.15	0.90
	계약 기간 만료	35.19	77.26	24.42
	소득/보수 적음	7.73	3.62	8.79
	일거리 부족	7.66	6.22	8.03
	일의 장래성 없음	5.96	1.44	7.12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6.15	0.19	7.67
	근로시간/근로 환경 열악	9.25	3.69	10.68
	자기(가족) 사업 시작	2.83	0.00	3.56
	가사 문제	1.02	0.40	1.18
	건강/고령 등	2.63	1.04	3.03
	거리가 멀어서	1.63	0.79	1.84
	학업/군 입대 등	1.51	0.00	1.89
	좀 더 좋은 일자리	9.99	2.36	11.94
	출산/육아	0.56	0.00	0.70
	기타	1.92	0.19	2.3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5〉 가구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 기간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4.66	2.15	5.96
	아니다	95.34	97.85	94.04
구직 기간	1년 미만	81.93	68.85	84.39
	1년 이상 3년 미만	16.22	28.12	13.97
	3년 이상 5년 미만	1.86	3.03	1.64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8.12	11.31	7.52

〈부표 1-2-6〉 가구원의 구직상 어려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이 때문에	20.65	18.99	20.97	8.97	13.88	7.74
성차별 때문에	-	-	-	-	-	-
외모 때문에	0.29	0.00	0.35	-	-	-
학력이 낮기 때문에	3.50	0.00	4.15	3.80	4.66	3.58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17.28	18.02	17.15	11.62	21.95	9.01
경력이 부족해서	10.06	36.98	5.04	21.03	13.55	22.92
건강 문제로	3.11	3.07	3.12	2.17	5.09	1.44
일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서	12.25	0.62	14.42	19.44	17.47	19.94
신용불량자라서	-	-	-	-	-	-
가사일 때문에	-	-	-	0.19	0.00	0.24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3.73	0.00	4.43	-	-	-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	-	-	-	-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12.16	15.92	11.46	8.39	6.74	8.81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0.80	0.97	0.76	6.20	9.94	5.26
근로 조건이나 근로 환경이 열악해서	6.62	5.44	6.84	5.94	1.93	6.95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4.07	0.00	4.82	6.52	3.76	7.22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5.49	0.00	6.51	5.57	1.03	6.72
기타	-	-	-	0.14	0.00	0.18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표 1-2-7〉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0	279	6.25
저소득	250	237	12.68
일반	250	272	5.71

〈부표 1-2-8〉 비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12.07	6.78	14.92
	아니다	87.93	93.22	85.08
근로 가능 여부	그렇다	27.57	36.47	25.39
	아니다	72.43	63.53	74.6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9〉 가구원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6.98	2.37	8.60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50.14	34.60	55.61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9.25	3.23	11.36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69	6.49	0.00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4.08	12.90	0.98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27.86	40.40	23.45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0〉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0.47	0.00	0.52
기능장	-	-	-
기사	6.63	3.13	6.95
산업 기사	5.71	0.00	6.22
기능사	19.52	4.97	20.82
기타 공인 면허 자격증	64.95	91.90	62.55
자격증 없는 기능자	2.71	0.00	2.95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 해당 사례는 11케이스이며, 일반 해당 사례는 108케이스임.

〈부표 1-2-11〉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5.11	0.00	5.57
화공·세라믹			
전기·전자	5.94	0.00	6.47
통신	0.44	0.00	0.48
조선			
항공			
섬유			
토목·건축	6.12	0.00	6.67
광업 자원			
정보처리	11.90	52.58	8.27
국토 개발			
농림	0.18	0.00	0.20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환경	2.13	0.00	2.32
안전관리	3.15	0.00	3.44
산업 응용	0.14	0.00	0.15
교통	5.22	0.00	5.69
공예			
사무 관리	11.52	0.00	12.55
음표품·식료품	4.69	10.81	4.14
위생	3.57	2.53	3.66
보건·의료·사회	29.02	19.09	29.90
금융·무역·유통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3.94	14.99	2.95
외국어·관광			
기타	6.93	0.00	7.54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 해당 사례는 11케이스이며, 일반 해당 사례는 108케이스임.

〈부표 1-2-12〉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 계약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 형태	직접고용	91.39	88.42	91.68
	간접고용	5.14	8.58	4.81
	특수고용	3.47	3.01	3.51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11.40	66.91	5.93
	전일제	88.60	33.09	94.07
근로 계약 기간 설정 여부	계약 기간 정해짐	30.05	72.04	25.92
	계약 기간 정해지지 않음	69.95	27.96	74.08
근로 지속 가능성	계속 근로 가능	65.77	17.19	70.55
	계속 근로 불가능	34.23	82.81	29.4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3〉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해진 고용 계약 기간의 만료	49.84	61.06	46.73
목시적·관행적인 계약 종료	7.24	5.43	7.74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39.65	30.47	42.19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의 종료	3.15	2.86	3.24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전에 일하던 사람 복귀	0.09	0.19	0.0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0.03	0.00	0.0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4〉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동조합 없음	69.63	61.39	70.44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 대상이 안 됨	9.86	34.93	7.40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 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8.21	0.49	8.96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12.30	3.19	13.2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5〉 취업 가구주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직, 폐업 경험 여부	있다	11.42	33.86	8.93
	없다	88.58	66.14	91.07
사직, 폐업 사유	파산, 폐업, 휴업 등 정리 해고	4.59	1.81	5.76
	권고사직/명예퇴직	0.53	0.00	0.76
	정년퇴직	0.19	0.00	0.27
	계약 기간 만료	1.24	0.18	1.69
	계약 기간 만료	42.39	80.46	26.37
	소득/보수 적음	7.25	4.33	8.47
	일거리 부족	8.24	6.27	9.06
	일의 장래성 없음	4.30	1.27	5.57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4.33	0.24	6.05
	근로시간/근로 환경 열악	6.44	0.77	8.83
	자기(가족) 사업 시작	3.55	0.00	5.05
	가사 문제	1.65	0.49	2.14
	건강/고령 등	1.12	0.82	1.25
	거리가 멀어서	1.24	0.96	1.36
	학업/군 입대 등 좀 더 좋은 일자리	10.45	2.40	13.84
	출산/육아			
	기타	2.49	0.00	3.5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6〉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4.45	1.60	8.97
	아니다	95.55	98.40	91.03
구직기간	1년 미만	86.98	75.54	90.31
	1년 이상 3년 미만	7.84	18.52	4.72
	3년 이상 5년 미만	5.19	5.94	4.97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10.32	11.32	10.04

〈부표 1-2-17〉 가구주의 구직상 어려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이 때문에	29.24	26.05	30.14	15.48	20.77	13.80
성차별 때문에						
외모 때문에	0.80	0.00	1.03			
학력이 낮기 때문에	0.83	0.00	1.06	2.33	9.69	0.00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15.44	18.43	14.59	10.77	10.36	10.90
경력이 부족해서	5.22	13.66	2.84	7.80	7.73	7.83
건강 문제로	4.59	6.01	4.19	2.54	10.57	0.00
일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서	13.02	0.00	16.70	19.65	11.96	22.09
신용불량자라서						
가사일 때문에				0.47	0.00	0.61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13.43	25.18	10.11	7.67	8.28	7.48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10	0.00	1.41	6.02	20.65	1.38
근로 조건이나 근로 환경이 열악해서	6.48	10.67	5.30	6.66	0.00	8.77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9.84	0.00	12.62	10.54	0.00	13.88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10.06	0.00	13.25
기타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표 1-2-18〉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300	291	10.81
저소득	250	239	22.07
일반	300	306	11.68

〈부표 1-2-19〉 비경제활동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8.76	5.84	13.78
	아니다	91.24	94.16	86.22
근로 가능 여부	그렇다	30.50	33.80	28.09
	아니다	69.50	66.20	71.9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20〉 가구주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7.94	2.13	13.03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56.27	56.68	55.91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0.50	0.60	0.40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0.37	0.00	0.70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34.92	40.59	29.96
기타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21〉 가구주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1.18	0.00	1.40
기능장	-	-	-
기사	9.20	4.09	10.15
산업 기사	3.93	0.00	4.65
기능사	29.37	0.00	34.80
기타 공인 면허 자격증	56.32	95.91	49.00
자격증 없는 기능자	-	-	-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 해당 사례는 8케이스이며, 일반 해당 사례는 39케이스임.

〈부표 1-2-22〉 가구주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9.98	0.00	11.82
화공·세라믹			
전기·전자	10.34	0.00	12.25
통신			
조선			
항공			
섬유			
토목·건축	8.39	0.00	9.94
광업 자원			
정보처리	10.04	51.51	2.37
국토 개발			
농림	0.46	0.00	0.55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환경	5.31	0.00	6.29
안전관리	3.84	0.00	4.56
산업 응용	0.35	0.00	0.41
교통	6.50	0.00	7.71
공예			
사무 관리	6.87	0.00	8.14
음료품·식료품	4.07	7.65	3.41
위생	3.02	3.31	2.97
보건·의료·사회	19.47	17.92	19.76
금융·무역·유통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4.52	19.61	1.72
외국어·관광			
기타	6.83	0.00	8.09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 해당 사례는 8케이스이며, 일반 해당 사례는 39케이스임.

[부록 2] 가구 경제

1. 소득

〈부표 2-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 원 미만	4.96	17.01	-
1,000만~2,000만 원 미만	19.07	63.57	0.76
2,000만~3,000만 원 미만	11.45	16.07	9.55
3,000만~4,000만 원 미만	9.70	2.76	12.56
4,000만~5,000만 원 미만	8.86	0.51	12.29
5,000만 원 이상	45.96	0.08	64.84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에서 3,000만~5,000만 원 구간의 경상소득이 나타난 것은 근로소득은 적으나 규모가 큰 가구의 공공부조 소득이 높기 때문임.

〈부표 2-1-2〉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시 근로소득	없다	61.09	97.75
	있다	38.91	2.25
임시·일용 근로소득	없다	53.22	66.00
	있다	46.78	34.00
사업소득	없다	85.16	95.17
	있다	14.84	4.83
농림축산어업소득	없다	92.27	92.57
	있다	7.73	7.43
부업소득	없다	94.98	92.67
	있다	5.02	7.33
계	100.00	100.00	100.00

주: 부업소득의 비율이 3차 조사의 7.5%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4차 조사부터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을 각각 조사하였기 때문임.

〈부표 2-1-3〉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시 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	61.39	97.90	46.37
	500만~1,000만 원 미만	0.43	0.49	0.40
	1,000만~1,500만 원 미만	0.45	0.31	0.51
	1,500만~2,000만 원 미만	0.73	0.31	0.90
	2,000만~2,500만 원 미만	1.43	0.20	1.94
	2,500만~3,000만 원 미만	3.11	0.75	4.08
	3,000만 원 이상	32.46	0.04	45.79
	계	100.00	100.00	100.00
임시·일용 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	63.42	85.45	54.35
	500만~1,000만 원 미만	5.22	6.46	4.71
	1,000만~1,500만 원 미만	5.03	4.99	5.04
	1,500만~2,000만 원 미만	4.32	1.73	5.38
	2,000만~2,500만 원 미만	4.43	0.89	5.88
	2,500만~3,000만 원 미만	3.87	0.23	5.36
	3,000만 원 이상	13.73	0.25	19.27
	계	100.00	100.00	100.00
사업소득 (자영업 포함)	500만 원 미만	86.87	97.80	82.37
	500만~1,000만 원 미만	0.82	0.74	0.85
	1,000만~1,500만 원 미만	1.31	0.63	1.60
	1,500만~2,000만 원 미만	1.20	0.76	1.38
	2,000만~2,500만 원 미만	0.77	0.06	1.07
	2,500만~3,000만 원 미만	0.74	-	1.04
	3,000만 원 이상	8.29	-	11.69
	계	100.00	100.00	100.00
농림축산어업소득	500만 원 미만	95.64	97.78	94.76
	500만~1,000만 원 미만	1.31	1.64	1.18
	1,000만~1,500만 원 미만	0.75	0.44	0.88
	1,500만~2,000만 원 미만	0.66	0.14	0.87
	2,000만~2,500만 원 미만	0.38	-	0.54
	2,500만~3,000만 원 미만	0.20	-	0.28
	3,000만 원 이상	1.06	-	1.49
	계	100.00	100.00	100.00
부업소득	500만 원 미만	99.59	99.98	99.43
	500만~1,000만 원 미만	0.28	-	0.39
	1,000만~1,500만 원 미만	0.07	0.02	0.09
	1,500만~2,000만 원 미만	-	-	-
	2,000만~2,500만 원 미만	0.03	-	0.04
	2,500만~3,000만 원 미만	0.03	-	0.04
	3,000만 원 이상	0.01	-	0.0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1-4〉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없다	61.46	74.73	56.01
	있다	38.54	25.27	43.99
사회보험	없다	61.02	58.83	61.93
	있다	38.98	41.17	38.07
민간보험	없다	95.45	97.58	94.58
	있다	4.55	2.42	5.42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없다	8.09	5.00	9.36
	있다	91.91	95.00	90.6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없다	89.20	68.45	97.74
	있다	10.80	31.55	2.26
기타 정부보조금	없다	18.74	4.65	24.54
	있다	81.26	95.35	75.46
기타소득 ¹⁾	없다	4.06	2.89	4.54
	있다	95.94	97.11	95.46
계		100.00	100.00	100.00

주: 1) 기타소득의 경우 조사 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없다	68.18	79.89	63.36
		있다	31.82	20.11	36.64
	임대료	없다	85.73	90.98	83.58
		있다	14.27	9.02	16.42
기타	없다	99.49	99.77	99.38	
	있다	0.51	0.23	0.62	
사회보험	공적연금(보훈급여 제외) ⁴⁾	없다	64.88	59.65	67.03
		있다	35.12	40.35	32.97
	고용보험	없다	95.11	98.84	93.57
		있다	4.89	1.16	6.43
	산재보험	없다	99.46	99.79	99.32
있다	0.54	0.21	0.68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민간보험	개인연금	없다	95.49	97.58	94.63
		있다	4.51	2.42	5.37
	퇴직연금	없다	99.94	100.00	99.91
		있다	0.06	.	0.09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없다	28.56	24.22	30.35
		있다	71.44	75.78	69.65
	민간보조금	없다	23.97	22.24	24.68
		있다	76.03	77.76	75.3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맞춤형급여(생계)	없다	91.45	74.23	98.53
		있다	8.55	25.77	1.47
	맞춤형급여(주거)	없다	91.01	73.45	98.24
		있다	8.99	26.55	1.76
맞춤형급여(교육)	없다	99.51	98.69	99.84	
	있다	0.49	1.31	0.16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없다	94.49	86.30	97.86
		있다	5.51	13.70	2.14
	기초연금	없다	62.17	24.91	77.51
		있다	37.83	75.09	22.49
	한부모가족 지원	없다	99.54	99.20	99.68
		있다	0.46	0.80	0.32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없다	99.98	99.92	100.00
		있다	0.02	0.08	.
	양육수당	없다	98.08	99.77	97.39
		있다	1.92	0.23	2.61
	보육료 지원	없다	93.37	99.57	90.82
		있다	6.63	0.43	9.18
	아동수당	없다	90.33	99.00	86.77
있다		9.67	1.00	13.23	
학비 지원	없다	96.90	98.59	96.20	
	있다	3.10	1.41	3.80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보훈급여 포함) ⁴⁾	없다	97.04	96.24	97.38	
	있다	2.96	3.76	2.62	
농어업 정부보조금	없다	93.50	93.71	93.41	
	있다	6.50	6.29	6.59	
긴급복지 지원금	없다	99.74	99.23	99.95	
	있다	0.26	0.77	0.05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 정부보조금	바우처 지원금	없다 있다	85.31 14.69	69.28 30.72	91.91 8.09
	국민취업지원제도 ⁵⁾	없다 있다	99.40 0.60	99.68 0.32	99.28 0.72
	근로장려세제	없다 있다	87.81 12.19	84.13 15.87	89.33 10.67
	자녀장려세제	없다 있다	98.26 1.74	99.08 0.92	97.92 2.08
	급식비 지원	없다 있다	99.78 0.22	99.59 0.41	99.86 0.14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없다 있다	82.10 17.90	64.08 35.92	89.52 10.48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없다 있다	73.30 26.70	47.08 52.92	84.09 15.91
	기타	없다 있다	82.64 17.36	66.00 34.00	89.49 10.51
	지방보조금 ¹⁾	없다 있다	90.44 9.56	89.23 10.77	90.94 9.06
	재난지원금 ²⁾	없다 있다	49.90 50.10	42.79 57.21	52.82 47.18
	기타소득	증여·상속	없다 있다	99.41 0.59	99.77 0.23
경조금		없다 있다	97.44 2.56	98.48 1.52	97.01 2.99
보상금		없다 있다	96.59 3.41	96.35 3.65	96.69 3.31
사고보험금		없다 있다	83.47 16.53	92.72 7.28	79.66 20.34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없다 있다	93.35 6.65	97.71 2.29	91.55 8.45
동산, 부동산 매매 차이		없다 있다	98.53 1.47	99.32 0.68	98.20 1.80
기타(복권·경품 당첨금, 상품권 등) ³⁾		없다 있다	5.57 94.43	3.46 96.54	6.44 93.56

주: 1) 2019년 15차 조사부터 기존 '기타'에 포함되었던 지방보조금 항목을 분리하여 조사함.

2)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항목을 신설하여 조사함.

3) 기타 소득의 경우 조사 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4) 2023년 18차 조사부터 기존 '공적연금'에 포함되었던 호훈급여 항목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에 포함하여 조사함.

5) 2023년 18차 조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항목을 신설하여 조사함.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전체	0	76	3.46
		저소득	0	26	1.68
		일반	0	97	5.17
	임대료	전체	0	169	9.41
		저소득	0	30	2.51
		일반	0	226	14.19
	기타	전체	0	4	0.83
		저소득	0	1	0.45
		일반	0	5	1.24
사회보험	공적연금 (보훈급여 제외)	전체	0	281	8.15
		저소득	0	156	5.04
		일반	0	333	12.06
	고용보험	전체	0	33	2.02
		저소득	0	9	1.73
		일반	0	43	2.93
	산재보험	전체	0	10	1.79
		저소득	0	2	1.05
		일반	0	13	2.67
민간보험	개인연금	전체	0	26	2.11
		저소득	0	11	1.52
		일반	0	32	3.12
	퇴직연금	전체	0	1	0.31
		저소득	0	0	0.00
		일반	0	1	0.48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전체	100	283	6.24
		저소득	200	317	6.40
		일반	100	270	8.90
	민간보조금	전체	5	71	2.87
		저소득	5	45	2.11
		일반	5	81	4.22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맞춤형급여 (생계)	전체	0	42	1.85
		저소득	0	122	4.64
		일반	0	9	1.18
	맞춤형급여 (주거)	전체	0	16	0.68
		저소득	0	48	1.71
		일반	0	3	0.41
	맞춤형급여 (교육)	전체	0	0	0.06
		저소득	0	1	0.16
		일반	0	0	0.05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전체	0	10	0.74
		저소득	0	21	1.58
		일반	0	6	0.78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계속)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기타 정부보조금	기초연금	전체	0	158	2.46
		저소득	369	310	3.67
		일반	0	95	2.76
	한부모가족 지원	전체	0	2	0.28
		저소득	0	2	0.51
		일반	0	1	0.34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전체	0	0	0.04
		저소득	0	0	0.12
		일반	0	0	0.00
	양육수당	전체	0	3	0.33
		저소득	0	0	0.18
		일반	0	5	0.50
	보육료 지원	전체	0	28	1.34
		저소득	0	1	0.36
		일반	0	39	2.01
	아동수당	전체	0	15	0.57
		저소득	0	1	0.27
		일반	0	20	0.84
	학비 지원	전체	0	12	0.88
		저소득	0	4	0.82
		일반	0	15	1.27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급여 포함)	전체	0	25	2.16
		저소득	0	20	2.38
		일반	0	27	3.06
	농어업 정부보조금	전체	0	14	0.95
		저소득	0	9	0.74
		일반	0	17	1.40
긴급 복지 지원금	전체	0	0	0.12	
	저소득	0	1	0.34	
	일반	0	0	0.07	
바우처 지원금	전체	0	22	2.56	
	저소득	0	9	1.06	
	일반	0	28	3.86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0	1	0.26	
	저소득	0	0	0.16	
	일반	0	2	0.39	
근로장려세제	전체	0	12	0.53	
	저소득	0	14	0.68	
	일반	0	12	0.72	
자녀장려세제	전체	0	2	0.15	
	저소득	0	1	0.19	
	일반	0	2	0.20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계속)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기타 정부보조금	급식비 지원	전체	0	0	0.07
		저소득	0	0	0.14
		일반	0	0	0.08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전체	0	7	0.19
		저소득	0	15	0.41
		일반	0	3	0.17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전체	0	6	0.14
		저소득	7	12	0.28
		일반	0	4	0.15
	기타	전체	0	6	0.48
		저소득	0	6	0.39
		일반	0	6	0.71
	지방보조금	전체	0	6	0.34
		저소득	0	5	0.32
		일반	0	7	0.49
	재난지원금	전체	5	66	2.20
		저소득	10	30	1.47
		일반	0	81	3.25
기타소득	증여·상속	전체	0	61	21.72
		저소득	0	8	3.70
		일반	0	83	33.03
	경조금	전체	0	38	3.60
		저소득	0	17	3.26
		일반	0	46	5.21
	보상금	전체	0	9	1.56
		저소득	0	8	1.56
		일반	0	10	2.24
	사고보험금	전체	0	61	4.59
		저소득	0	39	5.06
		일반	0	70	6.49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계약금	전체	0	86	7.15
		저소득	0	30	8.16
		일반	0	109	10.04
	동산·부동산 매매 차익	전체	0	158	33.93
		저소득	0	113	52.52
		일반	0	177	44.06
기타	전체	7	11	1.13	
	저소득	6	10	1.55	
	일반	7	12	1.52	

주: 2006년 1차 기초 보고서에서는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007년 2차 조사 이후부터의 기초 보고서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50만 원 미만	69.02	81.85	63.74
	50만~100만 원 미만	4.91	4.01	5.28
	100만~150만 원 미만	3.91	3.54	4.07
	150만~200만 원 미만	2.35	1.51	2.70
	200만~250만 원 미만	2.57	2.17	2.73
	250만~300만 원 미만	1.33	0.65	1.62
	300만 원 이상	15.91	6.27	19.87
	계	100.00	100.00	100.00
사회보험	50만 원 미만	61.15	58.85	62.10
	50만~100만 원 미만	0.48	0.50	0.47
	100만~150만 원 미만	1.29	2.90	0.62
	150만~200만 원 미만	3.69	8.04	1.89
	200만~250만 원 미만	3.24	5.85	2.17
	250만~300만 원 미만	2.56	4.01	1.96
	300만 원 이상	27.59	19.84	30.78
	계	100.00	100.00	100.00
민간보험	50만 원 미만	95.49	97.58	94.63
	50만~100만 원 미만	0.23	0.09	0.29
	100만~150만 원 미만	0.40	0.31	0.44
	150만~200만 원 미만	0.54	0.13	0.71
	200만~250만 원 미만	0.31	0.10	0.40
	250만~300만 원 미만	0.34	0.34	0.33
	300만 원 이상	2.70	1.45	3.21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50만 원 미만	24.71	18.47	27.28
	50만~100만 원 미만	10.34	9.12	10.84
	100만~150만 원 미만	10.92	8.58	11.88
	150만~200만 원 미만	6.98	5.68	7.52
	200만~250만 원 미만	7.37	7.55	7.30
	250만~300만 원 미만	4.34	3.19	4.81
	300만 원 이상	35.35	47.42	30.38
	계	100.00	100.00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50만 원 미만	89.29	68.63	97.79
	50만~100만 원 미만	0.24	0.46	0.15
	100만~150만 원 미만	0.42	1.09	0.14
	150만~200만 원 미만	0.75	2.05	0.22
	200만~250만 원 미만	0.71	2.16	0.11
	250만~300만 원 미만	0.33	0.80	0.13
	300만 원 이상	8.26	24.80	1.4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 정부보조금	50만 원 미만	31.27	9.41	40.26
	50만~100만 원 미만	4.92	2.59	5.88
	100만~150만 원 미만	3.99	3.34	4.25
	150만~200만 원 미만	2.56	2.58	2.56
	200만~250만 원 미만	1.96	2.14	1.88
	250만~300만 원 미만	2.09	1.16	2.47
	300만 원 이상	53.21	78.77	42.70
	계	100.00	100.00	100.00
기타소득	50만 원 미만	76.84	88.33	72.11
	50만~100만 원 미만	3.57	1.82	4.29
	100만~150만 원 미만	2.05	1.28	2.36
	150만~200만 원 미만	1.47	0.45	1.89
	200만~250만 원 미만	1.40	1.01	1.55
	250만~300만 원 미만	1.12	0.59	1.33
	300만 원 이상	13.57	6.52	16.46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6년 1차 기초 보고서에서는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차 조사 이후부터의 기초 보고서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2. 지출

〈부표 2-2-1〉 월간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0만 원 미만	0.12	0.40	-
50만~100만 원 미만	9.60	32.66	0.11
100만~150만 원 미만	11.13	33.18	2.05
150만~200만 원 미만	10.02	16.33	7.42
200만~300만 원 미만	15.32	11.59	16.86
300만 원 이상	53.81	5.84	73.5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합계	83	92	0.58
	식료품비			
	가정 식비	50	56	0.33
	외식비	25	31	0.33
	주류·담배비	0	5	0.1
	주거비			
	합계	10	15	0.24
	월세	0	6	0.16
	주거관리비	6	9	0.19
	광열수도비	13	14	0.07
	가구·가사용품비			
	합계	5	13	0.34
	가구집기·가사용품비	5	11	0.29
	보육료	0	2	0.15
	의류·신발비	7	11	0.17
	보건의료비	15	24	0.37
	교육비			
	합계	0	17	0.48
	공교육비	0	5	0.2
	사교육비	0	12	0.41
	교양오락비	5	14	0.31
	교통·통신비			
	합계	32	47	0.81
	교통비	20	35	0.77
	통신비	10	12	0.1
	기타 소비 지출	54	71	0.86
송금보조 (사적 이전)				
합계	8	20	0.46	
비동거 가구원	0	4	0.23	
부모	0	8	0.22	
자녀	0	7	0.31	
기타(가구원이 아닌 친지)	0	2	0.08	
세금	6	24	1.06	
사회보장부담금	17	26	0.35	
자가소비액(농축산)	0	1	0.04	
자가소비액(어업)	0	0	0	
이자 지출	0	12	0.39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계속)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저소득	식료품비	합계	44	50	0.39
		가정 식비	35	40	0.29
		외식비	5	8	0.18
		주류·담배비	0	2	0.1
	주거비	합계	8	10	0.25
		월세	0	5	0.18
		주거관리비	2	5	0.19
	광열수도비		10	11	0.08
	가구·가사용품비	합계	2	4	0.13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	4	0.13
		보육료	0	0	0.02
	의류·신발비		2	3	0.06
	보건의료비		10	18	0.46
	교육비	합계	0	1	0.19
		공교육비	0	1	0.1
		사교육비	0	1	0.15
	교양오락비		1	3	0.11
	교통·통신비	합계	8	13	0.34
		교통비	3	8	0.29
		통신비	4	5	0.08
	기타 소비 지출		14	21	0.44
	송금보조 (사적 이전)	합계	0	6	0.5
		비동거 가구원	0	0	0.08
		부모	0	1	0.09
		자녀	0	4	0.48
		기타(가구원이 아닌 친지)	0	1	0.06
	세금		0	3	0.76
	사회보장부담금		0	2	0.12
자가소비액(농축산)		0	1	0.05	
자가소비액(어업)		0	0	0	
이자 지출		0	2	0.15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계속)

(단위: 만 원)

구분		종위값	평균	표준오차	
일반	식료품비	합계	103	110	0.71
		가정식비	60	62	0.45
		외식비	36	41	0.42
		주류·담배비	2	7	0.13
	주거비	합계	10	16	0.34
		월세	0	6	0.23
		주거관리비	8	10	0.26
	광열수도비		14	15	0.09
	가구·가사용품비	합계	7	17	0.5
		가구집기·가사용품비	6	14	0.44
		보육료	0	3	0.23
	의류·신발비		10	14	0.24
	보건의료비		17	27	0.51
	교육비	합계	0	23	0.7
		공교육비	0	6	0.3
		사교육비	0	17	0.61
	교양오락비		9	19	0.45
	교통·통신비	합계	45	61	1.16
		교통비	30	46	1.13
		통신비	14	15	0.13
	기타 소비 지출		76	91	1.16
	송금보조 (사적 이전)	합계	11	26	0.63
		비동거 가구원	0	5	0.34
		부모	2	11	0.32
		자녀	0	8	0.4
		기타(가구원이 아닌 친지)	0	2	0.12
	세금		13	33	1.55
사회보장부담금		30	36	0.45	
자가소비액(농축산)		0	1	0.06	
자가소비액(어업)		0	0	0	
이자 지출		0	17	0.58	

3. 재산

〈부표 2-3-1〉 소유 부동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전체	0	5,546	291.12
	저소득	0	888	238.88
	일반	0	7,463	422.94
주택 외 건물	전체	0	3,164	319.39
	저소득	0	381	66.84
	일반	0	4,310	484.37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전체	0	6,596	446.65
	저소득	0	3,688	523.56
	일반	0	7,793	623.96

주: 주택 외 건물에는 가족 명의의 사업장(가게), 창고, 상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이 포함됨.

〈부표 2-3-2〉 점유 부동산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686	51.7
저소득	0	91	24.2
일반	0	931	77.48

〈부표 2-3-3〉 점유 부동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세 보증금 준 것 (가게, 사업장 등)	전체	0	178	13.17
	저소득	0	24	5.55
	일반	0	241	19.79
기타	전체	0	509	46.94
	저소득	0	67	23.08
	일반	0	690	70.35

주: 기타에는 권리금, 사업 설비, 공장 기계, 가게 물건, 비닐하우스 시설, 양식장 등이 포함됨.

〈부표 2-3-4〉 금융재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예금	전체	1,400	4,475	101.65
	저소득	500	2,120	100.62
	일반	2,000	5,444	143.55
적금 (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	전체	0	2,260	272.83
	저소득	0	179	19.55
	일반	609	3,116	414.88
주식·채권	전체	0	1,058	59.24
	저소득	0	130	19.73
	일반	0	1,441	89.08
타기 전 부은 껌돈	전체	0	6	1.36
	저소득	0	0	0.14
	일반	0	9	2.07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전체	0	414	35.59
	저소득	0	102	35.69
	일반	0	542	50.9

〈부표 2-3-5〉 농기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62	7.87
저소득	0	17	3.96
일반	0	81	11.81

〈부표 2-3-6〉 농기계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동력 탈곡기	전체	0	0	0.47
	저소득	0	0	0.04
	일반	0	0	0.72
경운기	전체	0	3	0.33
	저소득	0	2	0.41
	일반	0	3	0.45
콤바인	전체	0	8	2.63
	저소득	0	1	1.41
	일반	0	10	3.95
트랙터	전체	0	34	4.7
	저소득	0	8	2.93
	일반	0	45	6.99
기타 농기계	전체	0	17	2.12
	저소득	0	5	1.21
	일반	0	22	3.16

〈부표 2-3-7〉 농축산물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77	12.29
저소득	0	52	16.12
일반	0	88	16.78

〈부표 2-3-8〉 농축산물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소	전체	0	49	10.47
	저소득	0	43	15.59
	일반	0	52	13.78
돼지	전체	0	0	0.05
	저소득	0	0	0
	일반	0	0	0.08
닭	전체	0	0	0.07
	저소득	0	0	0.02
	일반	0	0	0.11
재고 농산물	전체	0	3	1.87
	저소득	0	0	0.28
	일반	0	4	2.84
기타 농축산물	전체	0	25	5.86
	저소득	0	8	3.77
	일반	0	32	8.72

〈부표 2-3-9〉 자동차 가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	1,582	38.03
저소득	400	916	117.18
일반	1,100	1,642	40.05

〈부표 2-3-10〉 기타 동산·부동산 재산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377	23.44
저소득	0	40	8.83
일반	0	516	35.22

〈부표 2-3-11〉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전체	0	5	2.44
	저소득	0	0	0
	일반	0	7	3.72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선박, 굴착기, 포클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 수단	전체	0	249	19.55
	저소득	0	20	6.88
	일반	0	343	29.46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전체	0	117	12.3
	저소득	0	15	3.4
	일반	0	159	18.63
기타	전체	0	6	2.88
	저소득	0	6	4.05
	일반	0	7	3.87

4. 부채

〈부표 2-4-1〉 부채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금융기관 대출 (회사 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전체	0	5,351	1296.8
	저소득	0	5,012	3822.99
	일반	0	5,491	171.3
일반 사채	전체	0	73	10.25
	저소득	0	23	5.6
	일반	0	93	15.34
카드 빚	전체	0	70	5.79
	저소득	0	42	7.1
	일반	0	82	8.03
전세(임대) 보증금 (받은 돈)	전체	0	2,009	121.35
	저소득	0	390	113.25
	일반	0	2,676	174.51
외상, 미리 탄 깻돈	전체	0	11	4.59
	저소득	0	0	0.24
	일반	0	15	6.99
기타 부채	전체	0	106	10.57
	저소득	0	80	10.77
	일반	0	117	15.12

주: 미리 탄 깻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하도록 함.

[부록 3] 주거 및 건강

1. 주거

〈부표 3-1-1〉 2022년 1년 동안의 이사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99	4.61	7.98
없다	93.01	95.39	92.02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의 경우는 이사 경험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가구는 제외하였음.

〈부표 3-1-2〉 주거 위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하층	0.17	0.27	0.12
반지하층	1.98	4.45	0.96
지상	97.79	95.24	98.83
옥탑	0.07	0.04	0.0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3〉 방의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	7.76	10.15	6.78
2개	29.04	46.58	21.82
3개	56.23	40.19	62.82
4개	6.36	2.78	7.84
5개 이상	0.61	0.29	0.7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4〉 상하수도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사용	99.3	99.63	99.2
공동 사용	0.68	0.32	0.83
없음	0.02	0.05	0.0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5〉 부엌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사용-입식	98.95	98.76	99.02
단독 사용-재래식	0.37	0.62	0.27
공동 사용-입식	0.52	0.27	0.62
공동 사용-재래식	0.00	0.00	0.00
없음	0.17	0.35	0.0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6〉 화장실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사용-수세식	98.86	98.60	98.96
단독 사용-재래식	0.47	0.73	0.36
공동 사용-수세식	0.62	0.58	0.63
공동 사용-재래식	0.04	0.05	0.03
없음	0.02	0.03	0.0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7〉 목욕시설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사용-온수시설 있음	98.63	98.44	98.71
단독 사용-온수시설 없음	0.47	0.56	0.44
공동 사용-온수시설 있음	0.50	0.23	0.61
공동 사용-온수시설 없음	0.04	0.00	0.05
없음	0.36	0.77	0.2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8〉 난방시설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탄 또는 재래식(뿔감) 아궁이	0.12	0.18	0.10
연탄보일러	0.33	0.63	0.20
나무·석탄 보일러	0.63	0.62	0.63
기름보일러	11.65	20.45	8.02
가스보일러	69.32	63.00	71.92
전기보일러	2.96	2.91	2.98
중앙난방(지역난방)	14.67	11.54	15.95
전기장판	0.18	0.41	0.08
기타	0.15	0.25	0.1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9〉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가격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 원 미만	0.19	0.76	0.02
1,000만~5,000만 원 미만	5.03	13.50	2.60
5,000만~1억 원 미만	12.00	22.97	8.86
1억~2억 원 미만	21.34	23.61	20.69
2억~3억 원 미만	16.83	18.26	16.42
3억 원 이상	44.60	20.88	51.4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 원 미만	1.39	0.30	1.64
1,000만~3,000만 원 미만	4.21	15.63	1.68
3,000만~5,000만 원 미만	11.22	30.80	6.89
5,000만 원~1억 원 미만	16.78	29.39	13.99
1억 원 이상	66.40	23.88	75.8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1〉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 원 미만	45.68	59.47	35.97
1,000만~3,000만 원 미만	29.83	27.85	31.22
3,000만~5,000만 원 미만	9.61	8.38	10.47
5,000만~1억 원 미만	8.86	3.46	12.66
1억 원 이상	6.03	0.84	9.6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0만 원 미만	65.40	83.33	52.72
30만~50만 원 미만	22.80	15.88	27.70
50만~100만 원 미만	11.36	0.79	18.84
100만 원 이상	0.43	0.00	0.7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3〉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지역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대도시	전체	32,000	49,579	1285.82
	저소득	24,000	30,904	1175.77
	일반	35,000	54,127	1636.60
중·소도시	전체	25,000	32,394	705.90
	저소득	12,000	18,782	792.66
	일반	30,000	36,017	886.65
농어촌	전체	8,000	14,420	579.20
	저소득	5,000	7,757	381.47
	일반	10,000	18,246	895.64

주: '대도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농복합군을 포함하며, '중·소도시'는 시 또는 구, '농어촌'은 각 시도의 군으로 구분함.

〈부표 3-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지역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대도시	전체	15,000	19,864	989.57
	저소득	4,600	6,847	681.35
	일반	19,000	23,183	1201.66
중·소도시	전체	12,500	16,271	771.84
	저소득	6,000	7,888	897.60
	일반	15,000	17,822	884.57
농어촌	전체	14,000	10,198	1419.84
	저소득	4,000	3,637	339.97
	일반	14,000	10,646	1525.62

주: '대도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농복합군을 포함하며, '중·소도시'는 시 또는 구, '농어촌'은 각 시도의 군으로 구분함.

〈부표 3-1-15〉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지역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대도시	전체	1,000	2,923	180.01
	저소득	500	1,316	122.99
	일반	2,000	4,330	327.70
중·소도시	전체	1,000	2,294	179.87
	저소득	900	1,449	126.04
	일반	1,000	2,756	276.85
농어촌	전체	500	880	95.18
	저소득	500	675	121.69
	일반	500	1,022	136.95

주: '대도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농복합군을 포함하며, '중·소도시'는 시 또는 구, '농어촌'은 각 시도의 군으로 구분함.

〈부표 3-1-16〉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지역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대도시	전체	20	25	0.73
	저소득	12	15	0.55
	일반	30	34	1.19
중·소도시	전체	20	25	0.82
	저소득	13	17	0.76
	일반	25	29	1.19
농어촌	전체	20	20	1.27
	저소득	20	19	1.93
	일반	21	21	1.69

주: '대도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농복합군을 포함하며, '중·소도시'는 시 또는 구, '농어촌'은 각 시도의 군으로 구분함.

〈부표 3-1-17〉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자기 돈	84.38	25.52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2.75	5.05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83	5.43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11.03	63.94
사채	0.01	0.07
계	100.00	100.00

주: 주택의 구입 비용 및 보증금의 전액을 한 가지 비용으로만 지불한 경우 2순위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음.

〈부표 3-1-18〉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 돈	84.38	88.01	83.09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2.75	4.13	2.26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83	3.18	1.35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11.03	4.68	13.29
사채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9〉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 돈	25.52	25.62	25.50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5.05	12.31	3.75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5.43	11.18	4.40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63.94	50.59	66.33
사채	0.07	0.30	0.0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0〉 총원금 상환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종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355	34.37
저소득	0	57	9.83
일반	0	405	41.03

주: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2,39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부표 3-1-21〉 상환 후 남은 용자액 또는 부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3,000	6,354	182.10
저소득	0	1,340	162.37
일반	4,520	7,184	210.00

주: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2,39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부표 3-1-22〉 주거 관련 부채에 따른 이사 부담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80	210	7.09
저소득	0	43	5.19
일반	120	237	8.27

주: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2,39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부표 3-1-23〉 대출 상환액 연체 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체한 적이 없다	99.96	99.79	99.99
1회	-	-	-
2~3회	0.01	0.00	0.01
4회 이상	0.03	0.21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2,39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부표 3-1-24〉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0.29	0.96	0.02
아니요	34.61	38.97	32.82
비해당	65.09	60.07	67.16
계	100.00	100.00	100.00

주: 2022년 1년 내내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는 비해당에 속함.

〈부표 3-1-25〉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0.25	19.39	6.49
없다	89.75	80.61	93.5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6〉 전세자금(융자)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21	0.16	1.64
없다	98.79	99.84	98.3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7〉 월세지원(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2	0.56	0.08
없다	99.78	99.44	99.9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8〉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04	0.00	0.06
없다	99.96	100	99.9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9〉 주거급여 외의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05	0.13	0.01
없다	99.95	99.87	99.99
계	100.00	100.00	100.00

2. 건강

〈부표 3-2-1〉 병원에 입원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90.89	87.15	91.55
지병·질병	6.79	10.85	6.07
사고	1.66	1.83	1.63
출산	0.46	0.00	0.54
건강검진	0.07	0.14	0.05
요양·휴식	0.04	0.02	0.04
성형·정형·교정	0.05	0.00	0.06
기타	0.05	0.00	0.0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2-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10.43	7.01	11.04
종합, 대학병원	8.25	15.33	6.99
지역 내 병·의원	77.16	73.70	77.78
한방 병·의원	1.15	1.92	1.02
보건소	0.47	0.85	0.41
치과 병·의원	0.05	0.00	0.06
요양병원	2.47	1.16	2.70
기타	0.01	0.03	0.0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2-3〉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가구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00	32.06	0.38
저소득	11.00	14.93	0.44
일반	29.00	35.06	0.44

주: 2022년 12월 기준 한 가구가 내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월평균 보험료의 합을 조사하였으며,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부록 4] 가족

1. 가족 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3년 주기 문항으로 2021년 16차에 조사되었으며 2024년 19차에 조사 예정임.

2. 가족 문제

〈부표 4-2-1〉 생애 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갑(100개비) 미만	2.03	3.08	1.96
5갑(100개비) 이상	10.78	9.80	10.85
피운 적 없음	87.19	87.12	87.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 가구원의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 흡연 경험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60.50	33.74	62.50
20~30대(20~39세)	39.50	66.26	37.50
40~50대(40~59세)	0.00	0.00	0.00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 가구원의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3〉 총흡연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9.10	0.00	9.78
1~5년 미만	31.76	23.92	32.34
5~10년 미만	22.22	0.00	23.88
10~15년 미만	11.07	0.00	11.90
15년 이상	25.85	76.08	22.1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 가구원의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4〉 하루 평균 흡연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반 갑 이내(~10개비)	47.21	49.10	46.90
반 갑~한 갑 이내(11~20개비)	47.61	47.51	47.63
한 갑~두 갑 이내(21~40개비)	5.09	3.36	5.37
두 갑 초과(41개비~)	0.19	0.04	0.10
계	100.00	100.00	100.00

주: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5〉 향후 금연 계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1.92	1.38	2.00
6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5.06	4.45	5.16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 계획 있음	28.75	26.91	29.05
현재로서는 금연 계획 없음	64.28	67.26	63.79
계	100.00	100.00	100.00

주: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6〉 담배 연기에 노출된 시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시간	27.20	16.45	28.00
2시간	23.77	43.30	22.31
3시간	35.43	14.19	37.02
4시간	3.62	0.00	3.90
5시간 이상	9.97	26.07	8.77
계	100.00	100.00	100.00

주: 담배 연기를 맡았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7〉 음주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2잔 정도	22.87	26.22	22.58
3~4잔 정도	23.81	25.70	23.64
5~6잔 정도	19.56	17.25	19.76
7~9잔 정도	18.90	17.96	18.98
10잔 이상	14.86	12.86	15.04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8〉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8.60	83.94	89.01
몇 달에 한 번 정도	5.38	7.36	5.20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0.91	1.59	0.85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34	1.98	0.20
거의 매일	0.06	0.42	0.02
모름/무응답	4.72	4.72	4.72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9〉 과음한 다음 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91.09	89.83	91.21
몇 달에 한 번 정도	3.18	2.92	3.20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0.69	0.74	0.69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21	1.01	0.13
거의 매일	0.12	0.77	0.06
모름/무응답	4.72	4.72	4.72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10〉 음주 후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3.02	78.07	83.46
몇 달에 한 번 정도	9.88	9.96	9.88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51	2.92	1.39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68	2.68	0.50
거의 매일	0.19	1.65	0.06
모름/무응답	4.72	4.72	4.72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11〉 음주 후 필름이 끊겼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3.41	81.71	83.56
몇 달에 한 번 정도	10.22	10.06	10.23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47	2.96	1.34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16	0.13	0.16
거의 매일	0.03	0.42	0.00
모름/무응답	4.72	4.72	4.72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12〉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93.53	92.14	93.65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다	1.38	2.35	1.29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	0.37	0.79	0.34
모름/무응답	4.72	4.72	4.72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13〉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49.35	38.16	51.14
1~2번	5.26	3.03	5.62
3~5번	1.24	1.88	1.14
6번 이상	0.60	0.79	0.57
비해당(배우자 없음)	36.88	49.36	34.89
모름/무응답	6.67	6.78	6.6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4〉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5.63	43.13	57.63
1~2번	0.60	0.70	0.58
3~5번	0.13	0.03	0.15
6번 이상	0.09	0.00	0.10
비해당(배우자 없음)	36.88	49.36	34.89
모름/무응답	6.67	6.78	6.6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5〉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47.39	27.07	52.22
1~2번	5.73	3.73	6.20
3~5번	1.69	1.00	1.86
6번 이상	0.85	0.47	0.94
비해당(배우자 없음)	41.28	64.54	35.76
모름/무응답	3.06	3.19	3.0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6〉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4.92	31.53	60.47
1~2번	0.53	0.64	0.51
3~5번	0.14	0.08	0.15
6번 이상	0.07	0.01	0.09
비해당(배우자 없음)	41.28	64.54	35.76
모름/무응답	3.06	3.19	3.0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7〉 가족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3.12	5.08	14.71
만족	55.37	45.79	57.27
약간 만족	8.99	11.52	8.49
보통	12.95	20.39	11.48
약간 불만족	1.91	3.13	1.66
불만족	0.97	2.92	0.59
매우 불만족	0.49	1.16	0.36
비해당(직계혈족 1촌 없음)	1.36	5.35	0.57
모름/무응답	4.84	4.67	4.8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8〉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9.25	3.00	10.49
만족	30.68	17.45	33.29
약간 만족	5.31	3.91	5.59
보통	7.98	9.20	7.74
약간 불만족	1.31	0.91	1.39
불만족	1.05	1.30	1.00
매우 불만족	0.54	1.18	0.41
비해당(배우자 없음)	39.05	58.38	35.22
모름/무응답	4.84	4.67	4.8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2.02	6.04	13.20
만족	39.84	42.12	39.39
약간 만족	5.36	8.39	4.76
보통	6.20	10.51	5.35
약간 불만족	0.99	2.18	0.75
불만족	0.66	1.99	0.40
매우 불만족	0.30	1.30	0.10
비해당(자녀 없음)	29.80	22.80	31.18
모름/무응답	4.84	4.67	4.8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20〉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7.45	5.04	7.93
만족	32.31	35.51	31.68
약간 만족	5.09	7.43	4.63
보통	6.17	9.29	5.55
약간 불만족	1.10	1.09	1.11
불만족	0.58	1.11	0.48
매우 불만족	0.12	0.47	0.06
비해당(자녀가 없거나 1명)	42.32	35.39	43.69
모름/무응답	4.84	4.67	4.8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21〉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32.52	100.00	31.13
20~30대(20~39세)	67.48	0.00	68.87
40~50대(40~59세)	0.00	0.00	0.00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계	100.00	1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함. 응답 사례 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2〉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12.26	0.00	12.51
20~30대(20~39세)	80.56	0.00	82.23
40~50대(40~59세)	7.18	100.0	5.26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계	100.00	1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함. 응답 사례 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3〉 처음으로 자살을 계획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7.10	0.00	7.10
20~30대(20~39세)	92.90	0.00	92.90
40~50대(40~59세)	0.00	0.00	0.00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계	100.00	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하는 것을 계획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함. 응답 사례 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4〉 마지막으로 자살을 계획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0.00	0.00	0.00
20~30대(20~39세)	92.90	0.00	92.90
40~50대(40~59세)	7.10	0.00	7.10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계	100.00	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하는 것을 계획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함. 응답 사례 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5〉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37.30	0.00	37.30
20~30대(20~39세)	62.70	0.00	62.70
40~50대(40~59세)	0.00	0.00	0.00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계	100.00	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하는 것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함. 응답 사례 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6〉 마지막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0.00	0.00	0.00
20~30대(20~39세)	62.70	0.00	62.70
40~50대(40~59세)	37.30	0.00	37.30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계	100.00	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하는 것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함. 응답 사례 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록 5]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1. 가구 구성원의 생활만족도

〈부표 5-1-1〉 인터넷 사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82.46	45.07	89.85
아니다	17.54	54.93	10.15
계	100.00	100.00	100.00

2. 가구의 생활 여건

〈부표 5-2-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0.10	0.13	0.09
가끔 그렇다	0.76	2.15	0.19
전혀 그렇지 않다	99.14	97.73	99.72
모름/거부	-	-	-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0.42	1.15	0.12
가끔 그렇다	2.36	6.87	0.50
전혀 그렇지 않다	97.22	91.98	99.38
모름/거부	-	-	-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4	0.49	0.13
없다	99.58	99.47	99.62
모름/거부	0.19	0.04	0.2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빈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거의 매일	43.86	28.87	66.31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41.66	69.50	0.00
1~2개월 동안	14.47	1.63	33.69
계	100.00	100.00	100.00

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만 분석하였으며, 해당 가구는 총 12가구 (저소득 9가구, 일반 가구 3가구)로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부표 5-2-5〉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0.29	0.63	0.16
아니다	99.69	99.34	99.84
모름/거부	0.01	0.03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6〉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0.26	0.55	0.14
아니다	99.7	99.42	99.82
모름/거부	0.03	0.03	0.03
계	100.00	100.00	100.00

[부록 6] 사회보장

1.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표 6-1-1〉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업장 가입	64.65	23.84	67.11
지역 가입	31.10	69.58	28.78
임의 가입	2.37	2.16	2.38
임의계속 가입	1.88	4.42	1.7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하고 있다	82.88	43.76	85.25
납부하지 않고 있다	17.12	56.24	14.7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3〉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예외	98.47	99.63	98.21
실제 보험료 미납	1.53	0.37	1.7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4〉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실직, 휴직, 사업 중단	56.03	60.90	54.89
3개월 이상 입원	0.00	0.00	0.00
생활 곤란	34.96	36.33	34.64
학업(재학)	1.31	0.36	1.53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7.70	2.40	8.94
계	100.00	99.99	100.00

〈부표 6-1-5〉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7.04	0.81	8.49
4~6개월	8.38	3.16	9.60
7~9개월	4.92	3.77	5.19
10~12개월	79.67	92.26	76.72
계	100.01	100.00	100.00

〈부표 6-1-6〉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미납 경험 없음)	99.66	99.53	99.66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0.21	0.47	0.20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0.13	0.00	0.14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 걱정이 없어서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개월(미납 경험 없음)	99.50	99.53	99.66
1~3개월	0.00	0.00	0.00
4~6개월	0.00	0.00	0.00
7~9개월	0.05	0.00	0.03
10~12개월	0.45	0.47	0.3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8〉 공적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8.33	2.45	8.77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0.36	0.00	0.39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3.15	0.00	14.14
기타	3.09	0.00	3.32
만 60세 경과	75.07	97.55	73.3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9〉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령연금	86.72	81.84	88.90
장애연금	1.12	0.59	1.36
유족연금	11.34	16.58	9.01
분할연금	0.26	0.35	0.22
사망일시금	0.00	0.00	0.00
반환일시금	0.55	0.65	0.51
계	99.99	100.01	100.00

〈부표 6-1-10〉 국민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1.97	1.39	2.22
4~6개월	1.83	0.81	2.29
7~9개월	2.08	0.09	2.97
10~12개월	94.12	97.70	92.52
계	100.00	99.99	100.00

〈부표 6-1-11〉 국민연금 연간 평균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622	492 ¹⁾	676 ²⁾
연금	506	368	568

주: 1) 해당 사례 3케이스.

2) 해당 사례 9케이스.

〈부표 6-1-12〉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¹⁾
퇴직급여	83.38	35.48	85.73
유족급여	12.36	64.52	9.80
재해보상급여	1.55	0.00	1.63
퇴직수당	0.58	0.00	0.61
퇴직급여, 유족급여	2.13	0.00	2.23
계	100.00	100.00	100.00

주: 1) 중복 수급은 4케이스.

〈부표 6-1-13〉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¹⁾	일반
1~3개월	0.21	4.34	0.00
4~6개월	0.86	0.00	0.91
7~9개월	0.20	0.00	0.21
10~12개월	98.72	95.66	98.88
계	99.99	100.00	100.00

주: 1) 해당 사례 36케이스.

〈부표 6-1-14〉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1,606 ¹⁾	0 ²⁾	1,606
연금	3,008	1,382	3,093

주: 1) 해당 사례 없음.

2) 해당 사례 3케이스.

〈부표 6-1-15〉 보훈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0.29	0.00	0.38
4~6개월	0.15	0.00	0.19
7~9개월	0.00	0.00	0.00
10~12개월	99.56	100.00	99.4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16〉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0 ¹⁾	0 ¹⁾	0 ¹⁾
연금	1,246	832 ²⁾	1,370 ³⁾

주: 1) 해당 사례 없음.

2) 해당 사례 35케이스.

3) 해당 사례 107케이스.

〈부표 6-1-17〉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미납 경험 있음	0.37	1.76	0.21
미납 경험 없음	99.63	98.24	99.7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18〉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7.76	5.80	14.29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56.38	76.10	79.06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9.19	0.00	0.00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2.52	0.00	0.00
납기 기한을 잊어버려서	24.15	16.10	6.66
기타	0.00	2.00	0.00
계	100.00	100.00	100.01

〈부표 6-1-19〉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31.25	28.08	33.3
4~6개월	2.46	3.25	1.95
7~9개월	8.41	13.07	5.39
10~12개월	57.88	55.59	59.35
계	100.00	99.99	99.99

〈부표 6-1-2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문제점 없음	87.33	81.52	73.30
월 보험료 부담	9.88	11.95	20.64
보험의 적용 범위가 좁음	2.45	6.53	5.97
기타	0.34	0.00	0.0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1〉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90.13	91.01	80.56
혜택 범위가 좁다(본인부담이 많다)	6.81	5.85	17.22
적용 기간이 제한적이다	1.02	0.98	1.44
차별 대우를 받는다	1.98	2.09	0.79
기타	0.06	0.07	0
계	100.00	100.00	100.01

〈부표 6-1-22〉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급여 등)	79	63.65	80.41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	13.67	5.31	10.6
기타 현금급여(훈련장려금 등)	2.41	21.85	3.51
현물급여(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4.91	9.18	5.47
계	99.99	99.99	99.99

〈부표 6-1-23〉 고용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39.09	25.71	40.22
4~6개월	39.66	29.42	40.52
7~9개월	18.31	44.87	16.07
10~12개월	2.94	0	3.18
계	100.00	100.00	99.99

〈부표 6-1-24〉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간 총급여액(현금+현물)	675	663	823

주: 1) 수급액은 평균 금액임.

〈부표 6-1-25〉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¹⁾	일반 ²⁾
요양급여	13.14	68.6	5.07
휴업급여	30.44	0	34.86
장해급여-연금	19.23	10.49	20.5
장해급여-일시금	1.76	13.83	0
유족연금	14.56	5.38	15.9
유족일시금	3.22	0	3.69
기타 현금급여	11.69	1.7	13.14
요양&휴업급여	1.5	0	1.72
장해급여-일시금&기타 현금급여	4.46	0	5.11
계	100.00	100.00	99.99

주: 1) 해당 사례 6케이스.

2) 해당 사례 44케이스.

〈부표 6-1-26〉 산재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¹⁾	일반 ²⁾
1~3개월	15.16	17.80	14.81
4~6개월	28.25	1.97	31.70
7~9개월	11.05	61.81	4.38
10~12개월	45.54	18.42	49.10
계	100.00	100.00	99.99

주: 1) 해당 사례 6케이스.

2) 해당 사례 41케이스.

〈부표 6-1-27〉 산재보험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1,712	3,200 ¹⁾	1,389 ²⁾
연금	1,865	1,252 ³⁾	1,945 ⁴⁾

주: 1) 해당 사례 1케이스, 2) 해당 사례 3케이스, 3) 해당 사례 6케이스, 4) 해당 사례 41케이스.

〈부표 6-1-2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1,209	1939 ¹⁾	1,169 ²⁾
연금	1,158	0 ³⁾	1,158 ⁴⁾

주: 1) 해당 사례 19케이스, 2) 해당 사례 317케이스, 3) 해당 사례 0케이스, 4) 해당 사례 3케이스.

〈부표 6-1-29〉 개인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0.63	0.00	0.71
4~6개월	0.17	0.00	0.20
7~9개월	0.51	0.91	0.45
10~12개월	98.69	99.09	98.6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30〉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472	250 ¹⁾	474 ²⁾
연금	475	466	476

주: 1) 해당 사례 1케이스, 2) 해당 사례 10케이스.

2. 공공부조

〈부표 6-2-1〉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개월 수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3개월 미만	0.26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4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46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55
	12개월	92.89
	계	100.00

급여	구분	비율
주거	3개월 미만	0.1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36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79
	12개월	93.85
	계	100.00
교육	3개월 미만	0.0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00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0.0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0.00
	12개월	100
	계	100.00

주: 본 문항에 대한 분석은 기존 연도의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Ⅷ. 소득 부분의 문항 1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급여별 연간 수급 개월 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Ⅹ.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항 2)의 급여별 수급 비율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의료, 자활, 교육 등의 특례 가구와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를 포함해 더 포괄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가구의 경우 2021년 1년 동안의 수급 개월 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부표 6-2-2〉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의료급여(1종)	83.96
의료급여(2종)	14.26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1.78
기타	0.00
계	100.00

〈부표 6-2-3〉 의료급여 수급 시 문제점

(단위: %)

구분	비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90.13
혜택 범위가 좁은 것(본인 부담이 많은 것)	6.81
적용 기간의 제한	1.02
차별 대우를 받음	1.98
기타	0.06
계	100.00

〈부표 6-2-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사유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7.14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50.86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12.99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7.70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8.31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36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1.6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13
	기타	0.90
	계	100.00
의료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7.78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44.40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10.33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8.06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6.60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21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20.8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14
	기타	1.66
	계	100.00

급여	구분	비율
주거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11.19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45.16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13.16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9.49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8.46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26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0.31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70
	기타	1.27
		계
교육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21.49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24.96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11.65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26.72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3.28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00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0.57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00
	기타	1.33
		계

〈부표 6-2-5〉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절성 평가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매우 적절하다	1.33
	적절하다	13.57
	보통이다	27.45
	부족하다	51.41
	매우 부족하다	6.25
	계	100.00
의료	매우 적절하다	16.84
	적절하다	59.23
	보통이다	18.55
	부족하다	4.83
	매우 부족하다	0.55
	계	100.00
주거	매우 적절하다	6.32
	적절하다	43.48
	보통이다	36.29
	부족하다	12.64
	매우 부족하다	1.27
	계	100.00
교육	매우 적절하다	5.88
	적절하다	36.78
	보통이다	39.47
	부족하다	17.87
	매우 부족하다	0.00
	계	100.00

〈부표 6-2-6〉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예상 소요 기간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6개월 이내	0.00
	6개월 후~1년 이내	0.12
	1년 후~3년 이내	1.02
	3년 후	1.59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91.53
	잘 모르겠다	5.75
	계	100.00
의료	6개월 이내	0.00
	6개월 후~1년 이내	0.13
	1년 후~3년 이내	2.17
	3년 후	1.89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90.87
	잘 모르겠다	4.94
	계	100.00
주거	6개월 이내	0.77
	6개월 후~1년 이내	0.25
	1년 후~3년 이내	1.76
	3년 후	1.68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87.21
	잘 모르겠다	8.34
	계	100.00
교육	6개월 이내	1.41
	6개월 후~1년 이내	1.41
	1년 후~3년 이내	10.60
	3년 후	36.40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37.03
	잘 모르겠다	13.16
	계	100.00

〈부표 6-2-7〉 탈수급의 주된 사유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8.62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11.11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13.08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0.00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6.00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서	0.00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3.98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달라져서	57.21
	기타	0.00
	계	100.00
의료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7.12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7.61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10.81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0.00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4.95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서	0.00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0.0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달라져서	69.51
	기타	0.00
	계	100.00
주거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7.08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44.86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32.96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0.00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0.00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서	15.11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0.0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달라져서	0.00
	기타	0.00
	계	100.00
교육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0.00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0.00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0.00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0.00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0.00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서	20.80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63.82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달라져서	0.00
	기타	15.38
	계	100.00

〈부표 6-2-8〉 탈수급하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60.08
교육비 지원	0.64
주거비 지원	37.89
자활 관련 지원	0.87
없다	0.17
기타	0.35
계	100.00

〈부표 6-2-9〉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20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1.65
그저 그렇다	14.00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60.04
매우 도움이 되었다	24.11
계	100.00

〈부표 6-2-1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이 근로 의욕 변화에 미친 영향

(단위: %)

구분	비율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0.19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1.08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19.17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57.24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22.32
계	100.00

〈부표 6-2-1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비율
둘 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74.91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11.73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0.40
둘 다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7.36
잘 모르겠다	5.61
계	100.00

3. 사회복지 서비스

〈부표 6-3-1〉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택 관련 서비스	0.26	0.82	0.04
상담 서비스	0.48	0.39	0.51
각종 대출, 융자	0.11	0.11	0.10
개인발달계좌(자산 형성 프로그램)	0.56	0.21	0.71
권익보장지원(공공후견 서비스 등)	0.03	0.04	0.02

〈부표 6-3-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0.90	34.11	15.46
없다	79.06	65.89	84.4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금액

(단위: 천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26	129.75	4.38
저소득	91	107.67	4.84
일반	151	167.72	8.49

주: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 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 2022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를 경험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4〉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별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 체	저소득	일 반
방문요양	79.42	77.88	82.07
방문목욕	12.69	14.76	9.13
방문간호	0.97	1.08	0.78
주야간보호	21.66	20.25	24.09
단기보호	0.00	0.00	0.00
기타 재가급여	10.96	11.38	10.25
시설급여	0.50	0.09	1.20
특별현금급여	0.10	0.15	0.00

주: 2022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이용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5〉 노인 가구의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4.75	7.07	2.52
물품 지원(식료품, 의료, 가구 등)	14.81	27.06	3.06
가사 지원 서비스	14.23	21.17	7.57
식사 배달 서비스	2.69	4.95	0.51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2.65	4.05	1.31
주야간보호 서비스	2.31	2.71	1.91

주: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노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6〉 장애인 가구의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아동수당	0.25	0.54	0.00
가사 지원 서비스	17.58	21.45	14.27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4.10	4.10	4.10
주택 관련 서비스	0.39	0.85	0.00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0.69	0.27	1.05
장애아동 및 장애인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0.62	0.11	1.05
장애아동 및 장애인 자녀 관련 프로그램	1.47	0.58	2.24
자동차 관련 지원	23.44	10.04	34.90
권익보장지원(공공후견 서비스 등)	0.06	0.04	0.08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7〉 아동 가구의 기타 아동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학비 지원	41.65	66.28	40.41
예체능 교실	2.61	20.47	1.70
문화활동	2.62	28.87	1.29
가정봉사, 아이돌봄 서비스	0.48	0.00	0.50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0.26	0.92	0.22

주: 만 1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아동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8〉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5.48	8.18	5.34
없다	94.52	91.82	94.66
계	100.00	100.00	100.00

주: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새로 추가된 아동(만 17세 이하)이 있는지를 분석함.

〈부표 6-3-9〉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41.0	56.91	1.76
저소득	20.0	35.23	7.59
일반	43.0	57.60	1.80

주: 2022년 1년간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10〉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5.8	0.50
저소득	0	0.5	0.45
일반	0	6.0	0.52

주: 2022년 1년간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록 7] 장애인 부가조사

1. 응답자 특성

〈부표 7-1-1〉 장애발생 원인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선천적 원인	12.46	10.98	13.78
출생시 원인	2.29	0.84	3.60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	48.86	55.85	42.57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	30.42	26.43	34.01
원인불명	5.97	5.90	6.0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 장애발생 시기

(단위: 세)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36.00	34.80	0.63
저소득	40.00	38.23	0.85
일반	33.00	31.72	0.92

〈부표 7-1-3〉 장애발생 당시 가구 소득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부유	0.30	0.00	0.58
부유	8.69	6.09	11.02
보통	51.92	40.71	62.00
가난	32.13	43.86	21.58
매우 가난	6.96	9.34	4.8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 장애의 현재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호전(개선)되고 있다	7.55	5.75	9.17
고착되어 있다	60.91	55.66	65.62
악화 또는 진행되고 있다	31.54	38.59	25.2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5〉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의료 급여 1종	26.84	45.88	9.74
의료 급여 2종	3.75	6.06	1.68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70	0.74	0.66
건강보험	68.71	47.32	87.9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6〉 장애치료의 충분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충분한 치료를 받음)	43.20	46.05	40.64
아니오(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음)	56.80	53.95	59.3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7〉 장애 치료의 불충분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4.03	3.43	4.52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올 것 같아서	6.59	2.82	9.67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43.26	49.69	37.98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40.69	37.57	43.25
치료받기 싫어서	0.65	0.94	0.41
주위의 시선 때문에	0.01	0.00	0.02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0.57	0.03	1.01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0.51	0.46	0.56
치료 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이동의 불편)	3.04	3.61	2.58
기타	0.65	1.45	0.00
계	100.00	100.00	100.00

2.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부표 7-2-1〉 결혼 전 및 생활 중 차별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결혼 전 차별	0.00	0.00	0.00
결혼 생활 중 차별	1.77	1.56	1.87

주: 1) 지난 1년 동안 결혼 전제 교제 혹은 결혼 생활 중인 응답자만 분석대상에 포함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7-2-2〉 결혼 전 및 생활 중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가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결혼 전 차별	무시한다	0.00	0.00	0.00
	참는다	0.00	0.00	0.00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0.00	0.00	0.00
결혼 생활 중 차별	무시한다	50.07	51.78	49.47
	참는다	49.93	48.22	50.53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1) 차별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한 사례 중에서 대처방법에 응답한 사례만을 분석함.
2) 결혼 전 차별 경험이 있는 사례 및 대처방법에 응답한 사례가 없었음.

〈부표 7-2-3〉 직장 생활 차별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소득(임금) 차별	2.14	3.09	1.85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	4.05	6.19	3.39
승진에서 차별	0.00	0.00	0.00

주: 1) 지난 1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경우만 분석대상에 포함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7-2-4〉 직장 생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가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소득(임금) 차별	무시한다	50.00	50.00	50.00
	참는다	50.00	50.00	50.00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	무시한다	49.07	47.49	50.00
	참는다	49.07	47.49	50.00
	항의한다	1.10	2.96	0.00
	고발한다	0.38	1.03	0.00
	기타	0.38	1.03	0.00
계		100.00	100.00	100.00
승진에서 차별	무시한다	0.00	0.00	0.00
	참는다	0.00	0.00	0.00
	항의한다	0.00	0.00	0.00
	고발한다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0.00	0.00	0.00

주: 1) 차별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한 사례 중에서 대처방법에 응답한 사례만을 분석함.
 2) 승진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사례 및 대처방법에 응답한 사례가 없었음.

3. 일상생활

〈부표 7-3-1〉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48.49	43.16	53.28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23.22	27.44	19.43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6.09	19.55	12.97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8.11	8.02	8.19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4.09	1.83	6.1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3-2〉 지각된 사회적 지지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34.00	32.86	0.21
저소득	31.00	31.02	0.28
일반	36.00	34.50	0.30

4. 대상별 설문

1) 성인

〈부표 7-4-1〉 각종 서비스 필요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상 생활 지원	25.13	23.97	25.85
가사 지원	25.18	27.17	23.94
이동 관련 지원	32.58	33.83	31.80
의사 소통 지원 및 정보접근 참여	10.04	7.69	11.51
재활치료	29.37	33.80	26.60
상담	30.03	39.06	24.41
취업 관련 서비스	30.41	29.13	31.21
직업 재활 서비스	20.69	28.03	16.12
장애인 일자리	29.77	34.66	26.73
교육	10.01	6.05	12.47
사회 참여 지원	23.02	25.04	21.76
여가 생활 지원	47.81	53.36	44.36
의사 결정 지원	14.45	7.35	18.87
자립생활 지원	13.80	12.49	14.62
주·야간 보호	8.13	8.58	7.85
단기보호	7.44	8.97	6.49
방문간호(간병)	13.33	14.00	12.92
방문 및 이동 목욕	6.37	6.65	6.20

〈부표 7-4-2〉 각종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상 생활 지원	8.33	3.90	11.09
가사 지원	11.44	8.22	13.44
이동 관련 지원	12.60	9.95	14.25
의사 소통 지원 및 정보접근 참여	1.89	0.32	2.87
재활치료	10.32	9.43	10.87
상담	6.40	11.87	2.99
취업 관련 서비스	4.79	2.48	6.22
직업 재활 서비스	2.29	2.02	2.46
장애인 일자리	4.82	1.66	6.78
교육	2.48	0.21	3.89
사회 참여 지원	1.75	1.22	2.07
여가 생활 지원	2.14	0.93	2.90
의사 결정 지원	0.80	0.00	1.30
자립생활 지원	0.34	0.00	0.54
주·야간 보호	1.66	1.16	1.97
단기보호	0.68	1.77	0.00
방문간호(간병)	1.73	0.22	2.67
방문 및 이동 목록	1.38	2.14	0.91

〈부표 7-4-3〉 취업일자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영업	21.90	9.91	23.31
일반사업체	44.47	28.78	46.32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18.06	24.47	17.3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 근로, 표준 사업장)	7.17	26.44	4.90
장애인 관련기관(자립생활센터 포함)	7.07	5.11	7.30
기타	1.33	5.29	0.8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4〉 취업 희망 일자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영업	3.58	3.42	3.72
일반사업체	29.34	35.49	23.76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30.68	25.61	35.2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 근로, 표준 사업장)	26.34	27.20	25.56
장애인 관련기관(자립생활센터 포함)	10.06	8.28	11.67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5〉 취업불원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가 심해서 오래전에 포기했음	64.25	68.38	57.83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음	5.11	2.37	9.40
그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17.16	21.63	10.15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충족해서	1.31	0.00	3.37
학력, 기술, 기능이 부족해서	2.56	1.26	4.59
취업, 창업정보를 몰라서	0.20	0.32	0.00
일자리가 없어서	2.65	1.29	4.78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0.96	0.57	1.57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심해서	2.98	2.28	4.07
육아 혹은 가사 때문에	1.34	0.35	2.89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1.48	1.55	1.35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6〉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한다	3.86	1.93	5.07
이용하지 않는다	96.14	98.07	94.9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7〉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희망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겠다	31.30	31.50	31.18
이용하지 않겠다	68.70	68.50	68.82
계	100.00	100.00	100.00

2) 어르신

〈부표 7-4-8〉 각종 서비스 필요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업상담 및 취업준비, 훈련 서비스	17.79	15.02	21.79
정서적 서비스	25.60	31.02	17.75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36.03	42.59	26.52
급식지원	24.25	34.82	8.94
전문 상담 서비스	10.92	10.96	10.86
주거지원	36.38	47.71	19.95
여가생활	32.75	39.38	23.14
요양시설보호	9.92	11.69	7.34
주·야간보호	10.92	12.44	8.71
단기보호	5.83	7.18	3.88
가사지원 서비스	36.31	45.18	23.47
물리치료 및 재활	33.90	39.67	25.53
방문간호(간병)	23.96	30.98	13.78
방문 및 이동 목욕	15.95	20.30	9.65
의사결정지원 서비스(후견서비스 등)	10.53	14.69	4.51

〈부표 7-4-9〉 각종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업상담 및 취업준비, 훈련 서비스	4.86	5.76	3.56
정서적 서비스	7.21	10.11	3.00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0.45	12.44	7.57
급식지원	6.50	10.26	1.04
전문 상담 서비스	1.78	0.88	3.09
주거지원	16.07	21.13	8.75
여가생활	2.22	1.75	2.88
요양시설보호	0.58	0.98	0.00
주·야간보호	1.79	2.67	0.51
단기보호	0.10	0.00	0.25
가사지원 서비스	17.16	21.11	11.44
물리치료 및 재활	11.88	15.62	6.46
방문간호(간병)	1.13	1.66	0.36
방문 및 이동 목욕	2.92	3.83	1.59
의사결정지원 서비스(후견서비스 등)	0.07	0.11	0.00

〈부표 7-4-10〉 취업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취업	23.76	14.91	36.59
취업희망	8.09	7.63	8.76
취업불원(희망하지 않음)	68.15	77.46	54.6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11〉 취업일자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영업	12.92	12.21	13.33
일반사업체	29.58	2.68	45.47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	32.94	56.50	19.03
농어업	21.37	23.75	19.96
친목회, 종교기관, 지역사회단체 등	2.84	4.50	1.86
기타	0.35	0.36	0.3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12〉 구직활동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	32.76	13.36	57.25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다	67.24	86.64	42.7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13〉 취업 희망 일자리의 보수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돈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	10.12	16.44	5.58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일	27.52	33.68	23.08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일	62.36	49.88	71.34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14〉 취업을 위해 바라는 정부지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부 지원 필요 없음	10.21	2.90	15.47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61.19	83.49	45.13
일자리 연계(취업알선)	13.44	3.48	20.61
새로운 기술이나 정신교육	0.34	0.00	0.59
노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6.16	4.36	7.45
노인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고용 의무화	8.66	5.77	10.75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15〉 용돈

(단위: 만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5.00	9.35	0.31
저소득	5.00	7.03	0.32
일반	10.00	12.70	0.59

〈부표 7-4-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이용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한다	3.37	4.69	1.4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통원서비스를 이용한다	0.34	0.53	0.05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다	16.47	20.39	10.78
둘 다 이용하지 않는다	79.82	74.39	87.7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희망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겠다	67.02	66.39	67.83
이용하지 않는다	32.98	33.61	32.1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4-18〉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희망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겠다	80.03	80.31	79.64
이용하지 않겠다	19.97	19.69	20.36
계	100.00	100.00	100.00

[부록 8] 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상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2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294, 8215, 8256, 8162,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가구생성차수		가구분리일련번호
	- 1차 가구: 01 - 3차 신규가구: 03 - 14차 신규가구: 14 - 16차 신규가구: 16	- 2차 신규가구: 02 - 4차 신규가구: 04 - 15차 신규가구: 15 - 17차 신규가구: 17	- 1차 가구: 01 - 첫 번째 분리가구: 01 - 두 번째 분리가구: 02 - 세 번째 분리가구: 03
* 인포시트상의 숫자들 그대로 이기	* 인포시트상의 숫자들 그대로 이기	* 인포시트상의 숫자들 그대로 이기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방문횟수	총 회	
1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① 비헤담(원료) ② 늦은 귀가 ③ 장기출타
3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④ 부재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문항 미완
4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조사거부 ⑦ 이사(주소추적불가)
최종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⑧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멸 ⑨ 기타 추적불가사유 ⑩ 기타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	-----------------------	-----	-----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정도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정도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심장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⑫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안면장애 (지적장애) ⑭ 장루·오루장애 ⑦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⑮ 간질장애(뇌전증장애) ⑯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가정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 ※ 중증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 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장애정도가 심함 장애인 (기준 1~3급)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4~6급) ③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① 비해당 (18세 미만)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18세 이상, 미혼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떨어져 미혼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급여종류	1)수급여부	2) 수급형태 1		3) 수급형태 2	
	① 생계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해당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② 의료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해당없음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②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해당없음 ① 임차급여(특례포함) ③ 수선유지급여(특례포함)			
④ 교육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급여 수급자 수	명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1957년 이전 출생자)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107개 위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유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

- ※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수급형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고, 교육급여는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수급자 수를 기입합니다.
-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문2) 2022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문4)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2022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2022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 →020 없음 →000	⑩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⑩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⑥ 치과병·의원 ⑦ 요양병원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 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양산합니다. 순회 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 ※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예방접종(국가 무료예방접종 및 유료예방접종)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합니다.

문 2 2) 입원횟수

- ※ 장기입원횟수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중양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⑩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면 2022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⑤ 요양/휴식'은 질병 치료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 기타'로 표시합니다.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 (12월 31일 기준)
* 2007년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14세 이하 → [I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②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 ③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문방이를 할 수 있는 정도) → 문3)으로 갈 것 ④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 문3)으로 갈 것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문2)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⑤ 비경제활동인구 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3-1)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문3-1)로 갈 것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 문3)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로 갈 것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1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 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 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원료(“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 이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 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참가하고 있는 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실업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동 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무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유직자(병가, 산전후유가, 육아유
직 등)도 취업자로 파악한다.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는 조사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12월 31일 기준)

※ 문3)에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상황에 따라 12월 31일 기준 쉬고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응답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3)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목사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 종속관계가 긴밀하다.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소속의 고용주' 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 근로자의 상각관계가 성립한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아래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지명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도사, 보형설계사, 골 〃장 캐디, 지임형태의 레미콘(화물, 덩 〃)기사, 택배원(택시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횡단자랑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회사에 속한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이루어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고용주(혹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이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업상 언제든지 해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2> 산업분류 코드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 하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3>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기자도 ② 군복무로 응답	
1		직업명	직업코드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① 문3)에서 '①~⑥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⑦지찰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자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제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 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행버거의 OO지역 제인점의 경우는 행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OO지역 제인 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자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그룹의 OO지점자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 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으로 기입한다.
 • 아첨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아첨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OO 업체의 소속으로 근무도 OO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OO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지찰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이 수 있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로 응답한다.
 ② 문3)에서 '⑦~⑩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발전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함 됨. 보훈급여금은 제외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문9)로 갈 것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 로 납부기한을 깜 박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납부하고 있음' 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이지만 실직, 사 업중단, 휴직(출산, 육아 등),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는 사람.
1						
2						
3						
4						
5						
6						
7						
8						
9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①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
 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응어해설>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지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입)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
 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962년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인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가입자이었던 자가 만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하고,
 문8)미가입 이유에 ⑥만60세 결과로 기입)
 ①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칭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사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고도소수감 등)	2022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같 것 ※ 2022년 1년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이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격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22년 1년 기준임. ※ 문9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22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 ①비해당으로 기입하고, 미납한 경향이 있는 경우는 ①-⑤ 중 응답.	2022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하셨습니다? —문9)로 같 것 ※ 2022년 1년간 기준임. ※ 2022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⑥ 만60세 경과
1			개월		개월	
2			개월		개월	
3			개월		개월	
4			개월		개월	
5			개월		개월	
6			개월		개월	
7			개월		개월	
8			개월		개월	
9			개월		개월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선원의 경우 ① 비해당에 해당. 발전우체국직원의 경우는 별도로 가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업자는 ① 비해당이며, 고용주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에 따라 ① 가입 또는 ② 미가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발전우체국직원의 경우 ① 비해당에 해당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2012.1.22 이후 자영업자 및 고용주(50인 미만 근로자 사용)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 가능.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발전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발전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종신보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수령 중인 경우 포함)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⑧ 미가입 ※ 가구원별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은 그 각각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묻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⑤-⑧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함.
1						
2						
3						
4						
5						
6						
7						
8						
9						

문 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2022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③ 월 보험료 부담 ④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에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처치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 6) (“II.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22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12월 보험료 합계 만원

문 4)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총 개

< 유의사항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평(아파트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1평=3.3㎡)

m²

< 유의사항 >
 ※ 마당, 정원, 차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6)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택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① 자가 → 문7)로 갈 것
- ② 전세 → 문6-1)로 갈 것
- ③ 보증부월세 → 문6-1)로 갈 것
- ④ 월세(사글세) → 문6-1)로 갈 것
-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 → 문10)으로 갈 것
- ⑥ 기타 → 문10)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가형,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아들(가구원이 아닌)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의 주택 (등기상) 점유형태는 '⑥ 비가구원 명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 점유형태 '⑥ 기타'에는 무상 관사, 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문 6-1) (문6) 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월세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택이 거주하였던 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민간임대주택 → 문7)로 갈 것
- ②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 문6-2)로 갈 것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문7)로 갈 것
- ④ 기타 임대주택 → 문7)로 갈 것

문 6-2) (문6-1) ②공공임대주택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택이 거주하였던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영구임대주택
- ② 국민임대주택
- ③ 행복주택
- ④ 장기전세주택
- 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 ⑥ 기타

문 7)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주택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만원

< 유의사항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주택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형, 주택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주택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8)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9)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았던 귀댁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	2022년 1년간 주택관련 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없음=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9-1)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2년 1년간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연체한 적이 없다
- ② 1회
- ③ 2~3회
- ④ 4회 이상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가 없거나 2022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10)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문 1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㉓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㉔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㉕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㉖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㉗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땔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용 것: _____)

문 12) 2022년 1년간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관련 사업	있다	없다
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도매입임대 임차인지원)	①	②
㉙ 전세자금(용자)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자체의 전세(용자) 이자 지원 포함)	①	②
㉚ 월세지원(주거안정 월세대출) (※ 지자체의 월세, 이자 지원 포함)	①	②
㉛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①	②
㉜ 주거급여 외의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①	②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넣어가면 됩니다.
 ※ ㉙의 경우 2022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22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㉙㉚㉛의 경우는 2022년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문		문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월평균	천	백	십	원
<p>〈 유의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복지 할인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일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2022년 구입)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 예) 2022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중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2022년에도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라도 2022년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 식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기소비(자기가 동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2) 외 식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우유 중식비 포함), 가족(가구원이 아닌 비용은 사적이전 지출에 포함)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석식),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3) 주류·담배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주류·담배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류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2)	주거비(주택 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기인 경우 '당(당, 자기)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2-2) 주거관리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살비 및 수선비(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포함),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3)	광열수도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4)	가구·가사용품비	문 4-1)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가전(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CCTV 카메라, 식기주방용품, 가사청소기 및 소모품(조명기구, 화장지, 전구, 공기, 세탁청소용구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파출부, 청소비 등), 가져와 값, 정수기 대여료, 치료목적이 아닌 바우처(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4-2) 보육료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보육료는? ※ 보육료는 베이비시터, 놀이방을 이용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5)	의류 신발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의의(스포츠웨어 포함),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스포츠용 포함)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6)	보건 의료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보건 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생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 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마스크, 손소독제, 치료용바우처(미안아용바우처)이용료 등. 보건 의료비는 본인인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교육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초·중·고 제외,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아는 경우), 유학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7-2) 사교육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경쟁고사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8)	교양 오락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권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뉴신타, 골"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미디어(DVD) 대여료, 애경(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9)	교통통신비	문 9-1)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아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대리운전비, 성인용전자거, 전동휠체어, 전동력보드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9-2)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유대근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0)	기타소비지출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신일조 등)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관공상비(가구지출 기준),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 경조비(축의금 부의금 등 타 가구 지출)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 종교관련비용(신일조 등)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 비영리단체(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이전지출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1)	사이전	문 11-1) 가 비 동 구 원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따로 사는 가구원(라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용(월세 등), 학교 기숙사비(조식, 석식 포함), 생활장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1-2) 타 가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2)	세금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소득세 등의 연간 납입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종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 부동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3)	사회보장부담금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납입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립장이나 제직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 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4)	총 생활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 ※ 총생활비 = 1~13의 합계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기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담상환, 월부, 외상 밀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권월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학생·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 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르면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개월수는 2022년 동안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21)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년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전 주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지명지,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 주된활동구분
-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④ 농 림 축 산 업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 경 영 주 :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22.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치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 (원천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p>※ 종근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종근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종근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이아 동일함).</p> <p>→ 상용근로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임시·일용근로자								
[보조기입란 3-아]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1회당(일당) 보수					
<p>※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2022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22년 가구원 A가 1~6월까지는 월 5회, 7~12월까지는 월 15회 일하였다면, 월 10회((30+90회)/12개월) 기재</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p>		1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1.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급여 (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p>※ 종근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종근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과 종근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p>[보조기입란 4-a]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p> <p>※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은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p> <p>※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매출액 (A)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p>[보조기입란 4-b]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p> <p>※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복리우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비용 (B)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p>4-1.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p> <p>※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p> <p>※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순소득에는 자가소비, 고용주의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p> <p>※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이고 금액을 기입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순소득 (A-B)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p>4-2.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p> <p>※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2022년 2,000만원을 벌어서 1,3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700만원 기입</p> <p>※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 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p> <p>※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전입소득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p>5-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3.3 m²</p>							
① 논	총						m ²
② 밭	총						m ²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m ²
※ 없음 0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m ²

[보조기입란 5-a]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재고의 판매량 포함)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지량 + 잉자량(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축산업에서 종 수확량은 가족의 종보유량임.

구분	예시	종류	총 수확량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자가 소비량	이전 소비량	판매단가 (천원)	판매수입 (만원)	자가 소비액 (만원)	이전 소비액 (만원)
			(a+b+c)	(a)	(b)	(c)	(p)	(A=a*p÷10)	(B=b*p÷10)	(C=c*p÷10)
곡류	미곡 : 패벼, 팽쌀, 찰벼, 잡쌀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벼류, 잡곡, 콩류, 감자 고구마 등 서류 등									
채소 과일류	배추 : 봄동, 미나리, 냉이, 단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상아,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앵두 등									
	채소 : 셀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채소 :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팥잎, 괴수묘, 뽕묘, 모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계									
축산업	소, 젓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깃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총계									

5-2.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계 (A + B + C)									
연간 총					연간 총					연간 총					연간 총					연간 총					연간 총														
상	일	천	백	십	만	원	천	백	십	만	원	천	백	십	만	원	천	백	십	만	원	천	백	십	만	원	천	백	십										

※ 재고판매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보조기입란 5 a의 양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5-3.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배농자재, 벚жит단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연간 잡수입 총액(D)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보조기입란 5-b].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의 세부항목 ※ 농림축산업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양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잡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체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 한 경우 **사용가능연한(내구연수)을 절분**하여 그 연수(年數)만큼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0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0만원으로 기재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영농광열비는 버, 고추 등 농작을 말리기, 비닐어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연간 순소득 (A+B+C+D-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문 6) 어업 경영주

[보조기입란 6-a]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연간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 a와 동일함									
분류	예 시	종류	판매량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되어 계산
※ 없음 0

6-2.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잡수입 총액(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비해보상금, 어업용배지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보조기입란 6-b]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항목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양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시										연간총지출금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수산물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물가공수수료, 기타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6-3.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순소득(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7) 기타 근로소득: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성명	가구원번호	연간 기타 근로소득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부 항목	금 액						
문 8)	재 산 소 득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2022년 1년 동안 얻은 재산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x12를 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원 받는 경우: (10x12)+100=220만원으로 기입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③ 기타(자적증 대여 등)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문 9)	사 회 보 험	2022년 1년 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 국민연금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교원 별정직우체국)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문 10)	민 간 보 험	2022년 1년 동안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총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② 퇴직연금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문 11)	기 타 정 부 보 조 금	2022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유형별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 14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①, ⑧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수련회비, 육아돌봄비 지원, 교통안전공단지원금,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지원 물품, 보건소 의료비 지원(5대 양, 치매, 인공수정, 제외수정 등), 자동차세 감면, 교육비 지원, 수확여행 비용, 쓰레기봉투 등이 있음. 아들은 기타에 포함.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② 기초연금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③ 한부모가족지원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⑦ 아동수당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급여 포함)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⑩ 농어업 정부보조금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⑪ 긴급복지지원금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⑫ 기타 바우처 지원금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⑭ 근로장려세제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⑮ 자녀장려세제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⑯ 급식비 지원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⑰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⑱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⑲ 기타()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⑳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지역형 긴급복지지원, 지역형 청년수당 등)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㉑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연간	십억	천	백	십	만원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2022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은 경우 여기서 파악.	① 증여·상속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쉼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12-1	환급금	2022년 1년 동안 돌려받은 환급금 총액은?	세금환급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 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2022년 1년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부모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자녀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	2022년 1년 동안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2022년 1년 동안 귀댁의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 9개월 미만된 가구원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은수용품이나 은수비 등을 제외한 소득만을 기입함.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민 간 보 조 금(현금 및 현물)	2022년 1년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총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금 여(및 출 형 금 여)	① 생계급여 2022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은?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 장제급여 및 출산급여 포함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개월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거급여 2022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은?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교육급여 2022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 응답지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서 파악하십시오.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IX.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 태	<p>2022.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p> <p>※ 명의기준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카드빚'에 포함하고, 현금 할부구매는 '⑥의상 할부구입 0리판 갱신'에 포함 ※ 전인적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기입하고, 이자가 없으면(우이자)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자동차 구매의 경우, 카드할부이면 '③카드빚'으로 기록하고 자동차 관련 대출은 '①금융기관대출'로 기록 ※ 일련 형제, 교종안전공단잔치대부금, 사외보험 연체금 등은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세부항목별로 부채가 없는 경우, '0'</p>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의상, 할부 구입, 미리 탄 갱신 ※ 미리 탄 갱신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기타부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이자	<p>2022년 1년(2022.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p> <p>※ 명의기준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순수이자'만 기입 ※ 연체한 경우, '0'</p>	① 1년 동안 거주하였던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부채 용도	<p>2022.12.31. 기준으로 다음 각각의 항목별 부채 금액이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p> <p>※ 부채가 없는 경우 '0' 기재 ※ 항목별 부채 비율의 한은 '100' 이어야 함. (단, 부채가 없는 경우, 한은 '0')</p>	① 생활비(생계비)							%	
			② 주택관련 자금 (전월세보증금 포함)								%
			③ 교육(학자금마련 포함)								%
			④ 의료비								%
			⑤ 빚 갚음								%
			⑥ 기타 ()								%
			총 부채	1	0	0					%

※ 없음 0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12.31 기준, 명의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가계)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부동산	2022.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주택의 건물(가족명의로의 사업장(가계)·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부동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2)	점부동산	2022.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계,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큰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3)	금융자산	2022.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저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불입한(타기 전) 껌돈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받은 것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4)	농기계	2022.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중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할곡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경운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콤바인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트랙터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기타()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5)	농축산물	2022.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① 소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돼지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닭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재계농산물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기타() ※ 유실수 포함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6)	자동차	2022.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원산에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대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7)	기타재산	2022.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전차, 굴삭기(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기타()	십억	억	천	백	십	만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2022년 1년 동안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㉔ 202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small>※ 2022년 1년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 인 경우 '㉔ 비해당'에 응답</small>	①	②	③
㉕ 202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㉖ 202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㉗ 202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㉔ 비해당'에 응답	①	②	③
㉘ 202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㉙ 202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㉚ 2022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small>※ 2022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22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㉔ 있다'에 응답</small>	①	②	/
㉛ 2022년 1년 동안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small>※ 2022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만을 받는 가구는 '㉔ 비해당'에 응답</small>	①	②	③

문 2) 2022년 1년 동안에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㉔ 202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㉕ 202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㉖ 202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① → ㉔로 같겠	② → ㉕로 같겠	③ → ㉖로 같겠
㉗ (㉖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월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㉘ 202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㉙ 202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그 밖에 의료급여 특례, 자활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합니다.

문 1) 귀댁은 202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2)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2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문2)로 갈 것**
-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22년 1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22년 12월에 이었고 선정은 2023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22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22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 수급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한 후, 재신청하여 다시 수급한 경우에는 재신청 결과에 대해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4개 급여를 모두 신청해서 수급이었다가 탈락하고, 5월에는 의료, 주거급여만 신청해서 수급 받게 되었다면 ②로 응답합니다.

문 1-3)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3-1) 문 1-3-2) 문 1-3-3) 문 1-3-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4-1) 문 14-2) 문 14-3) 문 14-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문 2) 귀댁은 202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받은 적이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받은 적이 없다 → XII-1.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22년 1년 동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개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수급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 동안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1) 생계급여

첫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두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세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문 2-1-2) 의료급여

첫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두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세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문 2-1-3) 주거급여

첫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두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세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문 2-1-4) 교육급여

첫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두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세 번째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2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유의사항 >
 ※ 수급과 탈퇴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202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하나라도 받은 급여가 있다면,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1) 생계급여 문 2-2-2) 의료급여 문 2-2-3) 주거급여 문 2-2-4) 교육급여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 유의사항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중간에 탈퇴가 되었다라든,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수급한 **최초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문 2-3-1) 생계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2)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3) 주거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4)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응답해주시고, 수급과 탈퇴를 반복한 경우, 2022년에 받은 모든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12월 말까지 받은 급여가 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각 급여별로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3-1) 생계급여 문 3-2) 의료급여 문 3-3) 주거급여 문 3-4) 교육급여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한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 자녀장려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인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문 1)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 1-1) 근로장려세제 문 1-2) 자녀장려세제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귀댁은 2022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둘 다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②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③ 자녀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④ 둘 다 신청한 적 없다 → 문 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5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6~11월 동안 기간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후 신청한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1) 귀댁은 2022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둘 다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② 근로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③ 자녀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④ 둘 다 받지 못했다 → X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정부보조금관의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란에 정확한 급여액을 기입함.
 ※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급여가 지급되며,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는 지급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를 강행해서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지급받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2) 수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① 아이들 교육비 ② 일상생활비 ③ 의료비 ④ 문화오락비 ⑤ 저축 ⑥ 기타

문 2-3) 귀댁의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주는 도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2-4) 귀택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는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 ②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 ③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 ④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 ⑤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문 3) 귀택은 **금년(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②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 ④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 ⑤ 잘 모르겠다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서비스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①	②
㉧ 상담서비스	①	②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용자	①	②
㉩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①	②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용단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급여),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마우저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인)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할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이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주택 관련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한다.

※ ㉤ 상담서비스: 고인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용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용자, 지역일자 특별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개인발달계좌: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저축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22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①	②
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①	②
㉖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①	②
㉗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①	②
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①	②
㉙ 아이돌봄지원	①	②
㉚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㉛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㉜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①	②
㉝ 에너지바우처	①	②
㉞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㉖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㉗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양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㉙ 아이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원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㉚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기관 및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 ㉛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기존 항목이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언어발달지원'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문항 신설하였다.
- ※ ㉜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 ㉝ 에너지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임신부가 있을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대상 바우처이다.
- ※ ㉞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실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 3) 2022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5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책이 지불하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월단위

백만	십만	일만	천
----	----	----	---

 원

< 유의사항 >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급여(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방문요양(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①	②
㉡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②
㉢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②
㉤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②
㉥ 기타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용구)	①	②
㉦ 시설급여(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①	②
㉧ 특별현금급여(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①	②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기초연금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 노인일자리사업	①	②
㉪ 사회참여 서비스(한글교실, 생활וג가, 나들이, 자조모임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연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금, 재발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경진 및 개인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지자체 노인결식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노인이 일부 자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방문, 전화, IQ를 통한 안전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예'라고 응답한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생활관리사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노인일자리사업: 만60세~64세의 예외적 참여를 허용하나,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자체를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하므로 만60~64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응답하지 않는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 ㉪ 사회참여 서비스: 문화여가활동(노래교실 등)과 평생교육활동(한글 교실 등) 뿐만 아니라, 체험여행활동(나들이, 공연 관람 등),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자조모임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아동수당	①	②
㉡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①	②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①	②
㉦ 학비 지원	①	②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①	②

< 유의사항 >
 ※ 원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유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응답한다.

< 유의사항 >
 ※ ㉠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교육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에 해당한다.
 ※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가구의 소득 혹은 아동의 출생순위 등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를 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할인(직장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 할인이 직장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것이라면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해 할인을 받는 것이라면 포함된다.
 ※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취학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므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지원도 포함된다.
 ※ ㉦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비 지원과 장애영유아 무상교육은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에 해당된다.
 ※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교실은 미술, 음악, 체육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서비스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 포함된다.
 ※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비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음 문2)~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 귀댁에 가구원으로 2021. 4. 1. ~ 2022. 3. 31. 동안에 새로 가구원으로 진입(출산, 입양 등)한 아동(자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아동(자녀)은 누구입니까?
 (* 2쪽의 가구원현황과 16차년도에 추가된 가구원 중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재해주시시오.)

- ① 있다 → 문 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은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small>(※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시오)</small>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2-1) 체중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㉔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지)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호칭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 0000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지)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호칭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 0000

구분	< 보 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⑧ 학원 ⑨ 개인·그룹과외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⑪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이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 및 특기 지도 등을 하는 경우) ⑫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이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⑬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⑭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⑮ 공적지원 아이 돌보미(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⑯ 민간 아이 돌보미 ⑰ 기타(적을 것 :) ⑱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영아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문화센터 등)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①	②
㉡ 장애수당(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①	②
㉢ 장애아동수당	①	②
㉣ 의료재활서비스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자동차 관련 지원	①	②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장애아동수당: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매달 일정 지원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임에 주의한다.

* ㉣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령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장구 지원 및 알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이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마우저)도 포함된다.

*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지원생활훈련, 장애인지원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우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XVII. 가족

문 1) **2022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 ⑥ 가족 내 폭력 |
| ②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 ⑦ 가구원간 관계 |
| ③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 ⑧ 가구원의 가출 |
| ④ 자녀교육 혹은 행동 | ⑨ 주거관련 문제 |
| ⑤ 가구원의 건강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 | ⑪ 자녀의 결혼문제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22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독신가구이면서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18차 신규가구용(유형2)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2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294, 8215, 8256, 8162,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small>*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small>	가구생성차수 <small>-18차 신규가구: 18</small>	가구분리일련번호 <small>-첫번째 18차 신규가구: 01 -두번째 18차 신규가구: 02 -세번째 18차 신규가구: 03</small>	※분가사유
	1	8	① 결혼 ② 직장 ③ 학업 ④ 이혼 ⑤ 별거 ⑥ 위탁 ⑦ 기타(*기타내용은 가구정보란에 기록)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동·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성명	가구원번호	휴대폰
	응답자 2		
	성명	가구원번호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4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최종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지도원 (인)

I. 가구일반사항

※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신규가구는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생성된 가구만 해당됩니다. (10월 1일 이후 생성 가구는 신규가구가 아니라 원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조사).

※ 신규가구 생성 시기 ([인포시트] 내용 이기) 년 월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가구 생성 시점~ 2022년 12월 31일까지 3/4 이상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 페널ID	가구원 번호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생년 (生年)	생월 (生月)	문5-1)	문5-2)
18차 가정입 가구원 18 재진입 가구원 최초 진입차수 -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인포시트상의 개인페널ID 를 그대로 이기하고, 18차 진입가구원의 경우 새로 운 개인페널ID를 부여	※ 순서 대로 기입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관식 으로 기입후 아래 [가구주 와의 관계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 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 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 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0 1 0	① 남 ② 여	※ 주민등록상의 생년, 생월을 기재하여 주십 시오. (반드시 [인포시트]와 비교하여 확인)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중학교 ④ 고등학교 전문대학 ⑤ 대학교 ⑥ 대학원(석사) ⑦ 대학원(박사)	⑩ 비해당 ⑪ 재학 ⑫ 휴학 ⑬ 중퇴 ⑭ 수료 ⑮ 졸업	
		1								
		2								
		3								
		4								
		5								
		6								
		7								
		8								
		9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010. 가구주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1. 가구주의 아버지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05. 가구주의 조부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
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정도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정도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③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④ 신경장애 ③ 시각장애 ⑤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⑥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⑦ 간장애 ⑥ 정신지체 (지적장애) ⑧ 안면장애 ⑦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⑧ 간질장애(뇌전증장애) ⑨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 1~3급)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4~6급) ③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① 비해당 (18세 미만)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밀려진 미혼자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급여종류	1) 수급여부	2) 수급형태 1		3) 수급형태 2	
	① 생계급여			① 해당없음 ② 조건부수급가구	① 일반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① 해당없음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② 의료급여			① 해당없음 ② 의료급여 2종	① 의료급여 1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① 해당없음 ②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①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① 해당없음 ③ 수선유지급여(특례포함)	① 임차급여(특례포함)	X	
④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수	명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1957년 이전)인 노인(할머니, 할머니)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 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맞춤형 급여 〉

※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수급형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고, 교육급여는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수급자 수를 기입합니다.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문2) 2022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2022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문4) 2022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020 없음→000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⑩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⑩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계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⑥ 치과병·의원 ⑦ 요양병원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 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산입합니다. 순회 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 ※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예방접종(국가 무료예방접종 및 유료예방접종)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합니다.

문 2 2) 입원횟수

-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할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⑩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면 2022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⑤ 요양/휴식'은 질병 치료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 기타'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2022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질병	문8) 2022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2022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 1 없음 → 0	① 비배당 ②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④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① 1건 이상 ②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진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질병
 ※ 아래 (주요병명코드)를 참조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중복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표기합니다.
 ※ 장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 또는 만성 및 일시적 또는 미증상 특이적으로 다른 질환의 경우를 주요병명에 포함하지 않으며 '발병률'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과 같은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질병으로 기록(예:유전적 소인, 유방암, 유전적 소인)은 건강검진 항목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최신질환(신종코로나)은 1인 경우에도 '1'만 기입 가능합니다.
 ※ 뇌혈관질환(중풍)은 '1'만 기재하며, 혈관 질환으로 기록(예:뇌졸중)에 포함(예:중풍)은 제외합니다. '중풍'은 '뇌혈관질환' 중 뇌졸중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머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특정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예) 000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CI(Critical Illness)보험**: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보령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통 종신보험과 묶여서 판매되며, 질병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 **실손형 의료보험**: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입원비, 진료비, 수술비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하는 보험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요병명코드]			
01 비배당	02 비배당	03 비배당	04 비배당
05 비배당	06 비배당	07 비배당	08 비배당
09 비배당	10 비배당	11 비배당	12 비배당
13 비배당	14 비배당	15 비배당	16 비배당
17 비배당	18 비배당	19 비배당	20 비배당
21 비배당	22 비배당	23 비배당	24 비배당
25 비배당	26 비배당	27 비배당	28 비배당
29 비배당	30 비배당	31 비배당	32 비배당
33 비배당	34 비배당	35 비배당	36 비배당
37 비배당	38 비배당	39 비배당	40 비배당
41 비배당	42 비배당	43 비배당	44 비배당
45 비배당	46 비배당	47 비배당	48 비배당
49 비배당	50 비배당	51 비배당	52 비배당
53 비배당	54 비배당	55 비배당	56 비배당
57 비배당	58 비배당	59 비배당	60 비배당
61 비배당	62 비배당	63 비배당	64 비배당
65 비배당	66 비배당	67 비배당	68 비배당
69 비배당	70 비배당	71 비배당	72 비배당
73 비배당	74 비배당	75 비배당	76 비배당
77 비배당	78 비배당	79 비배당	80 비배당
81 비배당	82 비배당	83 비배당	84 비배당
85 비배당	86 비배당	87 비배당	88 비배당
89 비배당	90 비배당	91 비배당	92 비배당
93 비배당	94 비배당	95 비배당	96 비배당
97 비배당	98 비배당	99 비배당	00 비배당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 (12월 31일 기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4세 이하 → [I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②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 ③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특별이를 할 수 있는 정도) → 문3)으로 갈 것 ④ 단순근로미만자 (직만 일만 가능) → 문3)으로 갈 것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정안일도 불가능) → 문2)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⑨ 비경제활동인구 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3)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문3)로 갈 것 ⑤ 고용주 → 문3)로 갈 것 ⑥ 자영업자 → 문3)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 문3)로 갈 것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로 갈 것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1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 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 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시업원료(“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 이었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 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 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실업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상신 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고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로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무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유직자(병가, 산전유유가, 육아유 직 등)도 취업자로 파악한다.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는 조사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12월 31일 기준)

※ 문3)에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상황에 따라 12월 31일 된 쉬고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응답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3)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1)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목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 종속관계가 긴밀하다.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내래 소속'의 고용주 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 근로기간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자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를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아래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지명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동제공의 방법이나 노동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도사, 보양설계사, 골 "장 캐디, 지임형태의 레미콘(화물, 영")기사, 택배원(력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판매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학원차량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학원에 속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균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이루어져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고용주(혹은 심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이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2> 산업분류 코드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 하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3>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기자도 ② 군복무로 응답
		직업명	직업코드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① 문3)에서 '①~⑥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⑦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자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ООО행의 ООО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00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 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행버거의 00지역 체인점의 경우는 행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00지역 체인 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자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그룹의 00지점자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 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으로 기입한다.
• 아첨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아첨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00 업체 소속으로 근무도 00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00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이 수 있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동,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로 응답한다.
② 문3)에서 '⑦~⑩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9)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함됨. <u>보통급여금은 제외</u> .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부출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거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예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 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이지만 실직, 사업중단, 휴직(출산, 육아 등), 군안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1						
2						
3						
4						
5						
6						
7						
8						
9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⑤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관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입)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관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962년생으로 국민연관에 가입하였던 자인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가입자이었던 자가 만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하고, 문8)미가입 이유에 ⑥만60세 경과로 기입)
- ⑤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영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사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22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 ※ 2022년 1년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을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격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22년 1년 기준임.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22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 ①비해당으로 기입하고, 미납한 경향이 있는 경우는 ①-⑤ 중 응답.	2022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하셨습니다? ————— ※ 2022년 1년간 기준임. ※ 2022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⑥ 만60세 경과
1			개월		개월	
2			개월		개월	
3			개월		개월	
4			개월		개월	
5			개월		개월	
6			개월		개월	
7			개월		개월	
8			개월		개월	
9			개월		개월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선원의 경우 ① 비해당에 해당. 발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별도이므로 가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업자는 ① 비해당이며, 고용주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에 따라 ① 가입 또는 ② 미가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발정우체국직원의 경우 ① 비해당에 해당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2012.1.22 이후 자영업자 및 고용주(50인 미만 근로자 사용)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 가능.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발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발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종신보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수령 중인 경우 포함)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⑧ 미가입 ※ 가구원별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은 그 각각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묻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⑤-⑧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함.
1						
2						
3						
4						
5						
6						
7						
8						
9						

문 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2022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③ 월 보험료 부담 ④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처치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 6) (“II.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22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12월 보험료 합계 만원

VI. 주거

문 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 단독주택 ③ 다세대 주택 ④ 연립주택 ⑤ 아파트 ⑥ 고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영업겸용 단독주택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⑨ 오피스텔 ⑩ 관갯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임시가건물,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 유의사항 >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2)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하층 ② 반지하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지상 ④ 옥탑 |
|---|--|

< 유의사항 >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총 개

< 유의사항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4)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평(아파트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1평=3.3㎡)

m²

< 유의사항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가 → 문6)으로 갈 것 ② 전세 → 문5-1)로 갈 것 ③ 보증부월세 → 문5-1)로 갈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월세(사글세) → 문5-1)로 갈 것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 → 문9)로 갈 것 ⑥ 기타 → 문9)로 갈 것 |
|---|--|

< 유의사항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기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매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의 주택(등기상) 점유형태는 '⑥ 비가구원 명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 점유형태 '⑥ 기타'에는 무상 관사, 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문 5-1) (문5) 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월세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택이 거주하였던 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민간임대주택 ②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④ 기타 임대주택

문 5-2) (문5-1) ②공공임대주택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택이 거주하였던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영구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 ② 국민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⑥ 기타

문 6)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주택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십	억	천	백	십	만	원

< 유의사항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주택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형, 주택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주택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7)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택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부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8)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았던 귀택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십	억	천	백	십	만	원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관련 부채들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없음=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8-1)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연체한 적이 없다 ③ 2~3회
- ② 1회 ④ 4회 이상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재가 없거나 2022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재를 다 갖은 경우 '① 연제한 적이 없다'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9)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㉓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㉔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㉕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㉖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㉗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문 10)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㉘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㉙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채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채래식 ⑤ 없음
㉚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채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채래식 ⑤ 없음
㉛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㉜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채래식(땃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관련 사업	있다	없다
㉞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도매입임대 임차인지원)	①	②
㉟ 전세자금(용자)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자체의 전세(용자) 이자 지원 포함)	①	②
㊱ 월세지원(주거안정 월세대출) (※ 지자체의 월세, 이자 지원 포함)	①	②
㊲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①	②
㊳ 주거급여 외의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①	②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의 경우 2022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22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 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의 경우는 2022년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 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문		문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월평균	천	백	십	원
<p>〈유의사항〉</p> <p>※ 생활비 : 신규가구 생성이후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p> <p>※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복지 할인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p> <p>※ 일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2022년 구입)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 예) 2022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종가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중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2022년에도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라도 2022년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p> <p>※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중생필비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p>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 식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가소비(자기나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나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2) 외 식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가족(가구원이 아닌 비용은 사적이전 지출에 포함)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교식비(석식),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서 무료식사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3) 주류·담배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주류·담배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류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2)	주거비 (주택 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기인 경우 '당, 자기'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2-2) 주거관리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포함),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3)	광 열 수도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근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근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4)	가구·가사용품비	문 4-1)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기(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CCTV 카메라, 식기주방용품, 가사집화 및 소모품(조명기구, 화장지, 장구, 공구, 세탁형소용구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바늘부, 침시 등), 기저귀 값, 정수기 대여료, 치료목적이 아닌 바우처(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4-2) 보육료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보육료는? ※ 보육료는 배너시터, 놀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5)	의류 신발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의의(스포츠웨어 포함),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스포츠용 포함)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6)	보건 의료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마스크, 손소독제, 치료용바우처(미안아바우처)이용료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나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 교육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공교육비는?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초·중·고 제외),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아는 경우), 유학비, 해외학숙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7-2) 사 교육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8)	교양 오락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경난감, 등산용품, 낚시대, 낚시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어학학습비, 단체관람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애견(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9)	교통 통신비	문 9-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아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대리운전비, 성인용지전거, 전동휠체어, 전동킥보드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9-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유대근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0)	기타소비지출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신일조 등)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관공상비(가구지출 기준), 응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경조비(축의금 부의금 등 타 가구 지출)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종교관련비용(신일조 등)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비영리단체(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이전지출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	사이 직전	문 11-1) 거 가 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월세 등), 학교 기숙사비(조식, 석식 포함, 생활준비, 응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2) 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 지 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농사지에서 친인척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 자취의 결은 등으로 집을 사준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제외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재에 대한 이자(예컨대, 아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세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업부동산세, 상속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소득세 등의 연간 종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부동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3)	사회보장부담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납입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총 생활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한 총 생활비는? ※ 총생활비 = 1~13의 합계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기를 위한 저축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통일
 ※ 권월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 단, 2021. 10. 1 ~ 2021. 12. 31 사이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면 됩니다.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계의)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학생·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개월수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21)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년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현 우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지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된활동구분**

-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계의)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④ 농 림 축 산 업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 경 영 주 :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22.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학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의 월평균) 는 얼마였습니까?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2년 1월 1일 이전(202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10%;">가구원 번호</th> <th colspan="7">월평균 급여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 ※ 종근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반공미,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유대근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종근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등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종근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아 동일함). → 상용근로소득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 </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body> </table>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 종근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반공미,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유대근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종근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등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종근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아 동일함). → 상용근로소득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 종근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반공미,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유대근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종근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등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종근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아 동일함). → 상용근로소득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3)	임시·일용근로자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2년 1월 1일 이전(202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보조기입란 3-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10%;">가구원 번호</th> <th style="width: 15%;">월평균 일한횟수 (A)</th> <th colspan="7">1회당(일당) 보수 (B)</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전체 일한 횟(일)수를 생성 개월수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22년 5월 생성가구의 가구원 A가 5~10월까지는 월 20회, 11~12월까지지는 월 10회 일하였다면, 175회(140회/8개월)가 되어 반올림하여 18회로 기재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원</td> </tr> </tbody> </table>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A)	1회당(일당) 보수 (B)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전체 일한 횟(일)수를 생성 개월수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22년 5월 생성가구의 가구원 A가 5~10월까지는 월 20회, 11~12월까지지는 월 10회 일하였다면, 175회(140회/8개월)가 되어 반올림하여 18회로 기재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1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A)	1회당(일당) 보수 (B)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전체 일한 횟(일)수를 생성 개월수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22년 5월 생성가구의 가구원 A가 5~10월까지는 월 20회, 11~12월까지지는 월 10회 일하였다면, 175회(140회/8개월)가 되어 반올림하여 18회로 기재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1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월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 는 얼마였습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10%;">가구원 번호</th> <th colspan="7">월평균 급여액 (A×B)</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 ※ 종근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반공미,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유대근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종근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등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종근여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 </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td> </tr> </tbody> </table>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A×B)							※ 종근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반공미,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유대근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종근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등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종근여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A×B)																																																																																	
※ 종근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반공미,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유대근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종근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등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종근여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p>문 4) 고용주 및 자영자</p>	<p>※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2년 1월 1일 이전(202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p>[보조기입란 4-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p> <p>※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p> <p>※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종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성명</p>	<p>가구원 번호</p>	<p>월평균 매출액 (A)</p>							
		1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2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3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4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5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6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7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8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9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p>[보조기입란 4-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p> <p>※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복리우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자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종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성명</p>	<p>가구원 번호</p>	<p>월평균 총비용 (B)</p>							
		1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2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3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4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5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6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7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8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9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p>4-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p> <p>※ 순소득은 월평균 종매출액에서 월평균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순소득에는 자기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이고 금액을 기입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p>성명</p>	<p>가구원 번호</p>	<p>월평균 순소득 (A-B)</p>							
		1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2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3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4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5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6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7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8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9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p>4-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p> <p>※ 전입소득은 종수입종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1,500만원을 빌어 1,0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500만원을 신규가구 생성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값을 기입</p> <p>※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 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p> <p>※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형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전입소득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5)	<p>농림축산업 경영주</p> <p>※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p> <p>※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2(개월)) (단, 2022년 1월 1일 이전(202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	--

5-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3.3 m ²						
① 논	총						m ²
② 밭	총						m ²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m ²
※ 없음 0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m ²

[보조기입란 5-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재고의 판매량 포함)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량 + 잉자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이전소비액 =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축산업에서 종 수확량은 가족의 종보유량임.

구분	예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곡류	미곡 : 벼, 메밀, 찰벼, 잡쌀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벼류, 잡곡, 콩류, 감자고구마등 서류 등									
채소 과일 류	봄 채소 :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앵두 등									
	여름 채소 : 샐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병인, 과수묘, 뽕묘, 모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계										
축산업	소, 젓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깻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연양 등)									
총계										

5-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만원	천원	백원	십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 재고판매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보조기입란 5 a의 양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5-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농업관련 월평균 기타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외해보상금, 배농자재, 벗장단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5-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농업경영비)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농림축산업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양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시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잡지출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 개월수(내구 개월수)을 절로**하여 그 사용가능 개월수로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2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만원(=1200만원÷120개월)으로 기재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영농광열비는 버·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어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월평균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구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2년 1월 1일 이전(2021.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보조기입란 6-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 a와 동일함.

분류	예시	종류	월평균 판매량 (a)	월평균 자가소비량 (b)	월평균 이전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월평균 판매수입 (만원) (A=a*p÷10)	월평균 자가소비액 (만원) (B=b*p÷10)	월평균 이전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의 월평균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계 (A+B+C)	
단위	만원	만원	만원
살	알	천	백
십	일	십	일

※ 없음 0

6-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어업관련 월평균 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외해보상금, 어업응배지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살	알	천	백
십	일	십	일

[보조기입란 6-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산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시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지출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평균	만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평균	만원
수산가공지출	차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월평균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만원
살	알	천	백
십	일	십	일

6-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살	알	천	백
십	일	십	일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살	알	천	백
십	일	십	일

문 7)	기타 근로소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2년 1월 1일 이전(202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만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기타 근로 소득						
		1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4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6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8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	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살	알	천	백	십	일	십	일	십	일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2년 1월 1일 이전(202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문	재 산 소 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얻은 재산소득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을 기입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신규생성기간으로 나눔	세 부 항 목		금 액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③ 기 타(자적증 대여 등)	월	단	백	십	원
문 8)	재 산 소 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얻은 재산소득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을 기입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신규생성기간으로 나눔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③ 기 타(자적증 대여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문 9)	사 회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받은 사회보험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교원·별정직우체국)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문 10)	민 간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월평균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② 퇴직연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② 기초연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③ 한부모가족지원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⑦ 아동수당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급여 포함)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⑩ 농어업 정부보조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⑪ 긴급복지지원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⑫ 기타 바우처 지원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⑬ 국민취업지원제도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⑭ 근로장려세제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⑮ 자녀장려세제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⑯ 급식비 지원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⑰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⑱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⑳ 기타()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㉑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지역형 긴급복지지원, 지역형 청년수당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㉒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문 11)	기 타 정 부 보 조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형태와 월평균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4), 문(5)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㉑, ㉒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수련회비, 육아돌봄지원,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지원 품종, 보건소 의료비 지원(5대암, 치매, 인공수정, 제외수정 등), 자동차세 감면, 교육비 지원, 수확여행 비용, 쓰레기봉투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② 기초연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③ 한부모가족지원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⑦ 아동수당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급여 포함)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⑩ 농어업 정부보조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⑪ 긴급복지지원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⑫ 기타 바우처 지원금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⑬ 국민취업지원제도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⑭ 근로장려세제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⑮ 자녀장려세제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⑯ 급식비 지원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⑰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⑱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⑳ 기타()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㉑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지역형 긴급복지지원, 지역형 청년수당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㉒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월평균	월	단	백	십	원	만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신규가구생성 이후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는 경우 여기서 파악.	① 중여·상속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정조금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갯돈 등)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12-1	환급금	신규가구생성 이후 2022년 12월까지 돌려받은 환급금 총액은?	세금환급금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 없음 0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2년 1월 1일 이전(202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기 타 소 득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월평균액은? ※ 분가이후 주택구입용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 신규가구에서 분리되었거나 새로 들어온 가구원 중, 신규가구 '생성시점~2022.12.31 기간 중 3/4 미만 동안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은 기타에 기입	부모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자녀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기타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민 간 보 조 금 (현금 및 현물)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월평균 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출생급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은?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 장제급여 및 출생급여 포함)	연간 수급 개월수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개월								
			② 주거급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은?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연간 수급 개월수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③ 교육급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서 파악하십시오.	연간 수급 개월수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 없음 0

IX.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 상태	<p>2022.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p> <p>※ 명의기준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카드빚'에 포함하고, 현금 할부구매는 '⑥의상 할부구입 0리판 갯돈'에 포함 ※ 전인적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기입하고, 이자가 없으면(우이자)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자동차 구매의 경우, 카드할부이면 '③카드빚'으로 기록하고 자동차 관련 대출은 '①금융기관대출'로 기록 ※ 일련 일체 교정안전공단잔치대부금 사외보험 연체금 등은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세부항목별로 부채가 없는 경우, '0'</p>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의상, 할부 구입, 미리판 갯돈 ※ 미리 판 갯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기타부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이자	<p>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까지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월평균 얼마였습니까?</p> <p>※ 명의기준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순수이자'만 기입 ※ 연체한 경우, '0'</p>	① 신규가구 생성이후 거주하였던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부채 용도	<p>2022.12.31. 기준으로 다음 각각의 항목별 부채 금액이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p> <p>※ 부채가 없는 경우 '0' 기재 ※ 항목별 부채 비율의 한은 '100' 이어야 함. (단, 부채가 없는 경우, 한은 '0')</p>	① 생활비(생계비)							%	
			② 주택관련 자금 (전월세보증금 포함)								%
			③ 교육(학자금마련 포함)								%
			④ 의료비								%
			⑤ 빚 갚음								%
			⑥ 기타 ()								%
			총 부채	1	0	0					%

※ 없음 0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12.31 기준, 명의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가계)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부동산	2022.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주택의 건물(가족명의로의 사업장(가계)·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부동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2)	점부동산	2022.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계,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큰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3)	금융자산	2022.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저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불입한(타기 전) 껌돈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4)	농기계	2022.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중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할곡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경운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콤바인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트랙터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기타()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5)	농축산물	2022.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① 소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돼지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닭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재고농산물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기타() ※ 유실수 포함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6)	자동차	2022.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원산에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대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7)	기타재산	2022.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전차, 굴삭기(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기타()	십억	억	천	백	십	만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㉓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small>*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 '㉓ 비해당'에 종단</small>	①	②	③
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㉕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㉖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small>*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㉓ 비해당'에 종단</small>	①	②	③
㉗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㉙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small>* 신규가구 생성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㉙ 있다'에 종단</small>	①	②	
㉚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small>*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받을 가구는 '㉓ 비해당'에 종단</small>	①	②	③

문 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022년 1월 1일 이전(202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2년 경험을 파악하면 됩니다.)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㉓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규형 접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㉕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① → ㉔로 갈라주세요	② → ㉔로 갈라주세요	③ → ㉔로 갈라주세요	
㉖	(㉕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월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㉗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그 밖에 의료급여 특례, 자활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합니다.

문 1)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2)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2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문2)로 갈 것**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2022년 1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22년 12월에 어였고 선정은 2023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22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22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 수급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한 후, 재신청하여 다시 수급한 경우에는 재신청 결과에 대해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4개 급여를 모두 신청해서 수급이었다가 탈락하고, 5월에는 의료, 주거급여만 신청해서 수급 받게 되었다면 ③로 응답합니다.

문 1-3)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3-1) 문 1-3-2) 문 1-3-3) 문 1-3-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② 자동차가 있어서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4-1) 문 1-4-2) 문 1-4-3) 문 1-4-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문 2)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받은 적이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받은 적이 없다 → XII-1. 근로장려제도로 갈 것

< 유의사항 >
 ※ 신규가구 생성 이후 2022년 1년 동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개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수급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1) 생계급여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문 2-1-2) 의료급여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문 2-1-3) 주거급여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문 2-1-4) 교육급여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유의사항 >
 ※ 수급과 탈퇴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하나라도 받은 급여가 있다면**,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1) 생계급여 문 2-2-2) 의료급여 문 2-2-3) 주거급여 문 2-2-4) 교육급여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 유의사항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중간에 탈퇴가 되었더라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수급한 **최초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문 2-3-1) 생계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2)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3) 주거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4)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응답해 주시고**, 수급과 탈퇴를 반복한 경우, **2022년에 받은 모든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2022년 **12월 말까지 받은 급여가 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각 급여별로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3-1) 생계급여 문 3-2) 의료급여 문 3-3) 주거급여 문 3-4) 교육급여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문 4)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12월 말까지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각 급여별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4-1) 문 4-2) 문 4-3) 문 4-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 5)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귀댁이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는 무엇입니까? (생계비를 제외하고 하나만 응답)

- ① 의료비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⑤ 없다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한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 자녀장려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문 1)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 1-1) 문 1-2)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둘 다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②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③ 자녀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④ 둘 다 신청한 적 없다 → **문 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5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6 11월 동안 기간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후에 신청한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1)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2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둘 다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② 근로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③ 자녀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④ 둘 다 받지 못했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정부보조금련의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련에 정확한 급여액을 기입함.
 ※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급여가 지급되며,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는 지급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지급받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2) 수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① 아이들 교육비 ② 일상생활비 ③ 의료비 ④ 문화오락비 ⑤ 저축 ⑥ 기타

문 2-3) 귀댁의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주는 도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2-4) 귀댁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는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②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③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④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⑤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문 3) 귀댁은 금년(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②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④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⑤ 잘 모르겠다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서비스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①	②
㉧ 상담서비스	①	②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용자	①	②
㉩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①	②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용단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급여),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마우저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인)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향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이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주택 관련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한다.
 ※ ㉤ 상담서비스: 고인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용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용자, 지역일자 특별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개인발달계좌: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저축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22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①	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①	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①	②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①	②
㉥ 아이돌봄지원	①	②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①	②
㉩ 에너지바우처	①	②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양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아이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원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기관 및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기존 항목이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언어발달지원'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문항 신설하였다.
- ※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 ㉩ 에너지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임신부가 있을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대상 바우처이다.
-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실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 3) 2022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5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댁이 지불하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월단위

백만	십만	일만	천
----	----	----	---

 원

< 유의사항 >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급여(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방문요양(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①	②
㉡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②
㉢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②
㉤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②
㉥ 기타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용구)	①	②
㉦ 시설급여(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①	②
㉧ 특별현금급여(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①	②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기초연금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 노인일자리사업	①	②
㉪ 사회참여 서비스(한글교실, 생활וג가, 나들이, 자조모임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연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금, 재할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경진 및 개인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지자체 노인결식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노인이 일부 자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방문, 전화, IQ를 통한 안전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예'라고 응답한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생활관리사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노인일자리사업: 만60세~64세의 예외적 참여를 허용하나,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자체를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하므로 만60~64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응답하지 않는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 ㉪ 사회참여 서비스: 문화여가활동(노래교실 등)과 평생교육활동(한글 교실 등) 뿐만 아니라, 체험여행활동(나들이, 공연 관람 등),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자조모임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아동수당	①	②
㉡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①	②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①	②
㉦ 학비 지원	①	②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①	②

< 유의사항 >
 ※ 원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유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응답한다.

< 유의사항 >
 ※ ㉠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교육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에 해당한다.
 ※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가구의 소득 혹은 아동의 출생순위 등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를 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할인(직장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 할인이 직장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것이라면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해 할인을 받는 것이라면 포함된다.
 ※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취학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므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지원도 포함된다.
 ※ ㉦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비 지원과 장애영유아 무상교육은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에 해당된다.
 ※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교실은 미술, 음악, 체육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서비스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 포함된다.
 ※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비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에 해당한다.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㉔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지)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 0000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지)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 0000

구분	< 보 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⑧ 학원 ⑨ 개인·그룹과외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⑪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이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 및 특기 지도 등을 하는 경우) ⑫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이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⑬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⑭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⑮ 공적지원 아이 돌보미(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⑯ 민간 아이 돌보미 ⑰ 기타(적을 것 :) ⑱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영아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문화센터 등)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right; font-size: 8px; font-family: monospace;" type="text"/> 만원
				C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3급)	①	②
㉡ 장애수당(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준 4~6급)	①	②
㉢ 장애아동수당	①	②
㉣ 의료재활서비스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 사회적 및 취업관련 서비스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자동차 관련 지원	①	②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장애아동수당: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매달 일정 지원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에 주의한다.

* ㉣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정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청기 지원 및 알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바우처)도 포함된다.

* ㉩ 사회적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우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XVII. 가족

문 1) **2022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 ⑥ 가족 내 폭력 |
| ②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 ⑦ 가구원간 관계 |
| ③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 ⑧ 가구원의 가출 |
| ④ 자녀교육 혹은 행동 | ⑨ 주거관련 문제 |
| ⑤ 가구원의 건강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 | ⑪ 자녀의 결혼문제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22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독신가구이면서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원용(유형3)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2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294, 8215, 8256, 8162,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트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①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불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③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⑩ 기타						가구주성명	
	② 아니오		☐ 사유 (번호기재)							대리응답자
							성명	가구원번호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현주소로 기재함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① 비해당(완료) ② 늦은 귀가 ③ 장기출타 ④ 부재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문항 미완 ⑥ 조사거부 ⑦ 뇌병변장애 ⑧ 심한 지적, 자폐성장애 (기준12급) ⑨ 사망 ⑩ 기타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22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급여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 ② 공무원연금
-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 ④ 군인연금
-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 **문1-4)로 갈 것**
- ⑥ 보훈급여금 → **문1-6)로 갈 것**
- ⑦ 기타(적을 것 :)

< 유의사항 >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1 2)~문1 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급여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령연금
- ② 장애연금
- ③ 유족연금
- ④ 분할연금
- ⑤ 사망일시금
- ⑥ 반환일시금
- ⑦ 기타(적을 것 :)

문 1-3) 귀하가 2022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백	십	원
---	---	---	---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	---

 개월 연간 총액

원	백	십	원
---	---	---	---

 만원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 ②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 ③ 재해보상급여(장해연금,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사망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공무상요양비 등)
- ④ 퇴직수당
- ⑤ 부조급여(재해보조금, 사망조위금)
- ⑥ 기타(적을 것 :)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22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 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	--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2년 1년간 받은 보훈급여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보훈급여금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보훈급여금과 관련 법령으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하는 수시보훈급여금
을 일컫는다.)
(※ 2022년부터 변경. **보훈급여금 및 기타 연금의 경우**, 사회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 수급액 함께 산정 시 유의하여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	--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2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 ②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훈련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 현금지원)
- ④ 현물급여 (근로자화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22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급여액(현금+현물)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	--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2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요양급여 | ⑤ 유족급여-연금 |
| ② 휴업급여 | ⑥ 유족급여-일시금 |
| ③ 장해급여-연금 | ⑦ 기타 현금급여(장외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해·유족특별급여 등) |
|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⑧ 잘 모르겠다 |

문 3-2) 귀하가 2022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만원</td> <td style="width: 20%;">천</td> <td style="width: 20%;">백</td> <td style="width: 20%;">십</td> <td style="width: 20%;">원</td> </tr> </table>	만원	천	백	십	원		만원			
만원	천	백	십	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십</td> <td style="width: 20%;">원</td> <td style="width: 20%;">개월</td> <td style="width: 20%;">연간 총액</td> <td style="width: 20%;">천</td> <td style="width: 20%;">백</td> <td style="width: 20%;">십</td> <td style="width: 20%;">원</td> </tr> </table>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2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2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만원</td> <td style="width: 20%;">천</td> <td style="width: 20%;">백</td> <td style="width: 20%;">십</td> <td style="width: 20%;">원</td> </tr> </table>	만원	천	백	십	원		만원			
만원	천	백	십	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십</td> <td style="width: 20%;">원</td> <td style="width: 20%;">개월</td> <td style="width: 20%;">연간 총액</td> <td style="width: 20%;">천</td> <td style="width: 20%;">백</td> <td style="width: 20%;">십</td> <td style="width: 20%;">원</td> </tr> </table>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2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험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2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만원</td> <td style="width: 20%;">천</td> <td style="width: 20%;">백</td> <td style="width: 20%;">십</td> <td style="width: 20%;">원</td> </tr> </table>	만원	천	백	십	원		만원			
만원	천	백	십	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십</td> <td style="width: 20%;">원</td> <td style="width: 20%;">개월</td> <td style="width: 20%;">연간 총액</td> <td style="width: 20%;">천</td> <td style="width: 20%;">백</td> <td style="width: 20%;">십</td> <td style="width: 20%;">원</td> </tr> </table>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B. 근로

문 1) 귀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문2)~문6)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② 자영업, 고용주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③ 무급가족종사자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 **문7)으로 갈 것**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 **C.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용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포함) 자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도 임금근로자로 응답
2. 자영업, 고용주: 본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실업자(2022.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아닌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5.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6)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22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일자리 구분방식
 ① 일하는 장소(00건설현장, 00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②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같은 일(건설현장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 했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③ 같은 일을 했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함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② 정리해고로
-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④ 정년퇴직
-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⑰ 출산, 육아 때문에
-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다음 문7) ~ 문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구직활동이란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7-2)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이 때문에 ② 성차별 때문에 ③ 외모 때문에 ④ 학력이 낮기 때문에 ⑤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⑥ 경력이 부족해서 ⑦ 건강문제로 ⑧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⑨ 신용불량자라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가사일 때문에 ⑪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⑫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⑭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⑮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⑯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⑰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지명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 10) 귀하는 2022년 1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습니다?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기술사 | ⑤ 기능사 |
| ② 기능장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중 |
| ③ 기사 | ⑦ 자격중 없는 기능자 |
| ④ 산업기사 | ⑧ 없다 → C.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

문 10-1) (문 10)의 ① ~ ⑦번 응답자만)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
|----------|---------|----------------|
| ① 기계·금속 | ⑩ 국토개발 | ⑳ 공예 |
| ② 화공·세라믹 | ⑪ 농림 | ㉑ 사무관리 |
| ③ 전기·전자 | ⑫ 해양 | ㉒ 음료품·식료품 |
| ④ 통신 | ⑬ 산업디자인 | ㉓ 위생 |
| ⑤ 조선 | ⑭ 에너지 | ㉔ 보건·의료·사회 |
| ⑥ 항공 | ⑮ 환경 | ㉕ 금융·무역·유통 |
| ⑦ 섬유 | ⑯ 안전관리 | ㉖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
| ⑧ 토목·건축 | ⑰ 산업용용 | ㉗ 외국어·관광 |
| ⑨ 광업자원 | ⑱ 교통 | ㉘ 기타 |
| ⑩ 정보처리 | | |

< 유의사항 >
※ 문10)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2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일반적으로 볼 때, 여자는 대부분과 사람들을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친절,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
- ② 매우 친절하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2) 귀하의 지역(시/군/구)에서 누군가 병든(가: 건강 등)은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음	약간	보통	대부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있다	그렇다	그렇다
1	2	3	4	5

문 3)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충분히 코칭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전호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까?

없음	약간	보통	대부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있다	그렇다	그렇다
1	2	3	4	5

문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의 경우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2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십니까?

연간 총액

만원	천	백	십	원
----	---	---	---	---

문 4-2)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22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연간

회	회	회
---	---	---

문 5)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① 있다 → 문5-1)로 갈 것 ② 없다

< 유의사항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5-2)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전화통화 외 카톡,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포함합니다.

문 6) 귀하는 다음과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게 다	전혀 그렇다
예) 머릿이 쓰인채로 있을 경우 기침과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예) 머릿이 쓰인채로 있다가 물을 들이면 피부에 자극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예) 기침후루로 걸리는 것은 귀머지 코를 끼는 것만큼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예) 마스크를 쓴다는 자체가 손을 씻는 것보다, 위생의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예) 마스크와 겹쳐 두면 귀머지 코의 위험성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예) 마스크에서 나오는 증기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예) 마스크에 땀이 맺히면 호흡기가 시원하다.	①	②	③	④	⑤
예) 마스크에 대한 직접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2년 1년간(2022. 1. 1 ~ 2022. 12. 31)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없음	1~2년	3~5년	6년이상	비해당
㉠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독신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미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미가구원 포함)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문 15)~문 17)은 신규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신규가구를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18차 신규가구원용(유형4)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2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294, 8215, 8256, 8162,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 가구원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input type="checkbox"/>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가구주성명		대리응답자			
	② 아니오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성명	가구원번호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요양							
					⑨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⑩ 기타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연주소를 기재함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⑥ 비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채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분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뇌병변장애 ⑦ 심한 지적, 자폐성장애 (기준1,2급) ⑧ 사망 ⑨ 기타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22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급여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 ② 공무원연금
-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④ 군인연금 → **문1-4)로 갈 것**
-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 **문1-6)로 갈 것**
- ⑥ 보훈급여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 2)~문 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급여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령연금
- ② 장애연금
- ③ 유족연금
- ④ 분할연금
- ⑤ 사망일시금
- ⑥ 반환일시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3) 귀하가 2022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용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교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font-size: 8px; text-align: center;"> </td> </tr> </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font-size: 8px; text-align: center;"> </td> <td style="font-size: 8px; text-align: center;"> </td> </tr> </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20%;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font-size: 8px; text-align: center;"> </td> </tr> </table>											만원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 ④ 퇴직수당
- ②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 ⑤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③ 재해보상급여(장애연금,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사망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공무원상요양비 등)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22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 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	--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2년 1년간 받은 **보훈급여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보훈급여금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보훈급여금과 관련 법령으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하는 수시보훈급여금을
일컫는다.)
(※ 2022년부터 변경, **보훈급여금 및 기타 연금의 경우**, 사회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 수급액 함께 산정 시 유의하여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	--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2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 ②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훈련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 현금지원)
- ④ 현물급여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22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급여액(현금+현물)**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	--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2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① 요양급여 | ⑤ 유족급여-연금 |
| ② 휴업급여 | ⑥ 유족급여-일시금 |
| ③ 장해급여-연금 | ⑦ 기타 현금급여(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해·유족특별급여 등) |
|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⑧ 잘 모르겠다 |

문 3-2) 귀하가 2022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교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5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r></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5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15px;"> </td><td style="width: 15px;"> </td><td style="width: 15px;"> </td></tr></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5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r></table>						만원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2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2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5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r></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5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15px;"> </td><td style="width: 15px;"> </td><td style="width: 15px;"> </td></tr></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5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r></table>						만원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2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험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2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5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r></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5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15px;"> </td><td style="width: 15px;"> </td><td style="width: 15px;"> </td></tr></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50px; height: 20px;"><tr><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d style="width: 30px;"> </td></tr></table>						만원

B. 근로

문 1) 귀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문2)~문6)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② 자영업, 고용주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③ 무급가족종사자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7)으로 갈 것**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용 III. 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포함) 지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도 임금근로자로 응답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22.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능력의 사유가 아닌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6)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22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일자리 구분방식

- ① 일하는 장소(00건설현장, 00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②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같은 일(건설현장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 했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③ 같은 일을 했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함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 ② 정리해고로 |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 ④ 정년퇴직 |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
|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⑰ 출산, 육아 때문에 |
|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 다음 문7) ~ 문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구직활동이란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7-2)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이 때문에 ② 성차별 때문에 ③ 외모 때문에 ④ 학력이 낮기 때문에 ⑤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⑥ 경력이 부족해서 ⑦ 건강문제로 ⑧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⑨ 신용불량자라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가사일 때문에 ⑪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⑫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⑭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⑮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⑯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⑰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어서)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천 백 십 원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지명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2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개국초기 시절만큼 친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더욱 친절함을 느낀다
- ② 매우 친절하게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2) 문 1)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다	④ 그렇다	⑤ 그렇다
1	2	3	4	5

문 3)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사후자 코칭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전호시설이 설치되어있는지 있으니까?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다	④ 그렇다	⑤ 그렇다
1	2	3	4	5

문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의 경우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2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십니까?

연간 총액

 만원

문 4-2)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22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연간

 회

문 5)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① 있다 → 문5-1)로 갈 것 ② 없다

< 유의사항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 하셨습니다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5-2)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2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 하셨습니다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전화통화 외 카톡,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포함합니다.

문 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조양하게 있을 경우 가족과 생활상에서 편중이된다.	1	2	3	4	5
2. 부모님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일부 이해와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1	2	3	4	5
3. 가족중에서 귀하는 가장 귀찮은 일을 하는 것만큼 즐겁다.	1	2	3	4	5
4. 부모님으로부터 귀하는 돈을 받은 것보다, 지원과 도움은 귀찮은 것만큼 받는다.	1	2	3	4	5
5. 부모님 생활 모두 귀찮은 것만큼 귀찮다.	1	2	3	4	5
6. 가족중에서 귀하는 가장 귀찮은 일을 하는 것만큼 즐겁다.	1	2	3	4	5
7. 가족이 많아 생활이 귀찮은 것만큼 귀찮다.	1	2	3	4	5
8. 가족이 많아 생활이 귀찮은 것만큼 귀찮다.	1	2	3	4	5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0시간(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문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6) (모든 응답자)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 → 문6-1)로 갈 것
 ② 월 2~4회 }
 ③ 주 2~3회 }
 ④ 주 4회 이상 }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7)로 갈 것

문 6-1)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정도 ④ 7~9잔 정도
 ② 3~4잔 정도 ⑤ 10잔 이상
 ③ 5~6잔 정도

문 6-2)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한 번에 술자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몇 달에 한번정도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④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⑤ 거의 매일

문 6-3)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23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항목	전혀 없음	몇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음	지난 1년 동안 있었음		
㉥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㉞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2년 1년간(2022. 1. 1 ~ 2022. 12. 31)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없음	1~2번	3~5번	6번이상	비해당
㉞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㉞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㉞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독신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문 15-1) (문 1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마지막으로 생각한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16)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16-1)로 같 킷 ② 아니오 → 문 17)로 같 킷

문 16-1) (문 16)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운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17)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조사 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17-1)로 같 킷 ② 아니오 → 종결

문 17-1) (문 1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을 처음/마지막으로 시도한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 유의사항 >
 ※ 문18), 문18 1), 문19), 문19 1), 문20), 문20 1))은 기존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2023년 조사일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최선의 상태	10
	9
	8
	7
	6
	5
	4
	3
	2
	1
최악의 상태	0

< 유의사항 >
 ※ 0 10 사이 숫자 중 하나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 교육

문 1)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G.개인사로 길 컷**
- ② 고등학교 중퇴, 졸업 -----|
- ③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 -----| --->**문 2)로 길 컷**
- ④ 대학교(4년제) 재학, 중퇴, 졸업 -----|
- ⑤ 일반계(특목: 예술고) -----|
- ⑥ 대학원 이상 -----|

문 2) ②~⑤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고등학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고등학교 유형			2-2) 소재지
① 일반계(일반)	⑦ 실업계(농업)	⑬ 특성화고	고등학교의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② 일반계(특목: 과학고)	⑧ 실업계(공업)	⑭ 대안학교	
③ 일반계(특목: 외국어고)	⑨ 실업계(상업)	⑮ 검정고시	
④ 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⑩ 실업계(수산 및 해양)	⑯ 기타	
⑤ 일반계(특목: 예술고)	⑪ 실업계(가사 및 실업)	⑰ 자율고(자율형고, 기숙형고)	
⑥ 일반계(특목: 체육고)	⑫ 실업계(종합)		

< 유의사항 >

※ 고등학교 유형이 "⑩검정고시"인 경우 소재지(metro)는 "40:검정고시"로 응답합니다.

※ 2007년부터는 "실업계"의 명칭이 "전문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응답자가 "전문계"라고 할 경우 해당 "실업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 자립형사립고: 아니고, 현대청운고, 인척사관학교, 전주상산고, 오형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 국제고: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청성국제고 등

⑦ 실업계(농업)에는 다음의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2010년부터 추가됨). 마이스터고등학교란 2010년 첫 개교를 하였으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학교임.

-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⑧ 실업계(공업) 중에서 일반 공업고등학교 이외에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

- 경기계림마이스터고, 수도전기공고, 부산자동차고, 부산기계공고, 경북기계공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광주자동차활성비공고, 동아마이스터고,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에너지고, 수원아이텍고, 평택기계공고, 원주의료고, 충북만도체고, 충북에너지고, 압덕제철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향안물류고,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삼천마이스터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연무대기계공고, 대구일마이스터고, 오형제철공고, 공군항공과학고, 서울로봇고, 여수석유화학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현대공고, 대덕소"트웨어 마이스터고, 대구소"트웨어고, 광주소"트웨어마이스터고, 밀양전자고, 영월공고 등

⑨ 실업계(상업)에는 "정보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이외에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2010년부터 추가됨).

-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⑩ 실업계(수산 및 해양)에는 다음의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

- 인천해사고, 부산해사고, 원도수산고 등

⑪ 실업계(가사 및 실업)에는 다음의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

-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한국나이오마이스터고 등

⑬ 특성화고등학교

- 디자인고등학교: 대전디자인고, 서울디자인고, 세크루패션디자인고, 예림디자인고, 예일디자인고, 홍익디자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인천디자인고, 대전전자디자인고, 인산디자인문화고, 한림디자인고, 경주디자인고 등
-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울산애니고, 한국애니메이션고, 강원애니고 등
- 관광고등학교: 대일관광고, 서울관광고, 선정국제관광고, 송곡관광고, 부산관광고, 부산정보관광고, 해운대관광고, 대구관광고, 영화관광경영고, 경기관광고, 경일관광경영고, 한국관광고, 한국호텔관광고, 경남관광고 등
- 미용고등학교: 울산미용예술고, 전남미용고 등
- 자동차고등학교: 인평자동차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줄보자동차고, 천송자동차고, 경남자동차고 등
- 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고, 국립전통예술고, 남원국악예술고 등
- 풀"고등학교: 부산풀"고, 함평풀"고 등

⑭ 대안학교

- 지구촌고, 달구벌고, 산마을고, 동명고, 양암고, 한마을고, 공동체미래고, 전인고, 필철고, 현천고, 영산성지고, 한빛고, 한울고, 현천고, 세인고, 우륵공고, 자평선고, 고산고, 경주화랑고, 간디고, 원경고, 지리산고, 태봉고, 두레자연고, 경기대명고, 이우고, 한겨레고 등

⑰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 자율형 사립고: 동성고, 우신고, 이화여고, 중등고, 한기랑고, 동래여고, 계성고, 송원고, 안산 동산고, 북일고, 김천고 등 (2019년 8월, 경희고, 내제고, 세화고, 송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 대부고, 경문고,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 자율형 공립고: 등촌고, 당곡고, 구현고, 수락고, 성동고, 원곡고, 미양고, 고척고, 금천고, 청양고, 삼양고, 경일고, 경동고, 대영고, 중경고, 연곡고, 광양고, 서울여고, 경남여고, 낙동고, 사상고, 부산남고, 부산중앙고, 금정고, 부산진고, 주례여고, 영도여고, 부산여고, 연제고, 개성고, 경남고, 강동고, 경북여고, 대구고, 호산고, 상인고, 학남고, 구양고, 말성고, 대전고, 칠성고, 대구서부고, 수성고, 포산고, 신현고, 인천예일고, 동인천고, 인천공향고, 인천성경고, 강화고,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대전송준고, 대전고, 애전여고, 충남고, 대전노은고, 문현고, 악사고, 한솔고, 와부고, 세마고, 함현고, 안주고, 중현고, 저현고, 고색고, 의왕고, 청학고, 군포중앙고, 운정고, 청원고, 중주예성여고, 청주고, 오송고, 중주고, 단양고, 대산고, 용남고, 강경고, 덕산고, 천안업성고, 서천여고, 논산고, 목포고, 순천고, 여수고, 나주고, 남양고, 광양고, 해남고, 인동고, 삼주여고, 영주제일고, 북상고, 경산고, 인동고, 줄진고, 점촌고, 풍화고, 울곡고, 거제제일고, 양산고, 진양고, 울진고, 김해고, 김해제일고, 마산고, 진주고, 창원중앙고, 김해경원고

문 3) ㉓~㉕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대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1) 대학 전공 계열			3-2) 소재지
①인문계열 ②사회계열(경상계열) ③사회계열(법학계열) ④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⑤교육계열 ⑥공학계열 ⑦자연계열 ⑧의약계열(의학)	⑨의약계열(약학) ⑩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⑪예체능계열 ⑫기타	대학교의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 유의사항 >
 ※ 응답자가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사회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②사회계열(경상계열)”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개인사

- 문 1) 아동기(만 0~17세)에 귀하가 가장 오랜 기간 성장한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기타 시도) ③ 농어촌(읍면지역) ④ 외국
- 문 2) 귀하가 아동기(만 0~17세)에 가구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가난 ② 가난 ③ 보통 ④ 부유 ⑤ 매우 부유
- 문 3) 귀하는 만 15세 이후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 유의사항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만 15세 이후 첫 직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고용형태였습니까?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첫 직장			년	~			년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첫 직장 이후의 취업 기간과 고용형태를 최근 것부터 연차적으로 주요한 직업 경력을 6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가장 최근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년	~			년	
주된 일자리 A			년	~			년	
주된 일자리 B			년	~			년	
주된 일자리 C			년	~			년	
주된 일자리 D			년	~			년	
주된 일자리 E			년	~			년	

〈 보기 〉 고용 형태	
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제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2.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아닌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3.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4.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농업의 경우 자영업에 포함)	
5.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유의사항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장 중단이십시오.
 ※ 동일직종에 근무하면서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근무기간은 구분하지 말고 고용형태는 마지막 형태를 기입합니다. 고용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직장을 바꾼 경우에는 바뀐 직장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경우는 3-1)과 3-2) 최근일자리에 동시에 기입합니다.
 ※ 첫 직장 이후 다른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3-1)에만 기입하고, 3-2)에는 최근 일자리부터 순차적으로 적되, 마지막에 첫 직장은 적지 않습니다.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어떤 직업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기술사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종
- ② 기능장
- ⑦ 자격종 없는 기능자
- ③ 기사
- ⑧ 잘 모르겠다 → 문5)로 갈 것
- ④ 산업기사
- ⑨ 없다
- ⑤ 기능사

문 4-1) (문 4)의 ①~⑦번 응답자만) 직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기계·금속
- ⑪ 국토개발
- ⑳ 공예
- ② 화학공·세라믹
- ⑫ 농림
- ㉑ 사무관리
- ③ 전기·전자
- ⑬ 해양
- ⑲ 음료품·식료품
- ④ 통신
- ⑭ 산업 디자인
- ㉒ 위생
- ⑤ 조선회
- ⑮ 에너지
- ㉓ 보건·의료·사회
- ⑥ 항공공
- ⑯ 환경
- ㉔ 금융·무역·유통
- ⑦ 토목·건축
- ⑰ 안전관리
- ㉕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 ⑧ 광업자원
- ⑱ 산업응용
- ㉖ 외국어·관광
- ⑨ 정보처리
- ⑲ 교통
- ㉗ 기타

< 유의사항 >
 ※ 문4)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아동기(만 0~17세)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살이었습니까?

항 목	경험 여부				당시 나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모름		
㉘ 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일찍 돌아가셨다.	①	②	③	☐	만__세
㉙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①	②	③	☐	만__세
㉚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진학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만__세
㉛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적이 있다.	①	②	③	☐	만__세

< 유의사항 >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 생계곤란으로 처음부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로 응답한 후 당시 나이는 취학연령인 만 7세로 기재합니다.

문 6) 귀하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부 모

- ① 무학
- ④ 중학교졸
- ⑦ 대학교졸
- ② 서당수학
- ⑤ 고등학교졸
- ⑧ 대학원졸
- ③ 초등학교졸
- ⑥ 대학(전문대)졸
- ⑨ 모름

< 유의사항 >
 ※ 중퇴 수료는 이전 학교 졸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중학교 중퇴(수료)인 경우는 '초등학교 졸'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유형5)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책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2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294, 8215, 8256, 8162,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치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치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가구주성명				
					대리응답자				
					① 해외거주(기타기부포)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성명	가구원번호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⑨ 장애(만18세 이상) ⑩ 연령(만17세 이하) ⑪ 기타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방문횟수	총	회				
1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① 비해당(완료) ① 낮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채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분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사망 ⑦ 기타			
2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장애인이 고등학생 이하인 경우는 보호자가 대리응답하고, 그 외는 본인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로 인해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대리 응답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문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공통 I) 장애 원인 및 상황

문 1)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복 원인의 경우 주원인 하나만 기재해 주십시오.)

- ① 선천적 원인
- ② 출생시 원인
- ③ 질환에 의한 후천적 원인
- ④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
- ⑤ 원인불명

장애원인구분

선 천 적 원 인	1) 유전성 2) 기타 염색체이상 3) 선천성·발육기형	4) 모체의 만성질환(당뇨,빈혈,고혈압,알콜중독,약물남용) 5) 모체의 감염(풍진,매독,독소플라스마증,후천성면역결핍증) 6) 미상
출 생 시 원 인	1) 조산 2) 난산	3) 출산시 외상 4) 미상
질 환	1) 신경계질환 2) 정신질환 3)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 질환 4) 심혈관 질환 5) 호흡기질환 6) 소화기계 질환	9) 근골격계 질환 10) 신생물(종양)질환 11) 중독성 질환 12) 감염성 질환 13) 미상
후 천 적 원 인	7)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8)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사 고	1) 폭력에 의한 사고 2) 가정내 사고 3) 교통사고(탑승자) 4) 교통사고(보행자) 5)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6) 화상 7) 약물 사고 8) 기타 사고 및 외상 9) 전상 10) 미상
원 인 불 명	: 원인을 모름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 처음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문 2-1) 당시연령: 만 _____ 세 (※ 출생 시 생긴 장애는 0세로 표시합니다.)

문 2-2) 당시의 가구 소득수준: ①매우 부유 ②부유 ③보통 ④가난 ⑤매우 가난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는 지난 3년간 어떤 상태입니까?

(※2020. 1. 1 ~ 2022.12.31 동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호전(개선)되고 있다
- ② 고착되어 있다
- ③ 악화 또는 진행되고 있다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다음 중 어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로 기재해 주십시오.)

- ① 의료급여 1종
- ② 의료급여 2종
-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④ 건강보험
- ⑤ 기타(적을 것: _____)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조사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6)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②에 응답한 사람만)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②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
- ③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 ④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 ⑤ 치료받기 싫어서
- ⑥ 주위의 시선 때문에
- ⑦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 ⑧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 ⑨ 치료 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이동의 불편)
- ⑩ 기타

문 6)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장애 때문에 본인 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2022. 1. 1 ~ 2022.12.31 동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항상 느낀다
- ② 가끔 느낀다
-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문 6-1)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별로 없다
- ③ 약간 많다
- ④ 매우 많다

문 6-2)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대처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의 대처방법은 중복 응답이 가능합니다.)

구 분		차별 정도					대처방법					구 분		차별 정도					대처방법				
		① 많았다	② 안 많았다	③ 적당	④ 무시한다	⑤ 참는다	⑥ 형의 한다	⑦ 고발한다	⑧ 기타	① 많았다	② 안 많았다			③ 적당	④ 무시한다	⑤ 참는다	⑥ 형의 한다	⑦ 고발한다	⑧ 기타				
1) 입학·전학	01) 유치원 (보육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운전면허 제도상 (취득 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2) 초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3) 중학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4) 고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5) 대학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생활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	01) 교사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의료기관 이용 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2) 또래학생으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3) 학부모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	01) 결혼 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정보통신 이용 시 (방송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2) 결혼 생활 중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취업 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생활	01) 소득(임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사회 생활(음식점,극장,공영장,체육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2) 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03) 승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 7)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22. 1. 1 ~ 2022.12.31 동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평생 경험한 적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음	1~2번	3~5번	6번 이상
㉔ 작년 1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 맞거나, 차이거나, 밀쳐지거나, 때밀리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㉕ 작년 1년 동안 누군가가 당신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㉖ 작년 1년 동안 누군가 당신이 휠체어, 지팡이, 인공호흡기,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㉗ 작년 1년 동안 당신이 의존하는 누군가가 약 먹기, 화장실 가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옷 입기, 음식이나 음료 먹기와 같은 중요한 개인적 욕구에 대해 도와주기를 거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8)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외출(목발,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외출 포함)을 하셨습니까?

(※ 조사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거의 매일 → 문 9)로 갈 것
- ② 주 3~4회 → 문 9)로 갈 것
- ③ 주 1~2회
- ④ 월 3회 이내 → 문 8-1)로 갈 것
- ⑤ 거의 외출하지 않음

문 8-1) (문 8)에서 ④~⑤에 응답한 사람만) 그럼,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이 불편해서
- ②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 ③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 ④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 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 ⑥ 주위의 시선 때문에
- ⑦ 의사소통이 어려워져서
- ⑧ 도움제공자가 시간이 없어서
- ⑨ 기타

(공통 II) 일상생활

문 9)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 문 11)로 갈 것
-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 문 9-1)로 갈 것
-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 9-1) (문 9)에서 ③~⑤에 응답한 사람만) 그럼,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를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도움시간이 많은 순으로 3명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구원일 경우는 가구용 조사표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하며, 가구원이 아니면 공란으로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가구원 번호	가구원 번호	가구원 번호

- | | | |
|--|---|--|
|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손자녀
⑦ 기타가족 | ⑧ 친척
⑨ 친구
⑩ 이웃
⑪ 유료 가정봉사원
⑫ 유료 간병인
⑬ 유료 활동보조사(활동보조인)
⑭ 무료 가정봉사원 | ⑮ 무료 간병인
⑯ 무료 활동보조사(활동보조인)
⑰ 요양보호사
⑱ 장애아동 돌보미
⑲ 기타(적을 것:)
⑳ 없음 |
|--|---|--|

문 9-2) (문 9)의 ③~⑤에 응답한 사람만)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한 편이다
- ③ 부족한 편이다
- ④ 매우 부족하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문 10) 문 10-1)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상생활과 이동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한 달에 등급별로 최저 69만원에서 최고 710만원이 제공되며(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 29만원에서 118만원의 추가급여 제공),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문 10) (문 9)에서 ③~⑤에 응답한 사람만)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이용한다
- ② 이용하지 않는다

문 10-1) (문 9)에서 ③~⑤에 응답한 사람만)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용 중이라면, 향후 이용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이용하겠다
- ② 이용하지 않겠다 → 문 11)로 갈 것

문 11)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 항목별 자립정도 판단에 대한 지침은 면접원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항 목	자 립 정 도		
㉠ 옷 벗고 입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세수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양치질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목욕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식사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체위변경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일어나 앉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옮겨 타기(앉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방밖으로 나오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화장실 사용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대변 조절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소변 조절하기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12)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 항목별 자립정도 판단에 대한 지침은 면접원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항 목	자 립 정 도			
㉠ 몸단장하기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집안일 하기(일상적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식사준비 하기(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빨래하기(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한 상관없이)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근거리 외출하기(교통수단 없이)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사기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금전관리하기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전화사용하기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약 챙겨 먹기	① 비해당	① 완전 자립	② 부분 도움	③ 완전 도움

- 13)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께서 **현재** 가족, 친구,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느끼시는 정도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자신의 느낌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다면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의 가족은 진정으로 나를 도우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내 문제에 대하여 나의 가족과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의 가족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도록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위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친구, 주변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에게서는 나를 편안하게 해 주는 특별한 사람(친구, 주변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의 친구나 주변사람들은 나를 진정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일이 잘 안될 때 친구나 주변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친구나 주변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내 문제에 대하여 친구나 주변사람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14)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한 달간** 경제적 또는 일상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물질적 지원'과 '보살핌'을 구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물질적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제외한 전화통화, 가사지원, 자녀양육, 보일러 점검 등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 조사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 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도움 제공자	도움 여부		도움 받은 횟수			
	있다	없다	물질적 지원		보살핌	
㉠ 생계를 달리는 부모·자녀·형제자매(같이 사는 가구원 제외)	①	②		회		회
㉡ 친척(3촌 이상)	①	②		회		회
㉢ 친구 및 동료(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①	②		회		회
㉣ 이웃(동네사람 등)	①	②		회		회
㉤ 종교단체(성당, 교회, 절 등)	①	②		회		회
㉥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①	②		회		회
㉦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①	②		회		회
㉧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①	②		회		회
㉨ 학교(담임교사, 상담실교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등)	①	②		회		회
㉩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①	②		회		회
㉪ 요양보호사	①	②		회		회
㉫ 장애아동 돌보미	①	②		회		회
㉬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회		회

15) (모든 응답자)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원)나 서비스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왼쪽 부분에는 다음 각 제도(지원)나 서비스가 귀하(또는 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삶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오른쪽 부분에는 각 지원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느낌과 의견을 각각 선택하여 주십시오.

필요정도				삶을 위한 지원 제도 및 서비스 세부항목	충분정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①	②	③	④	㉠ 소득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의료보장①(신체 건강)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의료보장②(정신 건강)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고용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주거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이동권 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 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보육·교육 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사회 참여 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자기의사결정권 행사 지원(치료, 약물, 입원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학대 방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사회적 차별 금지	①	②	③	④

※ 응답완료 후 조사대상 장애인이

- 미취학 아동인 경우 (만 0세 ~ 초등학교 입학 전) → 미취학 아동 설문으로 갈 것
- 학생인 경우 (초등학생 ~ 고등학생) → 학생설문으로 갈 것
- 성인인 경우 (만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성인설문으로 갈 것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어르신 설문으로 갈 것

(개별 II) 학생 (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

문 1) (모든 응답자) 다음의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귀댁 자녀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 외롭다고 불평한다	①	②	③
㉡ 잘 운다	①	②	③
㉢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①	②	③
㉣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①	②	③
㉥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①	②	③
㉩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①	②	③
㉫ 의심이 많다	①	②	③
㉬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①	②	③
㉭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문 2) (모든 응답자) 귀댁의 자녀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조사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잘 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될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5-2) (문 5)의 ①에 응답한 사람만) 귀댁의 자녀가 현재 학교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문제없다 | ⑧ 선생님의 지나친 배려 |
| ② 등하교 불편(교통수단 이용) | ⑨ 전문교사 부족 |
| ③ 학교 내 편의시설 부족 | ⑩ 교육도구(기자재) 사용 시 불편 |
| ④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 | ⑪ 교육내용의 부적합 |
| ⑤ 수업내용의 이해(진도 따라가기) | ⑫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
| ⑥ 친구들의 이해부족, 놀림 | ⑬ 기타 |
| ⑦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 |

문 5-3) (문 5)의 ①에 응답한 사람만) 귀댁의 자녀는 방과 후에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 | | |
|----------------------------|----------------------|
| ① 집에서 혼자 지낸다 | ⑥ 가정에서 방문교사가 지도한다 |
| ②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 | ⑦ 복지시설(기관)에서 보낸다 |
| ③ 장애부모들이 운영하는 공동육아시설에서 보낸다 | ⑧ 학원에서 보낸다 |
| ④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서 보낸다 | ⑨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다 |
| ⑤ 일반 보육시설에서 보낸다 | ⑩ 기타 |

문 6) (문 5)의 ②에 응답한 사람만) 귀댁의 자녀가 지난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⑤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
| ② 장애 때문에 | ⑥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
| ③ 주위의 편견 때문에 | ⑦ 다니기 싫어서 |
| ④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 ⑧ 기타 |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III) 성인 (만 18-65세 미만) 설문

1)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다음 ①~⑳의 서비스들이 필요하니까? 또는 불필요하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그 서비스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한 달간**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⑳ 항목의 필요여부에 대해 먼저 순서대로 물어본 후, ①~⑳ 항목의 현재 이용여부를 차례대로 다시 묻습니다)
 (*조사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 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서비스	필요 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	불필요	예	아니오
① 일상 생활 지원(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보조, 시장보기 등)	①	②	①	②
② 가사 지원(청소, 취사, 세탁 등의 가사지원, 응급안전 알람 서비스 등)	①	②	①	②
③ 이동 관련 지원(이동 보조기기, 활동지원사, 장애인 운전교육, 장애인 몰택시 등)	①	②	①	②
④ 의사 소동 지원 및 정보접근 참여(수어통역사, 자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⑤ 재활치료(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심리·행동 치료 등)	①	②	①	②
⑥ 상담(개별/집단/가족상담, 심리사회적 상담, 정신건강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⑦ 취업 관련 서비스(직업 상담 및 알선, 취업 프로그램 참여, 직업 훈련 등)	①	②	①	②
⑧ 직업 재활 서비스(직업 적응 훈련, 현장 중심 직업 훈련,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⑨ 장애인 일자리(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	①	②	①	②
⑩ 교육(정규교육, 비정규교육 등)	①	②	①	②
⑪ 사회 참여 지원(역량 강화, 자조모임, 동료지원 등)	①	②	①	②
⑫ 여가 생활 지원(장애인 체육 시설 이용, 문화 및 레저 관련 활동 지원, 가족 휴식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⑬ 의사 결정 지원(후견서비스 등)	①	②	①	②
⑭ 자립생활지원(개인별 자립지원,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⑮ 주·야간보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낮이나 밤 시간의 일시적 케어 등)	①	②	①	②
⑯ 단기보호(단기적 소규모 시설에서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①	②	①	②
⑰ 방문간호(간병) (방문 진료, 투약, 체온/혈압/혈당 측정, 신체간병 등)	①	②	①	②
⑱ 방문 및 이동 목욕	①	②	①	②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조사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는 **현재** 소득을 목적으로 일(취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럼 향후에는 일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 ① 취업 → **문3-1)로 갈 것**
- ② 취업희망 → **문3-2)로 갈 것**
- ③ 취업불원(희망하지 않음) → **문3-3)으로 갈 것**

문 3-1) (문 3)의 ①번 응답자(취업자)) 그럼, **현재**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① 자영업
- ② 일반사업체
- ③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 근로, 표준 사업장)
- ⑤ 장애인 관련기관(자립생활센터 포함)
- ⑥ 기타(적을 것: _____)

응답 후 문 4)로 이동할 것

문 3-2) (문 3)의 ②번 응답자(취업희망자)) 그럼, 향후에 어떤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자영업
- ② 일반사업체
- ③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 근로, 표준 사업장)
- ⑤ 장애인 관련기관(자립생활센터 포함)
- ⑥ 기타(적을 것: _____)

응답 후 문 4)로 이동할 것

문 3-3) (문 3)의 ③번 응답자(취업불원)) 귀하(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애가 심해서 오래전에 포기했음
- ②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음
- ③ 그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④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충족해서
- ⑤ 학력, 기술, 능력이 부족해서
- ⑥ 취업, 창업정보를 몰라서
- ⑦ 일자리가 없어서
- ⑧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 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심해서
- ⑩ 육아 혹은 가사 때문에
- ⑪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 ⑫ 기타

(개별 IV)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문 1) (모든 응답자)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다음 ①~⑮의 서비스들이 필요합니까? 또는 불필요합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 그 서비스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난 한 달간**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⑮ 항목의 필요여부에 대해 먼저 순서대로 물어본 후, ①~⑮ 항목의 현재 이용여부를 차례대로 다시 묻습니다)
 (*조사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 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필요 여부		현재 이용여부	
	필요	불필요	예	아니오
① 직업상담 및 취업준비, 훈련 서비스 (일자리 상담 및 알선, 취업준비, 교육 등)	①	②	①	②
② 정서적 서비스 (말벗, 전화안부, 책 읽어주기 등)	①	②	①	②
③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업무대행, 차량지원, 외출동행, 장보기, 심부름 등)	①	②	①	②
④ 급식지원 (식사배달, 급식지원, 밀반찬배달, 영양식지원 등)	①	②	①	②
⑤ 전문 상담 서비스 (개별/집단/가족상담, 심리사회적 상담, 정신건강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⑥ 주거지원 (주거제공 및 주거개조, 도배, 상하수도, 해충박멸, 주방개조 등)	①	②	①	②
⑦ 여가생활 (여가시간 활용, 문화 및 레저관련 활동)	①	②	①	②
⑧ 요양시설보호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시설 케어)	①	②	①	②
⑨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 시간의 일시적 케어)	①	②	①	②
⑩ 단기보호 (단기적 소규모 시설 보호)	①	②	①	②
⑪ 가사지원 서비스 (청소, 취사, 세탁 등의 가사지원)	①	②	①	②
⑫ 물리치료 및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및 재활훈련 서비스)	①	②	①	②
⑬ 방문간호(간병) (방문 진료, 투약, 체온/혈압/혈당 측정, 신체간병 등)	①	②	①	②
⑭ 방문 및 이동 목욕 (재가노인을 위한 목욕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⑮ 의사결정지원 서비스(후견서비스 등)	①	②	①	②

문 2) (모든 응답자) 어르신(응답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조사시점(202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